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과 추가협정서

c o n t e n t s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 I 협약)	19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 II 협약)	41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 III 협약)	59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 IV 협약)	117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 I 의정서)	167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 II 의정서)	223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추가 식별표장 채택에 관한 추가의정서 (제 III 의정서)	233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 I 협약)**

제1장 총칙

제1조	협약의 존중	20
제2조	협약의 적용	20
제3조	국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충돌	20
제4조	중립국에 의한 본협약의 적용	21
제5조	협약의 적용기간	21
제6조	특별협정	21
제7조	권리의 불포기	21
제8조	이익보호국	21
제9조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활동	22
제10조	이익보호국의 대리	22
제11조	조정절차	22

제2장 부상자 및 병자

제12조	보호 및 간호	23
제13조	보호되는 자	23
제14조	신분	24
제15조	사상자의 수색 및 수송	24
제16조	기록 및 정보의 송부	24
제17조	사망자에 관한규정. 분묘 등록기관	25
제18조	주민의 역할	25

제3장 의무부대 및 의무시설

제19조	보호	26
제20조	병원선의 보호	26
제21조	의무시설 및 의무부대의 보호의 소멸	26
제22조	의무부대 및 의무시설로부터 보호를 박탈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26
제23조	병원지대 및 병원지구	26

제4장 보호받는 인원

제24조	군대의 전임요원의 보호	27
제25조	군대의 보조의무요원의 보호	27
제26조	각국 적십자사 및 승인된 기타 구호단체 직원의 보호	27
제27조	중립국 단체의 직원	27

제28조	역류된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	28
제29조	보조요원의 신분	28
제30조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의 귀환	28
제31조	귀환요원의 선정	29
제32조	중립국 소속 요원의 귀환	29

제5장 건물 및 자재

제33조	의무기관의 건물 및 자재	29
제34조	구호단체의 재산	29

제6장 의료수송

제35조	보호 및 포획	30
제36조	의무항공기	30
제37조	중립국 영역 상공의 비행	30

제7장 식별표지

제38조	본 협약의 표장	31
제39조	표장의 사용	31
제40조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의 식별	31
제41조	보조요원의 식별	32
제42조	의무부대 및 의무시설의 표지	32
제43조	중립국 의무부대의 표지	32
제44조	표장의 사용제한. 그 예외	32

제8장 협약의 실시

제45조	세부실시. 예견되지 않는 사건	33
제46조	보복의 금지	33
제47조	협약의 보급	33
제48조	번역문. 적용법령	33

제9장 남용 및 위반의 방지

제49조	형사적 제재 I. 개관	33
제50조	II. 중대한 위반행위	34
제51조	III. 체약국의 책임	34
제52조	조사절차	34
제53조	표장의 남용	34
제54조	남용의 방지	35

최종규정

제55조	언어	35
제56조	서명	35
제57조	비준	35
제58조	효력의 발생	35
제59조	종전 협약과의 관계	35
제60조	가입	35
제61조	가입통고	36
제62조	즉시발효	36
제63조	탈퇴	36
제64조	국제연합에의 등록	36

제 I 부속서

병원지대 및 병원지구에 관한 협정안	37
---------------------	----

제 II 부속서

의무요원 및 종교종교요원에 대한 신분증명서 양식	39
----------------------------	----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 II 협약)**

제1장 총칙

제1조	협약의 존중	42
제2조	협약의 적용	42
제3조	국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충돌	42
제4조	적용의 범위	43
제5조	중립국에 의한 적용	43
제6조	특별협정	43
제7조	권리의 불포기	43
제8조	이익보호국	43
제9조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활동	44
제10조	이익보호국의 대리	44
제11조	조정절차	44

제2장 부상자 및 병자

제12조	보호 및 간호	45
------	---------	----

제13조	보호되는 자	45
제14조	교전국에 인도	46
제15조	중립국 군함에 수용된 부상자	46
제16조	적의 권력내에 있는 부상자	46
제17조	중립국 항구에 상륙한 부상자	46
제18조	교전후 사상자의 수색	46
제19조	기록 및 정보의 송부	47
제20조	사망자에 관한 규정	47
제21조	중립국 선박에 대한 호소	47

제3장 병원선

제22조	군병원선의 통고 및 보호	48
제23조	해안의료시설의 보호	48
제24조	충돌당사국의 구호단체 및 사인이 사용하는 병원선	48
제25조	중립국의 구호단체 및 사인이 사용하는 병원선	48
제26조	툰수	48
제27조	연안구조정	49
제28조	의무실의 보호	49
제29조	점령지의 항구에 있는 병원선	49
제30조	병원선 및 소주정의 사용	49
제31조	감독 및 수색의 권리	49
제32조	중립국 항구에 정박	50
제33조	개조된 상선	50
제34조	보호의 소멸	50
제35조	병원선으로부터의 보호를 박탈하여서는 안되는 조건	50

제4장 보호받는 인원

제36조	병원선 요원의 보호	50
제37조	기타선박의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	51

제5장 의료수송

제38조	의료장비 수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	51
제39조	의무항공기	51
제40조	중립국 상공의 비행, 부상자의 하륙	52

제6장 식별표지

제41조	표장의 사용	52
------	--------	----

제42조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의 식별	52
제43조	병원선 및 소주정의 표지	53
제44조	표장의 사용제한	53
제45조	남용의 방지	53

제7장 협약의 실시

제46조	세목의 실시, 예견되지 못한 경우대비	54
제47조	보복의 금지	54
제48조	협약의 보급	54
제49조	번역문, 적용법령	54

제8장 남용과 위반의 방지

제50조	형사적 제재	
	I. 개관	54
제51조	II. 중대한 위반행위	55
제52조	III. 계약국의 책임	55
제53조	조사절차	55

최종규정

제54조	언어	55
제55조	서명	55
제56조	비준	55
제57조	효력의 발생	56
제58조	1907년 협약과의 관계	56
제59조	가입	56
제60조	가입의 통고	56
제61조	즉시발효	56
제62조	탈퇴	56
제63조	국제연합에의 등록	56

부속서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의 신분증명서	58
--------------------	----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Ⅲ협약)

제1편 총칙

제1조	협약의 존중	60
제2조	협약의 적용	60
제3조	국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충돌	60
제4조	포로	61
제5조	적용의 시작 및 끝	62
제6조	특별협정	62
제7조	권리의 불포기	62
제8조	이익보호국	62
제9조	국제적십자위원회 활동	63
제10조	이익보호국의 대리	63
제11조	조정절차	63

제2편 포로의 일반적 보호

제12조	포로의 대우의 책임	64
제13조	포로의 인도적 대우	64
제14조	포로의 존중	64
제15조	포로의 급양	65
제16조	평등한 대우	65

제3편 포로의 신분

제1부 포로신분의 개시

제17조	포로의 심문	65
제18조	포로의 재산	66
제19조	포로의 후송	66
제20조	후송의 조건	66

제2부 포로의 억류

제1장 총칙

제21조	이동자유의 제한	67
제22조	억류장소 및 억류조건	67
제23조	포로의 안전	67
제24조	상설통과 수용소	68

제2장 포로의 숙소, 식량 및 피복

제25조	숙사	68
제26조	식량	68

제27조	피복	69
제28조	매점	69
제3장 위생 및 의료		
제29조	위생	69
제30조	치료	69
제31조	건강검진	70
제32조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포로	70
제4장 포로를 원조하기 위하여 억류된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		
제33조	억류된 요원의 권리 및 특권	70
제5장 종교적, 지적 및 육체적 활동		
제34조	종교상의 의무	71
제35조	억류된 종교요원	71
제36조	성직자인 포로	71
제37조	자기종교의 성직자를 갖지 않는 포로	72
제38조	오락, 연구, 운동경기	72
제6장 규율		
제39조	관리, 경례	72
제40조	기장 및 훈장	72
제41조	협약 및 억류국의 규칙 및 명령의 게시	72
제42조	무기의 사용	73
제7장 포로의 계급		
제43조	계급의 통지	73
제44조	장교의 대우	73
제45조	기타 포로의 대우	73
제8장 수용소에 도착한 후의 포로의 이동		
제46조	조건	73
제47조	이동을 금하는 경우	74
제48조	이동에 관한 절차	74
제3부 포로의 노동		
제49조	개관	74
제50조	허가된 노동	75
제51조	노동조건	75
제52조	위험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노동	75

제53조	노동의 시간	75
제54조	노동임금, 노동재해 및 노동으로 인한 질병	76
제55조	의료검진	76
제56조	노동분견소	76
제57조	사인을 위하여 노동하는 포로	76
제4부 포로들의 금전관계		
제58조	현금	77
제59조	포로로부터 압수된 현금	77
제60조	봉급의 선지불	77
제61조	추가급여	78
제62조	노동임금	78
제63조	금전의 송금	78
제64조	포로의 계정	78
제65조	포로의 계정관리	79
제66조	계정의 청산	79
제67조	충돌당사국간의 청산	79
제68조	보상의 청구	79
제5부 포로의 외부와의 관계		
제69조	취하는 조치의 통지	80
제70조	포로통지표	80
제71조	통신	80
제72조	구호품	
	Ⅰ. 일반원칙	81
제73조	Ⅱ. 집단적 구호품	81
제74조	우편요금 및 수송요금의 면제	81
제75조	특별한 수송수단	82
제76조	검열 및 검사	82
제77조	법률문서의 작성, 집행 및 전달	82
제6부 포로와 당국과의 관계		
제1장 억류조건에 관한 포로의 이의 제청		
제78조	이의제청 및 요청	83
제2장 포로대표		
제79조	선거	83
제80조	임무	84
제81조	특권	84

제3장 형벌 및 징계법	
I. 총칙	
제82조 적용법령	84
제83조 징계 또는 사법절차의 선택	85
제84조 재판소	85
제85조 포로가 되기 전에 위반한 행위	85
제86조 일사부재리	85
제87조 형벌	85
제88조 형벌의 집행	86

II. 징계법	
제89조 처벌의 형식	86
제90조 처벌의 기간	86
제91조 성공한 도주	86
제92조 성공하지 못한 도주	87
제93조 관련된 위반행위	87
제94조 재포로 통지	87
제95조 징계의 결정이 있기까지 동안의 구금	87
제96조 권한있는 당국 및 변호의 권리	88
제97조 징계법의 집행	
I. 장소	88
제98조 II. 기본적 보호	88

III. 사법절차	
제99조 I. 일반원칙	89
제100조 II. 사형	89
제101조 III. 사형집행까지의 기간	89
제102조 절차	
I. 판결의 유효조건	89
제103조 II. 재판이 있기까지의 구류	89
제104조 III. 절차의 통지	89
제105조 IV. 변호의 권리 및 절차	90
제106조 V. 불복의 신립	90
제107조 VI. 판결의 통지	91
제108조 형의 집행, 집행규칙	91

제4편 포로신분의 종류	
제1부 직접송환 및 중립국에서의 수용	
제109조 개관	91
제110조 송환 및 수용을 하는 경우	92
제111조 중립국에 있어서의 역할	92

제112조 훈성의료위원회	92
제113조 훈성의료위원회에서 진찰을 받을 권리가 있는 포로	93
제114조 재해를 입은 포로	93
제115조 판결에의해 복역하고 있는 포로	93
제116조 송환비용	93
제117조 송환후의 활동	93

제2부 적대행위 종료시의 포로의 석방과 송환	
제118조 석방 및 송환	94
제119조 송환절차의 세부규정	94

제3부 포로의 사망	
제120조 유언서, 사망증명서, 매장, 화장	95
제121조 특별한 경우에 살해되거나 부상을 입은 포로	95

제5편 포로에 관한 정보국과 구호단체	
제122조 정보국	96
제123조 중앙포로정보국	96
제124조 요금의 감면	97
제125조 구호단체, 기타 단체	97

제6편 협약의 시행	
제1부 총칙	
제126조 감시	98
제127조 협약의 보급	98
제128조 협약의 번역문, 적용법령	98
제129조 형사적 제재	
I. 개관	98
제130조 II. 중대한 위반행위	99
제131조 III. 체약국의 책임	99
제132조 심문절차	99

제2부 최종규정	
제133조 언어	99
제134조 1929년 협약과의 관계	99
제135조 헤이그협약과의 관계	99
제136조 서명	100
제137조 비준	100
제138조 효력의 발생	100

제139조	가입	100
제140조	가입의 통고	100
제141조	즉시발효	100
제142조	탈퇴	100
제143조	국제연합에의 등록	101

제 I 부속서

부상자 및 병자인 포로의 직접송환 및 중립국내의 수용에 관한 협정 표본	102
--	-----

I. 직접송환 및 중립국내의 수용에 관한 원칙	102
가. 직접송환	102
나. 중립국내의 입원	104
II. 총칙	104

제 II 부속서

훈성의료위원회에 관한 규칙	106
-----------------------	-----

제 III 부속서

집단지대 구호에 관한 규칙	108
-----------------------	-----

제 IV 부속서

가. 신분증명서	110
나. 포로통지서	111
다. 통신용 엽서 및 편지	112
라. 사망통지서	114
마. 송환증명서	115

제 V 부속서

포로로부터 본국에 보내는 송금에 관한 모형규칙	116
----------------------------------	-----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IV협약)

제1편 총칙

제1조	협약의 존중	118
-----	--------	-----

제2조	협약의 적용	118
제3조	국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충돌	118
제4조	피보호자의 정의	119
제5조	저촉행위	119
제6조	적용의 개시와 종료	119
제7조	특별협정	120
제8조	권리의 불포기	120
제9조	이익보호국	120
제10조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활동	120
제11조	이익보호국의 대리	120
제12조	조정절차	121

제2편 전쟁의 특정 결과에 대한 주민의 일반적 보호

제13조	제2편의 적용범위	121
제14조	병원 및 안전을 위한 지대 및 지구	122
제15조	중립지대	122
제16조	부상자 및 병자의 일반적 보호	122
제17조	소개	122
제18조	민간병원의 보호	122
제19조	병원보호의 소멸	123
제20조	병원의 직원	123
제21조	육상 및 해상 수송수단	123
제22조	항공수단	124
제23조	의료품, 식량, 피복 등의 탁송품	124
제24조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124
제25조	가족의 소식	125
제26조	이산가족	125

제3편 피보호자의 지위 및 대우

제1부 총돌당사국의 영역 및 점령지역내에 공통되는 규칙

제27조	대우	
	I. 개관	125
제28조	II. 위험지대	126
제29조	III. 책임	126
제30조	이익보호국 및 구호단체에 대한 신청	126
제31조	강제의 금지	126
제32조	육체에 가하는 벌, 고문 등의 금지	126
제33조	개인책임, 단체벌, 약탈, 보복	126
제34조	인질	126

제2부 총돌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

제35조	영역을 퇴거할 권리	127
제36조	송환방법	127
제37조	구금종인 자	127
제38조	송환되어지지 않는 자	
	I. 개관	127
제39조	II. 생활수단	128
제40조	III. 노동	128
제41조	IV. 주거지정. 억류	128
제42조	V. 억류 또는 주거지정의 이유. 자발적 억류	128
제43조	VI. 절차	129
제44조	VII. 망명자	129
제45조	VIII. 타국에의 이송	129
제46조	제한적 조치의 폐지	129

제3부 점령지역

제47조	권리의 불가침	130
제48조	송환의 특별한 경우	130
제49조	추방, 이송, 철거	130
제50조	아동	130
제51조	모병, 노동	131
제52조	노동자의 보호	131
제53조	파괴금지	131
제54조	법관 및 공무원	132
제55조	주인의 식량과 의료품	132
제56조	공중보건 및 위생	132
제57조	병원의 징발	132
제58조	종교상의 원조	132
제59조	구호	
	I. 집단적 구호	133
제60조	II. 점령국의 책임	133
제61조	III. 분배	133
제62조	IV. 개인에게 보낸 구호품	133
제63조	적십자사와 기타 구호단체	133
제64조	형벌법령	
	I. 개관	134
제65조	II. 공포	134
제66조	III. 권한있는 재판소	134
제67조	IV. 적용법령	134
제68조	V. 형벌, 사형	134
제69조	VI. 구속기간을 본형에 통산하는 것	135
제70조	VII. 점령전에 이루어진 범죄행위	135

제71조	재판절차	
	I. 개관	135
제72조	II. 방어의 권리	136
제73조	III. 불복상소의 권리	136
제74조	IV. 이익보호국의 원조	136
제75조	V. 사형	137
제76조	피구금자의 대우	137
제77조	점령종료시 피구금자를 인도하는 일	137
제78조	안전조치. 억류 및 주거지정. 소청권	137

제4부 피억류자의 대우에 관한 규정

제79조	억류하는 경우 적용조항	138
제80조	사법상의 행위능력	138
제81조	부양	138
제82조	피억류자의 배치	138

제2장 억류장소

제83조	억류장소의 위치. 수용소의 표시	138
제84조	분리수용	139
제85조	수용, 위생	139
제86조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장소	139
제87조	매점	139
제88조	공습대피소, 방호조치	140

제3장 식량 및 억류

제89조	식량	140
제90조	의류	140

제4장 위생 및 의료

제91조	치료	141
제92조	신체검사	141

제5장 종교적, 지적 및 육체적 활동

제93조	종교상의 의무	141
제94조	오락, 연구, 운동경기	142
제95조	노동조건	142
제96조	노동분견대	143

제6장 개인재산 및 금전관계

제97조	귀중품 및 개인용품	143
제98조	금전관계 및 개인계정	143

제7장	관리 및 규율	
제99조	수용소 관리, 협약 및 명령의 게시	144
제100조	일반적 규율	144
제101조	이의신청과 청원	144
제102조	피억류자위원회	
	Ⅰ. 위원선거	145
제103조	Ⅱ. 임무	145
제104조	Ⅲ. 특권	145
제8장	외부와의 관계	
제105조	취하는 조치의 통지	146
제106조	억류업서	146
제107조	통신	146
제108조	구호품의 발송	
	Ⅰ. 일반원칙	146
제109조	Ⅱ. 집단구호품	147
제110조	Ⅲ. 우편요금 및 수송요금의 면제	147
제111조	특별수송수단	147
제112조	검열과 검사	148
제113조	법률문서의 작성과 전달	148
제114조	재산관리	148
제115조	소송사건의 준비와 진행을 위한 편의	148
제116조	방문	149
제9장	형벌 및 징계벌	
제117조	총칙, 적용법령	149
제118조	형벌	149
제119조	징계벌	149
제120조	도주	150
제121조	관련된 위반행위	150
제122조	조사. 미결기간의 구금	150
제123조	주무당국. 절차	150
제124조	징계벌을 위한 시설	151
제125조	중요한 보장	151
제126조	소송절차의 준용규정	151
제10장	피억류자의 이동	
제127조	조건	151
제128조	방법	152

제11장	사망	
제129조	유언서. 사망증명서	152
제130조	매장. 분묘	153
제131조	특별한 상황에서 사해 또는 부상당한 피억류자	153
제12장	석방, 송환 및 중립국내에서의 입원	
제132조	적대행위시간 또는 점령기간중	153
제133조	적대행위 종료후의 석방	153
제134조	송환 및 최후거주지에의 복귀	154
제135조	비용	154
제5부	피보호자정보국 및 중앙피보호자정보국	
제136조	국내정보국	154
제137조	정보의 통지	154
제138조	필요한 명세	155
제139조	개인적 유가물의 송부	155
제140조	중앙피보호자정보국	155
제141조	요금의 면제	156
제4편	협약의 실시	
제142조	구호단체와 기타단체	156
제143조	감시	156
제144조	협약의 보급	157
제145조	번역문, 적용법령	157
제146조	형사적 제재	
	Ⅰ. 개관	157
제147조	Ⅱ. 중대한 위반행위	157
제148조	Ⅲ. 체약국의 책임	157
제149조	조사절차	158
제2부	최종규정	
제150조	언어	158
제151조	서명	158
제152조	비준	158
제153조	효력발생	158
제154조	헤이그협약과의 관계	158
제155조	가입	158
제156조	가입통고	159
제157조	즉시발효	159
제158조	탈퇴	159

제159조 등록 159

제 I 부속서

병원, 안전지대 및 안전지구에 관한 협정안 160

제 II 부속서

집단지구호에 관한 규칙안 162

제 III 부속서

역류엽서, 편지 및 통신용 엽서의 모형 164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 I 의정서)

전문

168

제1편 총칙

제1조 일반원칙 및 적용범위 168

제2조 정의 169

제3조 적용의 개시 및 종료 169

제4조 충돌당사국의 법적지위 169

제5조 이익보호국 및 그 대리기관의 지명 169

제6조 자격있는 요원 170

제7조 회의 170

제2편 부상자·병자·난선자

제1장 일반적 보호 171

제8조 정의 171

제9조 적용범위 172

제10조 보호 및 가료 172

제11조 개인의 보호 172

제12조 의무부대의 보호 173

제13조 민간무대의 보호의 정지 173

제14조 민간무대의 징발에 대한 제한 174

제15조 민간무요원 및 종교요원의 보호 174

제16조 의료업무의 일반적 보호 174

제17조 민간주민 및 구호단체의 역할 175

제18조 식별 175

제19조 중립국 및 충돌비당사국 176

제20조 보복의 금지 176

제2장 의무수송

제21조 의무차량 176

제22조 병원선 및 연안구명정 176

제23조 기타의무용 선박 및 주정 177

제24조 의무항공기의 보호 177

제25조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통제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의 의무항공기 177

제26조 접촉지역 또는 그와 유사한 지역내의 의무항공기 177

제27조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지배되는 지역내의 의무항공기 178

제28조 의무항공기 운행제한 178

제29조 의무항공기에 관한 통고 및 합의 178

제30조 의무항공기의 착륙 및 검열 179

제31조 중립국 및 충돌비당사국 180

제3장 실종자 및 사망자

제32조 일반원칙 181

제33조 실종자 181

제34조 사망자의 유해 181

제3편 전투방법 및 수단·전투원 및 전쟁포로의 지위

제1장 전투방법 및 수단

제35조 기본규칙 182

제36조 신무기 182

제37조 배신행위금지 182

제38조 승인된 표장 183

제39조 국제표장 183

제40조 구명 183

제41조 전의를 상실한 적의 보호 183

제42조 항공기탑승자 184

제2장 전투원 및 전쟁포로의 지위

제43조 군대 184

제44조	전투원 및 전쟁포로	184
제45조	적대행위에 가담한 자들의 보호	185
제46조	간첩	186
제47조	응병	186

제4편 민간주민

제1장 적대행위의 영향으로부터의 일반적 보호

제1절	기본규칙 및 적용분야	187
제48조	기본규칙	187
제49조	공격의 정의 및 적용분야	187

제2절 민간인 및 민간주민

제50조	민간인 및 민간주민의 정의	187
제51조	민간주민의 보호	187

제3절 민간물자

제52조	민간물자의 일반적보호	188
제53조	문화재 및 예배장소의 보호	189
제54조	민간주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건의 보호	189
제55조	자연환경의 보호	189
제56조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물의 보호	190

제4절 예방조치

제57조	공격에 있어서의 예방조치	191
제58조	공격의 영향에 대한 예방조치	191

제5절 특별보호의 대상이 되는 지구 및 지대

제59조	무방호지구	192
제60조	비무장지대	192

제6절 민방위

제61조	정의 및 범위	193
제62조	일반적 보호	194
제63조	피점령지역에 있어서의 민방위	194
제64조	중립국 또는 기타 총돌비당사국의 민간민방위단체 및 국제조정 기구	195
제65조	보호의 정지	195
제66조	신분증명 및 식별	196
제67조	민방위단체에 배속된 군대구성원 및 군부대	196

제2장 민간주민을 위한 구호

제68조	적용범위	197
제69조	피점령지역에 있어서의 기본적 필요	197
제70조	구호활동	198
제71조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요원	198

제3장 총돌당사국의 권력내에 있는 개인의 대우

제1절 적용범위 및 개인과 물건의 보호

제72조	적용범위	199
제73조	파난민 및 무국적자	199
제74조	이산가족의 재결합	199
제75조	기본권 보장	199

제2절 여성 및 아동을 위한 조치

제76조	여성의 보호	201
제77조	아동의 보호	201
제78조	아동의 소개	202

제3절 기자

제79조	기자의 보호조치	203
------	----------	-----

제5편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시행

제1장 총칙

제80조	시행을 위한 조치	203
제81조	적십자 및 기타 인도적 단체의 활동	203
제82조	군대내의 법률고문	204
제83조	보급	204
제84조	적용규칙	204

제2장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대한 위반의 억제

제85조	본 의정서에 대한 위반의 억제	204
제86조	부작위	205
제87조	지휘관의 의무	205
제88조	형사문제에 있어서의 상호부조	206
제89조	협조	206
제90조	국제사실조사위원회	206
제91조	책임	208

제6편	최종규정	
제92조	서명	208
제93조	비준	208
제94조	가입	208
제95조	발효	208
제96조	본 의정서 발효이후의 조약관계	208
제97조	개정	209
제98조	제I부속서의 개정	209
제99조	탈퇴	210
제100조	통고	210
제101조	등록	210
제102조	인증등본	210

제 I 부속서 식별에 관한 규정

제1조	일반규정	211
제1장	신분증명서	
제2조	상임민간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용 신분증명서	211
제3조	임시민간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용 신분증명서	212
제2장	식별표장	
제4조	형태 및 성질	214
제5조	사용	214
제3장	식별신호	
제6조	사용	214
제7조	광선신호	215
제8조	무선신호	215
제9조	전자식 식별	216
제4장	통신	
제10조	무선통신	216
제11조	국제약호의 사용	216
제12조	기타 통신수단	216
제13조	비행계획	217
제14조	의무용 항공기의 요격에 관한 신호 및 절차	217
제5장	민방위	
제15조	신분증명서	217

제16조	국제적 식별표장	217
------	----------	-----

제6장 위험한 물리력을 함유하는 사업장 및 시설

제17조	국제적 특별표지	219
------	----------	-----

제 II 부속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기사용 신분증명서	220
------------------------	-----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 II 의정서)**

전문

	224
--	-----

제1편 총칙

제1조	적용의 물적범위	224
제2조	적용의 인적범위	224
제3조	불간섭	225

제2편 인도적 대우

제4조	기본적 보장	225
제5조	자유가 제한된 개인	226
제6조	형사소추	227

제3편 부상자, 병자, 난선자

제7조	보호 및 가료	227
제8조	수색	227
제9조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의 보호	228
제10조	의료업무의 일반적 보호	228
제11조	의무부대 및 수송수단의 보호	228
제12조	식별표장	228

제4편 민간주민

제13조	민간주민의 보호	228
------	----------	-----

제14조	민간주인의 생존에 불가결한 대상물의 보호	229
제15조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는 사업장 및 시설물의 보호	229
제16조	문화재 및 예배장소의 보호	229
제17조	민간인의 강제이동 금지	229
제18조	구호단체 및 구호활동	229

제5편 최종규정

제19조	보급	230
제20조	서명	230
제21조	비준	230
제22조	가입	230
제23조	발효	230
제24조	수정	230
제25조	탈퇴	230
제26조	통고	231
제27조	등록	231
제28조	인증등본	231

제11조	발효	236
제12조	이 의정서 발효이후의 조약관계	236
제13조	개정	237
제14조	탈퇴	237
제15조	통고	237
제16조	등록	237
제17조	인증등본	237

부속서 제Ⅲ의정서 표장

238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추가 식별표장 채택에 관한 추가의정서
(제Ⅲ의정서)**

전문

234

제1조	이 의정서의 존중과 적용범위	234
제2조	식별표장	235
제3조	제Ⅲ의정서 표장의 표시적 사용	235
제4조	국제적십자위원회 및 국제적십자사연맹	235
제5조	국제연합 후원하의 임무	235
제6조	남용의 예방 및 억제	235
제7조	보급	236
제8조	서명	236
제9조	비준	236
제10조	가입	236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Geneva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and Sick
in Armed Forces in the Field, of August 12 1949

[일반사항]

1949년 8월 12일 제네바에서 작성 및 체결
1950년 10월 21일 협약발효

[대한민국 관련사항]

1966년 7월 11일 국회비준 동의
1966년 8월 16일 스위스연방정부에 가입서 기탁
1966년 8월 16일 발효(조약 제211호)
* 선언내용 있음

*대한민국 선언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이 협약에의 가입은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승인하지 아니한 여하한 본 협약의 당사자를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이에 선언한다.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구호를 위한 1929년 7월 27일의 제네바협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1949년 4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한 외교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정부의 하기 서명 전권위원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협약의 존중

체약국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본 협약을 존중할 것과 본 협약의 존중을 보장할 것을 약정한다.

제 2 조 협약의 적용

본 협약은 평시에 실시될 규정외에도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선언된 전쟁 또는 기타 무력충돌의 모든 경우에 대하여 당해 체약국의 하나가 전쟁상태를 승인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본 협약은 또한 일 체약국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점령된 모든 경우에 대하여 비록 그러한 점령이 무력저항을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용된다.

충돌당사국의 하나가 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경우에도 본 협약의 당사국은 그들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본 협약의 구속을 받는다. 또한 체약국은 본 협약 당사국이 아닌 충돌당사국이 본 협약의 규정을 수락하고 적용할 때에는 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 협약의 구속을 받는다.

제 3 조 국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충돌

일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성격을 띠지 아니한 무력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충돌의 각 당사국은 적어도 다음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1. 무기를 버린 전투원 및 질병, 부상, 억류, 기타의 사유로 전투력을 상실한 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종, 색, 종교 또는 신앙, 성별, 문별이나 빈부 또는 기타의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불리한 차별 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기의 자에 대한 다음의 행위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를 금지한다.

- 가.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
- 나. 인질로 잡는 일
- 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

라. 문명국인이 불가결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법적보장을 부여하고 정상적으로 구성된 법원이 행하는 사건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는 판결의 인도 및 형의 집행

2. 부상자 및 병자는 수용하여 간호하여야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공정한 인도적 단체는 그 용역을 충돌당사국에 제공할 수 있다. 충돌당사국은 특별한 협정에 의하여 본 협약의 다른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전기의 규정의 적용은 충돌당사국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4 조 중립국에 의한 본협약의 적용

중립국은 그 영토내에 접수 또는 억류된 충돌당사국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의무요원과 종교요원 및 발견된 사망자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 5 조 협약의 적용기간

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로서 적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자에 대하여서 본 협약은 그들의 송환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적용된다.

제 6 조 특별협정

계약국은 제10조, 제15조, 제23조, 제28조, 제31조, 제36조, 제37조 및 제52조에서 명문으로 규정된 협정 외에 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다른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어떠한 특별협정도 본 협약에서 정하는 부상자, 병자,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의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본 협약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상자, 병자,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은 본 협약이 그들에게 적용되는 한 전기의 협정의 혜택을 계속 향유한다. 단, 전기의 협정 또는 추후의 협정에 반대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충돌당사국의 일방 또는 타방이 그들에 대하여 더 유리한 조치를 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7 조 권리의 불포기

부상자, 병자,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협약 및 전조에서 말한 특별협정(그러한 협정이 존재할 경우)에 의하여 그들에게 보장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없다.

제 8 조 이익보호국

본 협약은 충돌당사국의 이익의 보호를 그 임무로 하는 이익보호국의 협력에 의하여, 또한 그 보호하에 적용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이익보호국은 자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을 제외한 자국민이나 다른 중립국 국민중에서 대표단을 임명할 수 있다. 전기의 대표는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충돌당사국은 이익보호국의 대표 또는 사절단의 활동에 있어서 가능한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익보호국의 대표 또는 사절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협약에 의한 그들의 임무를 초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들은 특히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의 안전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들의 활동은 군사상의 긴급한 필요로 인하여 필요하게 될 때에 한하여 예외적인 또한 임시적인 조치로서 제한하여야 한다.

제 9 조 국제적십자위원회 활동

본 협약의 제규정은,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기타의 공정한 인도적인 단체가 관계 충돌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부상자, 병자,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의 보호 및 그들의 구호를 위하여 행하는 인도적인 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이익보호국의 대리

체약국은 공정 및 효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단체에 대하여 본 협약에 따라 이익보호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언제든지 위임할 것에 동의할 수 있다.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부상자, 병자,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이 이익보호국 또는 전향에 규정한 단체의 활동에 의한 혜택을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혜택을 받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억류국은 충돌당사국이 지정한 이익보호국이 본 협약에 따라 행하는 임무를 중립국 또는 전기의 단체에 인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보호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할 때에는 억류국은 이익보호국이 본 협약에 의하여 행하는 인도적 업무를 인수하도록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인도적 단체의 용역의 제공을, 본 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요청하고 또는 수락하여야 한다.

어떠한 중립국이거나 또는 여사한 목적을 위하여 관계국의 요청을 받았든가 또는 자원하는 어떠한 단체라도 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가 의존하는 충돌당사국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함을 요하며 또한 그가 적절한 업무를 인수하여 공정하게 이를 수행할 입장에 있다는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군사상의 사건으로, 특히 그 영역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점령되므로 인하여 그 일국이 일시적이거나 타방국 또는 그 동맹국과 교섭할 자유를 제한당하는 경우 국가간의 특별협정으로서 전기의 규정을 침해할 수 없다.

본 협약에서 이익보호국이라 언급될때 그러한 언급은 언제든지 본 조에서 의미하는 대응 단체에도 적용된다.

제 11 조 조정절차

이익보호국이 보호를 받는자를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히 본 협약의 규정의 적용 또는 해석에 관하여 충돌당사국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이익보호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선을 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이익보호국은 일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진하여 충돌당사국에 대하여 그들의 대표들의, 특히 부상자, 병자,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당국의

회합을 가능하면 적절히 선정된 중립지역에서 열도록 제의할 수 있다. 충돌당사국은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행하여지는 제의를 실행할 의무를 진다. 이익보호국은 필요할 경우에는 충돌당사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중립국에 속하는, 또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위임을 받는 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는 전기의 회합에 참석하도록 초청되어야 한다.

제 2 장 부상자 및 병자

제 12 조 보호 및 간호

다음의 조항에서 말하는 군대의 구성원과 기타의 자로서 부상자 또는 병자인 자는 모든 경우에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을 그 권력속에 두고 있을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정견 또는 기타의 유사한 기준에 근거를 둔 차별 없이 인도적으로 대우 또한 간호되어야 한다. 그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 또는 그들의 신체에 대한 폭행은 엄중히 금지한다. 특히 그들은 살해되고 몰살되거나 고문 또는 생물학적 실험을 받도록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들은 고의로 치료나 간호를 제공받음이 없이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전염이나 감염에 그들을 노출하는 상태도 조성되어서는 아니된다.

치료의 순서에 있어서의 우선권은 긴급한 의료상의 이유로서만 허용된다.

부녀자는 여성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모든 고려로서 대우되어야 한다.

충돌당사국은 부상자 또는 병자를 부득이하게 적측에 유기할 경우에는 군사상의 고려가 허용하는 한 그들의 간호를 돕기 위한 의무요원과 자재의 일부를 그들과 함께 잔류시켜야 한다.

제 13 조 보호되는 자

본 협약은 부상자 및 병자로서 다음의 부류에 속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1. 충돌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 및 그러한 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민병대 또는 의용대의 구성원
2. 충돌당사국에 속하며 또한 그들 자신의 영토(동 영토가 점령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의 내외에서 활동하는 기타의 민병대의 구성원 및 기타의 의용대의 구성원(이에는 조직적인 저항운동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단, 그러한 조직적 저항운동을 포함하는 그러한 민병대 또는 의용대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가. 그 부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 나. 멀리서 인식할 수 있는 고정된 식별 표지를 가질 것.
 - 다.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
 - 라. 전쟁에 관한 법규 및 관행에 따라 그들의 작전을 행할 것.
3. 억류국이 승인하지 아니하는 정부 또는 당국에 충성을 서약한 정규 군대의 구성원
4. 실제로 군대의 구성원은 아니나 군대에 수행하는 자, 즉, 군용기의 민간인 승무원, 종군 기자, 납품업자, 노무대원 또는 군대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대의 구성원. 단, 이들은 이들

- 이 수행하는 군대로부터 인가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선장, 수로안내인 및 견습선원을 포함하는 충돌당사국의 상선의 승무원 및 민간 항공기의 승무원으로서 국제법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서도 더 유리한 대우의 혜택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자
 6. 점령되어 있지 아니하는 영토의 주민으로써 적이 접근하여 올때 정규군대에 편입할 시간이 없이 침입하는 군대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기를 든 자. 단, 이들이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하고 또한 전쟁법규 및 관행을 존중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14 조 신분

제12조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적의 수중에 들어가는 교전국의 부상자 및 병자는 포로가 되며, 그들에게는 포로에 관한 국제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15 조 사상자의 수색 및 수용

충돌당사국은 항상, 특히 매 교전후에 부상자 및 병자를 찾아 수용하고 그들을 약탈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며 그들에 대한 충분한 간호를 보장하고 또한 사망자를 찾아 그들이 약탈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여야 한다.

충돌당사국은 사정이 허용하는 한 전장에 남아 있는 부상자의 수용, 교환 및 이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휴전이나 발포정지를 약정하든가 현지 협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점령 또는 포위된 지역으로 부터의 부상자 및 병자의 수용과 교환 또는 동 지역으로 갈 의무요원, 군목 및 장비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충돌당사국 상호간에 현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16 조 기록 및 정보의 송부

충돌당사국은 그들의 수중에 들어오는 적측의 부상자, 병자 및 사망자에 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한 자의 신원판별에 도움이 될 어떠한 세부사항이라도 기록하여야 한다. 이들 기록은 가능하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그가 의존하는 국가의 표시,
- 나. 소속부대명 및 군번,
- 다. 성씨,
- 라. 이름,
- 마. 생년월일,
- 바. 신분증명서 또는 표지에 표시된 기타의 상세,
- 사. 포로가 된 일자 및 장소 또는 사망 일자 및 장소,
- 아.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원인에 관한 상세.

전술한 자료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122조에 기술한 정보국에 가능한 한 조속히 송부되어야 하며, 동 정보국은 이익보호국 및 중앙포로기구를 중개로 하여 이들이 의존하는 국가에 이 자료를 전달하여야 한다.

충돌당사국은 사망증명서 또는 정당하게 인준된 사망자 명부를 작성하여 동 정보국을 통

하여 상호 송부하여야 한다. 충돌당사국은 사망자에게서 발견된 이증 신분표지의 반, 근친자에 대한 유서나 기타의 중요한 서류, 금전 및 일반적으로 고유의 가치 또는 정서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물품을 동일하게 수집하여 동 정보국을 통하여 상호 송부하여야 한다. 이들 물품은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함께 밀봉된 봉지로 송부되어야 하며, 이에는 사망한 소유자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모든 상세를 기재한 서류와 동 봉치의 내용을 완전히 표시하는 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17 조 사망자에 관한 규정. 분묘등록기관

충돌당사국은, 사망을 확인하고 신원을 확실히 하며 또한 보고서의 작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사장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으로 실시될 사망자의 매장이나 화장이 시체의 면밀한 검사, 가능하면 의학적 검사가 있는 다음에 행하여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증 신분표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 표지의 반은 시체에 남겨두어야 한다.

시체는 위생상 절대로 필요한 경우 및 사망자의 종교상 이유를 제외하고는 화장을 하여서는 안된다. 화장을 하였을 때는 사망증명서 또는 인증된 사망자 명부에 화장의 사정과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충돌당사국은 또한 사망자를 가능한 한 이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의식에 따라서 정중히 매장하고 동 사망자의 묘소를 존중할 것이며 가능하면 사망자의 묘지를 국적별로 구분하며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적절히 유지하고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목적으로, 충돌당사국은 전쟁 개시에 제하여 공식 분묘등록소를 설치함으로써 매장후의 발굴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분묘의 위치 여하를 불문하고 시체의 식별 및 경우에 따라 본국으로의 이송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본국의 희망에 따라 적절한 처리될 때까지 분묘등록소가 보관하여야 할 유골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한다.

사장이 허락하는 즉시 그리고 늦어도 전쟁종료시까지 각 분묘등록소는 제16조 제2항에서 말한 포로정보국을 통하여 분묘의 정확한 위치와 표지 및 그곳에 매장되어 있는 사망자에 관한 상세를 교환하여야 한다.

제 18 조 주민의 역할

군당국은 주민에 대하여 그의 지시하에 자발적으로 부상자 및 병자를 수용하고 또한 간호해주는 자선을 호소할 수 있다. 군 당국은 이 요청에 응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 및 편의를 부여한다. 적국이 그 지역을 점령하거나 또는 탈환하게 될 때에도 그 적국은 이러한 주민에게 동일한 보호와 편의를 부여하여야 한다.

군당국은 침공 또는 점령한 지역에 있어서도 주민과 구호단체에 대하여 국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발적으로 부상자 또는 병자를 수용, 간호하는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 민간인은 이들 부상자 및 병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하한 자도 부상자 또는 병자를 간호하였다는 이유로 박해 또는 유죄선고를 받을 수 없다.

본 조의 규정은 점령국에 대하여 부상자 및 병자에 대한 위생상 또는 정신상의 간호를 부여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의무부대 및 의무시설

제 19 조 보호

충돌당사국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의무기관의 고정시설이나 이동 의무부대를 공격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이들이 적국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 점령국은 이러한 시설 및 부대에 있는 부상자 및 병자에 대하여 필요한 간호를 스스로 보장하지 못하는 한, 이들 시설 및 부대의 요원은 자유로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 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 전기의 의무시설 및 의무부대를 군사목표에 대한 공격에 의하여 그 안전이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배치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20 조 병원선의 보호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부여받은 병원선은 육상으로부터 공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21 조 의무시설 및 의무부대의 보호의 소멸

의무기관의 고정 시설 및 이동 의무부대가 향유할 수 있는 보호는 그들 시설 및 부대가 인도적 임무로부터 이탈하여 적에게 유해한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사용된 조치를 제외하고는 동 보호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단, 이 보호는 모든 적당한 경우에 합리적인 기한을 정한 경고가 있고 또한 그 경고가 무시된 후가 아니면 소멸되는 일이 없다.

제 22 조 의무부대 및 의무시설로부터 보호를 박탈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다음의 사실로 인하여, 의무부대 또는 의무시설이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받은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부대 또는 시설의 요원이 무장하고 또한 자위 또는 그들의 책임하에 있는 부상자 및 병자의 방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는 것.
2. 무장한 위생병이 없기 때문에 감시병, 보초 또는 호위병이 부대 또는 시설을 보호하는 것.
3. 부상자 및 병자로부터 받아 둔 소 무기 및 탄약으로서 아직 적당한 기관에 인도되지 않은 채로 부대 또는 시설내에서 발견되는 것.
4. 수의 기관의 요원 및 자재가 부대 또는 시설의 불가분의 일부분을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5. 의무부대 및 시설 또는 이들의 요원이 민간인 부상자 및 병자의 간호를 위하여 행한 인도적인 활동.

제 23 조 병원지대 및 병원지구

평시에 있어서의 체약국 및 적대행위의 개시 이후의 충돌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점령지역내에 부상자 및 병자를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병원지대 및 지구를 설정하고 또한 동 지대 및 지구의 조직과 관리 및 그곳에 수용되는 자의 간호를 책임 맡을 요원을 정할 수 있다.

적대행위가 발발하였을 때 및 적대행위가 계속중일때 관계당사국은 그들이 설정할 병원 지대 및 지구의 상호 승인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관계당사국은 필요하다 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가하여서 본 협약에 부속하는 협정안의 조항을 시행할 수 있다.

이익보호국 및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지대 및 지구의 설치 및 승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중개를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4 장 보호받는 인원

제 24 조 군대의 전임요원의 보호

부상자 또는 병자의 수색, 수용, 수송이나 치료 또는 질병의 예방에만 전적으로 종사하는 요원, 의무부대 및 시설의 관리에만 전적으로 종사하는 직원 및 군대에 수반하는 중요요원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제 25 조 군대의 보조의무요원의 보호

부상자 및 병자의 수용, 수송 또는 치료를 필요한 경우에, 담당할 병원당직, 간호사 또는 보조 들것 운반병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히 훈련받은 군대 구성원도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할 경우 적과 접촉하고 있는 때나 또는 적의 수중에 들어가 있을 때에 역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제 26 조 각국 적십자사 및 승인된 기타 구호단체의 직원의 보호

각국 적십자사의 직원 및 본국 정부가 정당히 인정된 독지 구호단체의 직원으로서 제24조에 열거한 요원과 동일한 임무에 임하는 자는 동 조에 열거한 요원과 동일한 지위에 놓인다. 단, 이들 단체의 직원은 군관계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각 체약국은 평시에 있어서나, 적대행위의 개시 또는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 그들 단체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 앞서, 자국군의 정규 의무기관에 원조할 것을 자국의 책임하에 인정한 단체의 명칭을 타방 체약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 27 조 중립국 단체의 직원

중립국의 승인된 단체는 미리 자국정부의 동의 및 관계당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위생요원 및 위생부대에 의한 원조를 충돌당사국에 부여할 수가 있다. 그들 요원 및 부대는 당해 충돌당사국의 관리하에 둔다.

중립국 정부는 그와 같은 원조를 받는 국가의 적국에 전기의 동의를 통고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원조는 충돌에의 개입이라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에 기술한 요원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속하는 중립국을 떠나기 전에 제40조에 정하는 신원증명서를 정식으로 주어야 한다.

제 28 조 억류된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

제24조 및 제26조에 지정된 요원으로서 적국의 수중에 들어간 자는 포로의 건강상태, 종교상의 요구 및 포로의 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어서 억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이 하여 억류된 요원은 포로라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그들 요원은 적어도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의 모든 규정에 의한 이익을 향유한다. 그들 요원은 억류국의 군법의 범위내에서 억류국의 권한 있는 기관의 관리하에 그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포로, 특히 자기가 소속하는 군대의 포로에 대한 의료상 및 종교상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그들 요원은 또한 그 의료상 또는 종교상의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편의를 향유하여야 한다.

1. 그들 요원은 수용소 밖에 있는 노동 분견대 또는 병원에 있는 포로를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 억류국은 그들 요원에 대하여 필요한 수송수단을 자유로이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각 수용소에 있어서는 선임군의관인 위생요원은 억류되고 있는 위생요원의 직업적 활동에 관하여 수용소의 군당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충돌당사국은 적대행위 개시 시부터 자국의 위생요원(제26조에 지정하는 단체의 위생요원을 포함함)의 상호간에 상당하는 계급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이 선임군의관 및 종교요원은 그 임무로부터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수용소의 군당국 및 의료당국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당국은 그러한 문제에 관한 통신을 위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수용소 내에 억류된 요원은 수용소의 내부의 기술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나 그들에게 의료상 또는 종교상의 임무 이외의 노동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충돌당사국은 적대행위의 계속중에 억류된 요원을 가능한 경우에 교체하기 위한 조정을 행하고 그 교체의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전기의 규정은 억류국에 대하여 포로의 의료상 및 종교상의 복지에 관하여 억류국에 과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 29 조 보조요원의 신분

제25조에서 말하는 요원으로서 적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자는 포로가 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상의 임무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30 조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의 귀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억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요원은 그 귀로가 열리고 또한 군사상의 요건이 허용하는 때에는 즉시 그들 요원이 속하는 충돌당사국에 귀환시켜야 한다.

그들 요원은 귀환할 때까지의 사이에 포로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그들 요원은 적어도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의 모든 규정에 의한 혜택을 향유한다. 그들 요원은 적국의 명령하에 자기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또한 가능한 한 자기가 속하는 충돌당사국의 부상자 및 병자의 간호에 종사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들 요원은 출발에 제하여 그 소유에 속하는 개인용품, 유가물 및 기구를 휴대할 수 있어

야 한다.

제 31 조 귀환요원의 선정

제30조에 따라서 귀환되는 요원의 선정은 그 인종, 종교 또는 정견의 여하를 불문하고 가능한 한 그들 요원이 포로가 된 순서 및 그들 요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

총돌당사국은 적대행위의 개시시로부터 특별협정에 의하여 포로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억류하여야 할 정도 및 수용소에 있어서의 그들 요원의 배치를 정할 수가 있다.

제 32 조 중립국 소속 요원의 귀환

제27조에서 말하는 자로서 적국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자는 억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반대의 합의가 없는 한 그들은 그 귀로가 열리고 또한 군사상의 고려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즉시 자국에 귀환할 것이 허용되어야 하며, 자국에의 귀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들이 근무한 기관이 속하는 총돌당사국의 영역에 귀환함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들은 해방될 때까지 적국의 지휘하에서 계속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들은 가능한 한 그들이 근무한 기관이 속하는 총돌당사국의 부상자 및 병자의 간호에 종사하여야 한다. 그들은 출발할 때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개인용품, 유가물, 기구, 무기 그리고 가능한하면 차량도 휴대할 수 있어야 한다.

총돌당사국은 그들 요원이 그 권력하에 있는 동안 그들 요원에게 상응하는 자국 군대의 요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과 동량의 식량, 숙소, 수당 및 급여를 그들 요원을 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식량은 여하한 경우에도 그 양 및 종류에 있어서 그들 요원이 통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함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제 5 장 건물 및 자재

제 33 조 의무기관의 건물 및 자재

적의 권력하에 들어간 군대의 이동 위생부대의 자재는 부상자 및 병자의 간호를 위하여 분류된다.

군대의 고정 위생시설의 건물, 자재 및 저장품은 계속 전쟁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단, 그들 건물, 자재 및 저장품은 부상자 및 병자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한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전장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은 긴급한 군사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전기의 시설내에서 간호를 받는 부상자 및 병자의 복지를 위하여 미리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들 건물, 자재 및 저장품을 사용할 수가 있다.

본 조에 말하는 자재 및 저장품은 고의로 파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4 조 구호단체의 재산

이 협약에 의한 특권이 인정되는 구호단체의 부동산 및 동산은 사유 재산으로 간주한다.

전쟁법규 및 관례에 의하여 교전국에 인정되는 징발권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부상자 및 병자의 복지가 확보되었을 때를 제외하고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 장 의료수송

제 35 조 보호

부상자 및 병자 또는 위생재료의 수송수단은 이동위생부대의 경우와 같이 존중 보호하여야 한다.

그들 수송수단 또는 차량이 적대당사국의 권력하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들을 포획한 충돌당사국이 그 속에 있는 부상자 및 병자의 간호를 모든 경우에 있어서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전쟁법규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징발에 의하여 얻은 민간요원 및 모든 수송수단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제 36 조 의무항공기

교전국은 위생항공기 즉 부상자 및 병자의 수용 및 위생요원 및 재료의 수송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가 관계교전국간에 특별히 합의된 고도, 시각 및 횡로에 따라서 비행하고 있는 중에는 공격하여서는 안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위생항공기는 그 하면, 상면 및 측면에 제38조에서 정하는 특수포장을 자국의 국기와 함께 명백히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생항공기는 적대행위의 개시 또는 진행중에 교전국간에 합의된 다른 표지 또는 식별 수단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적의 영역 또는 점령지역 상공의 비행은 금지한다.

위생항공기는 모든 착륙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은 강제착륙의 경우에 항공기는 그 탑승자와 함께 검열이 있다면 그것을 받은 후 비행을 계속할 수가 있다.

위생항공기의 승무원은 물론 부상자 및 병자도 적의 영역 또는 점령지 역내에 불시착하였을 경우에는 포로가 된다. 위생요원은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서 대우를 받는다.

제 37 조 중립국영역 상공의 비행

충돌당사국의 위생항공기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중립국 영역의 상공을 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영역에 착륙하여 또는 그 영역을 기항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들 위생항공기는 당해 영역 상공의 통과를 중립국에 사전 통고하고 또한 착륙 또는 착수의 모든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들 위생항공기는 충돌당사국과 관계 중립국간에 특별히 합의된 항로, 고도 및 시각에 따라서 비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격을 면한다.

특히 중립국은 위생항공기가 자국 영역의 통과 또는 착륙에 관하여 조건 또는 제한을 과할 수 있다. 그 조건 또는 제한은 모든 충돌당사국에 대하여 평등히 적용되어야 한다.

중립국과 충돌당사국과의 간에 반대의 합의가 없는 한 현지 당국의 동의를 얻어 위생항공기가 중립지역에 내려놓는 부상자 및 병자는 국제법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사행동에 다시 참가할 수 없도록 중립국이 억류하여야 한다. 그들의 입원 및 수송을 위한 비용은 그들이 속하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7 장 식별표장

제 38 조 본 협약의 표장

스위스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스위스 연방의 국기를 반대로 작성한 흰 바탕의 적십자 문장을 군대의 위생기관의 표장 및 특수기장으로 계속 사용토록 한다.

특히 적십자 대신에 흰 바탕에 붉은 초생달 또는 붉은 사자와 태양을 표장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이러한 표장은 이 협약상 동일하게 인정된다.

제 39 조 표장의 사용

관할 군당국의 지시에 따라 의무기관이 사용하는 기, 완장 및 모든 장비에는 흰 바탕의 적십자 문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40 조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의 식별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요원은 군당국이 압인 발급한 특수 표장이 된 방수성의 완장을 좌완에 돌려야 한다.

이러한 요원은 제16조에 규정하는 신분 표지에 부가하여 식별 표장이 표시된 특별한 신분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는 방수성이며, 또한 호주머니에 들어갈만한 크기의 것 이어야 한다. 이 증명서는 자국어로 기입되어야 하며, 적어도 소지자의 성명, 생년월일, 계급 및 군번이 표시되고 또한 소지자가 어떤 자격으로 본 협약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 증명서에는 또한 소지자의 사진, 서명이나 지문 또는 그 양자가 첨부되어야 하며, 군당국의 인장을 압인하여야 한다.

본 신분증명서는 동일국의 전군을 통하여 동일 규격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계약국의 군대에 대하여 유사한 규격이어야 한다. 충돌당사국은 본 협약의 부록에 예시된 양식에 따를 수 있다. 충돌당사국은 적대행위의 개시전에 각국이 사용하는 신분증명서의 양식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신분증명서는 가능하면, 적어도 2매를 작성하여 그 1매는 본국이 보관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의 요원은 그들의 계급장 또는 신분증명서, 완장을 두를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들은 신분증명서 또는 계급장을 분실하는 경우 신분증명서의 부분을 재교부받거나 계급장을 재수령할 권리를 가진다.

제 41 조 보조요원의 식별

제25조에서 지정하는 요원은 의무상의 임무수행중에 한하여 가운데 자기마한 식별기장을 표시한 백색의 완장을 둘러야 한다. 그 완장은 군당국이 압인 발급하여야 한다.

그들 요원이 휴대할 군의 신분증명서류에는 그들 요원이 받은 특수 훈련의 내용, 그들 요원이 종사하는 임무의 일시적인 성격 및 완장 패용권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 42 조 의무부대 및 의무시설의 표지

본 협약에서 정하는 식별기는 본 협약에 의하여 존중되는 권리를 가지는 의무부대 및 의무시설로서 군당국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하여 게양하여야 한다.

이동부대는 고정시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들 부대 또는 시설이 속하는 충돌당사국의 국기를 전기의 국기와 더불어 게양할 수 있다.

특히 적의 수중에 들어간 의무부대는 이 협약에서 정하는 기 이외의 기를 게양하여서는 안된다.

충돌당사국은 군사상의 고려가 허용하는 한, 의무부대 또는 의무시설에 대한 공격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의 지상군, 공군 또는 해군이 식별 표장을 명백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3 조 중립국 의무부대의 표지

제27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일 교전국에 용역을 제공하도록 된 중립국의 의무부대는 그 교전국이 제42조에 따라서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시에는 언제나 그 교전국의 국기를 이 협약에서 정하는 기와 더불어 게양하여야 한다.

이들 의무부대는 책임 있는 군당국의 반대의 명령이 없는 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비록 적국의 수중에 들어간 경우라 하더라도 자국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 44 조 표장의 사용제한. 그 예외

본조의 다음항에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백지에 적십자의 표장 및 “적십자” 또는 “제네바 십자”라는 말은 평시이건 전시이건을 불문하고 이 협약 및 이 협약과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협약에 따라서 보호되는 위생부대, 위생시설, 요원 및 재료를 표시하고 또는 보호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면 사용하지해서는 아니된다. 제38조 제2항에 제기하는 표장에 관하여도 그것들을 사용하는 국가에 대하여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제적십자사 및 제26조에 제기하는 기타의 단체는 이 협약의 보호를 주는 특수표장을 본항의 범위내에서만 사용하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각국 적십자사(적신월사 또는 적사자와 태양사)는 평시에 있어서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적십자국제회의가 정하는 원칙에 적합하는 자기의 기타의 활동을 위하여 적십자의 명칭 및 표장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 활동이 전시에 있어서 행하여졌을 때에는 표장은 그 사용에 따라 이 협약의 보호가 부여된다고 인정될 우려가 없을 조건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즉, 이 표장은 비교적 소형의 것이어야 하며 또한 완장 또는 건물의 지붕에 달아 놓아서는 안된다.

적십자국제기관 및 정당히 권한이 부여된 직원은 언제든지 백지에 적십자의 표장을 사용

할 것이 허용된다.

예외적 조치로서 이 협약에서 정하는 표장은 국내법령에 따라 또한 국제 적십자사(적신월 사 또는 적사자와 태양사)의 어느 하나로부터 명시적 허가를 받고 구급차로서 사용되는 차량을 식별하기 위하여 또한 부상자 및 병자에 무상으로 치료를 행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충당되는 구호소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평시에 있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제 8 장 협약의 실시

제 45 조 세부실시. 예견되지 않는 사건

각 충돌당사국은 그 총사령관을 통하여 본 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르는 전 각조의 세부 시행령을 마련하고 예견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 46 조 보복의 금지

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상자, 병자, 요원, 건물 또는 장비에 대한 보복을 금지한다.

제 47 조 협약의 보급

체약국은 전, 평시를 막론하고 본 협약 전문을 가급적 광범위하게 자국내에 보급시킬 것이며 특히 군 교육계획, 가능하면 민간교육계획에도 본 협약에 관한 학습을 포함시킴으로써 본 협약의 원칙을 전 국민, 특히 군인,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에게 습득시킬 것을 약정한다.

제 48 조 번역문. 적용법령

체약국은 스위스 연방정부를 통하여, 또한 전시중에는 이익보호국을 통하여 본 협약의 공식번역문과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한 제법령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장 남용과 위반의 방지

제 49 조 형사적 제재 : I. 개관

체약국은 본 협약에 대하여 다음 조에 정의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할 것을 명령한 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약정한다.

각 체약국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범하였거나 범할 것을 명령한 혐의가 있는 자를 수사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자는 국적 여부를 불문하고 자국의 재판소에 기소되어야 한다. 또한 각 체약국은 희망하는 경우 또한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자를 다른 관계 체약국에서 재판을 받도록 인도할 수 있다. 단, 관계체약국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일단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각 계약국은 다음 조에 규정된 중대한 위반 행위외에 본 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105조 이하에 정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정당한 재판과 변호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 50 조 II. 중대한 위반행위

전조에서 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란 본 협약이 보호하는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 고의적인 살인, 신체 또는 건강을 고의로 크게 해치거나 고통을 주는 고문이나 대우(생물학적 실험을 포함) 또는 군사상의 필요로서 정당화되지 아니하며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재산의 광범위한 파괴 또는 몰수.

제 51 조 III. 계약국의 책임

계약국은 전조에서 말한 위반 행위에 관하여 자국이 저야할 책임을 벗어나거나 또는 타방 계약국으로 하여금 동국이 저야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2 조 조사절차

충돌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 협약에 대한 위반 혐의에 관하여 관계국가간에 결정되는 방법으로 심문하여야 한다.

심문절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국은 그 절차를 결정할 심판관의 선임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충돌당사국은 지체없이 위반행위를 종식시키거나 억제하여야 한다.

제 53 조 표장의 남용

공사를 불문하고 개인, 단체, 상사 또는 회사에서 본 협약에 의하여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자가 “적십자” 또는 “제네바 십자”의 표장, 명칭 또는 그것을 모방한 기장이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의 목적 및 채택의 일자 여하를 불문하고 항상 금지한다.

스위스 연방의 국기의 배색을 진도하여 작성한 문장의 채용에 의하여 동국에 대하여 주어지는 경의와 더불어 스위스의 문장 및 본 협약의 특수 표장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고려하여 상표이건 또는 그 일부이건을 불문하고 상업상의 도덕에 반대되는 목적이며 또는 스위스인의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 단체 또는 상사가 스위스 연방의 문장 또는 이것을 모방한 기장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특히 본 협약의 계약국으로 1929년 7월 27일의 제네바협약의 계약국이 아니었던 국가는 제1항에 제기하는 표장, 명칭 또는 기장을 이미 사용하지 않고 있는자에 대하여 그 사용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본 협약의 효력 발생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유예기간을 줄 수가 있다. 단, 그 사용이 전시에 있어서 본 협약의 보호가 부여될 것으로 인정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에 한하지 아니 한다.

본조 제1항에 정하는 금지는 제38조 제2항에 제기하는 표장 및 기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단, 종전부터의 사용에 의하여 취득되어 있는 권리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제 54 조 남용의 방지

체약국은 자국의 법령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제53조에 제기하는 남용을 미리 방지하며 또한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최종규정

제 55 조 언어

본 협약은 영어와 불어로 작성되며 양자 공히 정본이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본 협약이 노어와 스페인어로 공식 번역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56 조 서명

오늘날자의 본 협약은 1949년 4월 21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국가와, 동회의에 대표는 파견하지 않았으나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864년, 1906년, 1929년의 제네바협약의 체약국에 대하여 1950년 2월 12일까지 그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 57 조 비준

본 협약은 가급적 조속히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베른에 기탁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각 비준서의 기탁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며 그 기록의 인증등본을 본 협약 서명국과 가입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 58 조 효력의 발생

본 협약은 2개 이상의 비준서가 기탁된 6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 이후 본 협약은 각 체약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59 조 종전협약과의 관계

본 협약은 체약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1864년 8월 22일, 1906년 7월 6일 및 1929년 7월 27일 제네바협약을 대치한다.

제 60 조 가입

본 협약은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본 협약에 서명하지 않는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 61 조 가입통고

본 협약에의 가입은 스위스 연방정부에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그 공문이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후에 발효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가입사실을 본 협약 서명국과 가입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 62 조 즉시발효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된 경우는 전쟁 또는 점령의 개시전후에 충돌당사국이 행한 비준 또는 가입을 즉시 발효시킨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충돌당사국으로부터 접수된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제 63 조 탈퇴

각 계약국은 본 협약에서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서면으로 스위스 연방정부에 통고하여야 하며 스위스 연방정부는 그 통고를 모든 계약국 정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탈퇴는 스위스 연방정부에 통고한 일년 후에 발효한다. 단, 탈퇴국이 탈퇴를 통고할 당시에 전쟁에 개입하고 있을 경우에는 강화조약 체결시까지, 또한 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의 석방과 송환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발효하지 아니한다.

탈퇴는 탈퇴하는 국가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탈퇴는 문명인간에 확립된 관행, 인도의 법칙, 대중적 양심에 기인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충돌당사국이 계속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해하여서는 안된다.

제 64 조 국제연합에의 등록

스위스 연방정부는 본 협약을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또한 본 협약에 관하여 동 정부가 접수하는 모든 비준, 가입 및 탈퇴를 국제연합 사무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인은 각자의 전권위임장을 기탁하고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49년 8월 12일 제네바에서 영어와 불어로 작성하였다. 원본은 스위스 연방 문서보관소에 기탁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그 인증등본을 각 서명국 및 가입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I 부속서

병원지대 및 병원지구에 관한 협정안

- 제 1 조**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23조에 계기하는 자와 병원지대 및 병원지구의 조직 및 관리와 더불어 그중에 수용되는 자의 간호의 책임을 부담하는 요원을 위하여 병원지대는 반드시 확보하여 놓아야 한다. 특히 병원지대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지대에 머무를 권리가 있다.
- 제 2 조** 자격의 여하를 불문하고 병원지대에 거주하는 자는 그 지대내에 있어서나 그 지대외에 있어서도 군사행동 또는 군수품의 생산에 직접으로 관련하는 작업을 행해서는 아니된다.
- 제 3 조** 병원지대를 설정하는 국가는 그 지대에 거주 또는 출입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 자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4 조** 병원지대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킬수 있어야 한다.
 가. 그 지대가 그 지대를 설정한 국가에 의하여 지배되는 지역의 일 소부분일것.
 나. 그 지대의 주민이 그 지대의 수용능력에 의하여 소수일 것.
 다. 그 지대가 모든 군사목표 또는 중요한 산업상 모든 행정상의 시설로부터 원거리에 있으며 또한 그것들을 가지지 않을 것.
 라. 그 지대의 위치가 전쟁수행상 중요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 아닐것.
- 제 5 조** 병원지대는 다음의 의무를 조건으로 한다.
 가. 병원지대에 속하는 통신선 및 수송수단은 통과와 경우에도 군사상의 인원 및 자재의 수송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병원지대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군사적 수단에 의하여 방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6 조** 병원지대는 그 주위 및 건물상에 백지에 적십자(적신월 또는 적사자 및 태양)의 표장을 붙여서 표기하여야 한다. 그 지대는 야간에 적당한 조명에 의하여 동일하게 표시할 수가 있다.
- 제 7 조** 각국은 평시에 있어서, 또는 적대행위의 개시시 자국이 지배하는 지역에 있는 병원지대에 관하여 모든 계약국에 통고를 하여야 한다.
 병원지대는 적국이 전기의 통고를 수령할시에 정식으로 성립된다.
 특히, 적국은 본 협정의 조건이 만족치 못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병원지대에 대하여 책임있는 당사국에 즉시로 거부와 통고를 함으로써 그 병원지대의 승인을 거부하며 또는 그 병원지대를 승인할 것인가 아닌가의 결정을 제8조에서 정하는 감독기관에 맡길 수가 있다.
- 제 8 조** 적국이 설정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병원지대를 승인한 국가는 그 병원지대가 본 협약에서

정하는 조건 및 의무를 완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또는 2 이상의 특별위원회에 병원지대의 감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언제든지 모든 병원지대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으며 또한 그곳에 항구적으로 거주할 수가 있다. 그들 위원은 감독의 임무를 행하기 위하여 모든 편의를 받는다.

제 9 조 특별위원회는 본 협정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로 그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병원지대를 지배하는 국가에 주의를 환기하고 또한 그 위반을 적당히 시정하기 위하여 그 국가에 5일의 유예 기간을 주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당해 병원지대를 승인한 국가에 대하여 그 요지를 정식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전기의 유예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당해 병원지대를 지배하는 국가가 주위의 환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국은 그 병원지대에 관하여서는 본 협정에 구속되지 않음을 선언할 수가 있다.

제 10 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병원지대 및 병원지구를 설정한 국가와 함께 그들의 존재에 관하여 통고를 받은 적국은 제8조 및 제9조에 계기하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자를 스스로 지명하고 또는 중립국으로 하여금 지명시켜야 한다.

제 11 조 병원지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의 대상으로 되어서는 아니된다. 충돌당사국은 항상 병원지대를 보호하고 또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 12 조 한 지역이 점령된 경우에는 그 지역내에 있는 병원지대는 병원지대로서 계속하여 존중되며 또한 사용된다.

그러나 억류국은 수용된 인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들의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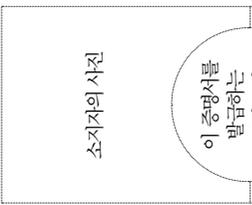
제 13 조 본 협정은 각국이 병원지대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병원지구에도 적용한다.

제II 부속서 의무요원 및 종교종교요원에 대한 신분증명서 양식

표 면

 (본 증명서를 발급하는 국가 및 군 당국의 명을 기제하기 위한 여백)	
<h2 style="margin: 0;">신분 증명서</h2> <p style="margin: 0;">군대에 수반하는 위생요원 및 종교요원용</p>	
성 _____ 명 _____ 생년월일 _____ 계급 _____ 군번 _____	본 증명서의 소지자는 다음 자격에 있어서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협약에 의하여 보호된다. _____ 발급년월일 _____ 증명서 번호 _____

이 면

소지자의 사진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군당국의 금속철인	서명 또는 지문 또는 그 쌍방
신 장	안 색	두 발 색
기타특징 _____ _____ _____ _____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Geneva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Wounded,
Sick and Shipwrecked Members of Armed Forces at Sea, of August 12 1949

[일반사항]

1949년 8월 12일 제네바에서 작성 및 체결
1950년 10월 21일 협약발효

[대한민국 관련사항]

1966년 7월 11일 국회비준 동의
1966년 8월 16일 스위스연방정부에 가입서 기탁
1966년 8월 16일 발효(조약 제216조)
* 선언내용 있음

*대한민국 선언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이 협약에의 가입은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승인하지 아니한 여하한 본 협약의 당사자를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이에 선언한다.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1906년 제네바협약의 제 원칙을 해전에 적용하기 위하여, 또한 1907년 10월 18일의 제10차 헤이그협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1949년 4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한 외교 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정부의 하기 서명 전권위원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협약의 존중

체약국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본 협약을 존중할 것과 본 협약의 존중을 보장할 것을 약정한다.

제 2 조 협약의 적용

본 협약은 평시에 실시될 규정 외에도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간에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선언된 전쟁 또는 기타 무력충돌의 모든 경우에 대하여, 당해 체약국의 하나가 전쟁상태를 승인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본 협약은, 또한 일 체약국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점령된 모든 경우에 대하여 비록 그러한 점령이 무력저항을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용된다.

충돌당사국의 하나가 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경우에도, 본 협약의 당사국은 그들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본 협약의 구속을 받는다. 또한 체약국은 본 협약 당사국 아닌 충돌당사국이 본 협약의 규정을 수락하고 적용할 때에는 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 협약의 구속을 받는다.

제 3 조 국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충돌

일 체약국의 영토내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성격을 띠지 아니한 무력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충돌의 각 당사국은 적어도 다음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1. 무기를 버린 전투원 및 질병, 부상, 억류, 기타의 사유로 전투력을 상실한 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종, 색, 종교 또는 신앙, 성별, 문벌이나 빈부, 또는 기타의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불리한 차별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기의 자에 대한 다음의 행위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를 금지한다.
가.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
나. 인질로 잡는 일.

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

라. 문명국인이 불가결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법적보장을 부여하고 정상적으로 구성된 법원이 행하는 사건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는 판결의 언도 및 형의 집행.

2.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는 수용하여 간호하여야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공정한 인도적 단체는 그 용역을 충돌당사국에 제공할 수 있다.

충돌당사국은 특별협정에 의하여 본 협약의 다른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전기의 규정의 적용은 충돌당사국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4 조 적용의 범위

충돌당사국의 지상군과 해군간의 적대 행위의 경우에 있어서 본 협약의 규정은 선내의 군대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상륙한 군대는 즉시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 5 조 중립국에 의한 적용

중립국은 그 영토내에 접수 또는 억류된 충돌당사국 군대의 부상자, 병자, 조난자, 의무요원, 종교요원 및 발견된 사망자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규정을 유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 6 조 특별협정

체약국은 제10조, 제18조, 제31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3조 및 제53조에서 명문으로 규정된 협정 외에 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다른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어떠한 특별협정도 본 협약에서 정하는 부상자, 병자, 조난자,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의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본 협약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부상자, 병자, 조난자,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은 본 협약이 그들에게 적용되는 한, 전기의 협정의 혜택을 계속 향유한다. 단, 전기의 협정 또는 추후의 협정에 반대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충돌당사국의 일방 또는 타방이 그들에 대하여 더 유리한 조치를 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7 조 권리의 불포기

부상자, 병자, 조난자,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협약 및 전조에서 말한 특별협정(그러한 협정이 존재할 경우)에 의하여 그들에게 보장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없다.

제 8 조 이익보호국

본 협약은 충돌당사국의 이익의 보호를 그 임무로 하는 이익보호국의 협력에 의하여, 또한 그 보호하에 적용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이익보호국은 자국외교관 또는 영사관을 제외한

자국민이나 다른 중립국 국민중에서 대표단을 임명할 수 있다. 전기의 대표는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돌당사국은 이익보호국의 대표 또는 사절단의 활동에 있어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익보호국의 대표 또는 사절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협약에 의한 그들의 임무를 초월하여서는 안된다. 그들은 특히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의 안전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들의 활동은 군사상의 긴급한 필요로 인하여 필요하게 될 때에 한하여 예외적인 또한 임시적인 조치로서 제한하여야 한다.

제 9 조 국제적십자위원회 활동

본 협약의 제규정은,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기타의 공평한 인도적인 단체가 관계 총돌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부상자, 병자, 조난자,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의 보호 및 그들의 구호를 위하여 행하는 인도적인 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이익보호국의 대리

체약국은 공정 및 효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단체에 대하여 본 협약에 따라 이익보호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언제든지 위임할 것에 동의할 수 있다.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부상자, 병자, 조난자,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이 이익보호국 또는 전항에 규정한 단체의 활동에 의한 혜택을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혜택을 받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억류국은 총돌당사국이 지칭하는 이익보호국이 본 협약에 따라 행하는 임무를 중립국 또는 전기의 단체에 인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보호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할 때에는 억류국은 이익보호국이 본 협약에 의하여 행하는 인도적 업무를 인수하도록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인도적 단체의 용역의 규정을 본 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요청하고 또는 수락하여야 한다.

어떠한 중립국이거나 또는 여사한 목적을 위하여 관계국의 요청을 받았든가 또는 자원하는 어떠한 단체라도 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가 의존하는 총돌당사국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함을 요하며 또한 그가 적절한 업무를 인수하여 공정하게 이를 수행할 입장에 있다는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군사상의 사건으로, 특히 그 영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점령되므로 인하여 그 일국이 일시적이거나 타방국 또는 그 동맹국과 교섭할 자유를 제한당하는 경우 국가간의 특별협정으로서 전기의 규정을 침해할 수 없다.

본 협약에서 이익보호국이라 언급될 때 그러한 언급은 언제든지 본 조에서 의미하는 대용 단체에도 적용된다.

제 11 조 조정절차

이익보호국이 보호를 받는 자를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히 본 협약의 규정의 적용 또는 해석에 관하여 총돌당사국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이익보호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선을 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이익보호국은 일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진하여, 충돌당사국에 대하여 그들의 대표들의, 특히 부상자, 병자, 조난자,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당국의 회합을 가능하면 적절히 선정된 중립지역에서 열도록 제의할 수 있다. 충돌당사국은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행하여지는 제의를 실행할 의무를 진다. 이익보호국은 필요할 경우에는 충돌당사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중립국에 속하는, 또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위임을 받는 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는 전기의 회합에 참가하도록 초청되어야 한다.

제 2 장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

제 12 조 보호 및 간호

다음의 조항에서 말하는 군대의 구성원과 기타의 자로서 해상에 있고 또한 부상자, 병자 또는 조난자인 자는 모든 경우에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단, 조난이라 함은 원인의 여하를 불문한 모든 조난을 말하며 또한 항공기에 의한 또는 항공기로부터의 해상에서의 불시착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그들은 그들을 그 권력속에 두고 있을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정견 또는 기타의 유사한 기준에 근거를 둔 차별 없이 인도적으로 대우 또한 간호되어야 한다. 그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 또는 그들의 신체에 대한 폭행은 엄중히 금지한다. 특히 그들은 살해되고 몰살되거나 고문 또는 생물학적 실험을 받도록 되어서는 안된다. 그들은 고의로 의료와 간호를 제공받음이 없이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전염이나 감염에 그들을 노출하는 상태도 조성되어서는 안된다.

실시될 치료의 순서에 있어서의 우선권은 긴급한 의료상의 이유로서만 허용된다.

부녀자는 여성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모든 고려로서 대우되어야 한다.

제 13 조 보호되는 자

본 협약은 해상에 있어서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로서 다음의 부류에 속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1. 충돌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 및 그러한 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민병대 또는 의용대의 구성원
2. 충돌당사국에 속하며, 또한 그들 자신의 영토(동 영토가 점령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의 내외에서 활동하는 기타의 민병대의 구성원 및 기타의 의용대의 구성원(이에는 조직적인 저항 운동의 구성원을 포함한다)단, 그러한 조직적 저항운동을 포함하는 그러한 민병대 또는 의용대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가. 그 부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 나. 멀리서 인식할 수 있는 고정된 식별 표지를 가질 것.
 - 다.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
 - 라. 전쟁에 관한 법규 및 관행에 따라 그들의 작전을 행할 것.

3. 억류국이 승인하지 아니하는 정부 또는 당국에 충성을 서약한 정규 군대의 구성원
4. 실제로 군대의 구성원은 아니나 군대에 수행하는 자, 즉, 군용기의 민간인 승무원, 종군 기자, 납품업자, 노무대원 또는 군대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대의 구성원. 단, 이들은 이들이 수행하는 군대로부터 인가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선장, 수료인내인 및 견습선원을 포함하는 충돌당사국의 상선의 승무원 및 민간 항공기의 승무원으로서 국제법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서도 더 유리한 대우의 혜택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자
6. 점령되어 있지 아니하는 영토의 주민으로서, 적이 접근하여 올때 정규군 부대에 편입할 시간이 없이 침입하는 군대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기를 든 자.
단, 이들이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하고 또한 전쟁법규 및 관행을 존중하는 경우에한한다.

제 14 조 교전국에 인도

교전국의 모든 군함은 그 국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군용병원선 및 구호단체 또는 사인에 속하는 병원선과 상선, 요트 및 기타의 주정위의 부상자, 병자 또는 조난자를 인도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단, 부상자 및 병자가 이동함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또한 당해 군함이 필요한 의사의 치료를 위하여 충분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 15 조 중립국 군함에 수용된 부상자

부상자, 병자 또는 조난자가 중립국의 군함 또는 중립국의 군용기에 수용되는 경우, 그들이 군사작전에 더 이상 참가할 수 없도록 보장(국제법상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할 때)되어야 한다.

제 16 조 적의 권력내에 있는 부상자

제1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적의 수중에 들어가는 교전국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는 포로가 되며 그들에게는 포로에 관한 국제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포로를 잡은 자는, 그들을 억류할 것인지, 또는 포로를 잡은 자 자신의 국가내의 항구, 중립국의 항구 또는 적국의 영토내의 항구에 그들을 이송할 것인지의 여부를 사정에 따라 결정 할 수 있다. 마지막의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본국에 송환된 포로는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군대에 복무하지 못한다.

제 17 조 중립국 항구에 상륙한 부상자

현지당국의 동의를 얻어 중립국 항구에 상륙되는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는 중립국과 교전국간의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군사작전에 다시 참가할 수 없도록 중립국이 감시(국제법상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할 때)하여야 한다.

병원에의 입원 및 억류의 비용은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가 의존하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 18 조 교전후 사상자의 수색

충돌당사국은 매 교전후에,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를 찾아 수용하고, 그들을 약탈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며, 그들에 대한 충분한 간호를 보장하고 또한 사망자를 찾아 그들이 약탈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여야 한다.

충돌당사국은 사정이 허용하는 한 언제든지, 점령 또는 포위된 지역으로부터 부상자 및 병자를 해로로 이송하기 위하여, 또한 동 지역으로 갈 의무요원, 종교요원 및 장비를 통과 시키기 위하여 현지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19 조 기록 및 정보의 송부

충돌당사국은 그들의 수중에 들어오는 적측의 조난자, 부상자, 병자 또는 사망자에 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한 자의 신원 판별에 도움이 될 어떠한 세부 사항이라도 기록하여야 한다. 이들 기록은 가능하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그가 의존하는 국가의 표시
- 나. 소속 부대명 및 군번
- 다. 성씨
- 라. 이름
- 마. 생년월일
- 바. 신분증명서 또는 표지에 표시된 기타의 상세
- 사. 포로가 된 일자 및 장소 또는 사망일자 및 장소
- 아.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원인에 관한 상세

전술한 자료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122조에 기술한 정보국에 가능한 한 조속히 송부되어야 하며, 동 정보국은 이익보호국 및 중앙포로기구를 중개료 하여 이들이 의존하는 국가에 이 자료를 전달하여야 한다.

충돌당사국은 사망증명서, 또는 정당하게 인정된 사망자 명부를 작성하여 동 정보국을 통하여 상호 송부하여야 한다. 충돌당사국은 사망자에게서 발견된 이중신분표지의 반 또는 단일표지의 경우에는 신분표지 그 자체를 근처자에 대한 유서나 기타의 중요한 서류, 금전 및 일반적으로 고유의 가치 또는 정서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물품을 동일하게 수집하여 동 정보국을 통하여 상호 송부하여야 한다. 이들 물품은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함께 밀봉된 봉치로 송부되어야 하며, 이에는 사망한 소유자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모든 상세를 기재한 서류와 동 봉치의 내용을 완전히 표시하는 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0 조 사망자에 관한 규정

충돌당사국은 사망을 확인하고 신원을 확실히 하며 또한 보고서의 작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사정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으로 실시될 사망자의 수장이 시체의 면밀한 검사, 가능하다면, 의학적 검사가 있는 다음에 행하여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중신분표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 표지의 반은 시체에 남겨두어야 한다.

사망자가 육지에 이송될 경우에는,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21 조 중립국 선박에 대한 호소

충돌당사국은 중립국의 상선, 요트 또는 기타의 주정의 선장에 대하여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를 선내에 수용하여 간호하고 또한 사망자를 인양해 주는 자선을 호소 할 수 있다.

이 요청에 응하는 모든 종류의 함선과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를 자발적으로 수송한 선박은 그러한 원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편의를 향유한다.

그들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수송으로 인하여 포획되지 못한다. 단,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그들이 범하였을지도 모르는 중립의 위반에 대하여는 포획당할 입장을 면하지 못한다.

제 3 장 병원선

제 22 조 군병원선의 통고 및 보호

군용 병원선, 즉 특히 또한 전적으로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를 원조하며 또한 그들을 치료하고 수송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건조되거나 설비된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이나 포획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들 선박이 사용되기 10일 전에 그 선명과 형태가 충돌당사국에 통고됨을 조건으로, 언제든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동 통고에 나타나야 할 특징으로서는 등록된 총 톤수, 선수로부터 선미까지의 길이 및 마스트와 연통의 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 23 조 해안의료시설의 보호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해안시설은 해상으로부터의 포격 또는 공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 24 조 충돌당사국의 구호단체 및 사인이 사용하는 병원선

각국 적십자사, 공인된 구호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사용되는 병원선은 그들이 의존하는 충돌당사국이 그들에게 공적인 사명을 부여한 경우 또한 통고에 관한 제22조의 규정이 준수된 한, 군용 병원선과 동일한 보호를 받으며 또한 포획으로부터 면제된다.

이들 선박은 위장하는 동안 또한 출범할 때에 동 선박이 그들의 관리하에 있었음을 기술한 책임있는 당국의 증명서를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제 25 조 중립국 구호단체 및 사인이 사용하는 병원선

중립국의 적십자사, 공인된 구호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사용되는 병원선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정부의 사전동의와 관계 충돌당사국의 허가를 받아 충돌당사국중의 일국의 관리하에 스스로 들어갈 것을 조건으로 하여, 통고에 관한 제22조의 규정이 준수된 한, 군용 병원선과 동일한 보호를 받으며 또한 포획으로부터 면제된다.

제 26 조 톤수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에서 말한 보호는 모든 톤수의 병원선 및 그 구명정에 대하여 그 작업하는 장소의 여하를 불문하고 적용한다. 충돌당사국은 최대한의 안락과 안전을 보장하

기 위하여 충돌당사국은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원거리 및 공해상 수송이 용이하도록 2,000톤 이상의 병원선만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7 조 연안구조정

연안 구조 작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공인된 구명정 단체가 사용하는 소주정도 제22조와 제24조에 규정한 바와 동일한 조건으로 작전상의 요건이 허락하는 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인도적 사명을 위하여 이들 소주정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고정된 연안 시설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 적용되어야 한다.

제 28 조 의무실의 보호

군함위에서 전투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의무실은 존중되고 또한 해를 입지 아니하여야 한다. 의무실과 그 비품은 계속하여 전쟁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부상자와 병자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의무실과 비품을 그 지휘하에 두게 된 지휘관은 긴급한 군사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의무실내에 수용되어 있는 부상자와 병자에 대한 적당한 치료를 보장한 후 의무실 및 비품을 기타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제 29 조 점령지의 항구에 있는 병원선

적의 수중에 들어가는 항구내에 있는 병원선은 동 항구로부터 출항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 30 조 병원선 및 소주정(小舟艇)의 사용

제22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에 기술한 선박은 국적을 구분함이 없이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에 대하여 구호 및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체약국은 이들 선박을 어떠한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다. 그러한 선박은 전투원의 이동을 결코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그러한 선박은 전투중 및 전투후에 그들 스스로가 위험을 부담하며 행동한다.

제 31 조 감독 및 수색의 권리

충돌당사국은 제22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에서 말한 선박을 통제하고 수색할 권리를 가진다. 충돌당사국은 이들 선박으로부터의 원조를 거절할 수 있으며 퇴거를 명령하고 어떤 항로를 취하도록 만들며 그들의 무선전신 및 기타의 통신수단의 사용을 통제하고 또한 사정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그렇게 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선을 명할때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들을 억류할 수 있다.

충돌당사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한 명령이 집행되도록 감독하는 것을 그 전적인 임무로 하는 감독관을 임시로 승선 시킬 수 있다.

충돌당사국은 가능한 한 그들이 병원선의 선장에게 발한 명령을 동 선장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동 병원선의 항해일지에 기입하여야 한다.

충돌당사국은 본 협약에 내포된 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확인하여야 하는 중립국의 감시인을 일방적으로 또는 특별한 협정에 의하여 그들의 선박에 승선 시킬 수 있다.

제 32 조 중립국 항구에 정박

제22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에 기술한 선박은 중립국의 항구에서의 정박에 관하여는 균함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 33 조 개조된 상선

병원선으로 개조된 상선은 적대행위의 기간을 통하여 다른 어떠한 용도에도 사용되지 못한다.

제 34 조 보호의 소멸

병원선과 의무실이 받을 권리가 있는 보호는 그들의 인도적 임무를 이탈하여 적에게 해로운 행위를 자행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 소멸되지 아니한다. 단, 보호는 모든 경우 적절한 상당한 유예를 주고 발한 정당한 경고가 행하여진 연후 또는 그러한 경고가 무시된 채로 있을 후에 소멸한다.

특히 병원선은 그 무선 전신 또는 기타의 통신 수단을 위하여 암호를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 35 조 병원선으로부터의 보호를 박탈하여서는 안되는 조건

다음의 조건은 병원선 또는 함선내의 의무실이 받을 보호를 그들로부터 박탈하는 것으로 간주 되지 아니한다.

1. 함선 또는 의무실의 승조원이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그들 자신의 방위 또는 부상자와 병자의 방위를 위하여 무장하고 있다는 사실.
2. 항해 또는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전적인 목적으로 하는 장치가 선내에 존재한다는 것.
3.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로부터 거둔 휴대용 무기와 탄약으로서 아직 적당한 기관에 인도되지 아니한 것이 병원선 내에서 또는 병실에서 발견되는 것.
4. 병원선 및 선박의 의무실 또는 승조원의 인도적 행위가 민간인 부상자, 병자 또는 조난자의 치료에 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
5. 전적으로 의무상의 직무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와 인원을 통상의 수요량을 초과하여 수송하고 있다는 것.

제 4 장 보호받는 인원

제 36 조 병원선 요원의 보호

병원선의 종교요원, 의무요원 및 병원요원과 그 승조원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들은 선내에 부상자와 병자의 유무를 불문하고 병원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는 포획되지 못한다.

제 37 조 기타선박의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

제12조와 제13조에서 지정한 자에 대한 의료 또는 정신상의 간호의 직무에 배치된 종교요원, 의무요원 및 병원요원은 적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에 존중되고 또한 보호된다. 그들은 부상자와 병자의 치료를 위하여 이것이 필요한 동안은 그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을 그 지휘하에 두고 있는 총사령관이 실행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 즉시 송환되어야 한다. 그들은 선박을 떠날 때에 그들의 개인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나 포로의 의료상 또는 정신상의 필요로 인하여 이 요원의 일부를 억류함이 필요하게 될 때에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들을 하선시키기 위한 가능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억류된 요원은 하선과 동시에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 5 장 의료수송

제 38 조 의료장비 수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

의료수송을 목적으로 용선된 선박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군대의 부상자와 병자의 치료 또는 질병의 예방을 위한 장비품의 수송이 허용되어야 한다. 단, 동 수송의 상세한 내역이 적군에 통고되고 승인 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적국은 이러한 수송선을 입검할 권리를 보유하나, 선박을 포획하거나 또는 수송중인 비품을 압수할 수 없다.

충돌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송중인 비품을 확인할 목적으로 이러한 선박에 중립국 입회인을 승선시킬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장비품에 대한 자유로운 열람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 39 조 의무항공기

충돌당사국은 의무항공기, 즉 전적으로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이송과 의무요원이나 시설의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를 그 항공기가 관계 충돌당사국간에서 특별히 합의된 고도, 시간 및 항로에 따라 비행하는 동안 공격 목표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의무항공기는 그 하면, 상면 및 측면에 제41조에서 정하는 특수 표지를 자국의 국기와 함께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항공기는 전쟁 발발 당시 또는 전쟁중 교전국간에 합의되는 다른 표지나 식별수단이 구비되어야 한다.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적국의 영토, 또는 점령지역 상공의 비행은 금지한다.

의무항공기는 착륙 또는 착수(着手)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에 복종하여야 한다. 여사히 착륙(手)하였을 경우 항공기와 그 승무원은 입검이 있으면 입검후 비행을 계속할 수 있다.

적의 영토 또는 점령지역내에 불시착륙 또는 불시 착수하는 경우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 또는 의무 항공기의 승무원은 포로가 된다. 의무요원은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대우한다.

제 40 조 중립국 상공의 비행. 부상자의 하륙

충돌당사국의 의무항공기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중립국 영공을 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영토에 착륙하고 또한 그 영토를 기항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의무항공기는 당해 영공의 통과를 중립국에 사전 통고하여야 하며 착륙, 착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의무항공기는 충돌당사국과 관계 중립국간에 특별히 합의된 항로, 고도 및 시각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격 목표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중립국은 의무항공기가 자국의 영공을 비행하고 또한 착륙함에 있어 조건이나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 또는 제한은 모든 충돌당사국에 대하여 평등히 적용되어야 한다.

중립국과 충돌당사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의무항공기가 현지 당국의 동의를 얻어 중립국 영토에 하륙시킬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는 국제법상 필요에 따라 군사 행동에 다시 참가할 수 없도록 중립국이 억류하여야 한다. 이들의 수용과 억류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들이 의존하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6 장 식별표지

제 41 조 표장의 사용

관할 군당사국의 지시에 따라 의무기관이 사용하는 기, 완장 및 모든 장비에 백지 적십자 문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십자 대신에 백색상 붉은 초생달 또는 백색상 적색 사자와 태양을 식별표장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이러한 표장은 본 협약상 동일하게 인정된다.

제 42 조 의료요원 및 종교요원의 식별

제36조와 제37조에서 규정하는 요원은 군당국이 압인 발급한 식별표장이 된 방수완장을 좌완에 둘러야 한다.

이러한 요원은 제19조에 규정하는 신분표지에 부가하여 식별표지가 표시된 특별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이 신분증은 방수성이며 또한 호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이 신분증은 자국어로 기입되어야 하며 최소한 소지자의 성명, 생년월일, 계급 및 군번이 표시되고 또한 소지자가 어떤 자격으로 본 협약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 신분증에는 또한 소지자의 사진, 서명이나 지문, 또는 양자가 첨부되어야 하며 군당국의 인장을 압인하여야 한다.

본 신분증은 동일국의 전군을 통하여 동일 규격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침략국의 군대에 대하여 유사한 규격이어야 한다. 충돌당사국은 본 협약 부록에 예시된 양식에 따를 수 있다. 충돌당사국은 전쟁발발 초기에 각국이 사용하는 신분증 양식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신분증은 가능한 한 적어도 2매 작성하여 그 1매는 본국이 보관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의 요원은 그들의 계급장 또는 신분증 또는 완장을 두를 권리를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 이들은 신분증 또는 계급장을 분실하는 경우 신분증의 복본을 재교부 받거나 계급장을 재수령할 권리를 가진다.

제 43 조 병원선 및 소주정의 표시

제22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선박은 다음과 같이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가. 외부의 전 표면을 백색으로 한다.

나. 해상 및 공중으로부터 최대한 명백히 식별할 수 있고 가급적 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짙은 적십자를 선체의 양측면과 상면에 도장 표시한다.

모든 병원선은 게양된 국기로 식별되며, 중립국 병원선은 그가 지시 받을 것을 수락한 충돌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함으로써 식별된다. 중앙 마스트에는 적십자 백기를 가능한 한 높이 게양하여야 한다.

병원선의 구명정, 연안구명정 및 의무기관이 사용하는 모든 소주정은 백색으로 칠하여 짙은 적십자를 명백히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병원선에 관한 전기의 식별 방식에 따라야 한다.

전기의 선박과 소주정이 야간이나 악시계하에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를 보장 받고자 할 때에는 그들을 그 권한하에 두는 충돌당사국의 동의에 따라 그 도장과 식별표지를 더욱 선명히 하기 위한 소요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국에 억류된 병원선은 그들이 봉사하는 또는 지휘받을 것을 수락한 충돌당사국의 국기를 하강하여야 한다.

연안구명정은 점령국의 동의를 얻어 점령된 기지로부터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모든 관계 충돌당사국에 대한 사전통고를 조건으로 기지밖에서는 적십자기와 함께 자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적십자 표지에 관한 본조의 모든 규정은 제41조에서 말한 기타 표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충돌당사국은 병원선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상호 협정을 체결하도록 항시 노력하여야 한다.

제 44 조 식별표지의 사용제한

별도의 국제협약 또는 관계 충돌당사국간의 협정이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3조에 규정한 식별 표지는 전, 평시를 막론하고 동조에 규정하는 선박의 표식 또는 보호만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제 45 조 남용의 방지

체약국은 자국의 기존 법령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제43조에 규정한 식별 표지의 남용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7 장 협약의 실시

제 46 조 세부사항. 예견되지 못한 경우대비

각 총독당사국은 그 총사령관을 통하여 본 협약이 일반원칙에 따르는 전 각조의 세부 시행령을 마련하고 예견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 47 조 보복의 금지

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상자, 병자, 조난자, 요원, 선박 또는 그 장비에 대한 보복을 금지한다.

제 48 조 협약의 보급

체약국은 진, 평시를 막론하고 본 협약 전문을 가급적 광범위하게 자국내에 보급시킬 것이며, 특히 군교육계획과 가능하다면 민간 교육 계획에도 본 협약에 관한 학습을 포함시킴으로서 본 협약의 원칙을 전국민, 특히 군인,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에게 습득시킬 것을 약정한다.

제 49 조 번역문. 적용법령

체약국은 스위스 연방정부를 통하여 또한 전시중에는 이익보호국을 통하여 본 협약의 공식 번역문과 약정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한 법령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장 남용과 위반의 방지

제 50 조 형사적 제재 : I. 개관

체약국은 본 협약에 대하여 다음 조에 정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도록 명령한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약정한다.

각 체약국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범하였거나 범할 것을 명령한 혐의가 있는자를 수사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자는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법원에 기소되어야 한다. 또한 각 체약국은 희망하는 경우 또한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자를 다른 관계체약국에서 재판을 받도록 인도할 수 있다. 단, 관계체약국이 동 사건에 관하여 일단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각 체약국은 다음 조항에서 정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 이외에 본 협약 제 규정에 위반되는 모든 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105조 및 그 이하에 규정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는 정당한 재판과 변호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 51 조 II. 중대한 위반행위

전조에서 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란 본 협약이 보호하는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 고의적인 살인, 신체 또는 건강을 고의로 크게 해치거나 고통을 주는 고문이나 비인도적 대우(생물학적 실험을 포함) 또는 군사상의 필요로서 정당화되지 아니하며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재산의 광범위한 파괴 또는 몰수.

제 52 조 III. 계약국의 책임

계약국은 전조에서 말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자국이 저야 할 책임을 벗어나거나 또는 타방 계약국으로 하여금 동국이 저야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서는 안된다.

제 53 조 조사절차

충돌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 협약에 대한 위반혐의에 관하여 관계국간에 결정되는 방법으로 심문하여야 한다.

심문절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국은 그 절차를 결정할 심판관의 선임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충돌당사국은 지체없이 위반행위를 종식시키거나 억제하여야 한다.

최종규정

제 54 조 언어

본 협약은 영어와 불어로 작성되며 양자 공히 정본이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본 협약이 노어와 서반어어로 공식 번역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55 조 서명

오늘 날짜의 본 협약은 1949년 4월 21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국가와 동 회의에 대표는 파견하지 않았으나 1906년 제네바협약의 원칙을 해전에 응용하기 위한 1907년 10월 18일의 제10차 헤이그협약 또는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와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864년, 1906년, 1929년의, 제네바협약의 계약국에 대하여 1950년 2월 12일까지 그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 56 조 비준

본 협약은 가급적 조속히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베른에 기탁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각 비준서의 기탁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며 그 기록의 인증등본을 본 협약 서명국과 가입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 57 조 효력의 발생

본 협약은 2개 이상의 비준서가 기탁된 6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 이후 본 협약은 각 체약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6개월 후에 각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 58 조 1907년 협약과의 관계

본 협약은 체약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1906년 제네바협약의 원칙을 해전에 응용하기 위한 1907년 10월 18일의 제10차 헤이그협약을 대치한다.

제 59 조 가입

본 협약은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본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 60 조 가입의 통고

본 협약에의 가입은 스위스 연방정부에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그 공문이 접수된 일자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가입사실을 본 협약 서명국과 가입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 61 조 즉시 발효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된 경우는 전쟁 또는 점령의 개시 전후에 충돌당사국이 행한 비준 또는 가입을 즉시 발효 시킨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충돌당사국으로부터 접수된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제 62 조 탈퇴

각 체약국은 본 협약에서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서면으로 스위스 연방정부에 통고하여야 하며 스위스 연방정부는 그 통고를 모든 체약국 정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탈퇴는 스위스 연방정부에 통고한 1년후에 발효한다. 단, 탈퇴국이 탈퇴를 통고할 당시에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강화조약 체결시까지, 또한 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의 석방과 송환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발효되지 아니한다.

탈퇴는 탈퇴하는 국가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탈퇴는 문명인간에 확립된 관행, 인도의 법칙, 대중적 양심에 기인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충돌당사국이 계속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해하여서는 안된다.

제 63 조 국제연합에의 등록

스위스 연방정부는 본 협약을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또한 본 협약에 관하여 동 정부가 접수하는 모든 준비, 가입, 탈퇴를 국제연합 사무국에 통고하

여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인은 각자의 전권위임을 기탁하고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49년 8월 12일 제네바에서 영어와 불어로 작성하였다. 원본은 스위스 연방정부의 문서 보관소에 기탁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그 인증등본을 각 서명국과 가입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표면



(본 증명서를 발급하는 국가 및 군 당국의 명을 기제하기 위한 여백)

신분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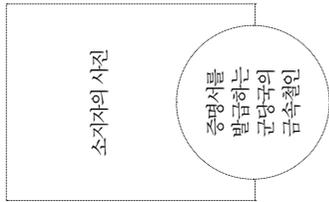
해상에 있는 군대에 소속하는 의무요원 및 군목요원용

성 _____
 명 _____
 생년월일 _____
 계급 _____
 군번 _____

본 증명서의 소지자는 다음의 자격에 있어서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의하여 보호된다.

발급년월일 _____ 증명서 번호 _____

이면



서명 또는 지문 또는 그 쌍방

신 장	안 색	두 말 색
기타특징		
_____ _____ _____ _____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of August 12 1949

[일반사항]

1949년 8월 12일 제네바에서 작성
1950년 10월 21일 협약발효

[대한민국 관련사항]

1966년 7월 11일 국회비준 동의
1966년 8월 16일 스위스연방정부에 가입서 기탁
1966년 8월 16일 발효(조약 제217호)
* 선언내용 있음

*대한민국 선언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이 협약에의 가입은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승인하지 아니한 여하한 본 협약의 당사자를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이에 선언한다.

해석선언

대한민국은, 제118호 제1항의 규정을, 포로를 억류하고 있는 국가가 공개적으로 자유로이 발표된 포로의 의사에 반하여 그 포로를 강제 송환할 의무는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포르도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포르도의 대우에 관한 1929년 7월 12일의 제네바협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1949년 4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한 외교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정부의 아래에 서명한 전권위원은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제 1 편 총칙

제 1 조 협약의 존중

체약국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본 협약을 존중할 것과 본 협약의 존중을 보장할 것을 약정한다.

제 2 조 협약의 적용

본 협약은 평시에 실시될 규정 외에도,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선언된 전쟁 또는 기타 무력충돌의 모든 경우에 대하여 당해 체약국의 하나가 전쟁상태를 승인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본 협약은 또한 일 체약국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점령된 모든 경우에 대하여 비록 그러한 점령이 무력 저항을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용된다.

충돌당사국의 하나가 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경우에도 본 협약의 당사국은 그들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본 협약의 구속을 받는다. 또한 체약국은 본 협약당사국이 아닌 충돌당사국이 본 협약의 규정을 수락하고 적용할 때에는 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 협약의 구속을 받는다.

제 3 조 국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충돌

체약국의 영토내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성격을 띠지 아니한 무력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충돌의 각 당사국은 적어도 다음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1. 무기를 버린 전투원 및 질병, 부상, 억류 기타의 사유로 전투력을 상실한 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종, 색, 종교 또는 신앙, 성별, 문벌이나 빈부 또는 기타의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불리한 차별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기의 자에 대한 다음의 행위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를 금지한다.
가. 성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

나. 인질로 잡는 일.

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

라. 문명국인이 불가결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법적 보장을 부여하는 정상적으로 구성된 법원의 사전재판에 의하지 아니하는 판결의 연도 및 형의 집행.

2. 부상자 및 병자는 수용하여 간호하여야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공정한 인도적 단체는 그 용역을 충돌당사국에 제공할 수 있다.

충돌당사국은 특별한 협정에 의하여 본 협약의 다른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전기의 규정의 적용은 충돌당사국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4 조 포로

1. 본 협약에서 포로라 함은 다음 부류의 하나에 속하는 자로서 적의 수중에 들어간 자를 말한다.

가. 충돌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 및 그러한 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민병대 또는 의용대의 구성원.

나. 충돌당사국에 속하며 그들 자신의 영토(동 영토가 점령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 내외에서 활동하는 기타의 민병대의 구성원 및 기타의 의용대(이에는 조직적인 저항운동의 구성원을 포함) 단, 그러한 조직적 저항운동을 포함하는 그러한 민병대 또는 의용대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1) 그 부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 (2) 멀리서 인식할 수 있는 고정된 식별표지를 가질 것.
- (3)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
- (4) 전쟁에 관한 법규 및 관행에 따라 그들의 작전을 행할 것.

다. 억류국이 승인하지 아니하는 정부 또는 당국에 충성을 서약한 정규군대의 구성원.

라. 실제로 군대의 구성원은 아니나 군대에 수행하는 자. 즉, 군용기의 민간인, 승무원, 종군기자, 납품업자, 노무대원, 또는 군대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대의 구성원. 단, 이들은 이들이 수행하는 군대로부터 인가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를 위하여 당해 군대는 이들에게 부속서의 양식과 유사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마. 선장, 수로 안내인 및 견습선원을 포함하는 충돌당사국의 상선의 승무원 및 민간 항공기의 승무원으로서, 국제법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도 더 유리한 대우의 혜택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자

바. 점령되어 있지 아니하는 영토의 주민으로서 적이 접근하여 올 때, 정규군 부대에 편입할 시간이 없이 침입하는 군대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기를 든 자. 단, 이들이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하고 또한 전쟁법규 및 관행을 존중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다음의 자들도 또한 본 협약에 의하여 포로로 대우되어야 한다.

가. 피점령국의 군대에 소속하는 또는 소속하고 있던 자로서 특히 그러한 자가 그들이 소속하는 교전중에 있는 군대에 복귀하려다가 실패한 경우 또는 억류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소환에 불응한 경우에 전기의 소속을 이유로 하여 점령국이 그들을 억류함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단, 동점령국이 본래 그가 점령하는 영토외에서 적대행

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동안에 그들을 해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불문한다.

나. 본조에 열거한 부류의 하나에 속하는 자로서 중립국 또는 비교전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 접수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국가가 국제법에 의하여 억류함을 요하는 자. 단, 이들 국가가 부여하기를 원하는 더욱 유리한 대우를 행하지 못하며 또한 제8조, 제10조, 제15조, 제30조 제5항, 제58조 내지 제67조, 제92조 및 제126조와 충돌당사국과 관계 중립국 또는 비교전국과의 사이에 외교관계가 존재하는 때에는 이익보호국에 관한 조항은 예외로 한다. 전기의 외교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속하는 충돌당사국은 이들에 대하여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이익보호국의 임무를 행함이 허용된다. 단, 이들 충돌당사국이 외교상 및 영사업무상의 관행 및 조약에 따라 통상 행하는 임무를 행하지 않는다.

3. 본조는 본 협약의 제33조에 규정하는 의무직 및 군목의 지위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 5 조 적용의 시작 및 끝

본 협약은 제4조에 말한 자에 대하여 이들이 적의 권력내에 들어간 때부터 그들의 최종적인 석방과 송환 때까지 적용된다.

교전 행위를 행하여 적의 수중에 빠진 자가 제4조에 열거한 부류의 1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그러한 자들은 그들의 신분이 관할 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될 때까지 본 협약의 보호를 향유한다.

제 6 조 특별협정

체약국은 제10조, 제23조, 제28조, 제33조, 제60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제109조, 제110조, 제118조, 제119조, 제122조 및 제132조에 특별히 규정된 협정외에 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다른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어떠한 특별 협정도 본 협약에서 정하는 포로의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본 협약이 포로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포로는, 본 협약이 그들에게 적용되는 동안 전기의 협정의 이익을 계속 향유한다. 단, 전기의 협정 또는 추후의 협정에 반대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충돌당사국의 일방 또는 타방이 포로에 대하여 더 유리한 조치를 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7 조 권리의 불포기

포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협약 및 전조에서 말한 특별협정(그러한 협정이 존재할 경우)에 의하여 그들에게 보장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없다.

제 8 조 이익보호국

본 협약은 충돌당사국의 이익의 보호를 그 임무로 하는 이익보호국의 협력에 의하여 또한 그 보호하에 적용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이익보호국은, 자국 외교관 또는 영사를 제외한 자

국민이나 다른 중립국 국민중에서 대표단을 임명할 수 있다. 전기의 대표는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돌당사국은 이익보호국의 대표 또는 사절단의 활동에 있어서 가능한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익보호국의 대표 또는 사절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협약에 의한 그들의 임무를 초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들은, 특히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의 안전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9 조 국제적십자위원회 활동

본 협약의 제 규정은,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기타의 공평한 인도적인 단체가 관계 총돌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포로의 보호 및 그들의 구호를 위하여 행하는 인도적인 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이익보호국의 대리

체약국은 공정 및 효율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단체에 대하여 본 협약에 따라 이익보호국이 부담하는 임무를 언제든지 위임할 것에 동의할 수 있다.

포로가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보호국 또는 전항에 규정한 단체의 활동에 의한 혜택을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혜택을 받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억류국은 총돌당사국이 지정하는 이익보호국이 본 협약에 따라 행하는 임무를 중립국 또는 전기의 단체에 인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보호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할 때에는 억류국은 이익보호국이 본 협약에 의하여 행하는 인도적 업무를 인수하도록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인도적 단체의 용역의 제공을 본 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요청하고 또는 수락하여야 한다.

어떠한 중립국이거나 또는 여사한 목적을 위하여 관계국의 요청을 받았거나 또는 지원하는 어떠한 단체라도 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가 의존하는 총돌당사국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함을 요하며 또한 그가 적절한 업무를 인수하여 공평하게 이를 수행할 입장에 있다는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군사상의 사건으로, 특히 그 영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점령되므로 인하여 그 일국이 일시적이거나 타방국 또는 그 동맹국과 교섭할 자유를 제한당하는 경우 여러 국가간의 특별협정으로써 전기의 규정을 침해할 수 없다.

본 협약에서 이익보호국이 언급될 때에는 그러한 언급은 언제든지 본 조에서 의미하는 대용단체에도 적용된다.

제 11 조 조정절차

이익보호국이 보호를 받는 자를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히 본 협약의 규정의 적용 또는 해석에 관하여 총돌당사국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이익보호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선을 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이익보호국은 일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진하여 총돌당사국에 대하

여 그들의 대표나 특히 포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관계당국의 회합을 가능하면 적절히 선정된 중립지역에서 열도록 제의할 수 있다. 충돌당사국은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행하여지는 제의를 실행할 의무를 진다. 이익보호국은 필요할 경우에는 충돌당사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중립국에 속하는 자 또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위임을 받는 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는 전기의 회합에 참가하도록 초청되어야 한다.

제 2 편 포로의 일반적 보호

제 12 조 포로의 대우의 책임

포로는 적국의 권력내에 있는 것이지, 그들을 체포한 개인이나 군부대의 권력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억류국은 있을 수 있는 개인적 책임에 관계없이 포로에게 부여하는 대우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억류국은 이송을 받는 국가가 본 협약을 적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확인한 후 본 협약 당사국에 한하여 포로를 이송할 수 있다. 억류국에 의하여 포로가 전기와 같은 사정하에 이송될 때에는 본 협약의 적용에 대한 책임은 포로가 자국내에 억류되고 있는 동안 포로를 접수한 국가에 있다.

동 국가가 어떤 중요한 점에 관하여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포로를 이송한 국가는 이익보호국의 통고가 있을 시 동 사태를 시정하기 위한 유효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포로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청은 반드시 승낙 되어야 한다.

제 13 조 포로의 인도적 대우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한다. 그 억류하에 있는 포로를 사망케 하거나 그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여하한 억류국의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도 금지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본 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특히, 포로에 대하여 신체의 절단 또는 의료, 치과 또는 임상치료상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없고 또한 그 이익에 배치되는 모든 종류의 의료 또는 과학적 실험을 행하지 못한다.

또한 포로는 특히 폭행, 협박,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

포로에 대한 보복 조치는 이를 금지한다.

제 14 조 포로의 존중

포로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신체와 명예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자는 여성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모든 고려로서 대우되며, 또한 여하한 경우에도 남자와 동등하게 대우되어야 한다.

포로는 그들이 포로가 될 때에 향유하던 완전한 사법상의 행위 능력을 보유한다. 억류국은 포로라는 신분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의 영토외에서 그들의 행위 능력이 부여하는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5 조 포로의 급양

포로를 억류하는 국가는 무상으로 포로에 대한 급양을 제공하고 또한 그들의 건강상태상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6 조 평등한 대우

억류국은 계급 및 성별에 관한 본 협약의 규정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건강상태, 연령 또는 전문능력을 이유로 그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특전적인 대우를 허용하면서 인종, 국적, 종교적 신앙이나 정치적 의견에 근거를 둔 불리한 차별 또는 유사한 기준에 근거를 둔 기타의 모든 차별없이 모든 포로를 균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 3 편 포로의 신분

제 1 부 포로신분의 개시

제 17 조 포로의 심문

모든 포로는 당해 문제에 관하여 심문을 받을 때에는 그 성명, 계급, 출생년월일 및 소속 군번호, 연대번호, 군번을 진술하여야 하며, 또는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사항을 진술하여야 한다.

포로가 고의로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는 그의 계급 또는 지위에 해당하는 특전을 제한 받을 수 있다.

각 충돌당사국은 동국 관할하에 있는 자로서 포로가 되어야 할 모든 자에게 소지자의 성명, 계급, 소속군번호, 연대번호, 군번 또는 이에 상당한 사항 및 출생년월일을 표시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더욱이 신분증명서에는 소지자의 성명이나 지문 또는 양자를 기재할 수 있으며 또한 충돌당사국이 그 군대에 소속하는 자에 관하여 부가하기를 원하는 기타의 사항도 기재할 수 있다. 증명서는 가능한 한 6.5×10cm의 크기로 하며 정, 부 2통을 발급한다. 신분증명서는 요구가 있을 때 포로에 의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포로로부터 탈취되어서는 아니된다.

종류의 여하를 불문하고 정보를 그들로부터 입수하기 위해 포로에 대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강제를 가하지 못한다. 답변을 거부하는 포로에 대하여 협박이나 모욕을 가하거나 또는 모든 형태의 불쾌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주지 못한다.

그들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그들의 신분을 진술할 수 없는 포로는 의무대에 인도되어야 한다. 그러한 포로의 신분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포로에 대한 심문은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 18 조 포로의 재산

무기, 마뿔, 군장비 및 군문서를 제외한 모든 개인 용품은 포로가 계속하여 소지하며, 철모와 방독면 및 인체의 보호를 위하여 교부된 유사한 물품도 또한 동일하다. 포로의 의식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도 비록 그들 정규의 군장비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계속하여 소지한다.

포로는 항상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그러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포로에게 그러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계급장 및 국적표시, 훈장 및 특히 개인적인 또는 정서적 가치를 가지는 물품을 포로로부터 탈취하지 못한다.

포로가 소지하는 금전은, 장교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또는 금액과 소지자에 관한 상세가 특별 장부에 기록되고 영수증 발행자의 성명, 계급 및 부대를 읽을 수 있도록 기재한 항목별 영수증이 발급된 후가 아니고는 그들로부터 탈취하지 못한다. 억류국의 통화로 되어 있거나 또는 포로의 요청으로 그러한 통화로 교환된 금전은 제64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동 포로들의 구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안전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로로부터 귀중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한 물품을 회수할 때에는 금전을 압수할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한 물품은, 억류국 이외의 통화로 압수되고 또한 그 교환이 소유자에 의하여 요청되지 않은 금전과 함께 억류국이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그들의 포로 신분이 종료될 때에 원상대로 포로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19 조 포로의 후송

포로는 포로가 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그들에게 위협이 없을 정도로 전투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지역에 소재하는 수용소에 후송되어야 한다.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후송됨으로서 현재의 그들의 소재지에 머물러 있느니 보다 더 큰 위협에 부딪치게 될 포로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위험지대에 체류시킬 수 있다.

포로는 전투지대로부터 후송을 기다리는 동안 불필요하게 위협에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20 조 후송의 조건

포로의 후송은 항상 인도적으로 또한 억류국 군대가 이동할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후송되고 있는 포로에게 충분한 식량과 음료수 및 필요한 의복과 의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후송중의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당한 모든 예비조치를 취하여, 또한 후송되는 포로의 명부를 가능한 한 조속히 작성하여야 한다.

포로가 후송중에 임시 수용소를 통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한 수용소에서의 체재는 가급적 단축되어야 한다.

제 2 부 포로의 억류

제 1 장 총칙

제 21 조 이동 자유의 제한

억류국은 포로를 억류할 수 있다. 억류국은 그들이 억류되어 있는 수용소를 일정한 한계를 넘어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또는 위에 말한 수용소가 울타리로 둘러싸인 경우에는 그 주위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포로들에게 과할 수 있다. 형벌 및 징계법에 관한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포로는 엄중하게 감금되어서는 아니된다. 단,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또한 그러한 감금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계속되는 동안은 예외로 한다.

포로는 그들이 의존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 선서 또는 약속에 의하여 불완전 또는 완전 석방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특히 그들의 건강상태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경우에 취하여야 한다. 포로는 선서 또는 약속에 의하여 자유를 수락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아니된다.

전쟁이 개시되면, 각 충돌당사국은 그 국민이 선서나 약속에 의한 자유의 수락을 허용하거나 또는 금지하는 자국 법령을 상대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통고된 법령에 따라 선서 또는 약속하여 석방된 포로는 그들의 개인적인 명예를 걸어 그들이 의존하는 국가와 그들을 포로로 한 국가에 대하여 그들의 선서 또는 약속 사항을 양심적으로 수행할 의무를 진다. 그러한 경우에, 그들의 의존하는 국가는 행하여진 선서 또는 약속에 배치되는 용역을 그들에게 요구하거나 수락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

제 22 조 억류장소 및 억류조건

포로는 육지에 소재하며 또한 위생상 및 보건상의 모든 보장을 주는 건물에 한하여 억류될 수 있다. 포로들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로들을 형무소에 억류하지 못한다.

비위생적인 지역에 또는 기후가 그들에게 해로운 지역에 억류되어 있는 포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더 호적한 기후로 이전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포로를 그들의 국적과 언어 및 관습에 따라 수용소 건물에 집결시켜야 한다. 단, 그러한 포로는 그들의 동이가 없는 한 그들이 포로로 되었을 때 그들이 복무하던 군대에 소속한 포로로부터 격리시키지 못한다.

제 23 조 포로의 안전

포로는 어떠한 때에도 전투 지대의 포화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보내거나 또는 억류하지 못하며, 또한 그의 존재를 일정한 지점이나 지역을 군사작전으로부터 면제되도록 이용하지 못한다.

포로는 지방의 민간인 주민과 동일한 정도로 공중 폭격과 기타의 전쟁의 위협에 대한 대피소를 가져야 한다. 그들의 숙사를 위에 말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임무에 종사하는 자들을 제외하고 포로들은 경보발령과 동시에 조속히 그러한 대피소에 대피할 수 있다. 주민을 위

하여 취한 기타의 보호조치도 그들에게 적용된다.

억류국들은 이익보호국의 중계를 통하여 포로수용소의 지리적 위치에 관한 모든 유용한 정보를 관계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포로수용소는 군사상 고려로서 허용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주간에 공중으로부터 명료하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PW 또는 PG라는 문자로서 표시되어야 한다. 단, 관계국기는 다른 표시 방법에 대하여 합의할 수도 있다. 포로수용소 이외에는 위와 같이 표시하지 못한다.

제 24 조 상설통과 수용소

반영구적인 임시수용소나 임시수용소는 본부에 기술한 바와 유사한 조건하에 설비되어야 하며, 또한 동 수용소 내의 포로는 다른 수용소 내에서의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제 2 장 포로의 숙소, 식량 및 피복

제 25 조 숙소

포로는 동일한 지역에 숙영하는 억류국의 군대와 동일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영사에 수용되어야 한다. 위에 말한 조건은 포로의 습관 및 풍속을 참작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들의 건강에 해롭지 아니하여야 한다.

앞의 규정은 총 면적 및 최저한의 공간 및 일반적 설비, 침구 및 모포에 관하여 특히 포로의 침실에 대하여 적용된다. 포로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건물은 습기가 완전히 방지되고 또한 충분히 난방이 되며, 특히 일몰부터 소등시까지 점등되어야 한다.

화재의 위험에 대하여 만전의 예방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남자포로뿐만 아니라 여자포로도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에 있어서는 그들에 대하여 분리된 침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26 조 식량

매일의 기본 급식은 양, 질 및 종류에 있어서 포로로 하여금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체중의 감소 또는 영양실조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포로의 습관적 식품도 참작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노동하는 포로에게, 그들이 취업하고 있는 노동에 필요한 추가의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포로에 대하여는 충분한 음료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흡연을 허가하여야 한다.

포로는 가능한 한 그들 식사의 조리에 관여시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포로를 취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포로에 대하여는 그들이 소지하는 다른 식량을 스스로 조리하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적절한 건물은 식당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식량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인 징벌은 금지한다.

제 27 조 피복

억류국은, 포로가 억류되어 있는 지역의 기후를 고려하여, 피복, 내의 및 신발을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기후에 적합한 경우에는 억류국이 포획한 적군의 제복을 포로의 피복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전기물품의 정기적인 교환 및 수선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하는 포로는 노동의 성질상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적절한 피복을 공급받아야 한다.

제 28 조 매점

모든 수용소에는 포로가 식량, 비누, 담배 및 일상 사용하는 보통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주보가 설치되어야 한다. 가격은 지방의 시장 가격을 초과하지 못한다.

수용소의 매점에서 얻은 이익금은 포로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별기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포로의 대표는 매점 및 이 기금의 운영에 협력할 권리를 가진다.

수용소가 폐쇄될 때에는 특별기금의 잔액은, 그 기금에 기여한 자들과 동일한 국적의 포로들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국제복지기구에 인도하여야 한다. 전반적 송환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익금은, 관계국가간에 반대되는 협정이 없는 한 억류국에 의하여 보관된다.

제 3 장 위생 및 의료

제 29 조 위생

억류국은 수용소의 청결 및 위생의 확보와 전염병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위생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포로에게는 그들이 주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생상 규칙에 합치되고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는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여자포로가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에 있어서는 그들을 위하여 분리된 화장실을 설비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소에 설비되어야 할 목욕탕 및 샤워 외에, 포로에게는 세면과 개인적 세탁을 위한 충분한 물과 비누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포로에게는 필요한 설비, 시설 및 시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 30 조 의료

각 수용소에는 포로들이 필요한 치료와 적당한 식사 요양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병동이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염병 또는 정신병 환자를 위하여 격리 병동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병에 걸린 또는 그 상태가 특별한 치료, 외과수술 또는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포로들은 그들의 송환이 가까운 장래에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치료를 행할 수 있는 어떠한 군 또는 민간의료기관이라도 수용되어야 한다. 신체장애자, 특히 맹인에게 부여될 치료를 위하여 또한 그들의 갱생을 위하여 송환시까지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포로는 가급적 그들이 의존하는 국가의 또한 가능하다면 그들의 국적을 가진 의료요원의 치

료를 받아야 한다.

포로는 진찰을 받기 위하여 의료당국에 출두함을 방지되어서는 아니된다. 억류 당국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치료를 받는 모든 포로에 대하여 그들의 병 또는 부상의 성격과 치료받는 기간 및 종류를 표시하는 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의 사본 1통은 중앙포로 기구에 송부한다.

포로를 양호한 건강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특히 의치 및 기타의 보신용 장구 및 안경의 비용을 포함하는 의료비용은 억류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31 조 건강검진

포로의 건강검진은 적어도 월1회 행하여야 한다. 그 검사에서는 각 포로의 체중을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그 검사는 특히 포로의 건강, 영양 및 청결상태의 일반적 상태를 관리하고 또한 전염병, 특히 결핵, 말라리아 및 성병을 검출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결핵의 조기 검출을 위하여 집단적인 소형 방사선 사진의 정기적 촬영등 이용 가능하고 가장 유효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32 조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포로

억류국은 그들 군대의 의무대에 배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의사, 치과의사, 간호부 또는 간호사인 포로에 대하여 동일한 국가에 소속하는 포로를 위하여 그들의 의료상의 업무를 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들의 포로신분은 계속되지만, 억류국에 의하여 억류된 의무요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그들은 제49조에 의거한 다른 어떠한 노동으로부터도 면제된다.

제 4 장 포로를 원조하기 위하여 억류된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

제 33 조 억류된 요원의 권리 및 특권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은 억류국이 포로를 원조하기 위하여 억류하는 동안 포로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그들은 적어도 본 협약의 혜택 및 보호를 받으며 또한 포로에 대하여 의료상의 간호 및 종교상의 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들은, 억류국의 군법의 범위내에서 억류국의 권한 있는 기관의 관리하에 그들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포로들 특히 자기가 소속하는 군대에 소속하는 포로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의료 및 종교에 관한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의료 또는 종교상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음의 편의를 향유한다.

가. 그들은 수용소 밖에 있는 작업반 또는 병원에 있는 포로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함이 허가된다. 이를 위해서 억류국은 필요한 수송 수단을 그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제공한다.

나. 각 수용소의 선임 군의관은 억류되어 있는 의무요원의 활동에 관련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수용소의 군 당국에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하여 충돌당사국은, 전쟁의 개시와 함께 요원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제네바

협약 제26조에 말한 단체의 의무요원을 포함하는 전 의무요원의 상당한 계급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이 선임 군의관 및 군중은 그들의 임무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수용소의 권한 있는 당국과 교섭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당국은 이들 문제에 관한 통신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편의를 그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그러한 요원은 그들이 억류되어 있는 수용소의 내부규율에 따라야 하나, 그들의 의무상 또는 종교상의 임무에 관계가 있는 것 이외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충돌당사국들은, 전쟁중 억류된 요원의 가능한 교체에 관하여 합의하고 또한 따라야 할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전기의 규정은 포로에 관한 의무 또는 종교상의 분야에서 억류국에 부과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종교적, 지적 및 육체적 활동

제 34 조 종교상의 의무

포로는 군 당국이 정하는 일상의 규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들 신앙의 종교의식에 참석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들의 종교상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를 가진다. 종교적 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 적당한 건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 35 조 억류된 종교요원

적국의 수중에 들어가거나 포로를 원조하기 위하여 머물러 있거나 억류되고 있는 목사는 그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포로에 대하여 종교상의 임무를 행하고 또한 같은 종교에 속하는 포로에 대하여 자유로이 자기의 성직을 행함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들 요원은 같은 군대에 속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또는 같은 종교에 속하는 포로가 있는 각종의 수용소 및 작업반에 배속되어야 한다. 이들 요원은 그들의 수용소밖에 있는 포로를 방문하기 위하여 제33조에 규정하는 수송수단을 포함하는 필요한 편의를 향유한다. 이들 요원은 검열을 받을 것으로 그들의 종교상의 임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억류국의 종교기관 및 국제적 종교단체와 통신할 자유를 가진다. 그들이 이 목적으로 발송하는 서한 및 엽서는 제71조에 규정하는 할당량과는 별도로 한다.

제 36 조 성직자인 포로

성직자인 포로로서 그의 소속부대의 군중이 아닌자는 종파의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한 종파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 자유로이 군중의 직무를 행할 자유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억류국이 억류하는 종교요원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다른 어떠한 노동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 37 조 자기종교의 성직자를 갖지 않는 포로

포로들이 억류된 목사나 그들 종파에 속하는 포로인 성직자의 원조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포로들의 종파이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종파에 속하는 성직자 또는 그러한 성직자가 없을 때에는 종교적 견지에서 가능하다면, 자격 있는 평신도는, 관계 포로들의 요청에 따라 이 자리를 메우기 위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이 임명은 억류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고 관계포로들 및 필요한 때에는 동일한 종교의 현지 종교기관의 동의를 얻어서 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임명된 자는 억류국이 기술 및 군사상의 안전을 위하여 확립한 모든 규칙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 38 조 오락, 연구, 운동경기

억류국은 모든 포로의 개인적 취미를 존중하여 포로들의 지적, 교육적 및 오락적 활동과 운동경기를 장려하며 또한 포로들에게 적당한 장소 및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 포로들이 이것을 활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포로들은 운동경기를 포함하는 신체운동을 행할 기회와 또한 문밖에 나갈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수용소에 충분한 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6 장 규율

제 39 조 관리. 경례

모든 포로수용소는 억류국의 정규군대에 속하는 책임있는 장교의 직접지휘하에 두어야 한다. 그러한 장교는, 본 협약의 사본을 소지하고 수용소 직원 및 경비원이 본 협약의 규정을 확실히 알고 있도록 하며 또한 그의 정부의 지시하에 본 협약의 적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장교를 제외한 포로들은 억류국의 모든 장교들에 대하여 경례하고 또한 자국군에 적용되는 규칙이 정하는 경의의 외부적 표시를 나타내어야 한다.

장교 포로는 억류국의 상급장교에 대하여만 경례를 하여야 한다. 단, 그들은 수용소장에 대하여는 그의 계급에 관계없이 경례를 하여야 한다.

제 40 조 기장 및 훈장

계급장 및 국적 표지 및 훈장의 착용은 허가하여야 한다.

제 41 조 협약 및 억류국의 규칙 및 명령의 게시

모든 수용소에는 본 협약 및 그 부속서의 본문과 제6조에 규정하는 모든 특별협정의 내용을 포로가 사용하는 언어로써 모든 포로가 읽을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게시를 볼 기회가 없는 포로에 대하여는 그의 청구에 응하여 게시문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포로의 행동에 관한 각종 규칙, 명령, 통고 및 공시는 포로가 이해하는 언어로써 전하여야 한다. 이들 규칙, 명령, 통고 및 고시는 전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본은 포로 대표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포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발하는 명령 및 지령도 당해 포

로가 이해하는 언어로 하여야 한다.

제 42 조 무기의 사용

포로, 특히 도주하고 있는 또는 도주하려 하는 포로에 대한 무기의 사용은 극단적인 조치 가 되는 것으로서 이에 앞서 당해 사정에 적합한 경고를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

제 7 장 포로의 계급

제 43 조 계급의 통지

충돌당사국은, 적대 행위가 개시될 때에 같은 계급에 속하는 포로들 대우의 평등을 보장하 기 위하여, 본 협약 제4조에 말한 모든 자의 직위와 계급을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 그 후에 설 정된 직위 및 계급도 동일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포로가 속하는 국가에 의하여 정식으로 통고된 포로의 계급의 승진을 승인하여 야 한다.

제 44 조 장교의 대우

장교인 포로 및 장교에 상당하는 지위의 포로는 그의 계급 및 연령에 적당한 고려를 하고 대우하여야 한다.

장교 수용소에 있어서의 잡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 군대의 사병으로서 가급적 동일한 언어를 말하는 자를 장교인 포로 및 장교에 상당하는 지위의 포로의 계급을 고려하여 충분 한 인원만큼 동수용소에 파견하여야 한다. 이들 사병에 대하여는 다른 어떤 노동도 요구하여 서는 아니된다.

장교 자신에 의한 식사의 관리에 대하여는 모든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45 조 기타 포로의 대우

장교인 포로 및 장교에 상당하는 지위의 포로 이외의 포로는 그의 계급 및 연령에 적당한 고려를 하고 대우하여야 한다.

이들 포로 자신에 의한 식사의 관리에 대하여는 모든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8 장 수용소에 도착한 후의 포로의 이동

제 46 조 조건

억류국은 포로의 이동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로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포 로의 송환을 일층 곤란하게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포로의 이동은 항상 인도적으로 또한 억류국의 군대의 이동의 조건보다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포로의 이동에 관하여는 항상 포로가 몸에 익은 기후상태를 고려하

여야 하며 이동의 조건은 여하한 경우에도 포로의 건강을 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억류국은 이동중의 포로에 대하여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식량 및 음료수와 필요한 피복, 숙사 및 의료상의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특히 해상 또는 공중 수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동중의 포로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이동되는 포로의 완전한 명부를 출발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 47 조 이동을 금하는 경우

부상자 또는 병자인 포로는 이동에 의하여 그들의 완쾌가 방해될 염려가 있는 동안은 이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절대로 이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전선이 수용소에 접근한 경우에는 그 수용소의 포로는 충분히 안전한 조건으로 이동할 수 있을 때 또는 포로를 현지에 남겨두면 이동할 경우보다 더 큰 위협에 노출하게 될 때를 제외하고는 이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8 조 이동에 관한 절차

이동의 경우에는 포로에 대하여 그의 출발사실 및 새로운 우편용 주소를 정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포로가 충분히 그의 소지품을 준비하고 또한 그의 가족에 통보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포로에 대하여는 그의 개인용품 및 그들에게 온 통신물과 소포를 휴대함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들 물품의 중량은 이동의 조건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포로가 운반할 수 있는 적당한 중량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 중량은 여하한 경우에도 포로 1인당 2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못한다.

구 수용소로 보내온 통신물 및 소포는 지체없이 포로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수용소장은 포로 대표와 협의하여 포로의 공유물 및 본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제한에 따라 포로가 휴대하지 못하는 소지품의 수송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동의 비용은 억류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3 부 포로의 노동

제 49 조 개관

억류국은 특히 포로들을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의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연령, 성별, 계급 및 신체적 적성을 고려하여 신체적으로 적합한 포로의 노동을 이용할 수 있다.

포로인 하사관들은 감독의 일만을 행함이 요구된다. 그렇게 요구되지 않은 자들은 가능한 그들을 위하여 발견되는 다른 적당한 노동을 요청할 수 있다.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한 지위의 자들이 적당한 노동을 요청할 경우에 그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그러한 일을 찾아내어야 한다. 단,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 50 조 허가된 노동

포로들은, 수용소의 행정, 시설 또는 유지에 관련된 노동 이외에 다음의 종류에 포함되는 노동에 한하여 이를 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가. 농업

나. 원료의 생산 또는 채취에 관련되는 산업, 제조공업(야금업, 기계공업 및 화학공업은 제외한다.) 및 군사적 성질 또는 목적을 가지지 않는 토목업과 건축업,

다. 군사적 성질 또는 목적을 가지지 않는 운송업과 창고업,

라. 상업 및 예술과 공예,

마. 가내 용역,

바. 군사적 성질 또는 목적을 가지지 않는 공익사업,

위의 규정에 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포로들은 제78조에 따라 청원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 51 조 노동조건

포로들은 특히 숙사, 음식, 피복 및 장비에 관하여 적절한 노동조건을 허여야 한다. 그러한 조건은 유사한 노동에 종사하는 억류국의 국민이 향유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후 조건도 고려되어야 한다.

억류국은, 포로들의 노동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포로들이 노동하는 지역에 있어서 노동의 보호에 관한 국내법령 특히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정당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포로들은 훈련을 받아야 하며, 또한 그들이 행하여야 하는 노동에 적합하고, 억류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바에 유사한 보호수단을 제공받아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포로들은 민간인 노동자가 겪는 보통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노동조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징계조치에 의하여 더욱 곤란하게 하지 못한다.

제 52 조 위험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노동

포로는 스스로의 희망하지 않는 한 건강에 해로운 또는 위험한 성질의 노동에 사용하지 못한다.

포로는 억류국 자신의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굴욕적이라고 인정되는 노동에 배치되지 아니한다.

지뢰 또는 유사한 장치의 제거는 위험한 노동으로 간주한다.

제 53 조 노동의 시간

왕복 시간을 포함하는 포로들의 일일 노동시간은 과도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억류국의 국민으로서 동일한 노동에 고용되고 있는 당해 지방의 민간인 노동자에게 허용되는 바를 초과하지 못한다.

포로들은 매일의 노동의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휴식을 허여받아야 한다. 이 휴식은 억류국의 노동자들이 취할 권리가 있는 휴식이 더 길 경우에는 그러한 휴식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그들은 이 휴식외에, 되도록이면 일요일 또는 그들의 출신국에 있어서의 휴일에 매주 24시간 연속의 휴식을 허여받아야 한다. 또한 1년간 노동한 모든 포로들은 8일간 연속의 유급 휴식을 허여받아야 한다.

청부 노동과 같은 노동 방법이 사용될 경우에 그에 의하여 작업기간이 과도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54 조 노동임금, 노동재해 및 노동으로 인한 질병

포로들이 받아야 하는 노동 임금은 본 협약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노동에 관련하여 재해를 입는 또는 그들의 노동중 또는 노동의 결과로서 질병에 걸리는 포로들은 그들의 사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간호를 받아야 한다. 또한 억류국은, 그러한 포로들에게 그들이 의존하는 국가에게 그들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또한 그 진단서의 사본을 제123조에 규정된 중앙포로기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55 조 의료 검진

노동에 대한 포로의 적성은 적어도 매월 1회 의사의 진찰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 진찰은 포로가 명령받은 노동의 성질을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포로는 그가 노동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할 경우에, 그의 수용소의 의무 당국에 출두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의사들은 그들의 견해상 노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포로들을 노동으로부터 면제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 56 조 노동분견소

노동분견대의 조직 및 관리는 포로수용소의 조직 및 관리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모든 노동분견대는 포로수용소의 감독하에 두며 또한 관리면에 있어서는 그 일부로 한다. 위에 말한 수용소의 군당국 및 대장은 그들의 정부의 지시하에 노동분견대에 있어서의 본 협약의 규정의 준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수용소 소장은 그의 수용소에 소속하는 노동 분견대의 최신의 기록을 보관하며, 또한 그 수용소를 방문할 수 있는 이익보호국, 국제적십자위원회 및 포로들에게 원조를 주는 기타의 단체의 대표들에게 그 기록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 57 조 사인을 위하여 노동하는 포로

개인을 위하여 노동하는 포로들의 대우는, 동 개인이 그들을 감시 및 보호하는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본 협약이 정하는 대우보다도 불리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억류국 및 그러한 포로들이 소속하는 수용소의 군당국 및 수용소장은 그러한 포로들의 급양, 간호 및 노동임금의 지불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그러한 포로들은 그들이 속하는 수용소내의 포로 대표와 연락을 보지(保持)할 권리를 가진다.

제 4 부 포로들의 금전 관계

제 58 조 현금

적대 행위가 시작된 때, 또한 이익보호국과 이 문제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할 때까지 억류국은 현금 또는 이에 유사한 형식으로 포로들이 소지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 그들이 정당하게 소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들로부터 압수되었거나 또는 그들에게 인도되지 않은 초과금액은 그들이 예치한 금전과 같이 그들의 계정에 올려야 하며, 또한 그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다른 통화로 교환하지 못한다.

포로들이 수용소 밖에서 용역 또는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허용될 경우에 그러한 지불은 포로 자신 또는 수용소 행정부가 행하며, 동 수용소 행정부는 동 지불금액을 관계포로들의 계정에서 공제한다. 억류국은 이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을 정한다.

제 59 조 포로로부터 압수된 현금

포로가 된 때에 포로들로부터 제18조에 따라 압수한 억류국의 통화로 된 현금은 본부 제 64조의 규정에 따라 그들의 독립 계정에 올려야 한다.

포로가 된 때에 포로들로부터 압수한 기타의 통화를 억류국의 통화로 교환한 금액도 그들의 독립계정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 60 조 봉급의 선지불

억류국은 모든 포로에 대하여 월급을 선지불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의 액을 억류국의 통화로 환산하여 정한다.

제1류: 병장이하의 계급의 포로 - 8 스위스 프랑

제2류: 병장 및 기타의 하사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포로 - 12 스위스 프랑

제3류: 준위 및 대위계급이하의 임관된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포로 - 50 스위스 프랑

제4류: 소령, 중령, 대령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포로 - 60 스위스 프랑.

제5류: 장성급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포로 - 75 스위스 프랑.

그러나 관계 충돌당사국은, 특별협정에 의하여 위의 부류의 포로가 받아야 할 선불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제1항에 정하는 금액이 억류국의 군대의 봉급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경우 또는 어떤 이유에 의하여 억류국을 심히 난처한 입장에 서게 할 경우에는, 전기 금액의 변경을 위하여 포로들이 소속하는 국가와 특별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억류국은,

가. 전기 제1항에 정하는 금액을 계속 포로의 계정에 예치하여야 하며,

나. 포로에 대하여 선지불된 금액중 그들 자신의 사용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된 금액을 합리적인 금액으로 임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금액은 제1류에 관하여는 억류국이 자국 군대의 구성원에 지급하는 금액보다 소액이어서는 아니된다.

제한에 대한 이유는 지체없이 이익보호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61 조 추가급여

역류국은 포로들이 소속하는 국가가 그들에게 송부하는 금액을 추가급여로서 포로들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단, 분배되는 금액이 동일부류의 각 포로에 대하여 동일금액이며 당해국에 속하는 동일부류의 모든 포로에게 분배되고, 또한 가능한 한 조속히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그들의 독립계정에 올릴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 추가 급여는 역류국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여하한 의무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 62 조 노동임금

포로들은 역류당국에 의하여 공정한 노동임금을 직접 지급 받는다. 그 임금은 역류당국이 정하는 여하한 경우에도 노동일에 대하여 4분의 1 스위스 프랑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역류국은 자국이 정하는 임금의 액수를 포로자신과 이익보호국의 중계에 의하여 포로가 소속하는 국가에 통지하여야 한다.

노동임금은 수용소의 행정, 시설 또는 유지에 관련되는 임무 또는 숙련 노동, 반숙련 노동을 항구적으로 할당받은 포로 및 포로를 위하여 종교상 또는 의료상의 임무의 수행을 요구 받은 포로에게 역류당국이 동일하게 지불하여야 한다.

포로 대표와 그 고문 및 보조자의 노동임금은 주보의 이익으로 유지되는 기금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그 임금의 액은 포로대표가 정하고, 또한 수용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기의 기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 포로에게 공정한 노동임금을 역류당국이 지불하여야 한다.

제 63 조 금전의 송금

포로들은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그들에게 송금된 금전을 수령하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모든 포로들은, 역류국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다음 조에 규정하는 그들의 계정의 대변 잔고를 처분할 수 있으며, 역류국은 요청받은 지불을 하여야 한다. 포로들은 또한 역류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상 또는 통화상의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외국으로 향하는 지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역류국은 포로가 부양가족에게 보내는 지불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포로들은, 여하한 경우에도 또한 그들이 소속하는 국가의 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자국에게 지불을 행하도록 할 수 있다. 즉 역류국은 이익보호국을 통하여 전술한 국가에게 포로, 지불금의 수령자 및 역류국의 통화로 표시한 요 지불금액에 관한 모든 필요한 세목을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그 통지서에는 당해 포로가 서명하고 또한 수용소장이 부서한다. 역류국은 전기의 금액을 포로의 계정에서 공제하고 이 금액을 포로가 소속하는 국가의 계정에 대기한다.

역류국은 전기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본 협약 제5부속서의 표본규칙을 참고할 수 있다.

제 64 조 포로의 계정

역류국은 각 포로에 대하여 적어도 다음 사항을 표시하는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1. 포로에게 지불할 금액 또는 급료의 선지불로서나 노동임금으로서 포로가 수령한 금액 또는 기타의 원천에서 취득한 금액 포로로부터 압수한 역류국의 통화로 된 금액 및 포

- 로로부터 압수하여 그의 요청에 따라 억류국의 통화로 교환한 금액.
2. 현금 또는 기타의 유사한 형식으로 포로에게 지불된 금액, 포로를 위하여 또한 그 요청에 따라 지불된 금액 및 제63조제3항에 의하여 송금된 금액.

제 65 조 포로의 계정관리

포로의 계정에 기입된 모든 항목은 당해 포로 또는 그를 대리하는 포로 대표가 부서(附書) 또는 이니시알(initial) 하여야 한다.

포로들은 언제든지 그들의 계정을 열람하고 또한 그 사본을 입수할 적당한 편의를 허여받아야 한다. 그들의 계정은 이익보호국의 대표자가 수용소를 방문할 때에 감사할 수 있다.

포로들이 수용소에서부터 다른 수용소로 이동될 때에는, 포로의 개인계정을 그와 함께 이전한다. 억류국으로부터 다른 억류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포로들의 재산으로서 억류국의 통화로 되어 있지 않는 금전은 그들과 함께 이전한다.

이 포로들은 그들의 계정에 대기되어 있는 다른 모든 금전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계총돌당사국은 이익보호국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포로의 계정의 금액을 상호 통고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제 66 조 계정의 청산

포로의 신분이 석방 또는 송환에 의하여 종료된 때에는 억류국은 포로의 신분이 종료한 때에 있어서의 포로의 대변잔고를 표시하는 증명서를 포로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억류국의 권한 있는 장교가 서명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또한 포로가 소속하는 국가에게 이익보호국을 통하여 송환, 석방, 도주,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로 포로의 신분이 종료한 모든 포로에 관하여 적절한 모든 상세와 그들 포로의 대변잔고를 표시하는 일람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그 일람표는 1매마다 억류국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인증하여야 한다.

본조의 위의 어느 규정도 그 총돌당사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포로가 소속하는 국가는 포로의 신분이 종료한 때에 억류국으로부터 포로에게 지불할 대변잔고를 당해 포로에 대하여 지불할 책임을 진다.

제 67 조 총돌당사국간의 정산

제60조에 따라 포로에게 지급되는 급료의 선지불은 포로가 소속하는 국가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급료의 선 지불과 제63조 3항 및 제68조에 의하여 억류국이 행한 모든 지불은 적대행위가 끝나는 때에 관계국간의 협정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68 조 보상의 청구

노동에 의한 부상 또는 기타의 신체장애에 대한 포로의 보상청구는 이익보호국을 통하여 포로가 소속하는 국가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제54조에 따라 여하한 경우에도 부상 또는 신체장애에 대하여 그의 성질, 그것이 발생한 사정 및 이에 대하여 행한 의료상 또는 병원에서의 치료에 관한 명세를 표시하는 증명서를 당해 포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는 억류국의 책임있는 장교가 서명하고 또한 의료명세는 군의관이 증명한다.

제18조에 의하여 억류국이 압수한 개인용품, 금전 및 유가물로서 송환시에 반환되지 않았던 것과 포로가 입은 손해로서 억류국 또는 그 기관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의한다고 인정되는 것에 관한 포로의 보상청구도 포로가 소속하는 국가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단, 전기의 개인용품으로서 포로가 포로의 신분에서 있는 동안 그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억류국부담으로 현물보상을 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여하한 경우에도 전기의 개인용품, 금전 또는 유가물이 포로에게 반환되지 않았던 이유에 관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또 책임있는 장교가 서명한 증명서를 포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의 사본 1통은 제 123조에 정하는 중앙포로기구를 통하여 포로가 소속하는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5 부 포로의 외부와의 관계

제 69 조 취하는 조치의 통지

억류국은 포로가 그의 권력내에 들어온 때에는 곧 포로 및 이익보호국을 통하여 포로가 소속하는 국가에게 본부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그 조치가 후에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에 대하여 동일하게 전기의 관계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70 조 포로통지표

모든 포로는 포로가 된 때에 즉시, 또는 수용소(임시수용소 포함)에 도착한 후 1주일내에, 또는 질병에 걸린 때나 또는 병원이나 다른 수용소로 이동된 경우에도 그 후 1주일내에 그 가족 및 제123조에 정하는 중앙정보기구에 포로로 된 사실, 주소 및 건강상태를 통지하는 통지표를 직접 송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통지표는 가능한 한 본 협약의 부속양식과 같은 형식의 것이어야 한다. 그 통지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송부하여야 하고 여하한 경우에도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1 조 통신

포로들은 편지나 엽서를 송부하고 또한 받을 것이 허가되어야 한다. 억류국이 각 포로가 발송하는 편지 및 엽서의 수를 제한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수는 제70조에 정하는 통지표를 제외하고 매월 편지 2통 및 엽서 4통 이상 이어야 한다. 이들 편지 및 엽서는 가능한 한 본 협약의 부속양식과 같은 형식의 것이어야 한다. 억류국이 필요한 검열의 실시상 유능한 번역자를 충분히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번역에 곤란을 초래하고 따라서 당해 제한을 행함이 포로의 이익이라고 이익보호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의 제한을 과할 수가 있다. 포로에게 보낸 통신이 제한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은 통상 억류국의 요청에 따라 포로가 소속하는 국가만이 명할 수 있다. 전기의 편지 및 엽서를 억류국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의 이유로 지연시키거나 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장기간에 걸쳐 가족으로부터 소식을 받지 못하는 포로 또는 가족과의 사이에 통상의 우

편노선에 의하여 서로 소식을 전할 수가 없는 포로 및 가족으로부터 심히 먼 장소에 있는 포로에 대하여는 전보를 발신함을 허가하여야 한다. 그 요금은 억류국에 있어서의 포로의 계정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포로가 처분할 수 있는 통화로 지불하여야 한다.

포로는 긴급한 경우에도 이 조치에 의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 포로의 통신은 원칙적으로 모국어로 써야 한다. 충돌당사국은 기타의 언어로 통신함을 허가할 수 있다.

포로의 우편물을 넣는 우편물함낭은 확실히 봉인하고 또한 그 내용을 명시한 표찰을 붙이고 난 후에 목적지 우체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 72 조 구호품 I. 일반원칙

포로에게는, 특히 식량, 피복, 의료품 및 포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서, 종교용품, 과학용품, 시험용지, 악기, 운동구 및 포로에게 연구 또는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용품을 포함하여 종교상, 교육상 또는 오락상의 용품이 들어 있는 개인 또는 집단적인 화물을 우편 또는 기타의 경로에 의하여 수령함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들 화물은 억류국에 대하여 본 협약에서 억류국에 과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의 화물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유일한 제한은 이익보호국이 포로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제안하는 제한 또는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기타 포로에게 원조를 주는 단체가 운송상의 과도한 혼잡으로 인하여 당해 단체 자신의 화물에 관하여서만 제안하는 제한으로 한다.

개인적 화물 또는 집단적 구호품의 발송에 관한 조건은 필요하다면 관계국간의 특별협정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관계국은 여하한 경우에도 포로에 의한 구호품의 수령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도서는 피복 또는 식량의 화물중에 넣어서는 아니된다. 의료품은 원칙적으로 집단적 화물속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73 조 II. 집단적 구호품

집단적 구호품의 수령 및 분배의 조건에 관하여 관계국간의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 협약에 부속하는 집단적 구호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전기의 특별협정은 여하한 경우에도 포로대표가 포로에게 보내온 집단적 구호품을 보유하고 분배하고 또한 포로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처분하는 권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전기의 특별협정은 또한 이익보호국,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포로에게 원조를 주는 기타의 단체로서 집단적화물의 전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들의 대표자가 수령인에 대한 당해 화물의 분배를 감독할 권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4 조 우편요금 및 수송요금의 면제

포로를 위한 모든 구호품은 수입세, 세관수수료 또는 기타의 과징금으로부터 면제된다. 포로에게 보내오고 또는 포로가 발송하는 통신, 구호품 및 허가된 송금으로서 우편에 의하는 것은 직접 송부되거나 제122조에 정하는 정보국 및 제123조에 정하는 중앙포로정보기구를 통하여 송부되거나 불문하고 발송국, 접수국 및 중계국에서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포로에게 발송된 구호품이 중량 또는 기타의 이유로서 우편으로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수송비는 억류국의 관리하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어서는 억류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본

협약의 기타의 계약국은 각자의 영역에서의 수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관계국간에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의 구호품의 수송에 요하는 비용으로서 전기에 의하여 면제되는 비용을 제외한 것은 발송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국은 포로가 발신하고 또는 포로에게 보내온 전보의 요금을 가능한 한 염가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75 조 특별한 수송수단

군사행동으로 인하여 관계국이 제70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7조에 정하는 송부품의 수송을 보장하는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이익보호국,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충돌당사국이 정당히 승인한 기타의 단체는 화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적당한 수송수단에 의하여 그 송부품의 전달을 보장하도록 기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계약국은 이들에게 전기의 수송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특히 필요한 안도권을 주어서 수송수단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전기의 수송 수단은 다음의 것의 수송을 위하여도 사용할 수 있다.

가. 제123조에 정하는 중앙포로정보기구와 제122조에 정하는 각국의 정보국과의 사이에 교환되는 통신, 명부 및 보고서

나. 이익보호국,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포로에게 원조를 주는 기타의 단체가 그의 대표 또는 충돌당사국과의 사이에 교환되는 포로에 관한 통신 및 보고서

전기의 규정은 충돌당사국이 희망하는 경우에 다른 수송수단에 관하여 협정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서로 합의된 조건으로 그의 수송수단에 대하여 안도권이 주어짐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송수단의 사용에 요하는 비용은 그로 인하여 자국민이 이익을 받는 충돌당사국이 안분하여 부담한다.

제 76 조 검열 및 검사

포로에게 보내오고 또는 포로가 발송하는 통신의 검열은 가능한 한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그 통신은 발송국 및 접수국만이 각각 1회에 한하여 검열할 수 있다.

포로에게 보내온 화물의 검사는 그중의 물품을 손상할 염려가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서는 안된다. 그 검사는 문서 또는 인쇄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령인 또는 수령인이 정당히 위임한 포로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포로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적인 화물의 인도는 검사의 곤란을 구실로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충돌당사국이 명하는 통신의 금지는 군사적 이유에 의한 것이거나 정치적 이유에 의한 것이거나를 불문하고 일시적이어야 하고 그 금지기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

제 77 조 법률문서의 작성, 집행 및 전달

역류국은 포로를 위하여 작성되거나 또는 포로들이 발송하는 종류의 서류, 특히 위임장과 유서를 이익보호국이나 제123조에 규정한 중앙포로정보국을 통하여 발송하는데 있어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억류국은 포로들을 위한 서류의 작성과 집행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억류국은 포로들이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허용해야 하며 포로들의 서명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절차라도 강구하여 주어야 한다.

제 6 부 포로와 당국과의 관계

제 1 장 억류 조건에 관한 포로의 이의 제청

제 78 조 이의제청 및 요청

포로들은 그 권력하에 그들이 있는 군 당국에 대하여 억류조건에 관한 요청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포로들은 또한 그 억류 조건중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익보호국의 대표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포로대표를 통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이익보호국의 대표자에 대하여 신청할 무제한의 권리를 가진다.

전기의 요청 및 이의는 제한하지 못하며 또한 제71조에 정하는 통신의 할당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요청 및 불평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처벌의 이유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포로 대표는 이익보호국의 대표자에 대하여 수용소의 상태 및 포로의 요청에 관한 정기적 보고를 할 수가 있다.

제 2 장 포로대표

제 79 조 선거

포로들은 장교들이 있는 장소를 제외하고 포로가 있는 모든 장소에 있어서, 군당국, 이익보호국, 국제적십자위원회 및 포로를 원조하는 기타의 단체에 대하여 그들의 대표행위를 위임할 포로대표를 6개월마다 또는 결원이 생긴 때마다 자유로이 비밀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이 포로대표는 재선될 수 있다.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자의 수용소 또는 혼합 수용소에서는 포로중의 선임장교가 그 수용소의 포로대표로 인정된다. 장교의 수용소에서는 포로대표는 장교에 의하여 선출된 1인 또는 2인 이상의 고문에 의하여 보좌된다. 혼합수용소에서는 포로대표의 보조자는 장교가 아닌 포로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또한 장교가 아닌 포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포로가 책임을 지고 있는 수용소의 행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포로의 노동수용소에는 동일국적의 장교포로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들 장교는 본조 제1항에 따라 포로대표로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포로대표의 보조자는 장교가 아닌 포로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선출된 포로 대표는 모두 그 임무에 취임하기 전에 억류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억류국은 포로에 의하여 선출된 포로대표의 승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거부의 이유를 이익보호국에 통

지하여야 한다.

포로대표는 여하한 경우에도 자기가 대표하는 포로와 동일한 국적, 언어 및 관습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리하여 국적, 언어 및 관습에 따라 상이한 수용소에 구분 수용된 포로는 전 각항에 따라 그 구분마다 각자의 포로대표를 가진다.

제 80 조 임무

포로대표는 포로의 육체적, 정신적 및 지적 복지를 위하여 공헌하여야 한다.

특히 포로가 그들 상호간에 상호부조의 제도를 조직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이 조직은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포로에게 위임되는 특별한 임무와는 별도로 포로 대표의 권한에 속한다.

포로대표는 그의 임무만의 이유로서는 포로가 범한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81 조 특권

포로대표들은, 그들의 임무의 수행이 다른 노동에 의하여 일층 곤란하게 될 때에는 다른 노동에 강제되지 아니한다.

포로대표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보조자를 포로 중에서 지명할 수가 있다. 포로 대표들에 대하여는, 모든 물질적 편의, 특히 그 임무(노동분견대의 방, 보급품의 수령 등)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어느 정도의 행동의 자유를 허가하여야 한다.

포로대표들에게 포로들이 억류되어 있는 시설을 방문함이 허가되어야 한다. 모든 포로들은 그들의 포로대표들과 자유로이 협의할 권리를 가진다.

포로대표들에 대하여는 또한 억류국의 당국, 이익보호국,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이들의 대표, 혼성의료위원회 및 포로를 원조하는 단체와 우편 또는 전신으로 통신하기 위한 모든 편의를 주어야 한다. 노동분견대의 포로대표들은 주요 수용소의 포로대표들과 통신하기 위하여 동일한 편의를 향유한다. 이 통신은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제기조에 정하는 할당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동되는 포로대표들은 그들의 후임자에게 현재의 사정을 설명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받아야 한다.

해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이유를 이익보호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형벌 및 징계벌

I. 총칙

제 82 조 적용법령

포로는 억류국의 군대에 적용되는 법률, 규칙 및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그의 법률, 규칙 및 명령에 대한 포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법상 또는 징계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그 절차와 처벌은 본장의 규정에 배치되어서는 아니된다.

억류국의 법률, 규칙 또는 명령이 포로가 행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선언한 경우 동일행위가

억류국의 군대의 구성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처벌할 것이 못되는 때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별만을 과할 수 있다.

제 83 조 징계 또는 사법절차의 선택

억류국은 포로가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사법상 또는 징계상의 절차 중의 어떤 것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권한있는 당국이 최대의 관용을 보이고 또한 가급적 사법상의 조치보다도 징계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 84 조 재판소

포로는 군사재판소만이 재판할 수 있다. 단, 포로가 범하였다고 주장되어 있는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억류국의 군대의 구성원을 민사재판소에서 재판함이 억류국의 현행법령상 명백히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포로는 여하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인정된 독립과 공평에 관한 불가결의 보장을 주지 않는 특히 그 절차가 제105조에 정하는 변호의 권리 및 수단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는 어떠한 종류의 법원에 의하여도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 85 조 포로가 되기 전에 위반한 행위

포로가 되기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억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소추된 포로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본 협약의 혜택을 보유한다.

제 86 조 일사부재리

포로는 동일한 행위 또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두번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 87 조 형벌

억류국의 군당국 및 법원은 포로에 대하여 동일한 행위를 한 억류국의 군대의 구성원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 이외의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

억류국의 법원 또는 당국은 형벌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억류국의 국민이 아니고 당국에 대하여 충성의 의무를 지지 않는 사실 및 피고인이 그의 의사에 관계없는 사정에 의하여 억류국의 권력내에 있는 사실 등을 가능한 한 고려하여야 한다. 전기의 법원 또는 당국은 포로가 소추된 위법행위에 관하여 정하여진 형벌을 자유로히 경감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이 정하는 가장 경한 형벌을 적용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개인의 행위에 대한 집단적 형벌, 육체에 가하는 형벌, 일광이 들어오지 않는 장소에의 구금 및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고문과 잔학 행위는 금지한다.

억류국은 포로의 계급을 박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포로의 계급장의 착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88 조 형벌의 집행

징계벌 또는 형벌에 복하는 장교 포로, 하사관 및 병졸에 대하여는 동일한 벌에 관하여 억류국의 군대중 동등 계급의 구성원에게 주는 대우보다도 더 가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자 포로에 대하여는, 억류국의 군대의 구성원인 여자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받는 것보다 더 가혹한 벌을 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벌에 복하는 동안 가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자 포로에 대하여는, 여하한 경우에도 억류국의 군대의 구성원인 남자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받는 것보다 더 가혹한 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벌에 복하는 동안 가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포로는 징계벌 또는 형벌에 복한 후에는 다른 포로와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II. 징계벌

제 89 조 처벌의 형식

포로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징계벌은 다음과 같다.

1. 30일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포로가 수행할 선지불의 봉급과 노임의 백분의 50 이하의 벌금.
2. 본 협약에 정하는 대우 이외에 부여되고 있는 특권의 정지.
3. 1일 2시간내의 노역.
4. 구치

3에 정하는 벌은 장교에게는 과하지 아니한다.

징계벌은 여하한 경우에도 비인도적인 것, 잔학한 것 또는 포로의 건강에 해로운 것이어서는 안된다.

제 90 조 처벌의 기간

하나의 징계벌의 기간은 여하한 경우에도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율 위반행위에 대한 심문을 기다리는 동안 또는 징계벌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구금 기간은 포로에게 인도하는 본 벌에 통산되어야 한다.

포로가 징계의 결정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동시에 둘 이상의 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추궁되는 때에도 이들 행위간의 관련성유무를 불문하고 전기의 30일의 최대한도는 초과할 수 없다.

징계의 인도와 집행간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포로에 대하여 거듭 징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징계벌의 기간이 10일 이상인 때에는 양 징계벌의 집행사이에는 적어도 3일간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 91 조 성공한 도주

포로의 도주는 다음 경우에는 성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1. 포로가 그가 속하는 국가 또는 동맹국의 군대에 복귀한 경우,
2. 포로가 억류국 또는 그 동맹국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을 떠났을 때,
3. 포로가 억류국의 영해에서 그가 속하는 국가 또는 동맹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함선에

승선했을 때, 단, 상기 함선이 억류국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의 의미에 있어서의 도주에 성공한 후 다시 포로로 된 자에 대하여는 이전의 도주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다.

제 92조 성공하지 못한 도주

도주를 기도하는 포로와 제91조의 의미에 있어서의 도주에 성공하기 전 다시 불잡힌 포로에 대하여는 그 위반행위가 반복된 경우라도 그것에 대하여는 징계별만 과하여야 한다.

다시 불잡힌 포로는 지체없이 권한 있는 군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제88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도주의 결과로서 처벌되는 포로는 특별한 감시하에 둘 수가 있다. 그 감시는 포로의 건강상태를 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되고 포로수용소 내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또한 본 협약에 의하여 포로에게 부여되는 보호의 어떠한 것도 배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93 조 관련된 위반행위

도주 또는 도주의 기도는, 그것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포로가 도주 또는 도주의 기도중에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법절차에 의한 재판에 회부될 경우에 형을 가중하는 정상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포로가 도주를 용이하게 할 의사만으로 행한 위반행위로서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을 동반하지 않는 것, 예컨대 공용재산에 대하여 행한 위법행위, 이득의 의사가 없는 도취, 위조 문서의 작성 또는 행사, 군복 이외의 피복의 착용 등에 대하여는 제83조에 정한 원칙에 따라 징계별만을 과할 수 있다.

도주 또는 도주의 기도를 방조하고 또는 교사한 포로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대하여 징계별만을 과할 수 있다.

제 94 조 재포로 통지

도주한 포로가 다시 불잡힌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2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로가 속하는 국가에 통고하여야 한다. 단, 그 도주가 이미 통고되어 있는 때에 한한다.

제 95 조 절차 : 징계의 결정이 있기까지 동안의 구금

기율 위반행위에 대하여 입건된 포로는 억류국의 군대의 구성원이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입건된 때와 마찬가지로 구금되는 경우와 수용소의 질서 및 기율의 유지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 결정이 있기까지 구금되어서는 아니된다.

기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있기까지의 포로의 구금기간은 최소한도로 하여야 하고 또한 14일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장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은 기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있기까지 구금되어 있는 포로에게 적용한다.

제 96 조 권한있는 당국 및 변호의 권리

기술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는 즉시 조사하여야 한다.

법원 및 상급의 군당국의 기득권은 침해함이 없이 징계별은 수용소장의 자격으로 징계권을 갖는 장교, 또는 그를 대리하거나 그의 징계권이 위임된 책임있는 장교에 의하여서만 인도될 수 있다.

징계권은 여하한 경우에도 포로에게 위임되거나 포로에 의하여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징계결정의 인도에 앞서 입건된 포로에 대하여는 입건된 죄과의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고 또한 당해 포로가 자기의 행위를 해명하고 자기를 변호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 포로에게는 특히 증인을 소환하고 필요하면 자격있는 통역관에게 통역시킬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 판결은 당해포로 및 포로대표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징계의 기록은 수용소장이 보관하고 또한 이익보호국의 대표자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제 97 조 징계벌의 집행 : I. 장소

포로는 여하한 경우에도 감옥, 구치소, 도형장등의 구치시설에 이동하여 징계벌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포로를 징계벌에 복하게 하는 모든 장소는 제25조에 의거한 위생상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징계벌에 복하는 포로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그들 자신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자는 하사관 또는 병졸과 동일장소에 구금하여서는 아니된다.

징계벌에 복하는 여자포로는 남자포로와 분리된 장소에 구금하고 또한 여자의 직접 감시에 두어야 한다.

제 98 조 II. 기본적 보호 : 강요적 보장

징계벌로서 구금되는 포로는 구금된 사실만으로서 본 협약의 규정의 적용이 필연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본 협약규정의 혜택을 받는다. 제78조 및 제126조에 규정된 혜택은 여하한 경우에도 그 포로로부터 박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징계벌에 복하는 포로로부터 그의 계급에 따르는 특권을 박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징계벌에 복하는 포로에 대하여서는 하루에 적어도 두시간 운동하고 또한 옥외에 있음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들 포로에 대하여서는 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매일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 포로는 그의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소의 병동 또는 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그들에게는 읽고, 쓰고 편지를 수발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단, 보내온 소포 및 금전은 처벌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한다. 그 동안 보내온 소포 또는 금전은 포로 대표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포로대표는 그 소포중에 포함되어 있는 변질하기 쉬운 물품을 병실에 인도하여야 한다.

III. 사법절차

제 99 조 요칙 : I. 일반원칙

그 행위당시에 유효하였던 억류국의 법령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포로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재판에 회부하거나 형벌을 과할 수 없다.

입진된 행위를 유죄로 인정시키기 위하여 포로에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제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포로는 자신을 변호할 기회와 자격있는 변호인의 원조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없다.

제 100 조 II. 사형

억류국은 포로 및 이익보호국에 대하여 억류국의 법령에 따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가급적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연후 기타의 범죄행위는 포로가 속하는 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형에 처할 수 없다.

법원은 제87조 제2항에 따라 포로는 억류국의 국민이 아니므로 충성의 의무를 지지 않는 다른 사실과 그의 의사에 관계없는 사정에 의하여 억류국의 권력 내에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지 않고서는 포로에게 사형을 인도하지 못한다.

제 101 조 III. 사형집행까지의 기간

포로에 대하여 사형을 인도한 경우에는 제107조에 정하는 상세한 통고를 이익보호국의 지정된 수신처가 수령한 날로부터 적어도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판결을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02 조 절차 : I. 판결의 유효조건

포로에 대하여 인도된 판결은 억류국의 군대의 구성원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동일한 법원에서 행하여지고 또한 본장의 규정이 준수된 경우가 아니면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 103 조 II. 재판이 있기까지의 구류

포로에 대한 사법상의 심문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조속히 행하여야 하며 그러함으로써 재판이 가급적 조속히 개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포로는 억류국의 군대의 구성원이 동일한 범죄행위로서 입진 구속되는 경우 또는 국가의 안전상 그 구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구류되지 아니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이 구류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재판이 있기까지의 포로가 구류되는 기간은 당해 포로에게 과하는 구속일자에 통산하여야 하며 또한 형의 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 넣어야 한다.

본장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은 재판이 있기까지 구류된 포로에게 적용된다.

제 104 조 III. 절차의 통지

억류국이 포로에 대하여 재판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익보호국에 대하여

가급적 조속히 그리고 적어도 재판 개시 3주일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3주일의 기간은 이익보호국이 미리 억류국에 지정한 이익보호국내의 주소에 상기 통고가 도착할 날로부터 계산한다.

전기의 통고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포로의 성명, 계급, 군번, 군의 명칭, 연대의 명칭, 개인의 번호, 또는 군번, 생년월일 및 직업.
2. 억류 또는 구류의 장소.
3. 포로에 대한 공소 사실의 상세와 적용 법규.
4. 사건을 취급할 법원의 지정 및 재판 개시 일자와 장소.

억류국은 포로대표에게도 동일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재판 개시시 이익보호국, 포로본인 및 관계포로대표가 적어도 재판 개시 3주일 전에 전기의 통지를 수령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개시하지 못하며 이를 연기하여야 한다.

제 105 조 IV. 변호의 권리 및 절차

피고포로는 동료 1인의 보좌를 받으며 자신이 선임한 자격있는 변호사에 의하여 변호되고 증인의 소환을 요구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유능한 통역관에게 통역시킬 권리를 가진다. 억류국은 재판개시전 적당한 시기에 포로에게 이들 권리에 관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이익보호국은 포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는 변호인을 붙여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이익보호국은 적어도 1주간의 유예기간을 가져야 한다. 억류국은 이익보호국의 요구가 있으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인명부를 전달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포로자신이나 이익보호국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호를 위하여 자격있는 변호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포로의 변호에 임하는 변호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재판 개시전 적어도 2주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또한 필요한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 변호인은 특히 자유로이 피고인을 방문하고 또한 입회인이 없이 피고인과 면접할 수 있다. 이 변호인은 또한 변호를 위하여 포로를 포함하는 증인과 협의할 수 있다. 이 변호인은 불복 신청 또는 청원의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전기의 편의를 향유한다.

포로에 대한 기소영장과 억류국의 군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통상 피고인에게 송달되는 서류는 포로가 이해하는 언어로 기재하고 재판개시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조속히 피고인인 포로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포로의 변호에 임하는 변호인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하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익보호국의 대표자는 특히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재판이 비공개로 행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재판에 입회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억류국은 이익보호국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 106 조 V. 불복의 신청

각 포로는 자기에 대하여 언도되는 판결에 관하여 억류국의 군대의 구성원이 하는 방식에 따라 판결의 기간, 정정 또는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 불복을 신청하고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그 포로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 또는 청원의 권리 및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에

관하여 충분한 통고를 하여야 한다.

제 107 조 VI. 판결의 통지

포로에 대하여 언도되는 판결은 요약된 문서로서 즉시 이익보호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그 문서에는 포로가 판결의 기각 정정 또는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 불복을 신청하고 또는 청원을 할 권리를 가지는가의 여부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문서는 관계포로대표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 포로가 출두하지 않고 판결이 언도된 때에는 피고인인 포로에 대하여서도 이 문서를 당해 포로가 이해하는 언어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또한 불복 신청 또는 청원의 권리를 행사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포로의 결정을 이익보호국에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또한 포로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및 제1심 판결에서 사형의 언도가 있는 경우에는 억류국은 이익보호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상세한 문서를 가급적 조속히 송부하여야 한다.

1. 사실 인정 및 판결의 정확한 복문,
 2. 예심조사 및 재판에 관한 개요와 보고로서 특히 소추 및 변호의 요점을 명시한 것,
 3. 필요한 경우에는 형이 집행될 시설의 통고.
- 전 각호에 정하는 통고는 이익보호국이 미리 억류국에 통고한 주소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 108 조 VI. 형의 집행. 집행규칙

유죄판결이 적법하게 실시된 후 포로에 대하여 행하여진 선고는 억류국 군대의 구성원의 경우와 동일한 시설에서 동일한 조건하에 집행되어야 한다. 이 조건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위생 및 인도상의 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기의 형이 언도된 여자포로는 분리된 장소에 구금하고 또한 여자의 감시하에 두어야 한다.

자유형이 언도된 포로는 여하한 경우에도 본 협약 제78조 및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혜택을 계속 향유한다.

또한 포로는 통신을 송수하며 매일 적어도 1개의 구호품 소포를 수령하고 옥외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그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로 하는 의료와 그들이 희망하는 정신상의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이들 포로에게 과하는 형벌은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 4 편 포로신분의 종류

제 1 부 직접송환 및 중립국에서의 수용

제 109 조 개관

본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충돌당사국은 중상 및 중병의 포로를 그의 수와 계급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들이 여행에 적합할 때까지 치료한 후에 다음조 제1항에 따라 본

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충돌당사국은 적대 행위중 관계 중립국의 협력에 의하여 다음조 제2항에서 언급하는 부상자 또는 병자인 포로의 중립국내에서의 수용에 관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충돌당사국은 장기간 포로의 신분으로 있었던 건강한 포로의 직접송환 또는 중립국내에서의 억류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 제1항에 의하여 송환의 대상이 되는 부상자 또는 병자인 포로는 적대행위의 기간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송환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110 조 송환 및 수용을 하는 경우

다음의 자는 직접 송환하여야 한다.

1. 불치의 부상자 또는 병자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기능이 현저히 감퇴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2. 1년이내에 회복할 가망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진단된 부상자 또는 병자로서 그의 상태가 요양을 필요로 하고 또한 정신적 및 육체적 기능이 현저히 감퇴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3. 회복한 부상자 또는 병자로서 정신적이나 육체적 기능이 현저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감퇴 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다음의 자는 중립국내에서 수용할 수 있다.

1. 부상 또는 발병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복된다고 예상되는 부상자나 병자로서 중립국에서 요양하면 일층 확실하고 신속히 회복한다고 인정되는 자.
 2. 계속하여 포로의 신분으로 있으면 정신 또는 육체의 건강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진단되는 포로로서 중립국에 수용하면 이 위험이 제거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자
- 중립국에 수용된 포로가 송환되기 위하여 충족시킬 조건 및 이들 포로의 지위는 관계국간의 협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립국에 수용되어 있는 포로로서 다음 부류에 속하는 자는 송환하여야 한다.

1. 건강상태가 직접송환에 관하여 정한 조건에 이를 정도로 악화한 자
2. 정신적 또는 육체적 기능이 요양 후에도 현저히 악화되어 있는 자

직접 송환 또는 중립국에서의 수용의 이유로 되는 장애 또는 질병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 협정이 관계충돌당사국간에 체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의 종류는 본 협약에 부속된 부상자 또는 병자인 포로의 직접송환 및 중립국에서의 수용에 관한 표본협정과 혼성의료위원회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 111 조 중립국에 있어서의 억류

억류국, 포로가 속하는 국가 및 그 2국간에 합의된 중립국은 적대행위가 종료할 때까지 그 중립국 영토내에 포로를 억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의 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112 조 혼성의료위원회

적대행위가 시작된 때 부상자 또는 병자인 포로를 진찰하고 그 포로에 관하여 적절한 모든 결정을 취하도록 혼성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혼성의료위원회의 임명, 임무 및 활동에

관하여는 본 협약 부속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억류국의 의료당국이 명백히 중병이라고 인정하는 포로는 혼성의료위원회의 진찰을 거치지 않고 송환할 수 있다.

제 113 조 혼성의료위원회에서 진찰을 받을 권리가 있는 포로

억류국의 의료당국이 지정한 포로외에 다음 부류에 속하는 부상자나 병자인 포로는 전조에 정하는 혼성의료위원의 진찰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동일국적을 갖는 의사 또는 당해 포로소속국의 동맹국인 충돌당사국 국민인 의사로서 수용소 내에서 그 임무를 행하는 자가 지정한 부상자 및 병자.
2. 포로대표가 지정한 부상자 및 병자.
3. 그가 속하는 국가 또는 포로에게 원조를 주는 단체로서 그 국가가 정당한 승인한 기관에 의하여 지정된 부상자 및 병자.

전기의 3부류의 하나에 속하지 않는 포로도 이들 부류에 속하는 자의 진찰 후에는 혼성의료위원회의 진찰을 받을 수 있다.

혼성의료위원회의 진찰을 받는 포로와 동일한 국적을 갖는 의사 및 포로대표에 대하여서는 그 진찰에 입회함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 114 조 재해를 입은 포로

재해를 입은 포로는 고의로 상해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환 또는 중립국에서의 수용에 관하여 본 협약에 규정된 혜택을 향유한다.

제 115 조 판결에 복역하고 있는 포로

징계벌이 과하여 짐으로써 송환 또는 중립국내에서의 수용에 적합한 자는 처벌의 미료를 이유로 억류하여 두어서는 아니된다.

소추나 유죄판결을 받고 억류된 포로로서 송환 또는 중립국내에서의 수용이 지정된 자는 억류국이 동의한 때에는 사법절차 또는 형의 만료전에 송환 또는 중립국내에서의 수용의 혜택을 향유한다.

충돌당사국은 사법절차 또는 형 만료까지 억류되는 포로의 성명을 상호 통고하여야 한다.

제 116 조 송환비용

포로의 송환 또는 중립국 이송의 비용은 억류국의 국경으로부터는 포로가 속하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117 조 송환후의 활동

송환된 자는 현역 군무에 복무시켜서는 아니된다.

제 2 부 적대행위 종료시의 포로의 석방과 송환

제 118 조 석방 및 송환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

적대행위의 종료를 위하여 충돌당사국간에 체결된 협정에 상기 취지의 규정이 없거나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억류국은 전항에 정하는 원칙에 따라 지체없이 송환계획을 작성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전항의 어느 경우에도 채택된 조치는 포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포로 송환의 비용은 여하한 경우에도 억류국과 포로 소속국에 공평히 할당하여야 한다. 이 할당은 다음 기초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가. 양국이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포로 소속국은 억류국 국경으로부터의 송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양국이 인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억류국은 자국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또는 포로 소속국 영토에 가장 가까운 자국의 승선함에 이르기까지의 포로수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관계국은 기타의 송환비용을 공평히 할당하기 위하여 서로 협정하여야 한다.

이 협정 체결은 여하한 경우에도 포로의 송환을 지연시키는 이유로 하지 못한다.

제 119 조 송환절차의 세부규정

송환은 제118조 및 다음 항 이하의 규정을 고려하여 포로의 이동에 대하여 본 협약 제46 조로부터 제48조까지 정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송환에 제하여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포로로부터 압수한 유가물 및 억류국의 통화로 교환하지 않은 외국통화는 포로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송환에 있어서 포로에게 반환하지 않는 유가물 및 외국통화는 제122조에 따라 설치되는 포로정보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포로는 그 개인용품과 수령한 통신 및 소포를 휴대함이 허락되어야 한다. 이들 물품의 중량은 송환조건에 의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 포로가 휴대할 수 있는 적당한 중량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각 포로는 여하한 경우에도 적어도 25키로그램의 물품을 휴대할 수 있어야 한다.

송환된 포로의 기타개인용품은 억류국이 보관하여야 한다. 이들 개인용품은 억류국이 포로의 소속국가와 수송조건 및 수송비용의 지불을 정하는 협정을 체결하면 곧 포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소추가 진행중인 포로는 그러한 소추가 종료될 때까지 그리고 필요하면 형의 종료시까지 억류할 수 있다. 이것은 위반행위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포로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충돌당사국은 소추 종료시까지 또는 형의 종료시까지 억류되는 포로의 성명을 상호 통고하여야 한다.

충돌당사국간의 협정으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분산된 포로를 수색하고 또한 가급적 속히 포로를 송환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3 부 포로의 사망

제 120 조 유언서, 사망증명서, 매장, 화장

포로의 유언서는 본국법에서 필요로 하는 유효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본국은 이 점에 관한 요건을 억류국에 통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유언서는 포로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포로의 사망후 모든 경우에 이익보호국에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인증본은 중앙정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포로로써 사망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본 협약에 부속된 표본에 합치되는 사망증명서 또는 책임있는 장교가 인증한 표를 제122조에 따라 설치되는 포로정보국에 가급적 조속히 송부하여야 한다. 동 증명서 또는 인증한 표에는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신분증명서의 상세, 사망 연월일, 장소, 사인, 매장연월일과 그 장소, 묘를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특기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포로의 매장 또는 화장은 반드시 사망을 확증하고, 보고서의 작성을 가능케 하고 또한 필요한 때에는 사망자의 신원을 확정할 목적으로 시체의 의학적 검사를 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억류당국은 포로의 신분으로 있는 동안에 사망한 포로가 가급적 그가 속하는 종교의 의식에 따라 정중하게 매장될 것과 또한 그 분묘가 존중되고 적당히 유지되며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도록 표시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망한 포로로서 동일국에 속하는 자는 가급적 같은 장소에 매장하여야 한다.

사망한 포로는 공동분묘를 사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 별개의 분묘에 매장하여야 한다. 시체는 위생학상의 절대적인 이유나 사망자의 종교 또는 화장에 대한 본인의 명백한 희망에 따라서만 화장할 수 있다. 화장한 경우에는 포로의 사망증명서에 화장의 사실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매장 및 분묘에 관한 모든 명세는 분묘를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도록 억류국이 설치하는 분묘등록기관에 의하여 기록 비치되어야 한다. 분묘의 목록 및 묘지와 기타의 장소에 매장된 포로들에 관한 명세서는 그 포로들의 소속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들의 분묘를 관리하고 또한 추후에 있어서의 시체의 이동을 기록하는 책임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가 본 협약의 체결국인 경우에는 그 국가가 져야 한다. 본 항의 규정은 본국의 희망에 따라 적절히 처리될 때까지 분묘등록기관이 보관하는 유골에 대하여서도 적용한다.

제 121 조 특별한 경우에 살해되거나 부상을 입은 포로

위병, 다른 포로 또는 기타인에게 기인하거나 또는 기인한 혐의가 있는 포로의 사망이나 중상 및 원인불명의 사망에 대하여는 억류국이 곧 정식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사항은 곧 이익보호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증인, 특히 포로인 증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그 진술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이익보호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조사에 의하여 1인 또는 2인 이상의 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억류국은 책임을 져야할 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편 포로에 관한 정보국과 구호단체

제 122 조 정보국

각 충돌당사국은 충돌이 개시될 때와 모든 점령의 경우에 그 권력내에 있는 포로에 관한 공설정보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말한 부류중의 하나에 속하는 자를 자국영토내에 수용한 중립국 또는 비교전국은 그들에 관하여 동일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계국은 포로 정보국에 대하여 그의 능률적인 운영에 필요한 건물 설비 및 직원을 제공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관계국은 본 협약중의 포로의 노동에 관한 부에 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포로정보국에서 포로를 사용할 수 있다.

각 충돌당사국은 그의 권력내에 있는 제4조에서 말한 부류중의 하나에 속하는 적국인에 관하여 본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말하는 정보를 가급적 신속히 자국의 포로정보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중립국 또는 비교전국은 그의 영토내에 수용한 전기의 부류에 속하는 자에 관하여 동일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포로정보국은 이익보호국 및 제123조에 정하는 중앙포로정보국의 중개에 의하여 그러한 정보를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즉시 관계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그 정보는 관계있는 근친자에게 신속히 양지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정보는 포로정보국으로서 입수 가능한 한 각 포로에 관하여 그의 성명, 계급, 군의 명칭, 연대의 명칭, 개인번호와 군번, 출생지 생년월일, 소속국, 부친의 명 및 모친의 구성명, 통지를 받을 자의 성명 및 주소, 포로에 대한 서신을 송부할 수 있는 주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포로정보국은 포로의 이동, 석방, 송환, 도주, 입원 및 사망에 관한 정보를 각 부처로부터 입수하여 그 정보를 전기의 제3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중병이나 중상자인 포로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도 정기적으로 가능하면 매주 제공하여야 한다.

포로정보국은 또한 포로의 신분으로 있는 동안에 사망한 자를 포함하는 포로에 관한 모든 조화에 답변할 책임을 진다. 포로정보국은 정보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때에는 그것을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행한다.

정보국의 모든 서면 통신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포로정보국은 또한 송환, 석방, 도주, 혹은 사망한 포로가 남긴 억류국 통화 이외의 통화 및 근친자에게 중요한 서류를 포함하는 모든 개인적인 유가물을 수집하여 관계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포로정보국은 이들 유가물을 봉인한 포장에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 그 봉인 포장에는 그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자를 식별하기 위한 명확하고 완전한 명세서 및 내용물의 완전한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기 포로의 기타 개인용품은 관계충돌당사국간에 체결되는 협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

제 123 조 중앙포로정보국

중앙포로정보국은 중립국에 설치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

계국가에 대하여 중앙포로정보국의 조직을 제안하여야 한다.

중앙포로정보국의 직능은 공적 또는 사적 경로로 입수할 수 있는 포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포로의 본국 또는 포로가 속하는 국가에 그 정보를 가급적 조속히 전달하여야 한다. 충돌당사국은 중앙포로정보국이 그러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대하여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국과 특히 그 국민이 중앙포로정보국 업무의 혜택을 향유하는 국가는 중앙포로정보국에 대하여 그가 필요로 하는 재정적 원조를 제공할 것을 요한다.

전기의 규정은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제125조에 정하는 구호단체의 인도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124 조 요금의 감면

각국의 포로정보국 및 중앙포로정보국은 우편요금의 면제 및 제74조에 정하는 모든 면제를 받으며 또 가능한 한 전보 요금의 면제 또는 적어도 상당한 감액을 받아야 한다.

제 125 조 구호단체, 기타 단체

억류국이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또는 기타 합리적인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조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종교단체, 구호단체, 기타 포로에게 원조를 주는 단체의 대표자 및 정당하게 위임받은 대리인들은 포로의 방문, 그리고 그 출처의 여하를 불문하고 종교, 교육 또는 오락 목적을 가지는 구호품과 물자를 분배하고 수용소내에서 여가를 활용하도록 원조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억류국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전기의 단체나 기관은 억류국의 영토내에서나 기타의 여하한 국가내에서도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억류국은 대표들이 자국 영토내에서 억류국의 감독하에 임무를 수행할 것이 허용되고 있는 단체 또는 조직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모든 포로에 대한 충분한 구호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특별한 지위는 항상 승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전기의 목적에 충당되는 구호품 및 물자가 포로에게 교부된 때에는 즉시 또는 교부후 단기 간내에 포로 대표가 서명한 각 송부품의 수령증을 그 송부품을 발송한 구호단체 또는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포로의 보호책임은 지는 행정당국은 그 송부품의 수령증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 6 편 협약의 시행

제 1 부 총칙

제 126 조 감시

이익보호국의 대표자나 사절단은 포로가 있는 모든 장소, 특히 억류, 구금 및 노동의 장소를 방문할 수 있으며 포로가 사용하는 모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이동되는 포로의 출발, 통과 및 도착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그들은 입회인이 없이 직접 또는 통역을 통하여 포로 특히 포로대표와 회견할 수 있다.

이익보호국의 대표나 사절단은 자유로이 그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장소를 선정할 수 있다. 그 방문 기간과 회수는 제한할 수 없다. 방문은 긴급한 군사상 필요를 이유로 하는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서 행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지 아니한다.

억류국 및 전기의 방문을 받는 포로들의 소속국은 필요할 경우에는 이들 포로의 동국인이 방문에 참가하는 것을 합의할 수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대표도 동일한 특권을 향유한다. 그 대표의 임명은 방문을 받는 포로를 억류한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7 조 협약의 보급

체약국은 전시, 평시를 막론하고 본 협약 전문을 가급적 광범위하게 자국내에 보급시킬 것이며, 특히 군교육계획, 가능하면 민간교육계획에도 본 협약에 관한 학습을 포함시킴으로써 본 협약의 원칙을 전 군대와 국민에게 습득시킬 것을 약속한다.

전시에 있어서 포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군당국과 기타의 당국은 본 협약의 본문을 소지하고 또한 본 협약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128 조 협약의 번역문. 적용법령

체약국은 스위스 연방정부를 통하여 또한 전시중에는 이익보호국을 통하여 본협약의 공식 번역문과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한 제 법령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9 조 형사적 제재 : I. 개관

체약국은 본 협약에 대하여 130조에서 정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도록 명령한 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약정한다.

각 체약국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범하였거나 범할 것을 명령한 혐의가 있는 자를 수사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자는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법원에 기소되어야 한다. 또한 각 체약국은 희망이나 자국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자를 다른 관계체약국에서 재판을 받도록 인도할 수 있다. 단, 관계 체약국이 해 사건에 관하여 일단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각 체약국은 다음 조항에서 정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 이외에 본 협약 제 규정에 위반되는

모든 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본 협약 제105조 및 그 이하에 규정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는 정당한 재판과 변호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 130 조 II. 중대한 위반행위

전조에 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란 본 협약이 보호하는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 고의적인 살인, 신체 또는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고통을 주는 고문이나 비인도적 대우(생물학적 실험을 포함) 또는 적국의 군대에 복무하도록 포로를 강요하는 것 또는 본 협약에 정하는 공정한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

제 131 조 III. 체약국의 책임

체약국은 전조에서 말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자국이 저야 할 책임을 벗어나거나 또는 타방 체약국으로 하여금 동국이 저야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32 조 심문절차

본 협약에 대한 위반 혐의에 관하여 충돌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국간에 결정되는 방법으로 심문하여야 한다.

심문절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는 관계국은 그 절차를 결정할 심판관의 선임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충돌당사국은 지체없이 위반행위를 중식시키거나 억제하여야 한다.

제 2 부 최종규정

제 133 조 언어

본 협약은 영어와 불어로 작성되며 양자 공히 정본이다.

스위스연방정부는 본 협약이 노어와 서반아어로 공식 번역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34 조 1929년 협약과의 관계

본 협약은 체약국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1929년 7월 27일의 협약에 대치한다.

제 135 조 헤이그협약과의 관계

본 협약의 체약국으로서 1899년 7월 29일 또는 1907년 10월 18일의 육전 법규 및 관행에 관한 헤그협약에 의하여 구속받고 있는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본 협약은 동 헤그협약 부속 규칙 제2장을 보완한다.

제 136 조 서명

오늘 날자의 본 협약은 1949년 4월 21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국가와, 동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지 않았으나 1929년 7월 27일자 조약의 체결국에 대하여 1950년 2월 12일까지 그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 137 조 비준

본 협약은 가급적 조속히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베른에 기탁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각 비준서의 기탁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며 그 기록의 인증등본을 본 협약 서명국과 가입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 138 조 효력의 발생

본 협약은 2개 이상의 비준서가 기탁된 6개월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 이후 본 협약은 각 체결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6개월후에 각 체결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 139 조 가입

본 협약은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본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 140 조 가입의 통고

본 협약에의 가입은 스위스 연방정부에 서면으로 통고해야 하며 그 가입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후에 발효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가입사실을 본 협약 서명국과 가입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 141 조 즉시발효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된 경우는 전쟁 또는 점령의 개시전후에 충돌당사국이 행한 비준 또는 가입을 즉시 발효시킨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충돌당사국으로부터 접수된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제 142 조 탈퇴

각 체결국은 본 협약에서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서면으로 스위스 연방정부에 통고하여야 하며 스위스 연방정부는 그 통고를 모든 체결국 정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탈퇴는 스위스 연방정부에 통고한 1년 후에 발효한다. 단, 탈퇴국이 탈퇴를 통고할 당시에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강화조약 체결시까지 또한 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의 석방과 송환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발효하지 아니한다.
탈퇴는 탈퇴하는 국가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탈퇴는 문명인간의 확립된 관행, 인도의 법칙, 대중적 양심에 기인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충돌당사국이 계속 이행하여야 할 의

무를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43 조 국제연합에의 등록

스위스연방정부는 본 협약을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스위스연방정부는 또한 본 협약에 관하여 동 정부가 접수하는 모든 비준, 가입 및 탈퇴를 국제연합 사무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인은 각자의 전권위임장을 기탁하고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49년 8월 12일 제네바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하였다. 원본은 스위스연방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한다. 스위스연방정부는 그 인증등본을 각 서명국과 가입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I 부속서

부상자 및 병자인 포로의 직접 송환 및 중립국내의 수용에 관한 협정 표본 (제110조 참조)

I. 직접 송환 및 중립국내의 수용에 관한 원칙

가. 직접 송환

다음의 자는 직접 송환하여야 한다.

- (1) 외상의 결과 다음의 장해를 받은 모든 포로, 사지중 하나의 상실, 마비, 관절 장애, 기타의 장애, 단, 장애는 적어도 한쪽 손이나 한쪽 발의 상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보다 관대한 해석을 침해함이 없이 다음의 자는 한쪽 손 또는 한쪽 발의 상실에 상당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가) 한쪽 손이나 한쪽 손의 다섯 손가락 전부 또는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상실, 한쪽 발이나 한쪽 발의 다섯 발가락 전부 및 종족골의 상실.
 - (나) 관절 강직, 골조직의 상실, 또는 대관절의 하나 또는 한쪽 손의 모든 지관절의 기능을 장애하는 관혼에 의한 수축
 - (다) 장관골의 위관절
 - (라) 관절 기타의 상해로 인한 기형으로서 기능 및 중량물을 드는 힘을 현저히 감퇴시키고 있는것.
 - (2) 의학적 예견에 의하면 치료를 행하여도 부상일로부터 1년 이내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만성 상태에 있는 모든 부상자인 포로, 그러한 만성상태란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가) 심장내에 탄편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 대하여는 혼성의료위원회가 진찰시에 위독한 장애로 인정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불문한다)
 - (나) 뇌 또는 폐장내에 금속편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 대하여는 혼성의료위원회가 진찰시에 국부적 또는 전신적 중상으로 인정할 수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한다)
 - (다) 골수염으로서 부상후 1년 이내에 회복할 기능이 없고 한쪽 손 또는 한쪽 발의 상실에 상당하는 관절 강직 또는 기타의 장애로 인정되는 것
 - (라) 대관절의 관통상과 화농성 상해
 - (마) 두개골의 상해로서 그 골조직의 상실 또는 전위를 수반하는 것
 - (바) 안면상해 또는 화상으로서 그 조직의 상실 및 기능의 장애를 수반하는 것
 - (사) 척수의 상해
 - (아) 말초신경의 손상으로서 그 속발증이 한쪽 손 또는 한쪽 발의 상실에 상당하고 또한 그 회복이 부상 일부터 1년 이상을 요하는 것예컨대 상박 또는 요추신경총의 상해, 정중신경 또는 비골신경과 경골신경과의 합병 상해등(단, 요골신경, 척골신경, 경골신경, 비골신경의 단독 상해는 수축 또는 위독한 영양신경성장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환의 정당한 이유로 되지 않는다)
 - (자) 비뇨기의 상해로서 그 기능을 심히 장애하는 것
- (3) 의학적 예견에 의하면 치료를 하여도 발병일로부터 1년내에 회복 불가능하다고 인

정될 정도로 만성 상태에 있는 모든 병자인 포로, 그러한 만성 상태란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가) 어떤 기관의 진행성 결핵증으로 의학적 예전에 의하면 중립국내에서의 치료로서 회복 또는 적어도 상당한 쾌유를 가져올 수 없는 것.
- (나) 습성 늑막염.
- (다) 불치로 인정되는 위독한 비결핵성의 호흡기질환. 예를 들면 위독한 폐기종(기관지염의 수반 여부를 불문) 만성천식*주 포로의 신분으로 있는 동안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만성기관지염*주 기관지확장증*주등
- (라) 위독한 만성순환기장해 예를 들면 심장변막장해 및 심근염*주으로서 포로의 신분으로 있는 동안 순환불완전의 징후를 보인 것(그에 대하여 혼성의료위원회가 진찰시에 이들 징후를 확인 할수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한다) 심낭 및 혈관의 장해(부루켈씨병, 대혈관 동맥류등)
- (마) 위독한 만성소화기장해 예를 들면,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 포로의 신분으로 있는 동안 행하여진 위 수술의 속발증, 1년이상 계속되고 또한 일반적 건강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성위염 장염 또는 결장염 간경변증, 만성담낭질환*주등
- (바) 위독한 만성생식, 비뇨기질환, 예를 들면 속발성 장해를 수반하는 신장의 만성질환, 신장결핵의 경우에 있어서의 간장 적출, 만성 신배염 또는 만성 방광염, 수신증 또는 농신증 위독한 만성 부인과 질환, 중립국내에서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의 정상적 임신 및 산과 질환등.
- (사) 위독한 중추 및 말초 신경계의 만성질환 예를들면 위독한 히스테리, 구급성정신병 등과 같은 모든 명백한 정신병 및 정신신경증으로서 전문가가 확인하는 것*주. 수용소의 의사가 확인하는 진간*주뇌동맥 경화증,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만성 신경염등.
- (아) 위독한 식물성 신경계의 만성질환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기능의 상당한 감퇴, 체중의 현저한 감소 및 전신 무력증을 수반하는 것.
- (자) 양쪽 눈의 실명 또는 한쪽 눈의 실명으로 다른쪽 눈의 시력이 고정안경을 사용하여도 1미만인 것. 적어도 한쪽 눈의 시력을 2분의 1로 고정할 수 없는 시력의 감퇴*주 기타의 위독한 안질, 예를 들면 녹내장, 홍채염, 맥락막염, 트라хом등.
- (차) 청각장해, 예를 들면 한쪽 귀가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다른 한쪽 귀가 1메타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등.
- (카) 위독한 신진대사의 장해, 예를 들면 인슐린 요법을 필요로 하는 당뇨병등.
- (타) 위독한 내분비선의 질환, 예를 들면 갑상선종독증, 갑상선기능감퇴증, 애디슨씨병, 시몬즈씨 악액질, 테타니등.
- (파) 위독한 조절장기의 만성질환.
- (하) 위독한 만성 중독증. 예를 들면 연중독, 수은중독, 몰핀중독, 코카인중독, 깨스 또는 방사능에 의한 중독등

*주 : 혼성의료위원회의 결정은 주로 포로와 동일한 국적을 가지는 수용소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는 기록 또는 억류국의 전문의의 검사에 기초하여야 한다.

- (가) 운동기관의 만성질환으로 명백한 기능장해를 수반하는 것, 예를 들면 기형성관절염, 원발적 및 속발적 진행성 다발성 관절염, 위독한 임상적 증상을 보이는 류마티스등.
- (나) 위독한 만성피부 질환으로 치료의 효과가 없는 것.
- (다) 모든 악성 신생물.
- (라) 발병후 1년간 계속되고 있는 위독한 만성전염성질환, 예를 들면 장기의 명백한 장해를 수반하는 마라리아, 위독한 증상을 수반하는 아메바 적리, 치료의 효과가 없는 제3기 내장매독, 나병등.
- (마) 위독한 비타민결핍증, 또는 위독한 기아상태(주) 혼성의료위원회의 결정은 주로 포로와 동일한 국적을 가지는 수용소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는 기록 또는 억류국의 전문의의 검사에 기초하여야 한다.

나. 중립국내의 입원

다음의 자는 중립국내의 입원이 가능하다.

- (1) 포로의 신분으로 있는 한 회복할 가망이 없지만 중립국에서 수용하면 회복 또는 병상의 현저한 쾌유의 가망이 있는 부상자인 포로.
- (2) 병의 형태 또는 어느 기관이 결핵에 걸려 있는 모든 포로로서 중립국내에서의 치료에 의하여 회복 또는 적어도 현저한 쾌유를 가져온다고 인정되는 자(단, 포로로 되기 전에 초기 결핵에 걸렸다가 회복한 자를 제외한다).
- (3) 치료를 필요로 하는 호흡기관, 순환기관, 소화기관, 신경, 감각기관, 성노기관, 피부, 운동기관등의 질병에 걸려있는 포로로서 그 치료를 중립국에서 받으면 포로인 신분으로 받는 것보다도 그 결과가 더 나올 것이 명백한 자.
- (4) 포로의 신분으로 있는 동안에 비 결핵성 신장병 때문에 신장적출을 행한 포로, 회복기에 있거나 혹은 잠재성의 골수염, 또는 인수린요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당뇨병에 걸려 있는 포로.
- (5) 전쟁신경증 또는 구금성정신병에 걸려 있는 포로 중립국내에서 3개월간 입원한 후에도 회복하지 않거나 또는 완치의 가망이 보이지 않는 구금성정신병환자는 송환하여야 한다.
- (6) 깨스, 금속, 알카로이드 등에 의한 만성중독에 걸려있는 모든 포로로서 중립국내에서 입원하면 회복의 가망이 특히 많은 자
- (7) 모든 여자 포로로서 임신한 자 또는 유아 및 소아의 어머니인 자.

다음의 질병에 걸려 있는 자는 중립국에서 입원하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는다.

- (1) 정당히 확인된 모든 만성정신병.
- (2) 불치로 인정되는 모든 기관적 또는 기능적 신경질환.
- (3)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기간중의 모든 전염성질환(단, 결핵을 제외).

II. 총 칙

- 1. 전기의 제 조건은 일반적으로 가급적 관대히 해석되고, 또한 적용되어야 한다. 전쟁 또는 포로신분으로 인한 신경증 또는 정신병의 상태 및 모든 결핵성질환의 경우는 특히 전기한 관대해석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수개의 부상을 입은 포로는 그 부상이 어

- 면 것도 단독으로는 송환의 이유로 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상의 수에 기인하는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관대한 정신으로 진찰되어야 한다.
2. 사지등의 절단, 양안의 실명 또는 두귀의 청력 상실, 개방성 폐결핵, 정신병, 악성신생물 등 명백하게 직접 송환의 권리를 부여하는 진찰의 해당하는 모든 포로는 수용소의 의사 또는 역류국이 지명한 군사의료위원회에 의하여 가급적 조속히 진찰을 받고 또한 송환되어야 한다.
 3. 전쟁전의 상해 및 질환으로서 악화되지 않는 것과 그 후 군복무의 지장이 없는 전상은 직접 송환의 사유로 되지 못한다.
 4. 본 부속서의 규정은 모든 충돌당사국에서 동일하게 해석되고 또한 적용되어야 한다. 관계국가 및 당국은 혼성의료위원회에 대하여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전기의 (1)에 열거하는 사례들은 전형적인 질환만을 표시한 것이다. 이러한 제규정에 정확히 부합되지 않는 질환의 경우 본 협약 제110조의 규정 및 본 협약에서 구체화된 제 원칙의 정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제 II 부속서

혼성의료위원회에 관한 규칙 (제112조 참조)

- 제 1 조** 본 협약 제112조에 정하는 혼성의료위원회는 중립국에 속하는 2인의 위원 및 억류국이 지명하는 1인의 위원, 도합 3인으로 조직한다. 중립국 위원중의 1인이 위원장이 된다.
- 제 2 조** 2인의 중립국 위원은 억류국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이익보호국의 동의하에 지명하여야 한다. 이들 위원의 주소는 그의 본국, 기타의 중립국 또는 억류국의 영토의 어느 곳이나 둘 수 있다.
- 제 3 조** 중립국 위원은 관계충돌당사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들 충돌당사국은 자국의 승인을 국제적십자위원회 및 이익보호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 통고로서 중립국 위원의 지명은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 4 조**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의 위원을 대체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대리위원도 또한 임명하여야 한다. 대리위원의 지명은 정규위원의 지명과 동시에 또는 적어도 가급적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 제 5 조**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어떤 이유로서 중립국 위원의 임명절차를 취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진찰을 받을 포로의 이익보호국이 중립국 위원의 지명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제 6 조** 2인의 중립국 위원에 대하여서는 가급적 그 중의 한 사람은 외과 의사, 다른 한사람은 내과 의사라야 한다.
- 제 7 조** 중립국 위원은 충돌당사국으로부터 전혀 독립하여 있고 충돌당사국은 당해 중립국 위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 8 조**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본 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정하는 지명을 행하는 때에는 억류국의 동의하에 피지명자의 근무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제 9 조** 혼성의료위원회는 중립국 위원이 승인된 후 가급적 속히 그리고 여하한 경우에도 그 승인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 제 10 조** 혼성의료위원회는 본 협약 제11조에서 지정하는 모든 포로를 진찰하여야 한다. 혼성의료위원회는 송환, 비송환, 또는 진찰의 연기를 제의하여야 한다. 혼성의료위원회의 결정은 다수결로서 행한다.

-
- 제 11 조** 혼성의료위원회가 매개의 특정한 경우에 내린 결정은 그들의 방문후 한달내에 억류국, 이익보호국 및 국제적십자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혼성의료위원회는 또한 진찰을 받은 포로에게 전기의 결정을 통지하고 또한 혼성의료위원회로부터 송환의 제안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본 협약 부속표본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 12 조** 억류국은 혼성의료위원회의 결정을 정식 통고받으면 3개월 이내에 그 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 13 조** 혼성의료위원회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에 중립국의 의사가 없고 또한 타국에 거주하는 중립국의 의사를 임명하는 것이 어떤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억류국은 이익보호국의 동의하에 본 규칙의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혼성의료위원회와 동일한 임무를 행할 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 14 조** 혼성의료위원회는 영구적으로 활동하며 또한 6개월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각 수용소를 방문하여야 한다.

제 III 부속서

집단적 구호에 관한 규칙 (제73조 참조)

- 제 1 조** 포로대표는 그 수용소에서 관리되는 모든 포로(병원, 교도소 또는 기타의 구치시설에 있는 자를 포함)들에게 포로대표에게 위탁된 집단적 구호품을 분배하는 것을 허용 받아야 한다.
- 제 2 조** 집단적 구호품의 분배는 증여자의 지시 및 포로대표가 작성하는 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단, 의료품의 분배는 가급적 선임군요원의 동의하에 행하여야 하며 선임 군요원은 병원 및 의무실에서는 그 환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의 지시에 따를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분배는 그러한 제한 범위내에서 항상 공평하게 행하여야 한다.
- 제 3 조** 포로대표 또는 그의 보조자는 수령하는 물품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하고 또한 이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의 수용소에 가까운 구호품 도착지점에 갈 수 있어야 한다.
- 제 4 조** 포로대표는 그의 수용소의 모든 구획 및 부속분소에서의 집단적 구호품의 분배가 그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 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 제 5 조** 포로대표는 집단적 구호품에 관한 제 사항(분배, 필요품, 수량등)에 관하여 증여자에게 보내는 조사표 또는 질문서에 스스로 기입하고 또한 노동분견대의 포로대표나 의무실 및 병원의 선임 군요원으로 하여금 기입시키는 것을 허용받아야 한다. 그 조사표 및 질문서는 정당하게 기입한 후 지체없이 증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 6 조** 포로대표는 그의 수용소에 있는 포로에 대하여 집단적 구호품을 정기적으로 분배함을 보장하고 또한 신포로의 집단도착에 의한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집단적 구호품을 충분히 저장하고 또한 유지할 것을 허용받아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포로대표는 적당한 창고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각 창고의 출입구에는 2개의 자물쇠를 잠그고 그 중 한 자물쇠의 열쇠는 포로가 가지고 다른 자물쇠의 열쇠는 수용소장이 가져야 한다.
- 제 7 조** 집단적 구호품으로서 피복이 송부된 때에는 각 포로가 적어도 완전한 한 벌의 피복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 벌 이상의 피복을 소지하고 있는 포로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른 포로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포로에게 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포로대표는 가장 많은 여분의 피복을 가지고 있는 포로부터 여분의 피복 또는 특정의 품목중 한벌 이상을 반환시킬 수 있다. 단, 포로대표는 하의, 양말 또는 신발을 반환시키는 때에는 그것이 이것들을 한벌도 가지고 있지 않는 포로에게 주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두벌을 그 포로에게 남겨 놓아야 한다.

- 제 8 조** 체약국 특히 역류국은 가급적 그리고 주민에 대한 물자의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로들에 대한 집단적 구호품으로서 분배하기 위하여 자국 영토내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물품구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들 국가는 그러한 물품 구입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자금의 이전 기타 기술적 또는 행정적 성질의 재정적 조치에 대하여도 또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 9 조** 전기의 제 규정은 포로가 수용소에 도착하기 전 또는 이동 도중에 집단적 구호품을 수령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한 이익보호국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기타 포로에게 원조를 주는 단체의 대표로서 그러한 구호품의 송달을 책임지는 자들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방도에 의하여 수취인에게 이들 구호품의 분배를 확보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IV 부속서

가. 신분증명서(제4조 참조)

대한민국어은 률의 이노은살의 피의를 률의을 곧 이의의 이 의을 률의 이 이 극에의 률의 포포 이의의 이의 이의의의의 률의을 이 의을 극의 률의 률의 이의을 이 이의를 이의의이 이의의 이 이의 이의의 극의 이의 이의의 이		지 판(인의 의) 지 (인의의)	기타특정 _____ _____ _____
이 이의은를	_____ _____ _____		
이 이의은를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이 이의은를	_____	_____	_____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width: 15%;"> 소지자의 사 진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본 증명서를 발급하는 국가 및 군당국의 명) <h1 style="margin: 0;">신 분 증 명 서</h1> 군대에 수반하는 자를 위하여 </div> </div> <div style="margin-top: 20px;"> 성 _____ 명 _____ 생년월일 및 출생지 _____ 계급 _____ 군대에서 _____ 으로 수반한다.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발급년월일 _____ 증명서 번호 _____ </div>			

비고 : 본 표본은 가급적 2개국어 또는 3개국어로 작성하고 그 중의 하나는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이어야 한다. 실제의 크기는 가로 13cm, 세로 10cm로 한다. 본 표본은 점선에 따라 접는다.

나. 포로통지서(제70조 참조)

1. 표 면

포로우편	우편요금면제	포 로 통 지 서
<p style="text-align: center;">주 의</p> <p>각 포로는 포로로 된후 즉시 또한 병원 또는 타의 수용소로의 이동 때문에 주소가 변경된 때마다 이 표에 기입하여야 한다.</p> <p>이 표는 각 포로가 그의 근친자에게 보냄을 허락되는 특별엽서와는 다르다.</p>	<p>중앙포로정보국</p> <p>국제적십자위원회</p>	<p>제 네 바 스 위 스</p>

2. 이 면

활자체로 읽기 쉽게 기입할 것	1. 포로가 속하는 국가 _____
2. 성 5. 생년월일 7. 계급 8. 등록번호 9. 근친자의 주소	3. 명(완전하게) 6. 출생지 4. 부의명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0. 포로로 된 일자(혹은) (제수용소 병원등)으로부터 이동한 일자	_____ _____
11. (가) 건강 (마) 병중	(나) 부상하지않음 (바) 경상 (다) 회복 (사) 중상 (라) 회복기에 있음
12. 본인의 현재의 주소 수용소의 명칭	포로번호 _____ _____
13. 일부	14. 서명 _____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X인을 부할 것 여하한 설명도 가하지 말것. 이면의 주의를 참조할것.	

비고 : 본 표본은 2개국어 또는 3개국어로 특히 포로의 자국어 및 억류국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실제의 크기는 가로 10Cm 세로 15Cm이다.

다. 통신용의 편지 (제71조 참조)

포 로 우 편
우편요금면제

귀하

시, 읍, 면명

가

국

지방 또는 주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비고 : 본 표본은 2개국어 또는 3개국어로서 특히 포로의 자국어 및 역류국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 표본은 점선을 따라 접고 또한 끝을 트
곳(****로 표시된 곳)에 끼어 넣어야 한다. 따라서 본 표본은 봉투의 외관을 갖는다. 본 표본의 이면에는 제4부속서 다의 1과 마찬가지로 점선을
부친다. 본 표본의 이면은 포로가 자유로 약 250어를 기입할 수 있는 여백을 가진다. 점선에 따라 접은때의 크기는 가로 15Cm 세로 29Cm이다.

라. 사망통지서(제120조 참조)

(책임있는 당국의 명칭)

사 망 통 지 서

포로가 속하고 있던 국가

성 명

부의명

출생지 및 생년월일

사망자 및 사망연월일

계급 및 등록번호 (인식표에 기재된 것)

근친자의 주소

포로로 된 장소 및 년월일

사망의 원인 및 사정

매장지

묘가 표시되어 있는가 또한 근친자가 그것을 발견
할 수 있는가?

사망자의 개인용품은 억류국이 보관하고 있는가
또는 통지서와 같이 송부하는가?

어느 기관을 통하여 송부하였는가?

사망자를 그 병중에 또는 최후에 간호한자 (의사,
간호부, 성직자 동료인 포로 등) 있는가?

사망 및 매장의 사정에 대하여 이 통지서 또는 첨부
부서에 간단한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일자, 책임 있는 당국의 인 및 서명)

2인의 증인의 서명 및 주소

비고 : 본 표본은 2개국어 또는 3개국어로 특히 포로의 자국어 및 억류국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실제의 크기는 가로 30Cm, 세로 21Cm이다.

마. 송환증명서(제2 부속서 제11조 참조)

송환증명서

일 자
 수 용 소
 병 원
 성 명
 생 년 월 일
 계 급
 군 의 번 호
 포 로 번 호
 부 상 - 질 병
 위원회의 결정

훈성의료위원회 위원장

A=직접송환

B=중립국에서의 입원

NC=다음위원회에 의한 진찰

제 V 부속서

포르로부터 본국에 보내는 송금에 관한 모형규칙 (제63조 참조)

1. 제63조제3항에 기하는 통고서에는 다음 세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 가. 지불인인 포르로의 제17조에 정하는 번호, 계급 및 성명
 - 나. 본국에 있는 수령인의 성명 및 주소
 - 다. 억류국의 통화로 표시한 지불액
2. 이 통고서에는 당해 포르로가 서명하고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인을 부한다. 이 통고서에는 포로대표가 부서하여야 한다.
3. 수용소장은 당해 포르로가 지불액으로서 기재된 액보다도 적은 대변 잔고를 가지고 있는지의 증명서를 이 통고서에 첨부한다.
4. 이 통지서는 일람표의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표는 매매마다 포로대표가 증명하고 또한 수용소장이 인정한다.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of August 12 1949

[일반사항]

1949년 8월 12일 제네바에서 작성

1950년 10월 21일 협약발효

[대한민국 관련사항]

1966년 7월 11일 국회비준 동의

1966년 8월 16일 스위스연방정부에 가입서 기탁

1966년 8월 16일 발효(조약 제218호)

* 유보 및 선언내용 있음

*대한민국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제68조 2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가 점령개시시의 피점령지역의 법령에 의하여 사형을 과할 수 있는 여부를 불문하고, 동항의 규정에 따라 사형을 과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 선언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이 협약에의 가입은,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승인하지 아니한 여하한 본 협약의 당사자를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이에 선언한다.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제정할 목적으로, 1949년 4월 21일부터 동년 1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외교관 회의에 참가한 제 정부의 하기 서명 전권위원은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제 1 편 총칙

제 1 조 협약의 존중

체약국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본 협약을 존중하고, 또한 본 협약에 대한 존중을 보장할 것을 약정한다.

제 2 조 협약의 적용

평시에 있어서 적용될 제 규정에 부가하여 본 협약은, 체약국 일방이 그 전쟁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간에 발생하는 모든 선언된 전쟁 또는 기타의 무력충돌의 경우에 적용된다.

본 협약은, 또한 일 체약국 영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점령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동 점령이 무력저항을 받은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된다.

충돌당사국의 일방이 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닐 경우에도 본 협약의 당사국인, 국가는 그 상호 관계에 있어서 본 협약에 구속된다. 또한 체약국은 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충돌당사국이 본 협약의 규정을 수락하고 적용할 때에는 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 협약의 구속을 받는다.

제 3 조 국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충돌

어느 한 체약국의 영역내에서 발생하는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의 경우에는 각 충돌당사국은 최소한 하기의 제 규정을 적용할 의무를 진다.

1. 무기를 버린 군대의 구성원 및 질병, 부상, 억류 또는 기타 사유로 전투외에 놓여진 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 자는 인종, 색, 종교 또는 신앙, 성, 가문 또는 재산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불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도적으로 대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상술한 자에 관하여는 그 시기 및 장소 여하에 불구하고, 하기 행위는 금지된다.

가.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

나. 인질로 잡는 일.

다.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유린, 특히 모욕적이며 비열한 취급.

라. 정규로 구성된 법원에 의하여 문명 국민이 불가결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재판상의

보장을 부여하는 재판에 의하지 않은 판결의 언도 및 형의 집행.

2. 상병자는 수용하고 간호하여야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공정한 인도적 기구는 충돌당사국에 대하여 그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충돌당사국은 또한 특별협정에 의하여, 본 협약의 다른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기 규정의 적용은 충돌당사국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4 조 피보호자의 정의

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는, 무력충돌 또는 점령의 경우에 있어서 특정 시점에 그 형식의 여하에 관계없이 충돌당사국 또는 점령국의 권력 내에 있는 자로서 동 충돌당사국 또는 점령국의 국민이 아닌자이다.

본 협약의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본 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교전국 영역내에 있는 중립국 국민 또는 공동 교전국 국민은 그들의 본국이 그들을 권력하에 두고 있는 국가내에 통상적인 외교대표를 주재시키고 있는 기간 동안은 피보호자로 간주 되지 아니한다.

단, 제2편의 제 규정은 제1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그 적용범위에 있어 보다 광범하다.

육전에 있어서의 국내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해상에 있는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또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자는, 본 협약이 의미하는 피보호자로 고려되지 않는다.

제 5 조 저촉행위

충돌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피보호인이 동 충돌당사국의 안전을 해하는 활동을 하였다든 혐의 또는 그러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한 개인은 동인을 위하여 행사된다면 그러한 충돌당사국의 안전에 유해할 본 협약상의 제 권리와 특권을 요청할 수 없다.

점령지역내에서, 피보호인이 점령국에 의하여 간첩 또는 점령국의 안전을 해하는 활동을 하였다든 혐의로서 억류되고 있는 동안, 그러한 자는 절대적인 군사상의 안전이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 협약에 기한 통신의 자유를 상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한 자는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며, 소추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 협약에서 규정한 공평한 정규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그러한 자는, 충돌당사국 또는 점령국의 안전이 허하는 조속한 시일내에 본 협약에 기한 완전한 권리와 특권을 허여 받아야 한다.

제 6 조 적용의 개시와 종료

본 협약은 제2조에서 언급된 충돌 또는 점령의 개시시부터 적용된다.

충돌당사국의 영역내에 있어서는 본 협약의 적용은 군사행동의 일반적 종료와 동시에 정지된다.

점령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 협약의 적용은 군사행동의 일반적 종료 일년후에 정지된다. 단, 점령국은 점령기간중 동 지역내에서 시정기능을 행사하는 한도에 있어 본 협약 제1조로부터 제12조, 제27조, 제29조로부터 제34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9조, 제61조에서 제77조 및 제143조의 제 규정의 구속을 받는다.

그러한 기간후에 석방, 송환, 또는 정착을 받을 피보호인은 그동안 본 협약에 의한 이익을 계속 향유한다.

제 7 조 특별협정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36조, 제108조, 제109조, 제132조, 제133조 및 제149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협정에 부가하여 체결국은 별도규정을 설정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관계 사항에 관하여 타의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어떠한 특별협정이라도 본 협약에서 정하는 피보호인의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본 협약이 그들 피보호인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보호인은 본 협약의 적용을 받는 동안 전기 제 협정의 이익을 계속 향유한다. 단, 반대의 명문 규정이 상술한 또는 추후의 제 협정에 포함되었거나 또는 피보호인에 관한 보다 유리한 조치가 충돌당사국의 일방 또는 타방에 의하여 취하여 졌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8 조 권리의 불포기

피보호인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본 협정 및 전조에 언급된 특별협정(그러한 협정이 있는 경우)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를 부분적으로나 또는 전체적으로도 포기할 수 없다.

제 9 조 이익보호국

본 협약은 충돌당사국의 이익보호를 임무로 하는 이익보호국의 협력과 면밀한 검토하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이익보호국은, 그 외교 및 영사직원과는 별도로, 자국 국민 또는 기타의 중립국 국민중에서 대표를 임명할 수 있다. 상기 대표는 그들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하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충돌당사국은 이익보호국 대표의 과업을 최대한으로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이익보호국의 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협약에 의한 그들의 임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이들 대표는 특히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국가의 안전상의 긴급한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 10 조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활동

본 협약의 제 규정은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기타의 공평한 인도적 기관이 관계충돌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민간인의 보호 및 그 구호를 위하여 취하는 인도적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제 11 조 이익보호국의 대리

체약국은 하시라도, 공평과 유효성에 대한 모든 보장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하여 이익보호국에 주어진 직무를 위임할 것에 동의할 수 있다.

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익보호국 또는 전항에 규정된 기관의 활동에 의한 이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수익이 중단된 경우에는 역류국은, 중립국 또는 그러한 기관에 대하여,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이익이 본 협약에 기하여 수행하는 기능을 인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보호가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역류국은 본조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에 의하여 이익보호국이 수행하는 인도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인도적인 기관의 용역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또는 받아드려야 한다.

전기 목적을 위하여, 관계국에 의하여 초청된, 또는 스스로 신입한 중립국 또는 기관은, 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가 의지하는 충돌당사국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요구되며 또한 당해 기능을 인수하여 공평하게 수행할 지위에 있다는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전기 제 규정은 군사적인 이유, 특히 그 영역의 전부 또는 많은 부분이 점령되어 타국 또는 그 동맹국과의 교섭의 자유를 일시적으로라도 제한당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간의 특별협정에 의하여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본 협약에 있어서 이익보호국이란 말은 본조의 의미에 있어서 기관이란 말의 대신으로 적용된다.

본 조의 규정은 점령지역내에 있는 중립국 국민 또는 그 본국이 정상적인 외교대표를 주재시키지 않고 있는 교전국의 영역내에 있는 중립국 국민의 경우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12 조 조정절차

피보호자의 이익을 위하여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히, 본 협약의 적용 또는 해석에 관하여 충돌당사국간에 의견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보호국은 이러한 의견의 상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선에 나서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각 이익보호국은 일 당사국의 초청 또는 자국의 발의로 가능하면 적당히 선정된 중립 영역내에서 충돌당사국 대표의, 그리고 특히 피보호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당국의 회의 개최를 제의할 수 있다. 충돌당사국은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제시된 제안을 실행할 의무를 진다. 이익보호국은 필요한 경우에는 충돌당사국의 동의를 위하여 중립국에 속하는 자 또는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의하여 위임된 자로서 그러한 회의에 참석토록 초청될 자의 명단을 제의할 수 있다.

제 2 편 전쟁의 특정 결과에 대한 주민의 일반적 보호

제 13 조 제2편의 적용범위

제2편의 규정은 특히 인종,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의견에 따른 불리한 차별을 받음이 없이 충돌당사국의 주민 전체에 적용되며 또 전쟁에 의하여 발생하는 고통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4 조 병원 및 안전을 위한 지대 및 지구

평시에 있어서 체약국, 그리고 적대 행위의 발발후에 있어서 적대행위의 당사국은 각자의 영역내에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점령 지역내에, 부상자, 병자, 노인, 15세 미만 아동, 임산부 및 7세 미만의 유아의 모를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편제되는 병원, 안전지대 및 지점을 설정할 수 있다.

관계국은 적대행위의 발발시 및 적대 행위의 계속 기간중 그들이 설정한 지대 및 지점을 상호 승인하는데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관계국은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정을 가하여 본 협정에 부속된 협정안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익보호국 및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이러한 병원, 안전지대 및 지점의 설정 및 승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선을 제공하도록 초청된다.

제 15 조 중립지대

어느 충돌당사국 일방은 직접으로 또는 중립국 또는 인도적인 기구를 통하여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내에 하기자를 차별 없이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립지대를 설치할 것을 상대방에게 제의할 수 있다.

가. 부상자 또는 병자(전투원, 비 전투원 불문)

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여하한 군사적 성질을 가진 사업도 수행하지 아니하는 민간인

관계국이 제안된 중립지대의 지리적 위치, 관리, 식량공급 및 감시에 관하여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충돌당사국의 대표자는 문서에 의한 협정을 체결 서명하여야 한다. 동 협정은 지대 중립화의 시기와 존속 기간을 확정해 두어야 한다.

제 16 조 부상자 및 병자의 일반적 보호

부상자, 병자, 허약자 및 임산부는 특별한 보호 및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군사적인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각 충돌당사국은 사망자 및 부상자를 수색하고, 조난자 및 기타 중대한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고 약탈 및 학대로 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7 조 소개

충돌당사국은 공격 또는 포위된 지역으로부터의 부상자, 병자, 허약자, 노인, 아동 및 임산부의 철수 및 동 지역으로 향하는 종교요원, 의무요원 및 의료 기재의 통로를 위한 지역적 협정을 체결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8 조 민간병원의 보호

부상자, 병자, 허약자 및 임산부를 간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간병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항상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충돌당사국은 모든 민간병원에 대하여 그 병원이 민간병원이라는 것 및 그 병원이 사용되는 건물에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으로서의 보호를 박탈당할 만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

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민간병원은 국가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8조에 규정된 표지에 의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충돌당사국은 군사상의 사정이 허하는 한, 적대 행위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의 육·공·해군에게 민간병원을 명백히 보일 수 있도록 명확한 표지를 부착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병원이 군사목표물에 근접해 있음으로써 노출될 위험에 비추어, 그러한 병원은 가능한 한 그러한 목표물로 부터 떨어져 위치할 것이 요망된다.

제 19 조 병원보호의 소멸

민간병원이 항유할 수 있는 보호는 그러한 병원이 그 인도적인 임무를 벗어나 적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도록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멸되어서는 안된다. 단, 그 보호는 모든 적당한 경우에 합리적인 기한을 정한 경고를 발하고 그 경고가 무시된 후가 아니면 소멸될 수 없다.

부상자, 또는 병자인 군대의 구성원이 이들 병원에서 간호되고 있는 사실 또는 이들 전투원으로부터 받아둔 소무기 및 탄약이 존재하나, 아직 정당한 기관에 인도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적에게 유해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 20 조 병원의 직원

민간인 부상자 및 병자, 허약자 및 임신부의 수색, 철수, 수송 및 간호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여 민간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정규로 또 전적으로 종사하는 자는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점령지역 및 군사작전 지역내에서 상술한 자는, 소지자의 사진을 첨부하고 책임있는 당국의 스태프를 식별할 수 있도록 날인하여 그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 및 임무수행중 좌원에 달아야 할 날인된 방수용 완장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완장은 국가에 의하여 교부되어야 하고 아울러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8조에 정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민간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종사하는 기타의 직원도 그들이 고용되는 동안 본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리고 본조에서 규정된 조건하에서 존중 보호되며 완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신분증명서에는 그들 직원이 종사하는 임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각 병원의 사무소는 항시 그들 직원의 최근의 명부를 자국 또는 점령군의 권한있는 당국의 사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 21 조 육상 및 해상 수송수단

민간인 부상자 및 병자, 허약자 및 임신부를 수송하는 육상의 호송 차량대, 또는 병원 열차, 또는 해상의 특수 선박은 제18조에서 규정된 병원과 동일하게 존중 및 보호되어야 하며, 아울러 국가의 동의를 얻어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8조에서 규정한 특수 표지를 게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 22 조 항공수단

민간인 부상자 및 병자, 허약자 및 임신부의 철수, 의무요원 및 의료 기구의 수송을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는 모든 관계충돌당사국간에 특별히 합의된 고도, 시가 및 항로에 따라 비행하고 있는 동안은 공격되어서는 아니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이들 항공기는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8조에서 정하는 특수 표지로 표시되어야 한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적 또는 적 점령 영역상의 비행은 금지된다.

그러한 항공기는 모든 착륙요구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의하여 착륙하는 경우에는 동 항공기는 그 승객과 함께 조사가 있을 때에는 조사를 받은 후에 비행을 계속할 수 있다.

제 23 조 의료품, 식량, 피복 등의 탁송품

각 계약국은 타방 계약국, 비록 적국일지라도 민간인에게만 향하는 의료품 및 병원용품, 그리고 종교상의 의식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물품 등 모든 탁송품의 자유 통과를 허용하여야 한다. 각 계약국은 15세미만의 아동 임신부에게 송부되는 불가결한 식료품, 피복 및 영양제 등 모든 탁송품의 자유통과를 허가하여야 한다.

계약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우려할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에서 말한 탁송품의 자유 통과를 허가할 의무를 진다.

가. 탁송품이 그 행선지에 도착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관리가 유효하게 실시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적이 당해 탁송품이 없으면 자신이 공급 또는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될 물품의 대응으로 그 탁송품을 충당하거나, 또는 당해 탁송품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용역 또는 설비를 사용치 않게 됨으로써 적의 군사력 또는 경제에 대하여 명백히 이익을 주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 제1항에서 언급한 탁송품의 통과를 허가하는 국가는 그 탁송품의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분배가 현지에 있어서의 이익보호국의 감독하에 행하여 질 것을 그 허가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전기의 탁송품은 가능한 한 신속히 수송되어야 하며 또 탁송품의 자유 통과를 허가하는 국가는 그 통과를 허가하는데 관한 기술적 조건을 정할 권리를 갖는다.

제 24 조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충돌당사국은 전쟁의 결과로 고아가 되었거나, 또는 자기 가족들로부터 이산된, 15세미만의 아동이 유기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경우에 있어 그들의 부양, 종교생활 및 교육이 용이하게 보장됨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들의 교육은 가능한 한 유사한 문화적 전통을 가진 자들에게 위탁되어야 한다.

충돌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한 제 원칙이 준수되리라는 적당한 보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보호국의 동의를 얻어(만일 그러한 이익보호국이 있는 경우),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전기 아동들의 중립국내 수용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충돌당사국은 또한 12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 명찰의 패용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들

의 신원을 식별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5 조 가족의 소식

총돌당사국의 영역 또는 그 점령지역내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는 그들의 가족이 있는 장소의 여하를 불문하고 엄밀한 사적 성격을 가진 소식을 그들 가족들과 상호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신은 신속히 그리고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만일 어떤 사정에 의하여 통상 우편으로는 자기 가족과의 서신교환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관계총돌당사국은 제140조에 규정된 중앙피보호자정보국과 같은 중립적인 중개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그리고 그러한 중개기관과 협의하여 특히 각국 적십자사(적신월사, 적사자와태양사)의 협력을 얻어 가장 좋은 조건하에서 그들의 임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총돌당사국이 가족통신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자유로이 선택된 25개의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 표준서식의 강제 사용과 동 서식에 의한 서신의 회수를 월1회로 제한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제 26 조 이산가족

각 총돌당사국은 전쟁 때문에 이산된 가족들이 상호연락을 회복하고 될 수 있으면 재회하려는 목적으로서 행하는 조화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각 총돌당사국은 특히 이러한 사업에 종사하는 단체가 자국에서 용인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단체가 자국의 안전보장규칙에 순종하는 한 동 단체의 사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 3 편 피보호자의 지위 및 대우

제 1 부 총돌당사국의 영역 및 점령지역내에 공통되는 규정

제 27 조 대우 : I. 개관

피보호자들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신체, 명예, 가족으로서 가지는 제 권리, 신앙 및 종교상의 행사, 풍속 및 관습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하며, 특히 모든 폭행 또는 협박, 모욕 및 공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부녀자들은 그들의 명예에 대한 침해 특히 강간, 강제 매음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외설행위로부터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피보호자를 그 권력하에 두고 있는 총돌당사국은 건강상태, 연령, 종교 또는 성별에 관한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특히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의견에 따르는 불리한 차별을 둠이 없이 모든 피보호자들을 동일한 고려하에 대우하여야 한다.

그러나, 총돌당사국은 피보호자에 관하여 전쟁의 결과로 필요케 될 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8 조 II. 위협지대

피보호자의 소재지는 군사 행동으로부터 면제되는 지점 또는 지역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제 29 조 III. 책임

피보호자를 권력하에 두고 있는 충돌당사국은 초래될지도 모르는 개인적 책임에 관계없이 자국의 기관이 그러한 피보호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0 조 이익보호국 및 구호단체에 대한 신청

피보호자는 이익보호국, 국제적십자위원회, 그들이 재류하는 국가의 적십자사(적신월사, 적사자와 태양사) 및 피보호자들을 원조하는 기타 단체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가진다.

전기의 제 단체는 군사상 또는 안전상의 고려에 의하여 정해지는 제한의 범위내에서 이 목적을 위한 제반 편의를 당국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억류국 또는 점령국은 이익보호국 및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대표에 의한 제143조 소정의 방문 외에 피보호자들에게 대한 정신적 원조, 또는 물질적 구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단체의 대표들에 의한 피보호자 방문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의 많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31 조 강제외 금지

피보호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특히 정보를 얻기 위하여 피보호자들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강제를 가하여서는 안된다.

제 32 조 육체에 가하는 벌, 고문등의 금지

체약국은 그 권력하에 두고 있는 피보호자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또는 그들을 학살하는 것과 같은 성격을 가진 조치를 취함을 금지할 것에 특히 동의한다. 이러한 금지는 피보호자들의 살해, 고문, 육체적 형벌, 신체의 절단, 그들의 치료상 필요치 않은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에 적용될 뿐 아니라 그것이 민간 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군사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거나를 막론하고 기타의 모든 잔학한 조치에도 적용된다.

제 33 조 개인책임, 단체벌, 약탈, 보복

피보호자는 그 자신이 행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어서는 안된다. 단체벌 및 모든 협박 또는 공갈에 의한 조치는 금지된다.

약탈은 금지된다.

피보호자 및 그들의 재산에 대한 보복은 금지된다.

제 34 조 인질

인질은 금지된다.

제 2 부 충돌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

제 35 조 영역을 퇴거할 권리

충돌이 개시될 때 또는 그것의 진행 기간중에 충돌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퇴거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피보호자들은 그 퇴거가 그 나라의 국가적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영역으로부터 퇴거할 권리를 가진다. 그들의 퇴거신청에 대하여는 정규로 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동 결정은 가능한 신속히 행하여져야 한다. 퇴거를 허가 받은 피보호자들은 여행에 필요한 금전을 소지하고 또 적당한 수량의 개인 용품을 휴대할 수 있다.

당해 영역으로부터의 퇴거를 거부당한 자들은 재심사를 위하여 억류국이 지정하는 법원 또는 행정청에서 동 거부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재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익보호국은 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영역으로부터의 퇴거허가신청에 대한 거부 이유 및 퇴거를 거부당한 자들의 성명을 가능한 한 신속히 그들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 36 조 송환방법

전조에 의하여 허가되는 퇴거는 안전, 위생, 보건 및 식량에 관하여 만족할 만한 조건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것에 관한 모든 비용은 억류국 영역의 출국 지점으로부터는 그들의 행선지가 되는 국가가 부담하고 중립국으로 퇴거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는 자의 소속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 이동에 관한 실시 세목은 필요할 때에는 관계국 간의 특별협정으로서 정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충돌당사국이 적의 권력내에 있는 자국 국민의 교환 및 송환에 관하여 특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 37 조 구금중인 자

소송 계속중에 구금되어 있거나 또는 자유형에 복종하고 있는 피보호자들은 구금되고 있는 동안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한다.

이들이 석방되는 즉시로 전기 제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역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8 조 송환되어지지 않는 자 : I. 개관

피보호자의 지위는 본 협약 특히 제27조 및 제41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특별 조치를 예외로 하고 원칙적으로 평시에 있어서의 외국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규율되어야 한다. 이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피보호자들에게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가. 피보호자들은 그들 개인 또는 집단에게 송부되는 구호품을 받을 수 있을 것.

나. 피보호자는 그 건강상태로 보아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국의 국민들과 동등한 정도로 의료상의 간호 및 입원치료를 받을 것

다. 피보호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믿을 수 있고 또 동일한 종파에 속하는 성직자들로부터 종교상의 원조를 받을 것을 허용 받을 것

라. 피보호자가 전쟁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지구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관계국의 국민과 동일한 정도로 그 지구로부터의 이전을 허용 받을 것

마. 15세미만의 아동, 입산부 및 7세미만의 유아를 가진 부인은 그들에게 상당하는 관계 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에 의한 혜택을 받을 것

제 39 조 II. 생활수단

전쟁으로 인하여 유급직업을 상실한 피보호자들에 대하여는 유급직업을 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한 기회는 안전상의 고려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피보호자가 체류하는 국가의 국민이 향유하는 것과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충돌당사국이 어떤 피보호자에 대하여 통제 조치를 적용한 결과로 그 자신의 생계유지를 불가능케 하였을 경우, 특히, 안전상의 이유에 의하여 피보호자가 적당한 조건으로 유급직업에 취업함을 방해 받았을 경우에는 그 충돌당사국은 그 피보호자 및 그의 부양을 받는 자들의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피보호자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본국, 이익보호국 또는 제30조에서 언급한 구호단체로부터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제 40 조 III. 노동

피보호자는 그가 체류하는 충돌당사국의 국민과 동등한 정도이상으로는 노동을 강제 받지 아니한다.

피보호자가 적국의 국민일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식량, 주거, 의류, 수송 및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필요한 노동으로서 군사행동의 수행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것 이외에는 그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

전 2항에서 언급한 경우에 있어서 노동을 강제 당한 피보호자로 특히 임금, 노동시간, 의류 및 기구, 예비적 작업훈련, 그리고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그들이 체류하는 국가의 노동자들과 동일한 노동조건 및 보호의 혜택을 받는다.

전기의 규정이 위반될 경우에는 피보호자는 제30조에 의하여 이의 신청의 권리행사를 허용받는다.

제 41 조 IV. 주거지정. 억류

피보호자를 그 권력하에 두고 있는 국가는 본 협약에서 말하는 통제조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정 또는 억류조치보다 더 가혹한 통제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주거를 지정하는 결정에 의하여 종래의 주거로부터 타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은 자에 대하여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억류국은 가능한 한 본 협약 제3편 제4부에서 정하는 복지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 42 조 V. 억류 또는 주거지정의 이유. 자발적 억류

피보호자의 억류 또는 주거지정은 억류국의 안정보장상 이를 절대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명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자가 이익보호국 대표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억류를 구하고, 또 그의 사정이 억

류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자를 권력하에 두고 있는 국가는 그를 억류하여야 한다.

제 43 조 VI. 절차

피보호자로 억류되었거나 또는 주거지정을 받은 자는 재심사를 위하여 억류국이 지정하는 적당한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그러한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억류 또는 주거지정이 계속될 경우에는 최초의 결정을 유리하게 변경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그리고 최소한 년 2회씩 각사건의 심사를 행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관계 피보호자의 반대가 없는 한 억류되었거나 주거지정을 받은 자 또는 억류 또는 주거지정으로부터 방면된 자들의 성명을 가능한 한 신속히 이익보호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본조 제1항에서 언급한 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결정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이익보호국에 통고되어야 한다.

제 44 조 VII. 망명자

억류국이 본 협약에서 말하는 통제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사실상 여하한 정부의 보호도 받지 않고 있는 망명자들을 다만 그들이 법률상 적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써 적성 외국인으로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제 45 조 VIII. 타국에의 이송

피보호자들은 본 협약의 체약국 이외의 국가에 이송되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은 적대행위의 종료후에 있어서의 피보호자들의 송환 또는 거주국에의 귀환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억류국은 당해 체약국이 본 협약을 적용한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연후에 라야 피보호자들을 본 협약의 체약국에 이송할 수 있다.

피보호자들이 그러한 사정하에서 이송되었을 경우, 피보호자들을 받아들인 국가는 피보호자들이 그 보호하에 있는 동안 본 협약을 적용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피보호자들을 받아들인 국가가 어떤 중요한 점들에 대하여 본 협약의 규정을 시행치 않았을 경우에는 피보호자들을 이송한 국가는 이익보호국의 통고에 따라 그들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효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피보호자들의 송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피보호자들을 여하한 경우에도 그들의 정치적 의견 또는 종교적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에 이송되어서는 안된다.

본조의 규정은 적대행위의 개시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보통 형법상의 범죄행위로서 소추되고 있는 피보호자들의 인도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 46 조 제한적 조치의 폐지

피보호자들에 대하여 취하여진 제한적 조치는 아직 폐지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적대행위의 종료 후에 가능한 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피보호자들의 재산에 관하여 취하여진 제한적 조치는 억류국의 법령에 따라 적대행위의 종료 후에 가능한 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제 3 부 점령지역

제 47 조 권리의 불가침

점령지역에 있는 피보호자들은 여한한 경우 및 여한한 방법으로도 점령의 결과로 동 지역의 제도 또는 정치상에 초래되는 모든 변화, 점령지역 당국과 점령국간에 체결되는 모든 협정 또는 점령국에 의한 점령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병합에 의하여 본 협약의 제 혜택을 박탈당하여서는 안된다.

제 48 조 송환의 특별한 경우

영역을 점령당한 국가의 국민이 아닌 피보호자들은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하고, 그 영역을 퇴거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결정은 동조에 의하여 점령국이 제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 49 조 추방, 이송, 철거

피보호자들을 점령지역으로부터 점령국의 영역 또는 피 점령 여부를 불문하고 타국의 영역으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강제 이송 또는 추방하는 것은 그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된다.

그러나, 점령국은 주민의 안전 또는 군사상의 이유로 필요할 경우에는 일정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철거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한 철거는 물적 이유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호자들을 점령지역의 경계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하여 철거당한 자들은 당해 지구에서의 적대행위가 종료되는 즉시로 각자의 가정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전기의 이동 또는 철거를 실시하는 점령국은 가능한 한 피보호자들을 받아들일 적당한 시설을 설비할 것과 동 이동의 위생, 보건, 안전 및 급식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조건하에서 행하여 질 것 그리고 동일가족의 구성원들이 이산하지 않을 것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동 및 철거를 실시할 때에는 즉시 이익보호국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점령국은 주민의 안전, 또는 긴급한 군사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호자들을 전쟁의 위험을 많이 받고 있는 지구에 억류하여서는 안된다.

점령국은 자국의 민간인 주민의 일부를 자기의 점령지역으로 추방하거나, 또는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제 50 조 아동

점령국은 국가 또는 현지 당국의 협력하에 아동들의 양호 및 교육에 전용될 모든 시설의 적당한 운영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점령국은 아동들의 신원확인 및 친자관계의 등록을 용이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점령국은 여한한 경우이라도 아동들의 신분상의 지위를 변경시키거나, 또는 그들을 자국에 종속된 단체 또는 기구에 편입시켜서는 안된다.

현지의 시설이 적당치 않을 경우에는 점령국은 전쟁의 결과로 고아가 되었거나 또는 자기의 부모와 이별하고, 또 근친자 또는 우인에 의하여 적당한 양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의 부

양 및 교육이 가능한 한 그 아동들과 동일한 국적언어 및 종교를 가진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6조에 따라 설치되는 정보국의 한 특별과는 신원이 불명한 아동들의 신원을 판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책임을 진다. 그들의 부모 또는 근친자들에 관한 상세한 점들을 입수하는대로 항상 기록되어야 한다.

점령국은 15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및 7세미만의 유아를 가진 부인들을 위하여 점령전에 채택된 식량, 의료상의 간호 및 전쟁의 영향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유리한 조치의 적용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1 조 모병, 노동

점령국은 피보호자들에게 대하여 자국의 군대 또는 보조부대에 복무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자발적 지원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압력 또는 선전은 금지된다.

점령국은 피보호자들이 18세 이상이고 또 다만 점령군의 수요, 공익사업 또는 피점령국 주민의 의, 식, 주, 수송 또는 건강 때문에 필요한 노동을 위하여서가 아니면 피보호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 피보호자들은 군사행동에의 참가 의무를 부하게 되는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점령국은 피보호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강제노동을 하고 있는 시설의 안전을 강제수단을 사용하여 확보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노동은 노무를 징발 당한 자들이 체류하는 점령지역내에서만 행하여져야 한다. 그러한 자들은 가능한 한 종전의 근무 장소에서 일을 계속 하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대하여서는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노동은 노동자들의 육체적, 지적, 능력이 부합하는 것 이어야 한다. 피점령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노동조건 및 보호에 관한 법령, 특히 임금, 노동시간, 설비, 예비적 작업훈련 그리고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령은 본조에서 말하는 노동에 종사하는 피보호자들에게 적용된다.

노무의 징발을 여하한 경우이라도 군사적 또는 준군사적 성격을 가진 조직내에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 52 조 노동자의 보호

여하한 계약, 협정 또는 규칙이라도 노동자의 자진 여부 및 그의 체류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보호국의 개입을 요청하기 위하여 동국 대표들에게 신청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노동자들로 하여금 점령국을 위해 일하게 하기 위하여 점령 지역내에서 실업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기회를 제한함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조치는 금지된다.

제 53 조 파괴금지

개인적인 것이거나 또는 공동적인 것임을 불문하고 사인, 국가 기타의 공공당국, 사회단체 또는 협동단체에 속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의 점령군에 의한 파괴는 그것이 군사행동에 의하여 절대 필요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금지된다.

제 54 조 법관 및 공무원

점령국은 점령지역내에 있는 공무원 또는 법관들이 양심에 좇아 자기의 직무 수행을 기피할 경우에도, 그 공무원 또는 법관의 신분을 변경시키거나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또는 강제적 또는 차별적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와 같은 금지는 제51조 제2항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동 금지는 공무원들을 그들의 직책으로부터 해임시키는 점령국의 권리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55 조 주민의 식량과 의료품

점령국은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써 주민의 식량 및 의료품의 공급을 확보할 의무를 진다. 특히 점령국은 점령지역의 자원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필요한 식량, 의료품 및 기타 물품들을 수입하여야 한다.

점령국은 점령국 및 행정 요원들의 사용에 충당할 경우와 그리고 민간인 주민들의 수요를 고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령지역내에 있는 식량, 물품 또는 의료품을 징발하여서는 안된다. 점령국은 다른 제 국제조약에 대한 공정한 대가의 지불을 확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호국은 긴급한 군사상의 요구에 의하여 일시적 제한이 필요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 하더라도 점령지역에 있어서의 식량 및 의료품의 공급상태를 자유로이 조사할 수 있다.

제 56 조 공중보건 및 위생

점령국은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하여 국가 및 현지당국의 협력하에 있어서의 의료상 및 병원의 시설과 용역, 그리고 공중보건 및 위생을 확보하고 또 유지할 의무를 진다. 점령국은 특히 전염병 및 유행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적 조치를 채택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점령지역내에 새로운 병원들이 설립되고 또 피점령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그 지역내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점령당국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직원 및 수송차량들에 대하여도 승인을 부여 하여야 한다.

점령국은 보건 및 위생조치를 채택하고 또 이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점령지역 주민들의 도덕적 윤리적 감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57 조 병원의 징발

점령국은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들을 간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환자들의 간호 및 치료와 민간인 주민들의 입원 요구를 위하여 적당한 조치가 적당한 때에 취하여질 것을 조건으로 하고 민간인 병원들을 일시적으로 징발할 수 있다.

민간인 병원의 기재 및 저장품들은 그것들이 민간인 주민들의 수요에 필요하게 되는 한 징발될 수 없다.

제 58 조 종교상의 원조

점령국은 성직자들에게 대하여 그들과 동일한 종파에 속하는 자들에게 종교상의 원조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또한 점령국은 종교상의 필요에 소요되는 도서 및 자료의 위탁을 수락하고 점령지역내의 배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 59 조 구호 : I. 집단적 구호

점령지역 주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물자의 공급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점령국은 동 주민들을 위한 구호계획에 동의하여야 하며, 또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하여 동 계획이 실시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공정한 인도적 기구에 의하여 실시되는 전기의 계획은 특히 식량, 의약품 및 의류의 송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계약국은 이러한 송부품들의 자유 통과를 허하고 또 그것들의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국에 의하여 점령되고 있는 지역으로 가는 송부품의 자유 통과를 허가하는 국가는 송부품들을 검사하고 지정된 시간 및 경로에 의한 통과를 규율하며 그리고 그 송부품들이 궁핍한 주민들의 구호를 위하여 사용될 것이고 점령국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익보호국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권리를 가진다.

제 60 조 II. 점령국의 책임

구호품은 제55조, 제56조 및 제59조에 의거한 점령국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긴급한 필요가 있고, 그것이 점령지역 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또 이익보호국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방법으로도 구호품의 지정된 용도를 변경시켜서는 안된다.

제 61 조 III. 분배

전기의 제조에서 말한 구호품의 분배는 이익보호국의 협력 및 감독하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이 임무는 또는 점령국과 이익보호국간의 협정에 의하여 중립국,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기타의 공정한 인도적 단체에 위임될 수 있다.

그러한 구호품은 점령지역의 경제를 위하여 필요하지 않는 한 그 지역내에서 모든 부과금, 세금 또는 관세를 면제받는다. 점령국은 이러한 구호품들이 신속히 분배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계약국은 점령지역으로 가는 그러한 구호품들의 무상통과 또는 수송을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62 조 IV. 개인에게 보낸 구호품

점령지역에 있는 피보호자들은 긴급한 안전상의 이유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개인 앞으로 보내온 구호품의 수령을 허용 받아야 한다.

제 63 조 적십자사와 기타 구호단체

점령국이 긴급한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취하는 일시적 및 예외적인 제 조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가. 승인된 각종 적십자사(적신월사, 적사자와태양사)는 국제적십자회의에 의하여 제정

된 제 적십자원칙에 따라 그들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기타의 구호단체들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인도적 활동을 계속 허용받는다.

나. 점령국은 이러한 단체들의 직원 및 조직에 대하여 전기의 활동을 방해하게 될 변경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제 원칙은 중요한 공익사업의 유지, 구호품의 분배 및 구호사업의 조직화에 의하여 민간인 주민들의 생활조건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이미 존재하거나 또는 장차 설립될 비군사적 성격을 가진 특별단체의 활동 및 직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 64 조 형벌법령 : I. 개관

피점령국의 형벌법령은 그것이 점령국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또는 본 협약의 적용을 방해한 때에 점령국이 이를 폐지 또는 정지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점령지역의 법원은 전술한 바를 인정하면서 전기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임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점령국은 점령지역의 주민으로 하여금 자국이 본 협약에 의거한 제 의무를 이행하고 당해 지역의 질서있는 통치를 유지하며 점령국의 안전·점령군 또는 점령행정기관 구성원 및 그의 재산의 안전과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시설 및 통신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절대 필요한 제 규정에 복종시킬 수 있다.

제 65 조 II. 공포

점령국이 제정한 형벌규정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공포하고 또 주민들에게 주지시킨 후에 발효하며 효력은 소급되지 않는다.

제 66 조 III. 권한있는 재판소

제6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점령국이 공포한 형벌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점령국은 정당히 구성되고 비정치적인 점령국의 군사재판에 피의자들을 인도할 수 있다. 단 동 군사법원은 피점령국내에서 개정되어야 한다.

상소법원은 될 수 있는 대로 피점령국내에서 개정되어야 한다.

제 67 조 IV. 적용법령

법원은 범죄행위 전에 시행되어 있고 또 법의 일반원칙 특히 형법은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합치되는 법률의 규정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점령국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68 조 V. 형벌, 사형

점령국을 해할 의사만을 가지고 행한 범죄행위로서 점령군 또는 점령행정기관 구성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중대한 집단적 위협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또 점령군 또는 점령행정기관의 재산이나 그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를 주지 않은 범죄를 행한 피보호자들은 억류 또는 단순한 구금형에 처한다. 단, 그 억류 또는 구금기간은 범

죄행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억류 또는 구금은 그러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피보호자들로부터 자유를 박탈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유일한 조치로 되어야 한다. 본 조약 제66조에 규정된 법원은 자유재량에 의하여 구금형을 동일한 기간의 억류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점령국이 공포하는 형벌규정을 피보호자들이 간첩으로서 범한 행위와 점령군의 군사시설에 대하여 행한 중대한 태업 또는 일인 또는 그이상의 자들을 사망에 이르게한 고의적인 범죄행위 때문에 유죄가 된 경우에만 그 피보호자들에게 대하여 사형을 과할 수 있다. 단, 점령개시전에 시행되던 점령지역 사회의 법령에 의하여 그러한 범죄행위에 사형을 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형은 범인이 피고인이 점령국의 국민이 아니고 동 국에 대하여 충성 의무를 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유죄한 후가 아니면 피보호자들에게 언도되어서는 안된다.

사형은 여하한 경우에도라도 범죄 행위시에 18세 미만인 피보호자들에게 언도되어서는 안된다.

제 69 조 VI. 구속기간을 본형에 통산하는 것

모든 경우에 있어서 범죄행위로 기소된 피보호자가 재판이 있을 때까지 구속된 기간은 그에게 언도되는 구금형의 기간에 통산되어야 한다.

제 70 조 VII. 점령전에 이루어진 범죄행위

피보호자들은 전쟁법규 및 동 관습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령전이나 또는 점령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동안에 범한 행위 또는 표명한 의견 때문에 점령국에 의하여 체포 또는 기소되거나 유죄로 되어서는 안된다.

적대행위의 개시전에 피점령국의 영역내에 망명한 점령국의 국민은 적대행위의 개시후에 행한 범죄행위로 인하거나 또는 적대행위의 개시전에 행한 보통법상의 범죄행위로서 피점령국의 법령에 의하면 평화시에도 범죄자 인도가 행하여지게 될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되거나 기소되거나 유죄로 되거나 또는 점령지역으로부터 추방되어서는 안된다.

제 71 조 재판절차 : I. 개관

점령국의 관할 법원은 정식재판을 행한 후가 아니면 판결을 언도하여서는 안된다.

점령국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은 자기에게 대한 공소사실의 상세한 내용을 즉시로 통고 받고, 또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보호국은 사형 또는 2년 이상의 구금형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점령국이 피보호자들을 상대로 개시한 모든 사법 절차를 통고받아야 한다. 이익보호국은 또한 하사라도 그러한 사법절차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익보호국은 그 요청에 따라 전기의 사법절차 및 피보호자들을 상대로 점령국이 개시한 기타 모든 사법절차의 상세한 내용을 통고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기 제2항에 규정된 바, 이익보호국에 대한 통고서는 즉시로 송부되어야 하며, 또 여하한 경우에도 제1회 공판 기일의 3주일 전에 도착되어야 한다. 재판 개정시에 본조의 규정이 완전히 준수되고 있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재판이 개시되어서는 안된다. 통고서에는 다음 사항들을 기재하여야 한다.

- 가. 피고인의 신원,
- 나. 거주 또는 억류의 장소,
- 다. 공소 사실의 명세(소추의 근거가 되는 형벌규정의 기재를 포함),
- 라.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 마. 제1회 공판의 장소 및 기일.

제 72 조 II. 방어의 권리

피고인은 자기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특히 증인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기가 선임한 자격있는 변호인의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 변호인은 자유로이 피고인을 방문할 수 있고 또 변호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 편의를 향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치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익보호국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제공할 수 있다.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로 소추되고 있고, 또 이익보호국이 활동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점령국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통역관의 원조를 받을 권리를 자기 의사로 포기하지 않는 한 예비적 심문중 및 재판중에 있어서 통역관의 원조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하시라도 통역관을 거부하고 또 그의 교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73 조 III. 불복상소의 권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법원이 적용하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상소의 권리를 가진다. 그에게 대하여는 상소 또는 청원의 권리 및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완전히 통고하여야 한다.

본 조서에서 규정되는 형사절차는 그것이 적용 가능한 한 상소가 있을 경우 이에 준용하여야 한다. 법원이 적용하는 법령이 상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사실인정 및 판결에 대하여 점령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 74 조 IV. 이익보호국의 원조

이익보호국 대표는 그 재판이 예외적으로 점령국의 안전을 위하여 비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모든 피보호자의 재판에 입회할 권리를 가진다. 재판이 비공개적으로 개정될 경우에는 점령국은 그것을 이익보호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익보호국에는 재판의 기일 및 장소에 대한 통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사형 또는 2년 이상의 구금형이 언도된 모든 판결은 이유를 첨부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이익보호국에 통고되어야 한다. 그 통고서에는 제기조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통고와의 관계 그리고 구금형인 경우에는 형의 집행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술한 판결 이외의 판결기록은 법원이 보관하고 또 이익보호국 대표들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사형 또는 2년 이상의 구금형이 언도된 판결의 경우에 있어서 허용되는 상소기간은 이익보호국이 판결통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가산된다.

제 75 조 V. 사형

사형판결을 받은 자들은 여하한 경우에도 특사 또는 사형의 집행정지를 청원할 권리를 박탈당하여서는 안된다.

여하한 사형판결이라도 사형을 확정하는 최종 판결이나 특사 또는 사형집행정지의 거부결정에 관한 통고서를 이익보호국이 접수한 일자로부터 최소한 6개월의 기간이 경과 하기전에 집행되어서는 안된다.

점령국 또는 점령군의 안전에 대하여 조직적 위협이 될 중대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항에 규정된 6개월의 기간은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단축될 수 있다. 단, 이것은 항상 이익보호국이 동기간 단축에 관한 통고를 받을 것과 또 사형판결에 관하여 권한있는 점령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충분한 시간 및 기회를 부여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 76 조 피구금자의 대우

범죄행위로 기소된 피보호자들은 피점령국내에서 구금되어야 하며,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피점령국내에서 복역하여야 한다. 그들은 가능한 한 다른 피구금자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또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또 최소한 피점령국의 교도소에서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식량 및 위생조건을 향유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건강 상태가 필요로 하는 의료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요구하는 종교상의 협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성들은 분리된 장소에 구금되어야 하며 또 여성의 직접 감시하에 두어야 한다.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특별 대우에 관하여는 적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구금당하고 있는 피억류자들은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보호국 및 국제적십자위원회 대표들의 방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자들은 매월 최소한 1개의 구호품 소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77 조 점령종료시 피구금자를 인도하는 일

점령지역내의 법원에 의하여 범죄행위의 소추를 받았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피보호자들은 점령이 종료될 때에 관계기록과 더불어 석방된 지역의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제 78 조 안전조치, 억류 및 주거지정, 소청권

점령국은 안전보장상의 절대적 이유로 피보호자들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이라도, 주거지정 또는 억류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러한 주거지정 또는 억류에 관한 결정은 점령국이 본 조약 규정에 따라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좇아서 행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관계 당사자의 소청권을 포함하여야 한다. 소청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신속히 결정이 있어야 한다. 주거지정 또는 억류의 결정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동 결정은 점령국이 설치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필요하다면 매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정의 처분을 받고 자기 고향을 떠날 것을 요구받은 피보호자들은 본 협약 제39조의 완전한 혜택을 향유한다.

제 4 부 피억류자의 대우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칙

제 79 조 억류하는 경우 및 적용조항

총돌당사국은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68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호자들을 억류하여서는 안된다.

제 80 조 사법상의 행위능력

피억류자들은 사법상의 행위능력을 보유하고 또 그것에 따르는 권리로서 그들의 지위와 모순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 81 조 부양

피보호자들을 억류하는 총돌당사국은 그들을 무상으로 부양하고 또 그들의 건강상태에 필요한 의료를 그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기 비용의 지불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억류자들의 수당, 봉급 또는 채권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된다.

피억류자들의 부양을 받는 자들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당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생계를 영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억류국은 그들의 생활을 지원하여 주어야 한다.

제 82 조 피억류자의 배치

억류국은 피억류자들을 가능한 한 그들의 국적, 언어 및 관습에 따라 수용하여야 한다. 동일한 국적을 가진 피억류자들은 언어의 차이만으로써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동일한 가족의 구성원 특히 부모와 자녀들은 작업상 또는 건강상의 이유나 본부 제9장의 규정을 시행기 위하여 일시적 별거가 필요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류기간중 수용소내의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유숙시켜야 한다. 피억류자들은 그들의 양호를 받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와 함께 수용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동일한 가족의 구성원인 피억류자들은 가능한 한, 동일건물내에 수용되어야 하며, 또 다른 억류자들로부터 분리된 수용시설과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 편의를 그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2 장 억류장소

제 83 조 억류장소의 위치, 수용소의 표시

억류국은 전쟁의 위험을 많이 받고 있는 지구에 억류장소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억류국은 억류장소의 지리적 위치에 관한 모든 유익한 정보를 이익보호국의 중계를 통하여 적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역류수용소는 군사상 사정이 허락할 때에는 하더라도 주간에 공중으로부터 명확히 식별될 수 있도록 IC라는 문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계 제국은 기타의 표시방법에 대하여도 합의할 수 있다. 역류수용소가 아닌 장소에는 그러한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84 조 분리수용

피억류자들은 포로 및 다른 어떤 이유로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로부터 분리 수용되고 또 따로 관리되어야 한다.

제 85 조 수용, 위생

억류국은 피보호자들의 억류시초로부터 그들을 위생상 및 보건상의 모든 보장을 주고 또 기후의 가혹성 및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가능한 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물 또는 구획내에 수용하는 것을 확보기 위하여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여라도 영구적인 억류장소는 비위생적인 지역이나 또는 기후가 피억류자들에게 유해한 지역에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피보호자들이 일시적으로 억류되고 있는 지역이 비위생적인 곳이거나 또는 그 지역의 기후가 그들의 건강에 유해할 경우에는 당해 피보호자들은 사정이 허하는 한 신속히 보다 적당한 곳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건물들은 습기를 완전히 방지하고 충분한 난방장치를 가져야 하며, 특히 일몰시로부터 소등시까지 사이에는 등을 켜야 한다. 침실은 충분한 넓이를 가지고 또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피억류자들에게는 기후와 그들의 연령 성별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당한 침구 및 충분한 모포를 주어야 한다.

피억류자들에게 대하여는 위생규칙에 합치되는 위생설비를 그들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대하여는 각자의 일상적인 신체청결 및 세탁을 위하여 충분한 물과 비누를 공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들에게 대하여서는 또한 「샤워」 또는 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들에게는 세탁 및 청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예외적이고 또 일시적인 조치로서 어떤 가족의 구성원이 아닌 여자 피억류자들을 남자들과 동일한 억류장소내에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여자 피억류자들이 사용할 분리된 침실과 위생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86 조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장소

억류국은 종파의 여하를 불문하고 피억류자들이 종교적 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적당한 장소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87 조 매점

다른 적당한 편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억류장소에는 매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매점의 목적은 피억류자들이 개인적 복지 및 위안을 증진할 식료품 및 일용품을 현재의 시장 가격보다 높지 않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매점이 획득한 이익금은 각 억류장소에 설정되는 복지기금 구좌의 대변에 기입하고, 또 그

역류장소에 속하는 피역류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2조에 규정된 피역류자위원회는 매점 및 전기 기금의 운영을 감시할 권리를 가진다.

역류장소가 폐쇄될 경우에는 복지기금의 잔액은 동일한 국적을 가진 피역류자들을 위한 역류장소의 복지기금에 이양되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역류장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잔액은 역류국의 권력내에 계속 잔류하는 모든 피역류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되는 중앙 복지기금에 이양되어야 한다. 전반적 석방의 경우에 관계국간에 반대의 협정이 없는 한 전기 이익금을 역류국에 남겨두어야 한다.

제 88 조 공습대피소. 방호조치

공습 및 기타의 전쟁위험을 받고 있는 모든 역류장소에는 필요한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당한 수의 또는 적당한 구조의 대피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경보가 있을 경우에는 피역류자들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신속히 대피소에 들어갈 수 있다. 주민들을 위하여 취하는 방호조치는 피역류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역류장소에서는 화재의 위험에 대비하여 적절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장 식량 및 의류

제 89 조 식량

피역류자들을 위한 일상적인 배급은 그것의 분량 및 종류에 있어서 그들의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또 영양부족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피역류자들의 식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피역류자들에 대하여는 또한 그들이 별도로 소유하는 모든 음식물을 스스로 조리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여야 한다. 피역류자들에 대하여는 충분한 음료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흡연을 허용하여야 한다.

노동을 하는 피역류자들에게 대하여는 그들이 종사하는 노동의 종류에 따라 식량을 증배하여야 한다.

임산부와 15세미만의 아동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생리적 필요에 따라 식량을 증배하여야 한다.

제 90 조 의류

피역류자들이 역류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의류, 신발, 덧벌의 내의를 준비하고 또 그후에라도 필요하다면 새로운 보급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피역류자들이 기후조건에 상응한 충분한 의류를 소지하지 못하고 또 아무런 의류조달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역류국은 그들에게 의류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역류국이 피역류자들에게 공급하는 의류와 그 의류에 첨부되는 외부적 표지는 모욕적인 것이거나 또는 피역류자들을 조소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노동자들에게 대하여는 노동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복을 포함하는 적당한 노동용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장 위생 및 의료

제 91 조 치료

각 수용소에는 자격있는 의사의 지휘하에 두고 또 피억류자들이 필요한 치료와 적당한 식사를 받을 수 있는 적당한 진료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염병 및 정신병에 걸린 환자들을 위하여 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산부 및 중환의 피억류자 또는 특별치료나 외과수술이나 입원을 요하는 상태에 있는 피억류자들은 적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수용되어야 하며, 또 일반주민들이 받는 것보다 못지않는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피억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료당국에 출두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억류국의 의료당국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치료를 받은 각 피억류자에게 그의 질병 또는 부상의 성질 그리고 치료의 기간 및 종류를 기재한 공식적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동 증명서의 사본 1통은 제140조에 규정되는 중앙피보호자정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피억류자들의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 특히 의치, 기타의 인공기구 및 안경의 공급을 포함하는 치료는 피억류자들에게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92 조 신체검사

피억류자들의 신체검사는 최소한 월1회씩 행하여져야 한다. 동 검사는 특히 피억류자들의 건강, 영양 및 청결의 일반적 상태를 관리하고, 또 전염병 특히 결핵, 마라리아 및 성병을 검출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동 검사는 특히 각 피억류자의 체중 측정 및 최소한 연 1회씩의 엑스광선에 의한 검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5 장 종교적, 지적 및 육체적 활동

제 93 조 종교상의 의무

피억류자들은 억류당국이 제정하는 일상적 규율에 복종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자기의 종교의무(종교의식에의 참석 포함)를 이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를 향유한다.

억류되고 있는 성직자들은 동일한 종파에 속하는 피억류자들에게 대하여 자기의 성직을 자유로이 행하도록 허용받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억류국은 동일한 이러한 성직자들이 공평히 배치되는 것을 확보하여야 한다. 성직자들의 수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억류국은 그들에게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순회하는데 필요한 제 편의(수송수단 포함)을 제공하여야 하며, 또 입원중에 있는 피억류자들을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성직자들은 자기의 성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억류국의 종교당국 및 가능한 한 자기의 종파에 속하는 국제적 종교단체들과 통신연락을 할 자유를 가진다. 그러한 통신연락은 제107조에서 말한 할당 통수의 일부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 통신연락은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피억류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기 종파에 속하는 성직자들의 원조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성직자들의 수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같은 교리의 지방종교 당국은 억류국과 협의하여 피

역류자들의 교리에 맞는 성직자를 임명하여야하며, 만일 그러한 조치가 종파적견지에서 가능하다면, 동일한 종파에 속하는 성직자나 자격있는 신도를 임명할 수 있다. 후자는 자기가 이수한 성직에 대하여 부여된 제 편의를 향유한다. 이와 같이 하여 임명된 자들은 역류국이 기율과 안전을 위하여 설정한 모든 규칙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 94 조 오락, 연구, 운동경기

역류국은 피역류자들에게 지적, 교육적 및 오락적 활동과 운동경기를 장려하여야 한다. 단, 그러한 제 활동 및 운동경기에는 참여여부는 피역류자들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 역류국은 특히 적당한 장소를 제공하여 피역류자들의 제 활동 및 운동경기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역류자들에게 대하여는 그들의 연구 계속, 또는 새로운 연구과제의 착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동 및 청소년들의 교육은 필히 확보되어야 하며, 그들에게는 학교가 수용소내에 있거나 또는 수용소 밖에 있거나를 불문하고 통학을 허용하여야 한다.

피역류자들에게 대하여는 체조, 운동, 옥외경기를 위한 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수용소내에 충분한 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하여 특별한 운동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95 조 노동조건

역류국은 피역류자가 희망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을 노동자로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억류되지 않은 피보호자에게 강제적으로 과하여진 본 협약 제40조 또는 제51조의 위반이 될 노동 및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또는 굴욕적 성질을 가진 노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된다.

피역류자는 6주간의 노동기간후에는 8일전의 예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노동을 중지할 수 있다.

전기의 규정은 역류국이 억류되어 있는 의사, 치과 의사 기타의 의무요원을 동일한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자를 위하여 그 직업적 능력에 따라 사용하거나, 또는 역류자를 수용소의 관리와 유지를 위한 노동이나 기타의 잡무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공습이나 기타의 전쟁위험에 대한 피역류자의 보호와 관련있는 임무에 종사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역류자에 대하여는 의무관이 그의 신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역류국은 모든 노동조건, 의료 및 임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에 사용되는 모든 피역류자가 작업상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데 대하여 전 책임을 진다. 전기의 노동조건 및 보상을 정하는 기준은 국내법령 및 현행관습에 따라야 한다. 이 기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지방의 동일한 성질의 노동에 있어서 인정되는 기준보다 불리하여서는 안된다. 노동에 대한 임금은 피역류자의 생활을 무상으로 유지하며, 또한 피역류자가 그의 건강상태에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의료를 공급하여야 할 역류국의 의무의 대하여 적당한 고려를 한 후 피역류자와 역류국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역류국 이외의 사용자 간의 특별협정에 의하여 공평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본조 제3항에 언급된 부류에 항상 명시된 피역류자에 대하여는 역류국이 공평한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여사히 명시된 피역류자에 대한 노동 조건과 직업

상의 재해와 질병에 대한 보상범위는 동일지방의 동일성질의 노동이 적용되는 범위보다 불리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제 96 조 노동분건대

모든 노동분건대는 수용소의 일부가 되며 그에 종속한다. 억류국의 권한있는 당국 및 수용소장은 당해 노동분건대에서의 본 협약 규정의 준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수용소장은 그 수용소에 소속하는 노동분건대의 최신 명단을 보관하고 또 그 수용소를 방문할 수 있는 이익보호국,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기타의 인도적 단체의 대표에게 그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 6 장 개인재산 및 금전관계

제 97 조 귀중품 및 개인용품

피억류자에게는 개인용품의 소지를 허용하여야 한다. 피억류자가 소지하는 금전, 수표, 증권 등 유가물은 소정의 절차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할 수 없다.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는 명세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기 금전은 제9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피억류자의 계정에 이를 기입하여야 한다. 그 금전은 그 소유자가 억류되어 있는 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피억류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통화로 교환할 수 없다.

특히 개인적 또는 정서적 가치만을 가지는 물품은, 이를 압수하여서는 안된다.

여자 피억류자는 여자 이외의 자가 수색하여서는 안된다.

피억류자가 석방되거나 또는 송환될 시에는, 억류중에 압수당한 모든 물품,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반환하고 또한 제98조에 따라 가졌던 계정의 대변 잔고를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억류국이 시행중의 법령에 의하여 유지하는 물품 또는 금액은 제외한다. 피억류자의 재산이 이와 같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상세한 수령증을 그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피억류자가 소지하는 가족에 관한 문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압수함에 있어서는 수령증에 발급하여야 한다. 피억류자에 대하여는 항상 신분증명서를 휴대시켜야 한다. 억류 당국은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피억류자에 대하여는 특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특별증명서는 억류의 종료시까지 신분증명서를 대신한다.

피억류자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현금이나 구입권으로서 일정한 금액을 휴대할 수 있다.

제 98 조 금전관계 및 개인계정

모든 피억류자는 연초, 화장품등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충분한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그 수당의 지급은 외상 또는 구입권의 형식으로 행할 수 있다.

피억류자는 또한 자기의 본국, 이익보호국, 피억류자를 원조하는 단체 또는 자기의 가족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억류국의 법령에 따라 그들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받을 수 있다. 피억류자의 본국이 지급하는 수당액은 피억류자의 각 종류(허약자, 병자, 임산부 등)에 대하여 동일한 것이라야 하며, 또한 본 조약 제27조에서 금지한 바와 같이 피억류자에

게 차별을 두어 피억류자의 본국이 할당하거나 억류국이 분배하여서는 안된다.

억류국은 각 피억류자에 대하여, 정규의 계정을 개설하여야 하며, 또한 본조의 규정한 수당, 피억류자가 수령한 송금 및 피억류자로부터 압수한 전액으로서 그가 억류되어 있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계정의 대변에 이를 기입하여야 한다. 피억류자는 그 가족 및 기타 피부양자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그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모든 편의를 하여받아야 한다.

피억류자는 억류국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자기의 계정으로부터 그 개인적 경비를 위하여 필요한 액을 인출할 수 있다. 피억류자는 언제나 자기의 계정을 조사하고 또한 그 사본을 받는데 적당한 편의를 하여받아야 한다. 계정의 명세서는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익보호국에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피억류자가 이동될 때에도 피억류자에게 수반시켜야 한다.

제 7 장 관리 및 규율

제 99 조 수용소 관리, 협약 및 명령의 게시

각 수용소는 억류국의 정규군대 또는 정규행정청에서 선정된 책임있는 장교나 공무원의 지휘하에 두어야 한다. 수용소를 지휘하는 장교나 공무원은, 자국의 공용어(공용어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중의 하나)로서 쓰여진 본 협약의 등본을 소지하고, 또한 본 조약의 적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피억류자를 감독하는 직원은 본 협약의 제 규정과 그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행정조치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 협약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체결되는 특별협정의 본문은 피억류자가 이해하는 언어로서 수용소 내부에 게시되거나 또는 피억류위원회에 소지시켜야 한다.

각종 규칙, 명령, 통고 및 공시는 피억류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또한 피억류자가 이해하는 언어로서 수용소 내부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피억류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발하는 명령 및 지령도 당해 피억류자가 이해하는 언어로서 행하여야 한다.

제 100 조 일반적 규율

수용소에서의 규율제도는 인도의 원칙에 합치되는 것이라야 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피억류자에 대하여 그 건강에 위협한 육체적 피로를 주고 또는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규정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문신에 의한 식별 표시 또는 신체에 대한 기호 또는 표시의 압인에 의한 식별은 금지된다.

특히, 장시간에 걸친 부동자세와 점호, 징계를 위한 훈련, 군사훈련과 연습 또는 식량의 감배는 금지된다.

제 101 조 이의신청과 청원

피억류자는 그를 그 권한내에 둔 당국에 대하여 억류조건에 관한 청원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피역류자는 또한 역류조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이익보호국 대표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피역류자위원회를 통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이익보호국 대표에게 신청할 권리를 무제한으로 가진다. 이러한 청원과 이의는 즉시 변경을 가함이 없이 전달되어야 하며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피역류자위원회는 이익보호국의 대표에게 수용소의 상태 및 피역류자의 요구에 관한 정기적 보고를 할 수 있다.

제 102 조 피역류자위원회 : I. 위원선거

피역류자는 모든 수용소에서 역류국, 이익보호국, 국제적십자위원회 및 피역류자를 원조하는 기타의 단체에 대하여 피역류자를 대표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피역류자위원회의 위원을 6개월마다 자유로이 비밀투표로서 선거하여야 한다. 동 피역류자위원회의 위원은 재선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출된 피역류자는 그의 당선에 대하여 역류당국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임무에 착수한다. 승인의 거부 또는 면직의 이유는 관계 이익보호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 103 조 II. 임무

피역류자위원회는 피역류자의 육체적, 정신적 및 지적복지를 위하여 공헌하여야 한다.

특히, 피역류자가 그 상호간에 부조하는 제도를 조직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 조직은 본 협약의 타 규정에 의하여 피역류자위원회에 위임되는 특별한 임무와는 별도로 피역류자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 104 조 III. 특권

피역류자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그 임무수행이 다른 노동에 의하여 한층 더 곤란해질 때에는 다른 노동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역류자위원회의 위원은 그가 필요로 하는 보조자를 피역류자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피역류자위원회에 대하여는 모든 물질적 편의 특히 그 임무달성에 필요한 어느정도의 행동의 자유(노동분견대의 방문, 보급품의 수령등)를 허용하여야 한다.

피역류자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역류국당국, 이익보호국 및 국제적십자위원회 및 그들의 대표 또는 피역류자를 원조하는 단체와 우편 및 전신으로 통신하기 위한 편의를 허용하여야 한다. 노동분견대의 피역류자위원회 위원은 본 수용소의 피역류자위원회와 통신하기 위하여 동일한 편의를 향유한다. 이 통신은 제한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107조에 정하는 할당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동되는 피역류자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 8 장 외부와의 관계

제 105 조 취하는 조치의 통지

억류국은 피보호자를 억류하였을 때에는 즉시로 피보호자의 본국 및 이익보호국에 대하여 본장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그 조치가 후에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관계 당사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6 조 억류엽서

각 피억류자에게 대하여는 그가 억류된 즉시 또는 수용소에 도착한 후 늦어도 1주간 이내에, 그리고 질병에 걸렸거나 타 수용소 또는 병원에 이동되었을 경우에도 1주간 이내에 그가 족과 제40조의 정하는 중앙피억류자정보국에 억류된 사실, 주소 및 건강상태를 통지하는 엽서를 직접 송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그 엽서는 가능한 한 본 협약에 부속된 양식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그 엽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송부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제 107 조 통신

피억류자에 대하여는 편지 및 엽서의 수발을 허용하여야 한다. 억류국이 각 피억류자가 발송하는 편지 및 엽서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수는 매월 편지 2통 및 엽서 4통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편지와 엽서는 가능한 한 본 협약에 부속된 양식과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피억류자에게 송부된 통신이 제한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 제한은 보통 억류국의 요청에 따라 피억류자의 본국만이 명할 수 있다. 이러한 편지 및 엽서는 적당한 기간내에 발송되어야 하며 징계사유로서 지연 또는 유치되어서는 안된다.

장기간에 걸쳐 가족으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한 피억류자 또는 가족과의 사이에 보통 우편 경로를 통하여 소식을 주고받을 수 없는 피억류자 및 가족으로부터 극히 원거리에 있는 피억류자에 대하여는 진보를 발신할 것이 허가되어야 한다. 그 요금은 피억류자가 처분할 수 있는 통화로서 지불되어야 한다. 피억류자는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

피억류자의 통신은 원칙적으로 모국어로 적어야 한다. 충돌당사국은 기타의 언어로서 통신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제 108 조 구호품의 발송 : I. 일반원칙

피억류자에 대하여는 특히 식량, 피복, 의료품, 서적 및 피억류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종교, 교육 또는 오락용 물품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하물을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수령할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 그 하물은 억류국에 대하여 본 협약에서 억류국에 과하여진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군사상의 필요로서 이러한 하물의 수량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익보호국,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피억류자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기타 단체로서 하물의 전달책임을 지는 기관

에게 그 제한에 관한 적당한 통고를 하여야 한다.

개인 또는 집단에게 보내는 하물의 송부에 관한 조건은 필요하다면, 관계국간의 특별협정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관계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역류자의 구호품 수령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도서는 피복 또는 식량이든 하물속에 넣어서는 아니된다. 의료구호품은 원칙적으로 집단적 하물로서 송부되어야 한다.

제 109 조 II. 집단구호품

집단구호품 하물의 수령 및 분배조건에 관하여 충돌당사국간에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 협약에 부속하는 집단적 구호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전기의 특별협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역류자위원회가 피역류자에게 보낸 집단구호품을 보유 내지 분배하고 또 수취인의 이익이 되도록 처분하는 권리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이러한 특별협정은 이익보호국,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피역류자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기타의 단체로서 집단적 하물의 전달책임을 맡은 기관의 대표가 수취인에 대한 당해 하물의 분배를 감독할 권리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제 110 조 III. 우편요금 및 수송요금의 면제

피역류자를 위한 모든 구호품은 수입세, 관세수수료 기타의 과징을 면제받는다.

타국으로부터 피역류자에게 보내어지거나 또는 피역류자가 발송하는 모든 물품(소포우편으로 발송하는 구호소포를 포함한다) 및 우편에 의한 송금은 직접으로 송부되거나 또는 제 136조에서 정하는 피보호자정보국 또는 제140조에서 정하는 중앙피보호자정보국을 통하여 송부되거나를 불문하고, 발송국 수취국 및 중계국에 있어서 우편요금을 면제받는다. 이를 위하여 특히 역류소 또는 보통 교도소안에 유치되는 적국의 민간인을 위한 1947년의 만국 우편협약 및 만국우편연합의 제 협정으로 정하는 면제는 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타의 피역류자에게도 하여진다. 그러나 제 협정의 비체약국은 동일한 조건으로서 요금의 면제를 하여하여야 한다.

피역류자에게 보내어진 구호품이 중량 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우편으로서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수송비는 역류국의 관리하에 있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는 역류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본 협약의 기타의 체약국은 각기의 영역에 있어서는 수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호품의 수송에 관련된 비용으로서 전 각항에서 규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발송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체약국은 피역류자가 발 수신하는 전보요금을 가능한 한 감액으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11 조 특별수송수단

군사행동 때문에 관계국이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정하는 우편 및 구제의 수송을 확보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 이익보호국,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충돌당사국이 정식으로 승인한 기타의 단체가 적당한 수송수단(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의하여 그 우편 및 구호품의 전달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체약국은 그들에게 이러한 수송수단을 제공하며 특히 필요한 안전 통행권을 부여함으로써 동 수송수단

의 운행을 허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송수단은 다음의 것을 수송하기 위하여서도 사용할 수 있다.

(가) 제140조에 규정된 중앙피보호자정보국과 제136조에 규정된 각국의 피보호자정보국과의 사이에서 교환되는 통신, 명부 및 보고서,

(나) 이익보호국,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피역류자를 원조하는 단체가 그 대표 또는 충돌 당사국과의 사이에 교환되는 피역류자에 관한 통신 및 보고서

전기의 규정은 충돌당사국이 희망하는 경우에 다른 수송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또한 안전 통행권을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그 수송수단에 부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수송수단의 사용에 요하는 비용은 그것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 자들이 속하는 충돌당사국이 하물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제 112 조 검열과 검사

피역류자가 송수하는 서신의 검열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피역류자에게 송부되는 하물의 검사는 그 속에는 물품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동 검사는 수취인이 정당한 위임한 피역류자의 입회하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피역류자에게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는 하물의 인도는 검사의 곤란을 이유로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충돌당사국이 명하는 통신의 금지는 그것이 군사적 이유에 의하거나 정치적 이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일시적이어야 하며, 또한 그 금지기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

제 113 조 법률문서의 작성과 전달

역류국은 피역류자에게 보내어지거나 또는 피역류자가 발송하는 유언장, 위임장 기타의 문서가 이익보호국 또는 제140조에 규정된 중앙피보호자정보국을 통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전달되도록 모든 적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역류국은 어떠한 경우와도 전기한 문서의 타당하고 적법한 양식에 의한 작성 및 인증에 대하여 피역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역류국은 피역류자가 법률가와 상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 114 조 재산관리

역류국은 피역류자에 대하여 역류조건 및 적용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한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역류국은 긴급한 경우에 있어서 사정이 허용한다면 피역류자가 수용소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제 115 조 소송사건의 준비와 진행을 위한 편의

피역류자가 재판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역류국은 본인이 희망한다면 그의 역류 사실을 그 법원에 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법적 제한 범위내에서, 피역류자의 사건에 관한 예심과 실시 또는 법원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그의 역류 사유가 불리한 조건을 구성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16 조 방문

각 피억류자는 정기적이며 가능한 한 빈번한 방문 특히 그의 근친자의 방문을 받는 것을 허용받아야 한다.

각 피억류자는 긴급한 경우 특히 근친자의 사망이나 중병시에는 가능한 한 귀가가 허가되어야 한다.

제 9 장 형벌 및 징계벌

제 117 조 총칙, 적용법령

피억류자가 억류되어 있는 영역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은 본장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억류중 위반행위를 범한 피억류자에게 계속 적용된다.

일반적인 법률, 규칙 또는 명령이 피억류자가 행한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피억류자가 아닌자가 행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을 때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벌만을 과하여야 한다.

피억류자를 동일한 행위 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중 처벌할 수 없다.

제 118 조 형벌

범인 또는 당국은 형의 선고를 행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억류국의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능한 한 고려하여야 한다. 범인 또는 당국은 피억류자가 소추받은 위반행위에 관하여 규정된 형벌을 자유로이 경감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하여 소정의 최경량 형벌을 반드시 적용할 의무는 지지 아니한다.

일광이 비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의 금고 및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잔악한 행위를 금지한다. 징계벌 또는 형벌에 복역한 피억류자는 기타 피억류자와 상이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피억류자의 징계나 재판이전에 유치기간을 피억류자에게 선고하는 구속의 징계벌 또는 형벌에 통산하여야 한다.

피억류자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대표하는 피억류자에 대하여 취하여지는 모든 소송절차 및 그 결과에 관하여 통지를 받아야 한다.

제 119 조 징계벌

피억류자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징계벌은 다음과 같다.

1. 30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피억류자가 받을 임금의 100분의 50이하의 벌금
2. 본 조약에 규정된 대우 이외에 허용되고 있는 특권의 정지
3. 수용소의 유지에 관한 1일 2시간 이내의 노동
4. 구금

징계벌은 어떠한 경우라도 비인도적인 것, 잔악한 것 또는 피역류자의 건강을 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피역류자의 연령, 성별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하나의 처벌기간은 피역류자가 처벌을 받을 경우에 있어서 동시에 두개이상의 기율 위반행위에 대하여 문책당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위반행위간의 관련 유무를 불문하고 최대한 연속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제 120 조 도주

도주의 기수 또는 미수후에 체포된 피역류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반복해서 행하여졌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징계벌만을 과할 수 있다.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주의 기수 또는 미수의 결과로서 처벌된 피역류자는 특별한 감시하에 둘 수 있다. 그 감시는 피역류자의 건강을 해하여서는 안되고 수용소안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또한 본 협약에 의하여 피역류자에게 부여되는 여하한 보호도 배제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도주의 기수 또는 미수를 방조하거나 교사한 피역류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대하여 징계벌만을 과하여야 한다.

제 121 조 관련된 위반행위

도주의 기수 또는 미수는 그 행위가 반복 행하여진 경우라도 피역류자가 도주중에 행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소추되었을 때에 형을 가중하는 정상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총돌당사국은 피역류자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도주의 기수여부를 불문하고 도주에 관련하여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 징계벌을 과하느냐 또는 형벌을 과하느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무당국이 관대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22 조 조사. 미결기간의 구금

기율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즉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특히 도주의 기수 또는 미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재차 체포된 피역류자는 주무당국에 가능한 한 신속히 인도되어야 한다.

기율에 대한 범죄가 있는 경우 미결 구금기간은 모든 피역류자에 대하여 최소한도로 하여야 하며 14일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그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금형에 이를 통산하여야 한다.

제124조 및 제125조의 규정은 기율에 대한 범죄로 말미암은 미결수인 피역류자에게 적용된다.

제 123 조 주무당국. 절차

징계벌은 수용소장 또는 그를 대리하거나 그 징계권을 위임받은 책임있는 장교나 공무원만이 과할 수 있다. 단, 이것은 법원 및 상급 당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입건된 피역류자에 대하여는 징계의 판정전에 그가 입건된 범죄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통고하고 또한 당해 피역류자가 자기의 행위를 해명하고 변호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 피

역류자에 대하여는 특히 증인을 소환하고 필요할 때에는 자격있는 통역인에게 통역시키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판정은 당해 피역류자 및 피역류자위원회의 위원의 입회하에서 선고되어야 한다.

징계의 판정으로부터 집행하기 까지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어떤 피역류자에게 중복하여 징계의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중 어느 한 징계벌의 기간이 10일이상일 때에는 그 집행까지에는 적어도 3일의 여유를 부여하여야 한다.

징계의 기록은 수용소장이 보존하고 이익보호국의 대표자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제 124 조 징계벌을 위한 시설

피역류자를 어떠한 경우에도 징치시설(감옥, 구치소, 도형장등)에 이동시켜서 징계벌에 처해서는 안된다.

피역류자를 징계벌에 처하는 장소는 위생상의 요건과 합치하여야 하며, 특히 적절한 침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징계벌에 복하는 피역류자는 그들 자신을 청결한 상태로 보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징계벌에 복하는 여자피역류자는 남자피역류자와 격리된 장소에 구금하고 또한 여자의 직접 감시하에 두어야 한다.

제 125 조 중요한 보장

징계벌에 복하는 피역류자에 대하여는 1일에 적어도 2시간 운동하고 또한 호외에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그 피역류자에 대하여는 요청이 있으면 매일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그 피역류자는 그의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소의 의무실 또는 병원에 이동되어야 한다.

그러한 피역류자에 대하여는 읽고, 쓰고, 서신을 수발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포의 수령이나 금전의 지불은 그들의 처벌이 종료될 때까지 보류할 수 있으며 그동안 피역류자위원회에 위탁되어야 한다.

피역류자위원회는 그 하물중에 부패하기 쉬운 물품은 의무실에 인도한다. 징계벌에 복하는 피역류자로부터는 본 협약 제107조 및 제143조의 규정의 혜택을 박탈할 수 없다.

제 126 조 소송절차의 준용규정

제71조로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은 역류국의 영역내에 있는 피역류자에 대한 소송절차에 유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 10 장 피역류자의 이동

제 127 조 조건

피역류자의 이동은 항상 인도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그 이동은 원칙적으로 철도 기타의

수송수단에 의하여 적어도 억류국 군대의 이주조건과 동등한 조건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예외적인 조치로서 도보로 이동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피억류자의 건강상태가 그 이동에 적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동을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피억류자를 과도하게 피로 시켜서는 안된다.

억류국은 이동중인 피억류자에 대하여 그 건강을 유지하는데 양, 질 및 종류면에서 충분한 음료수와 식량을 보급해야 하며, 필요한 피복, 적당한 숙사 및 필요한 의류를 공여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이동중인 피억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적당한 예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이동되는 피억류자의 완전한 명부를 그 출발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병자, 부상자 또는 허약자인 피억류자와 임신부는 이동이 그의 건강에 극히 유해로울 때에는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그의 안전을 위하여 절대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선이 수용소에 접근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용소의 피억류자를 충분히 안전한 조건하에서 이동시킬 수 있을 때와 피억류자를 현지에 두면 이동하는 경우보다 일층 더 큰 위험에 직면케 될 때를 제외하고는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억류국은 피억류자의 이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억류자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그 자의 송환 또는 가정의 복귀를 일층 곤란케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제 128 조 방법

이동하는 경우에는 피억류자에 대하여 그 출발사실 및 새로운 우편 주소를 정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피억류자가 짐을 꾸리고 또 그 가족에게 통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행하여야 한다. 피억류자에 대하여는 그 개인용품 및 수령한 통신과 소포의 휴대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화물의 중량은 이동조건에 의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억류자 1인에 대하여 “25 킬로그램”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구 수용소에 보내어진 통신 및 소포는 지체없이 피억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수용소장은 피억류자위원회와 협의하여 피억류자의 공유물 및 제2항에 따라 과하여지는 제한에 의하여 피억류자가 휴대할 수 없는 화물의 수송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1 장 사망

제 129 조 유언서, 사망증명서

피억류자의 유언서는 완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책임있는 당국이 수리할 것이며 피억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억류자가 생전에 지정한 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피억류자의 사망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의사가 확인하여야 한다. 그 사망에 관하여는 사인 및 사망시의 상태를 기재한 사망증명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정식 사망기록은 정당히 등록하여 수용소가 있는 영역안에서 실시되는 절차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인증등본은 이익보호국 및 제140호에 규정된 중앙피보호자정보국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 130 조 매장, 분묘

억류당국은 억류되어 있는 동안 사망한 피억류자를 가능한 한 그가 속하는 종교의 의식에 따라 정중히 매장하고 그 분묘를 존중할 것이며 적절히 유지하고 언제라도 분간할 수 있는 표지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망한 피억류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동의 분묘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개의 분묘에 매장하여야 한다. 그 시체는 위생상 절대로 필요한 경우, 고인의 종교에 의한 경우 또는 본인의 명시적 희망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화장할 수 있다. 화장한 경우에는 피억류자의 사망증명서에 화장의 사실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 유골은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억류당국이 보관하며, 그의 근친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능한 한 신속히 그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신속히 그리고 늦어도 적대행위의 종료시까지 제136조에 규정한 피보호자정보국을 통하여 피억류자의 분묘의 표를 그들이 속하는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 표에는 사망한 피억류자를 식별하는데 필요한 모든 명세 및 그 묘의 정확한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131 조 특별한 상황에서 살해 또는 부상당한 피억류자

어떤 피억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가 위병 기타의 피억류자 기타인에 의하여 야기되었거나 또는 야기된 혐의가 있을 경우 또는 피억류자의 원인불명의 사망에 관하여는 억류국은 즉시로 정식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사항에 관하여는 즉시로 이익보호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증인으로부터 얻은 공술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기 이익보호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조사에 의하여 1인 또는 2인 이상의 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억류국은 책임을 추궁당할 자를 소추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2 장 석방, 송환 및 중립국내에서의 입원

제 132 조 적대행위시간 또는 점령기간 중

억류국은 각 피억류자의 억류 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각 피억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각 충돌당사국은 또한 적대행위의 기간중 특정 종류의 피억류자 특히 아동, 임산부, 유아 및 아동의 모친, 부상자 및 병자 또는 장기간 구류되어 있던 피억류의 석방, 송환, 거주지에의 복귀 또는 중립국에서의 입원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33 조 적대행위 종료후의 석방

억류는 적대행위의 종료후 가능한 한 조속히 이를 종식시켜야 한다.

충돌당사국의 영역안에 있는 억류자로서 징계벌만을 과할 수 없는 위반행위에 관한 형사 소송절차가 수행중인 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또는 사정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할 때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미 자유형의 판결을 받은 피억류자에 관하여도 동일하다.

역류국 및 관계국은 분산된 피역류자를 수색하기 위하여 적대행위 또는 지역의 점령 종료 후에 협정으로써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34 조 송환 및 최후거주지에의 복귀

체약국은 적대행위 또는 점령의 종료에 있어서 모든 피역류자가 그의 최후 거주지에 복귀함을 확보하고 또한 그의 송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135 조 비용

석방된 피역류자가 역류될 때에 거주하고 있던 장소에 복귀하기 위한 비용과 역류국이 그들을 여행중 또는 공해상에서 역류하였을 경우에는 그들이 여행을 완료하거나 또는 그 출발지점에 복귀하기 위한 비용은 역류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역류국은 역류전에 자국내에 항구적인 거처를 가지고 있던자에 대하여 그 영역안에 거주함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피역류자의 송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역류자가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나 또는 본국정부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로서 귀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역류국은 자국 영역의 출발지점이후의 여행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역류국은 자기 자신의 요청으로 역류된 피역류자의 송환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피역류자가 제45조에 따라 이송된 경우에는 피역류자의 이송을 행하는 국가 및 그들을 받아드리는 국가는 자국이 부담하는 비용의 할당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전기의 규정은 충돌당사국이 적국의 수중에 있는 자국민의 교환 및 송환에 관하여 특별협정을 체결함을 막지 아니한다.

제 5 부 피보호자정보국 및 중앙피보호자정보국

제 136 조 국내정보국

각 충돌당사국은 충돌의 개시 및 점령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권한내에 있는 피보호자에 관한 정보의 수령 및 전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적인 정보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각 충돌당사국은 2주일이상 구금하였거나, 주거를 지정하였거나 또는 역류한 모든 피보호자에 대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자국의 피보호자정보국에 가급적 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역류국은 관계 각 부처로 하여금 피보호자에 관한 모든 이동(예를들면 이동, 석방, 송환, 도주, 입원, 출생, 사망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전기 피보호자정보국에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 137 조 정보의 통지

각국의 피보호자정보국은 이익보호국 및 제40조에 규정한 중앙피보호자정보국을 통하여 피보호자의 본국 또는 그들이 거주하였던 국가에 대하여 피보호자에 관한 정보를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피보호자정보국은 피보호자에 관하여 수령하는 모든 조회에 회답하여야 한다.

피보호자정보국은 피보호자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달이 본인 또는 그 근친자에게 유해로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정보는 중앙피보호자정보국에 전달하여야 하며, 동 정보국은 그 사정에 관하여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제140조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피보호자정보국의 모든 통지서는 서명 또는 압인에 의하여 인증되어야 한다.

제 138 조 필요한 명세

피보호자정보국이 수령하고 전달하는 정보는 피보호자의 신원을 정확히 식별하고 또한 근친자에게 신속히 요지시킬 수 있게 하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각 피보호자에게 관한 정보는 적어도 성명, 출생지 및 생년월일, 국적, 최후 거주지, 특징, 부친의 이름 및 모친의 결혼전의 성, 본인에 관하여 취하여진 조치의 일자, 장소 및 성질 피보호자에 대한 통신을 송부할 주소 및 통지를 받을자의 성명과 주소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동일하게 중병 또는 중상자인 피억류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도 정기적으로 가능하면 매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39 조 개인적 유가물의 송부

각국의 피보호자정보국은 또한 제136조에 규정된 피보호자 특히 송환되거나 석방된 피보호자 또는 도주하거나 사망한 피보호자가 남긴 모든 개인적인 유가물의 수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또한 그 유가물을 직접이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피보호자정보국을 통하여 관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피보호자정보국은 그 유가물을 봉인한 행낭에 넣어서 송부하여야 하며, 그 행낭에는 그 유가물을 소지하고 있던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명확하고도 완전한 명세서 및 내용의 완전한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유가물의 수령 및 발송에 관하여는 상세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제 140 조 중앙피보호자정보국

피보호자(특히 피억류자)에 관한 중앙피보호자정보국은 중립국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국에 대하여 중앙피보호자정보국을 조직할 것을 제기하여야 하며, 중앙피보호자정보국은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123조에 규정된 중앙포로정보국과 동일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중앙피보호자정보국의 임무는 제136조에 규정된 모든 종류의 정보로서 공적 또는 사적의 경로로 입수할 수 있는 것을 수집하고 또한 관계자의 출생국 및 그들이 주소를 가진 국가에 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히 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정보의 전달이 그 정보와 관계있는 자나 그의 근친자에게 유해로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앙피보호자정보국은 이 전달에 관하여는 충돌당사국으로부터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제약국 특히 그 국민이 중앙피보호자정보국의 용역의 혜택을 입은 국가는 중앙피보호자정보국에 필요한 재정적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기의 규정은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제142조에 규정한 구호단체의 인도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41 조 요금의 면제

각국이 피보호자정보국 및 중앙피보호자정보국은 모든 우편요금의 면제 및 제110조에 규정된 면제를 받으며, 또한 가능한 한 전보요금의 면제 또는 적어도 상당한 감액을 받아야 한다.

제 4 편 협약의 실시

제 1 부 총칙

제 142 조 구호단체와 기타 단체

억류국이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또는 기타 합리적인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조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종교단체 구호단체 기타 피보호자를 원조하는 단체의 대표자 및 정당하게 위임받은 대리인들을 피보호자의 방문, 그리고 그 출처의 여하를 불문하고 종교, 교육 또는 오락목적은 가지는 구호품과 물자를 분배하고 수용소내에서 여가를 활용하도록 원조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억류국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전기의 단체나 기관은 억류국의 영역내에나 기타의 여하한 국가내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억류국은 대표들이 자국 영역안에서 억류국의 감독하에 임무를 수행할 것이 허용되고 있는 단체 또는 조직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모든 피보호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특별한 지위는 항상 승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제 143 조 감시

이익보호국의 대표자나 사절단은 피보호자가 있는 모든 장소, 특히 수용, 구금 및 노동의 장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 되어야 한다.

이익보호국의 대표나 사절단은 피보호자가 사용하는 모든 시설에 출입할 수 있으며 또한 입회인 없이 직접적으로 또는 통역인을 통하여 피보호자와 회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문은 절대적인 군사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는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서 행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지 아니한다. 그 방문의 기간 및 회수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이익보호국의 대표와 사절단은 방문하고자 하는 장소를 자유로이 선정할 수 있다. 억류국이나 점령국, 이익보호국 및 필요한 경우 방문을 받는 자의 본국은 피억류자의 동국인이 방문에 참가하는 것을 합의할 수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대표도 동일한 특권을 향유한다. 그 대표의 임명은 당해 대표가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 영역을 관할하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4 조 협약의 보급

체약국은 전, 평시를 막론하고 본 협약의 전문을 가급적 광범위하게 자국내에 보급시킬 것이며, 특히 군 교육계획, 가능하다면 민간교육계획에도 본 협약에 관한 학습을 포함시킴으로서 본 협약의 원칙을 전군대와 국민에게 습득시킬 것을 약정한다.

전시에 있어서 피보호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민간당국, 군당국, 경찰당국 및 기타 당국은 본 협약의 본문을 소지하고 또한 본 협약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145 조 번역문, 적용법령

체약국은 스위스 연방정부를 통하여 또한 전시중에는 이익보호국을 통하여, 본 조약의 공식 번역문과 본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한 제 법령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6 조 형사적 제재 : I. 개관

체약국은 본 협약에 대하여 다음 조에 규정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도록 명령한 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약정한다.

각 체약국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할 것을 명령한 혐의가 있는 자를 수사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자는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법원에 기소되어야 한다. 또한, 각 체약국은 희망이나 자국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자를 다른 관계 체약국에서 재판을 받도록 인도할 수 있다. 단, 관계 체약국이 해 사건에 관하여 일단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각 체약국은 다음 조항에서 정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 이외에 본 협약 제 규정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105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는 정당한 재판과 변호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 147 조 II. 중대한 위반행위

전조에서 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란 본 협약이 보호하는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 고의적인 살인, 신체 또는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고통을 주는 고문이나 비인도적 대우(생물학적 실험을 포함), 피보호자를 불법으로 추방 이송 또는 구금하는 것, 피보호자를 적국의 군대에 복무하도록 강요하는 것, 본 협약에 규정된 공정한 정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 인질로 잡는 것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불법 및 자의적인 재산의 광범한 파괴 또는 징발.

제 148 조 III. 체약국의 책임

체약국은 전조에서 말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자국이 저야할 책임을 벗어나거나 또는 타방 체약국으로 하여금 동국이 저야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49 조 조사절차

충돌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 협약에 대한 위반혐의에 관하여 당사국간에 결정되는 방법으로 심문하여야 한다.

심문의 절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는 당사국은 그 절차를 결정할 심판관의 선임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충돌당사국은 지체없이 위반행위를 종식시키거나 억제하여야 한다.

제 2 부 최종규정

제 150 조 언어

본 협약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되며 양자 공히 정본이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본 협약이 노어와 서반아어로 공식 번역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51 조 서명

오늘 날짜의 본 협약은 1949년 4월 21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국가에 대하여 1950년 2월 12일까지 그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 152 조 비준

본 협약은 가급적 조속히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베른"에 기탁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각 비준서의 기탁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며 그 기록의 인증등본을 본 협약 서명국과 가입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 153 조 효력발생

본 협약은 2개이상의 비준서가 기탁된 6개월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 이후 본 협약은 각 체약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6개월후에 각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 154 조 헤이그협약과의 관계

본 협약의 체약국으로서 1899년 7월 29일 또는 1907년 10월 18일자 육전법규 및 관례에 관한 헤이그조약에 의하여 구속받고 있는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본 협약은 헤이그조약 부속규칙 제2장 및 제3장을 보완한다.

제 155 조 가입

본 협약은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본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 156 조 가입통고

본 협약에의 가입은 스위스 연방정부에 서면 통고해야 하며 그 공문이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가입사실을 본 협약 서명국과 가입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 157 조 즉시발효

제2조와 제3조에 규정한 경우는 전쟁 또는 점령의 개시 전후에 충돌당사국이 행한 비준 또는 가입을 즉시 발효시킨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충돌당사국으로부터 접수된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제 158 조 탈퇴

각 체약국은 본 협약에서 자유로이 퇴할 수 있다.

탈퇴는 서면으로 스위스 연방정부에 통고하여야 하며, 스위스 연방정부는 그 통고를 모든 체약국 정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탈퇴는 스위스 연방정부에 통고한 1년후에 발효한다. 단, 탈퇴국이 탈퇴를 통고할 당시에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강화조약 체결시까지 또한 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의 석방, 송환 및 거주지의 설정에 관련하는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탈퇴는 탈퇴하는 국가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탈퇴는 문명인간에 확립된 관행, 인도의 법칙, 대중적 양심에 기인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충돌당사국이 계속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해하여서는 안된다.

제 159 조 등록

스위스 연방정부는 본 협약을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본 협약에 관하여 동 정부가 접수하는 모든 비준, 가입, 탈퇴를 국제연합 사무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인은 각자의 전권 위임장을 기탁하고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49년 8월 12일 제네바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하였다.

원본은 스위스 연방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그 인증등본을 각 서명국과 가입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I 부속서

병원, 안전지대 및 안전지구에 관한 협정안

- 제 1 조**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23조에 규정한 자,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14조에 규정한 자, 병원과 안전지대 및 안전지구의 조직과 관리와 더불어 그곳에 수용되는 자의 간호를 위임받은 요원을 위하여 병원과 안전지대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병원 및 안전지대 안에 주소를 가지는 자는 그 지대에 체류할 권리를 가진다.
- 제 2 조** 자격 여하를 불문하고 병원 및 안전지대에 거주하는 자는 그 지대의 내외에서 군사행동 또는 군수품의 생산에 직접 관련되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3 조** 병원 및 안전지대를 설정하는 국가는 그 지대에서의 거주 또는 그 지대에서의 출입의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출입을 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4 조** 병원 및 안전지대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야 한다.
(가) 그 지대가 그 지대를 설정한 국가에 의하여 지배되는 지역의 일 소부분일 것.
(나) 그 지대의 주민이 그 지대의 수용능력에 비하여 소수일 것.
(다) 그 지대가 모든 군사목표 또는 중요한 산업상 또는 행정상의 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또한 그러한 것이 소재하지 않을 것.
(라) 그 지대의 위치가 전쟁 수행상 중요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에 있지 않을 것.
- 제 5 조** 병원 및 안전지대는 다음의 의무에 따라야 한다.
(가) 병원 및 안전지대에 속하는 병참선 및 수송수단은 군사상의 인원 및 자재의 수송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통과시에도 그러하다.
(나) 병원 및 안전지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수단으로 방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6 조** 병원 및 안전지대는 그 주위 및 건물위에 흰바탕에 붉은 사선을 그어 표시하여야 한다. 전적으로 부상자 및 병자를 위하여 확보된 지대는 백색지에 적십자(적신월 또는 적사자및태양)의 표장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 지대는 야간에는 적당한 조명으로서 동일하게 표시할 수 있다.
- 제 7 조** 각국은 평시에 있어서 또는 적대행위의 개시시에 자국이 지배하는 지역에 있는 병원 및 안전지대에 관하여 모든 체약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각국은 또한 적대행위를 하고 있을 동안 새로이 설정한 병원 및 안전지대에 관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병원 및 안전지대는 적국이 전기의 통고를 접수하였을 때에 정식으로 설치된 것으로 한다. 그러나, 적국은 본 협정의 조건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병원 및 안전지대

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당사국에 즉시 거부의 통고를 함으로써 그 병원 및 안전지대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혹은 그의 승인여부에 관한 결정을 제8조에 규정된 감독기관에 일임할 수 있다.

제 8 조 적국이 설립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병원 및 안전지대를 승인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병원 및 안전지대가 이 협정에서 정하는 조건과 의무를 충족시키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특별위원회에 병원 및 안전지대의 감독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어느 때라도 모든 병원 및 안전지대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곳에 항구적으로 거주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한다. 그 위원은 감독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제 9 조 특별위원회가 본 협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당해 병원 및 안전지대를 관할하는 국가의 주의를 환기하고 또한 그 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그 국가에 5일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당해 병원 및 안전지대를 승인한 국가에 그를 정식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전기의 유예기간이 만기될 때까지 당해 병원 및 안전지대를 관할하는 국가가 주의의 환기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적국은 그 병원 및 안전지대에 관하여는 본 협정에 구속되지 않음을 통고할 수 있다.

제 10 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병원 및 안전지대를 설정한 국가와 그 병원 및 안전지대의 존재에 관하여 통고를 받은 적국은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를 지명하거나 또는 이익보호국이나 기타 중립국으로 하여금 지명 시켜야 한다.

제 11 조 병원 및 안전지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의 대상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충돌당사국은 항상 병원 및 안전지대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제 12 조 한 지역이 점령되었을 경우에는 그 지역안에 있는 병원 및 안전지대는 병원 및 안전지대로서 계속 존중되고 또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점령국은 수용된 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지대의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3 조 본 협약은 각국이 병원 및 안전지대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구에 대하여도 적용시켜야 한다.

제 II 부속서

집단적 구호에 관한 규칙안

- 제 1 조** 피억류자위원회는 그 수용소에 의하여 관리되는 모든 피억류자(병원 또는 감옥 및 기타의 장치시설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억류자위원회에 위탁된 집단에 보내어진 구호품을 분배할 것을 허용 받아야 한다.
- 제 2 조** 집단에 보내어진 구호품의 분배는 증여자의 지시와 피억류자가 작성하는 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료품의 분배는 될 수 있는 대로 선임의무관의 동의하에 행하여야 하며, 선임의무관은 병원 및 의무실에서는 그 환자에게 필요될 때에는 전기 지시에 따를 필요는 없다. 분배는 이와 같은 제한내에서 항상 공평히 행하여야 한다.
- 제 3 조** 피억류자위원회의 위원은 수령하는 물품의 품질과 수량을 확인하고 또한 그에 관하여 증여자에게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 수용소에 가까운 역, 또는 기타의 구호품을 도착지점에 갈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 제 4 조** 피억류자위원회는 그 수용소의 모든 분소와 부속건물에 있는 집단에게 보내어진 구호품의 분배가 피억류자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아야 한다.
- 제 5 조** 피억류자위원회는 집단 앞으로 보내어진 구호품에 관련된 사항(분배 필요품 수량 등)에 대하여 증여자에 보낼 서식이나 질문서를 자신이 기입하고 또한 노동분견대 피억류자위원회의 위원이나 의무실 및 병원의 선임 약무관으로 하여금 기입시키도록 허용받아야 한다. 그러한 서식과 질문서는 정당히 기입하여 지체없이 증여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 제 6 조** 피억류자위원회는 그 수용소에 있는 피억류자에 대하여 집단에게 보내어진 구호품을 정기적으로 분배할 것을 확보하고 또한 피억류자의 새로운 집단의 도착에 의하여 발생하는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집단에게 보내어진 구호품을 충분히 저장하고 또한 유지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피억류자위원회는 적당한 창고를 자유로이 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창고의 출입구에는 2개의 자물쇠를 달고 그중 하나의 열쇠는 피억류자위원회가 가지고 다른 한개는 수용소장이 가지도록 한다.
- 제 7 조** 체약국 특히 억류국은 가능한 한도내에서 또는 주민에 대한 물자의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억류자에게 집단적 구호품을 분배하기 위하여 그 영역에서 행하는 모든 구매행위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 국가는 그 구매행위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자국의 이전 기타의 기술적 또는 행정적 성질의 재정적 조치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 8 조 정기의 제 규정은 피억류자가 수용소에 도착하기 전에 또는 이동의 도중에 있어서 집단에게 보내어진 구호품을 수령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익보호국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피억류자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기타의 단체로서 이러한 구호품 송달의 책임을 지는 대표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수단에 의하여 수신인에 대한 그의 구호품의 분배를 확보함을 방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 III 부속서

1. 억류엽서

1. 표 면

<u>민간인 억류자 우편</u>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5px;">우편요금면제</div>
<h2 style="margin: 0;">우 편 엽 서</h2>	
<p style="text-align: center;">주 의</p> <p>각 피억류자는 억류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또한 병원 또는 기타 수용소에 이동함으로 말미암아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마다 이 엽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이 엽서는 각 피억류자가 그 근친자에게 송부하도록 허가된 엽서와는 별도의 것이다.</p>	<p>중 앙 피 보 호 자 정 보 국</p> <p>국제적십자위원회</p>

2. 이 면

활자체로서 읽기 쉽게 기입할 것.	1. 국적
2. 성	3. 명(완전히)
4. 부의 명	
5. 생년월일	6. 출생지
7. 직 업	
8. 억류전의 주소	
9. 근친자의 주소	
10. 억류된 일자(또는) (병원)으로부터 이동된 일자	
11. 건강 상태	
12. 현재의 주소	
13. 일 자	14. 서 명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인을 할 것. 어떠한 설명도 가하지 말 것. -이면의 주의를 참조할 것.	

억류엽서의 크기는 세로 10Cm, 가로 15Cm로 한다.

2. 편지

민간인 억류자 우편
우편요금면제

귀 하

번 지

시, 군, 면명(활자체로 쓸것)

주 또는 지방

국(활자체로 쓸것)

발신인 성명

출생지 및 생년월일

수용소의 주소

편지의 규격은 세로 29Cm, 가로 15Cm로 한다.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 I 의정서)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 of 8 June 1977

[일반사항]

1977년 6월 8일 제네바에서 작성
1978년 12월 7일 협약발효
1993년 12월 1일 제I부속서 개정

[대한민국 관련사항]

1981년 12월 14일 국회비준 동의
1982년 1월 15일 스위스연방정부에 가입서 기탁
1982년 7월 15일 발효(조약 제778호)
* 선언내용 있음

*대한민국 선언내용

• 1982년 1월 5일(조약 제778호)

1. 제I의정서 제44조에 관하여, 동조 제3항 둘째 문장에 기술된 “상황”은 점령지역 또는 제1조 제4항에 의하여 규율되는 무력충돌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동조 제3항(b)의 “전개”를 “공격이 개시되는 장소로 향한 모든 움직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제I의정서 제85조 제4항 나호에 관하여, 전쟁포로를 억류하고 있는 국가가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발표된 포로의 의사에 따라 그 포로를 송환하지 아니함은 동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행위 중 포로송환에 있어서의 부당한 지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제I의정서 제91조에 관하여, 제 협약 또는 본 의정서의 규정을 위반하는 충돌당사국은 피해 계약당사국에게 보상책임을 지며 이는 피해 계약당사국이 무력충돌의 법적 당사자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4. 제I의정서 제96조 제3항에 관하여, 제1조 제4항의 요건을 진정으로 충족시키는 당국에 의한 선언만이 제96조 제3항에 규정된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동 당국은 적절한 지역 정부간 기구에 의하여 승인받는 것이 필요하다.

• 2004년 4월16일(조약 제1672호)

대한민국 정부는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다른 모든 계약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 1949년 제네바협약 제 I 추가의정서 제90조에 의하여 허가된 바와 같이 그러한 다른 계약당사국이 제기한 혐의사실을 조사할 위원회의 권능을 사실상 그리고 특별한 합의 없이 인정한다.

AP I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I의정서)

전문

체약당사국은

제국민간에 평화가 지배하도록 하기 위한 그들의 진지한 희망을 선언하고,

모든 국가는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주권, 영토보존,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불일치하는 여하한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상기하고,

무력충돌의 희생자를 보호하는 재규정을 재확인하고 발전시키며 동 규정의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보충할 필요가 있음을 믿고,

본 의정서 및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연합헌장과 배치되는 여하한 침략행위 또는 무력행사를 합법화하거나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확신을 표명하고,

나아가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및 본 의정서의 규정은 무력충돌의 성격이나 원인 또는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주장되거나 충돌당사국에 기인하는 이유에 근거한 어떠한 불리한 차별도 없이 이들 약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자에게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완전히 적용됨을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편 총칙

제 1 조 일반원칙 및 적용범위

1. 체약당사국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본 의정서를 존중할 것과 본 의정서의 준종을 보장할 것을 약정한다.
2. 본 의정서 또는 다른 국제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간인 및 전투원은 확립된 관습, 인도원칙 및 공공양심의 명령으로부터 연원하는 국제법원칙의 보호와 권한하에 놓인다.
3. 전쟁희생자 보호를 위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을 보완하는 본 의정서는 이들 협약의 공통조항인 제2조에 규정된 사태에 적용한다.
4. 전항에서 말하는 사태는 유엔헌장 및 “유엔헌장에 따른 국가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의 선언”에 의하여 보장된 민족자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식민통치, 외국의 점령 및 인종차별권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무력충돌을 포함한다.

제 2 조 정의

본 의정서의 목적을 위하여

1. “제1협약”, “제2협약”, “제3협약” 및 “제4협약”이라 함은 각각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대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난선자의 상대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을 의미하며, “제협약”이라 함은 전쟁희생자 보호를 위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4개협약을 의미한다.
2.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규칙”이라 함은 충돌당사국이 당사자인 국제협정에 명시된 전시에 적용되는 규칙과 전시에 적용가능한 국제법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 및 규칙을 의미한다.
3. “이익보호국”이라 함은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수락되었으며 제협약과 본 의정서에 따라 이익보호국에 부여된 기능을 수행할 것에 동의한 중립국 또는 충돌 비당사국을 의미한다.
4. “대리기관”이라 함은 제 5조에 따라 이익보호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기구를 의미한다.

제 3 조 적용의 개시 및 종료

항시 적용되는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1. 제협약 및 본 의정서는 본 의정서 제1조에 규정된 사태가 개시될 때로부터 적용된다.
2.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적용은 충돌당사국의 영역내에서는 군사작전의 일반적인 종료시, 점령지역의 경우에는 점령의 종료시에 끝난다. 단, 양 경우에 있어서 최종석방, 송환, 복귀가 그 후에 행하여지는 자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자들은 그들의 최종석방, 송환, 복귀시까지 본 의정서 및 제협약의 관련규정으로부터 계속 혜택을 향유한다.

제 4 조 충돌당사국의 법적지위

제협약과 본 의정서의 적용 및 그에 규정된 협정의 체결은 충돌당사국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영토의 점령 또는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적용은 문제지역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 5 조 이익보호국 및 그 대리기관의 지명

1. 충돌당사국은 충돌이 개시된 때부터 하기 조항에 따라 특히 이익보호국의 지명과 수락을 포함한 이익보호국제도의 적용에 의하여 협약과 본 의정서의 감시와 실시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익보호국은 충돌당사국의 이익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제1조에 규정된 사태가 개시된 날로부터 각 충돌당사국은 지체 없이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적용을 목적으로 이익보호국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그리고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적대국에 의하여 지명되고 자국에 의하여 수락된 이익보호국의 활동을 허용하여야 한다.
3. 본 의정서 1조에 규정된 사례가 개시된 때로부터 이익보호국이 지명되고 수락되지 않

은 경우에는 기타 공정한 인도적 단체가 행동할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충돌당사국이 동의하는 이익보호국의 지체 없는 지명을 목적으로 주선을 제공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각 당사국에게 그 당사국이 적대당사국과의 관계에서 자국을 위하여 이익보호국으로 행동함을 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최소한 5개국의 명단을 제공할 것과 각 적대당사국에게 상대당사국의 이익보호국으로 수락할 수 있는 최소한 5개국의 명단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들 명단은 요청을 접수한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되어야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동 명단들을 비교하고 양측 명단에 기재된 후보국가에 대한 합의를 모색한다.

4.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익보호국이 없는 경우에는 충돌당사국은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공정성과 능률성이 보장되는 기타 조직이 관계 당사국과 필요한 협의를 한 후 이러한 협의의 결과를 고려하여 대리기관으로 행동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리기관의 기능은 충돌당사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충돌당사국은 제 협약 및 본 의정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기관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5. 제4조에 따라 제 협약 및 본 의정서를 적용하기 위한 이익보호국의 지명과 수락은 충돌당사국 또는 점령지를 포함한 어떠한 영토의 법적지위에 대하여도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6. 충돌당사국간의 외교관계의 유지 또는 당사국의 이익 및 자국국민의 이익의 보호를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법의 규칙에 따라 제3국에게 위임하는 것은 협약과 본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이익보호국의 지명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7. 이하 본 의정서의 이익보호국에 관한 언급에는 대리기관도 포함된다.

제 6 조 자격있는 요원

1. 평시에 계약당사국은 국내적십자(적신월, 적사자태양)사의 지원을 받아 제 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적용과 특히 이익보호국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격 있는 요원을 훈련시키도록 노력한다.
2. 그러한 요원의 선발과 훈련은 국내 관할사항이다.
3.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계약당사국이 작성하여 그 목적으로 충분한 훈련요원의 명단을 계약당사국이 이용하도록 유지한다.
4. 국가 영역밖에서 그러한 요원의 사용을 규율하는 조건은 각 경우에 관계당사국간의 특별협정의 대상이 된다.

제 7 조 회의

본 의정서의 수탁국은 제 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1개국 또는 그 이상의 계약당사국의 요청과 계약당사국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계약당사국 회의를 개최한다.

제 2 편 부상자·병자·난선자

제 1 장 일반적 보호

제 8 조 정의

본 의정서의 목적을 위하여

가. “부상자”와 “병자”라 함은 군인 또는 민간인을 불문하고 외상, 질병, 기타 신체적·정신적인 질환 또는 불구로 인하여 의료적 지원 또는 가료가 필요한 자로서 적대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 용어는 입상부, 신생아 및 허약자나 임부와 같은 즉각적인 의료적 지원 또는 가료를 필요로 하는 자로서 적대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자를 포함한다.

나. “난선자”라 함은 군인 또는 민간인을 불문하고 본인 또는 그를 수송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영향이 미치는 재난의 결과로 해상 또는 기타 수역에서 조난을 당한 자로서 적대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적대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한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에 따라 다른 지위를 취득할 때까지의 구조 기간중 난선자로 간주한다.

다. “의무요원”이라 함은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전적으로 마. 호에 열거된 의료목적이나 의무부대의 행정 또는 의료수송의 운영 또는 행정에 배속된 자를 의미한다.

- (1) 제1 및 제2협약에 규정된 자를 포함하여 군인 또는 민간인을 불문하고 충돌당사국의 의료요원 또는 민방위조직에 배속된 의료요원
- (2) 국내적십자(적신월·적사자태양)사와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정당히 인정되고 허가된 기타 국내 자발적 구호단체의 의료요원
- (3) 본 의정서 제9조2항에 규정된 의무부대와 의료수송차량의 의무요원

라. “종교요원”이라 함은 군복과 같이 전적으로 성직에 종사하고 있고 아래에 소속된 군인 또는 민간인을 의미한다.

- (1) 충돌당사국의 군대
- (2) 충돌당사국의 의무부대 또는 의무수송차량
- (3)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의무부대 또는 의무수송차량
- (4) 충돌당사국의 민방위조직

종교요원의 소속은 영구적 또는 임시적일 수 있으며 카. 호의 관련규정이 그들에게 적용된다.

마. “의무부대”라 함은 부상자, 병자, 난선자에 대한 일차진료를 포함한 수색, 수용, 수송, 진찰 및 치료와 같은 의료목적과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구성된 군인 또는 민간시설 및 기타 부대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예를 들어 병원 및 유사한 단체, 수혈센터, 예방의료본부 및 기관, 의료창고와 의무부대의 의료 및 의약품창고를 포함한다. 의무부대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영구적 또는 임시적일 수 있다.

바. “의무수송”이라 함은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상자, 병자, 난선자, 의무요원, 종교요원, 의료장비, 의료품의 육지, 해상, 공중을 통한 수송을 의미한다.

사. “의무수송수단”이라 함은 군용 또는 민간용이든 영구적 또는 일시적이든간에 충돌당

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통치하에 있고 의무수송에 전적으로 할당된 모든 수송수단을 의미한다.

- 아. “의무차량”이라 함은 육상의무수송수단을 의미한다.
- 자. “의무용 선박”이라 함은 해상의무수송수단을 의미한다.
- 차. “의무항공기”라 함은 공중의무수송수단을 의미한다.
- 카. “상임의무요원”, “상설의무부대”, “상설의무수송수단”이라 함은 불특정한 기간동안 의료목적에 전적으로 할당된 것들을 의미한다. “임시의무요원”, “임시의무부대”, “임시의무수송수단”이라 함은 그러한 기간 전체의 한정된 기간동안 의료목적에 전적으로 할당된 것들을 의미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의무요원”, “의무부대”, “의무수송수단”은 상설 및 임시적인 부류를 모두 포함한다.
- 타. “식별포장”이라 함은 의무부대 및 수송수단, 의무 및 종교요원, 장비 또는 보급품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될 경우의 백색바탕의 적십자·적신월·적사자태양의 식별표장을 의미한다.
- 파. “식별신호”라 함은 전적으로 의무부대 또는 수송수단의 구분을 위하여 본 의정서의 제1부속서 제3장에 규정된 모든 신호 또는 통신을 의미한다.

제 9 조 적용범위

1. 부상자, 병자 및 난선자의 상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본 편의제규정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민족적·사회적 출신여하, 빈부, 출생 및 기타 지위 또는 모든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어떠한 불리한 차별도 함이 없이 제1조에 규정된 사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2. 제1협약의 제27조와 제32조의 관계규정은 하기 당국이 인도적 목적을 위하여 충돌당 사국에 공여하는 의무부대 및 의무수송수단(제2협약의 제25조가 적용되는 병원선을 제외하고)과 그 요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 가. 충돌당사자가 아닌 중립국 또는 기타 국가
 - 나. 그러한 국가가 인정하고 허가하는 구호단체
 - 다. 공평한 국제인도주의 단체

제 10 조 보호 및 가료

1. 모든 부상자, 병자 및 난선자는 그들의 소속국 여하를 불문하고 존중되고 보호된다.
2.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은 가능한 최대한으로 그리고 지체없이 그들의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의료적 가료와 보호를 받고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한다. 의료적인 것 이외의 다른 이유에 근거하여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제 11 조 개인의 보호

1. 적대국의 권력내에 있거나 또는 제1조에 언급된 사태의 결과로 구류, 억류되었거나 달리 자유가 박탈된 자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및 완전성은 부당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위태롭게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본조에 규정된 자들에 대하여 당해인의

- 건강상태로 보아 필요하지 아니하며 그 절차를 행하는 당사국이 유사한 의료적 상황에서 자유가 박탈되지 않은 자국민에게 적용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의료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의료적 처리를 받도록 하는 것은 금지된다.
2. 특히 그러한 자들에게 하기 행위를 행하는 것은 그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금지된다.
- 가. 신체 절단
- 나. 의학 또는 과학실험
- 다. 이식을 위한 조직 또는 장기의 제거
- 단, 이러한 행위가 1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정당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2항 다. 호의 금지에 대한 예외는 수혈을 위한 헌혈 또는 이식을 위한 피부기증이 어떤 강제 또는 유인이 없이 자발적이며 기증자와 수혜자 양측의 이익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의료기준과 감독에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4. 소속국 이외의 당사국의 권력하에 있는 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또는 완전성을 심히 위태롭게 하며 1항 및 2항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3항의 요건에 따르지 못하는 모든 고의적 작위 또는 부작위는 본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이 된다.
5. 1항에 규정된 자는 어떠한 외과수술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거부의 경우 의무요원은 한 자가 서명 또는 인정한 그러한 취지의 서면진술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각 충돌당사국은 그 충돌당사국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경우, 1항에 언급된 자에 의한 수혈 또는 이식을 위한 피부기증에 대한 의학적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밖에 각 충돌당사국은 1항에 언급된 사태의 결과로 구류, 억류 또는 기타 자유가 박탈된 자에 대하여 행한 모든 의학적 처치의 기록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기록은 이익보호국에 의한 검열이 항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의무부대의 보호

1. 의무부대는 항상 존중되고 보호되며,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2. 1항은 민간 의무부대들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가. 충돌당사국의 일방에 속하거나

나. 충돌당사국 일방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정되고 허가되거나

다. 본 의정서 제9조2항 및 제1협약의 제27조에 따라 허가될 것.
3. 충돌당사국은 고정 의무부대의 위치를 상호 통고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통고의 부재는 어느 당사국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로부터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4. 어떠한 경우에도 의무부대는 군사목표물을 공격으로부터 면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충돌당사국은 가능한 한 의무부대가 군사목표물에 대한 공격으로 인하여 그 안전이 위태롭지 않게 위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 13 조 민간의무대의 보호의 정지

1. 민간의무부대가 받을 권리가 있는 보호는 동 부대가 인도적기능 이외의 적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는데 이용되지 아니하는 한 정지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호는 적절한 경우 합리적인 시한을 부친 경고를 발한 후 그리고 그러한 경고가 무시된 후에 정지될 수 있다.

2. 다음 사항은 적에게 해로운 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가. 부대요원이 자신 또는 그들 책임하에 있는 부상자 및 병자의 방어를 위한 개인용 소화기를 휴대하는 것.
 - 나. 동 부대가 초병, 보초 또는 호위병에 의하여 방어되는 것.
 - 다. 부상자와 병자로부터 수거되었거나 아직 적절한 기관에 인계되지 못한 소화기, 탄약 등이 부대내에서 발견되는 것.
 - 라. 군대구성원 또는 기타 전투원이 의료상의 이유로 동 부대내에 있는것.

제 14 조 민간의무대의 징발에 대한 제한

1. 점령국은 점령지역내 민간인의 의료적 필요가 계속 충족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따라서, 점령국은 민간의무부대와 그 장비, 자재 또는 요원의 역무가 민간주민에 대한 적절한 의료봉사의 제공과 이미 치료받고 있는 부상자 및 병자의 계속적인 의료적 가료를 위하여 필요한 한 이들을 징발하여서는 안된다.
3. 2항에 언급된 일반규칙이 계속 준수될 것을 조건으로 점령국은 아래의 특수조건에 따라 전기의 자원을 징발할 수 있다.
 - 가. 이러한 자원이 점령군 또는 포로중의 부상자 및 병자의 적절하고 즉각적인 의료처치에 필요한 것일 것.
 - 나. 이러한 필요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만 징발이 계속될 것.
 - 다. 징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민간인 및 치료중인 부상자와 병자의 의료적 필요가 계속 충족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즉각적인 협정이 체결될 것.

제 15 조 민간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의 보호

1. 민간의무요원은 존중되고 보호된다.
2. 필요한 경우 전투행위로 인하여 민간의료봉사가 중단된 지역에 있는 민간의무요원에 대하여 모든 가능한 원조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점령국은 점령지역에서 민간의무요원이 그들의 인도적 기능을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점령국은 그러한 기능의 수행에 있어서 의학적 이유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원으로 하여금 어떠한 자에게도 치료의 우선권을 주도록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그들은 인도적 임무와 양립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4. 민간의무요원은 관련 충돌당사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독, 안전조치에 복종하여 그들의 봉사가 필요한 어느 장소로도 출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5. 민간종교요원은 존중되고 보호된다. 의무요원의 보호와 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과 본의 정서의 규정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 16 조 의료업무의 일반적 보호

1. 누구도 의료윤리에 적합한 의료활동을 수행함을 그 이유로 그 수혜자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결코 처벌받지 아니한다.
2. 의료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의료윤리에 관한 규칙 또는 기타 부상자와 병자의 이익을 위

하여 정하여진 규칙, 제 협약 또는 본 의정서에 반하는 행동 또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되거나, 그러한 규칙 및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행동 또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강제되지 아니한다.

3. 의료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가료를 받고 있거나 또는 받았던 부상자, 병자에 관한 어떠한 정보라도 그의 견해상 그러한 정보가 관련 환자 또는 그 가족에 유해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대국에 소속하든 자국에 소속하든 불문하고 누구에게도 이를 제공하도록 강요되지 아니한다. 단, 전염병 질병에 대한 의무적인 통보에 관한 규칙은 존중된다.

제 17 조 민간주민 및 구호단체의 역할

1. 민간주민은 부상자, 병자, 난선자가 적대당사국에 속하더라도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어떠한 폭행도 행하여서는 안된다. 민간주민 및 적십자(적신월, 적사자태양)사와 같은 구호단체는 피침 또는 피점령지역에서 일지라도 부상자, 병자, 난선자를 자발적으로 수용 및 간호하는 것이 허용된다. 누구도 그러한 인도적행위때문에 가해당하거나 소추, 유죄 언도 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2. 충돌당사국은 1항에 언급된 민간주민 및 구호단체에 대하여 부상자, 병자, 난선자를 수용 및 간호하며 사망자를 수색하고 그 위치를 통보할 것을 호소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이 호소에 응한 자들에게 보호 및 필요한 편의를 부여하여야 한다. 적대국이 지역의 지배권을 취득 또는 재취득하는 경우, 그 적대국도 또한 필요한 기간동안 동일한 보호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8 조 식별

1. 각 충돌당사국은 의무 및 종교요원과 의무부대 및 수송수단이 식별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각 충돌당사국은 식별표장 및 식별신호를 사용하는 의무부대 및 수송수단을 인지하는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채택하고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점령지역 및 전투가 발생중이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민간의료요원과 민간종교요원은 식별포장과 그 지위를 증명하는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인지될 수 있어야 한다.
4. 의무부대 및 수송수단은 권한있는 당국의 동의를 얻어 식별표장에 의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본 의정서 제22조에 언급된 선박과 주정은 제2협약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어야 한다.
5. 식별표장에 추가하여 충돌당사국은 본 의정서 제1부속서 제3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의무부대 및 수송수단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신호의 사용을 허가한다. 예외적으로 전기 제3장에서 취급되고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의무수송수단은 식별표장을 부착함이 없이 식별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6. 본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제규정의 적용은 본 의정서 제1부속서 제1장부터 제3항까지의 규제를 받는다. 의무부대 및 수송수단의 배타적 사용을 위하여 제1부속서 제3장에 규정된 신호는 상기 제3장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그 장에 규정된 의무부대 및 수송수단을 식별하려는 것 이외의 여하한 목적을 위하여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7. 본조는 제1협약 제44조에 규정된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평시에 식별표장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 8. 식별표장의 사용에 대한 감독과 그 남용의 방지와 억제에 관한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규정은 식별신호에도 적용된다.

제 19 조 중립국 및 충돌 비당사국

중립국 및 충돌 비당사국은 본 편에 의하여 보호받는 자로서 그들의 영토내에 접수되었거나 구급된 자 및 그들이 발견한 충돌당사국의 사망자에 관하여 본 의정서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 20 조 보복의 금지

본 편에 의하여 보호받는 자와 물건에 대한 보복은 금지된다.

제 2 장 의무수송

제 21 조 의무차량

의무차량은 협약과 본 의정서에 따라 이동 의무부대와 같은 방법으로 존중되고 보호된다.

제 22 조 병원선 및 연안구명정

- 1. 하기에 관한 제협약의 제규정, 즉
 - 가. 제2협약의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에 규정된 선박
 - 나. 동 선박의 구명정 및 주정
 - 다. 동 선박의 요원 및 승무원
 - 라. 동 승선중인 부상자, 병자, 난선자에 관한
 제협약의 제규정은 이러한 선박이 제2협약 제13조의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민간 부상자, 병자, 난선자를 수송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민간인은 자국이 아닌 어느 당사국에 항복하거나 해상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만일 그들이 타방 당사국의 수중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들은 제4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적용을 받는다.
- 2. 제2협약의 제25조에 규정된 선박에 대하여 제협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보호는 인도적 목적을 위하여 하기가 충돌당사자에게 대여한 병원선에도 적용된다.
 - 가. 중립 또는 충돌비당사국
 - 나. 공평한 국제인도조직
 단, 각 경우에 있어서 동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 3. 제2협약의 제27조에 규정된 소주정은 동조에 규정된 통고가 없는 경우에도 보호된다. 충돌당사국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 식별과 인지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소주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상호간에 통보하여 줄 것이 요망된다.

제 23 조 기타 의무용 선박 및 주정

1. 본 의정서의 제22조와 제2협약 제38조에 언급되지 아니한 의무용선박 및 주정은 해상에 있거나 또는 기타 수역에 있거나를 불문하고 제협약 및 의정서상의 이동의무부대와 같은 방법으로 존중되고 보호된다. 이 보호는 병원선 또는 소주정으로 식별되고 인지될 수 있을 때에만 유효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함정은 식별표장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제2협약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1항에 언급된 선박과 주정은 전쟁법의 적용을 받는다. 명령을 즉시 집행할 수 있는 해상에 있는 어떤 전함도 그들에게 정지, 퇴거 또는 특정 항로를 따를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박과 주정은 승선중인 부상자, 병자 및 난선자를 위하여 요구되는 한 의료임무와 달리 전용될 수 없다.
3. 본조1항에 규정된 보호는 제2협약 제34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정지된다. 본조 2항에 따라 행한 명령에 따를 것을 분명히 거부하는 것은 제2협약 제34조에 의거하여 적에게 유해한 행위가 된다.
4. 특히 총톤수가 2천톤이상인 선박의 경우에 일방 충돌당사국은 적대당사국에게 가능한 한 항행선에 선박 또는 주정의 선명, 규격, 항행예정시간, 항로 및 추정속도를 통고할 수 있으며 기타 식별 및 인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적대당사국은 이러한 정보의 접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제2협약 제37조의 규정은 이러한 선박 및 주정의 의무요원 및 종교교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6. 제2협약의 규정은 이러한 의무용선박 및 주정에 승선중인 제2협약 제13조와 본 의정서 제44조에 규정된 부상자, 병자 및 난선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민간인인 부상자, 병자 및 난선자로서 제2협약 제13조와 본 의정서 제42조에 언급된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해상에서 소속국이 아닌 당사국에게 항복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선박 및 주정으로부터 퇴거당하지 아니한다. 그들이 소속국이 아닌 충돌당사국의 수중에 들어간 경우에는 제4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적용을 받는다.

제 24 조 의무항공기의 보호

의무항공기는 본 편의 규정에 따라 존중되고 보호된다

제 25 조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통제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의 의무항공기

우호국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되는 육지 및 그 상공과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되지 아니하는 해상 및 그 상공에서의 충돌당사국의 의무항공기의 존중과 보호는 적대당사국과의 어떠한 협정에도 의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다 큰 안전을 위하여 이 지역에서 의무항공기를 사용하는 당사국은 특히 그러한 항공기가 적대당사국의 지대공 무기체계의 사정거리내를 비행할 때는 제29조에 규정한 것처럼 적대당사국에 통고할 수 있다.

제 26 조 접촉지역 또는 그와 유사한 지역내의 의무항공기

1. 우호국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통치되는 접촉지역과 그 상공 및 실질적 지배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과 그 상공에서의 의무항공기의 보호는 제2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충돌당사국의 권한있는 군당국간의 사전협정에 의하여서만 완전히 유효하다. 그러한 협정의 부재 시에는 의무항공기는 스스로 위험부담을 지고 운행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항공기로 인지되었을 경우에는 존중되어야 한다.

2. “접촉지역”이라함은 충돌당사국의 선두부대가 상호 접촉하는 육상지역, 특히 지상으로 부터의 직접적인 포화에 노출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제 27 조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지배되는 지역내의 의무항공기

1. 충돌당사국의 의무항공기는, 항공에 대한 사전합의가 적대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사이에 있는 경우, 적대당사국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되는 육지 및 해양의 상공비행중 계속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2. 비행착오 또는 비행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긴급사태 때문에 1항에 규정된 합의없이 또는 합의의 규정을 이탈하여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되는 지역을 비행하는 의무항공기는 자신을 식별시키고 적대당사국에 사태를 통보하여 주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무항공기가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인식되는 즉시, 동 당사국은 제30조 1항에 언급된 육지 및 해상에 착륙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을 내리기 위하여 두 경우 모두 항공기에 대한 공격을 하기 전에 복종할 수 있는 시간을 항공기에 주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28 조 의무항공기 운행제한

1. 충돌당사국이 적대당사국으로부터 군사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의무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의무항공기의 배치는 군사목표물을 공격으로부터 면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의무항공기는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송부하는데 사용될 수 없으며 그러한 목적으로 의도된 어떠한 장비도 수송하여서는 안된다. 의무항공기가 제8조 바. 호와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또는 화물을 수송하는 것은 금지된다. 탑승원의 휴대품 또는 전적으로 비행, 통신, 식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장비를 운반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의무항공기는 탑승중인 부상자, 병자, 난선자로부터 접수하여 아직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인계되지 않은 소화기, 탄약과 탑승중인 의무요원 자신 및 그들의 보호하에 있는 부상자, 병자, 난선자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 소화기 이외의 어떠한 무기도 수송하여서는 안된다.
4. 제26조 및 제27조에 언급된 비행을 수행하는 중에 의무항공기는 적대당사국과의 사전협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상자, 병자, 난선자의 수색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제 29 조 의무항공기에 관한 통고 및 합의

1. 제25조에 규정된 통고 또는 제26조, 제28조 4항 또는 제31조에 규정된 사전합의의 요

청에는 예정된 의무항공기의 수, 비행계획, 식별 수단이 언급되어야 하며, 모든 비행은 제 28조에 따라 수행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2.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통고를 받은 당사국은 즉시 그러한 통고의 접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제26조, 제27조, 제28조 4항 또는 제31조에 규정된 사전합의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가능한 빨리 요청국에 하기사항을 통고하여야 한다.
 - 가. 요청에 동의한다는 것.
 - 나. 요청에 거부한다는 것, 또는
 - 다. 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당사국은 또한 해당 기간동안 그 지역에서의 타 비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제외할 수 있다. 요청국이 대안을 수락한 경우 동 국가는 타당사국에 그러한 수락을 통고하여야 한다.
4. 당사국들은 또한 통고 및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당사국들은 또한 관계 군부대에 그러한 통고 및 합의의 내용을 조속히 보급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 문제의 의무항공기에 의하여 사용될 식별수단에 관하여 동 군부대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 30 조 의무항공기의 착륙 및 검열

1.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되거나 실질적 지배가 명백히 확립되지 않은 지역의 상공을 비행하는 의무항공기는 적절한 경우에는 하기항에 따른 조사를 허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착륙 또는 착수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다. 의무항공기는 그러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 그러한 항공기가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받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착륙 또는 착수할 경우 3항 및 4항에 언급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서만 검열받을 수 있다. 그러한 검열은 지체없이 시작되어야 하며 신속히 수행되어야 한다. 검열국은 이동이 검열을 위하여 필수적이 아닌 한 부상자 및 병자를 항공기로부터 이동시키도록 요청할 수 없다. 검열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상자나 병자의 상태가 검열이나 이동에 의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검열에 의하여 그 항공기가,
 - 가. 제8조 차. 호에 의미에 부합되는 의무항공기라는 것.
 - 나. 제28조에 규정된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
 - 다. 사전합의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사전합의없이 또는 사전합의를 위반하여 비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 그 항공기 및 탑승원중 적대당사국, 중립국, 또는 충돌 비당사국에 속하는 자는 지체없이 비행을 계속하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4. 검열에 의하여 그 항공기가
 - 가. 제8조 바. 호의 의미에 부합되는 의무항공기가 아니라는 것
 - 나. 제28조에 규정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라는 것
 - 다. 사전합의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사전합의없이 또는 사전합의를 위반하여 비행한 것이

라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 그 항공기는 압류될 수 있다. 그 탑승원은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관련규정에 따라 취급된다. 영구 의무항공기로서 배정되었다가 압류된 모든 항공기는 그후로는 의무항공기로서만 사용될 수 있다.

제 31 조 중립국 및 충돌비당사국

1. 사전협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무항공기는 중립국 또는 충돌비당사국의 상공을 비행하거나 그 영토내에 착륙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그들은 전비행기 간중 및 모든 기작기간중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항공기들은 적절한 경우 모든 착륙 또는 착수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 의무항공기가 비행착오 또는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는 긴급상태 때문에 협정의 부재시 또는 협정규정을 이탈하여 중립국 또는 기타 충돌비당사국의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행을 통지하고 자신을 식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무항공기가 인지되는 즉시 그 당사국은 제30조 1항에 언급된 착륙 또는 착수명령을 하거나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그리고 양 경우 모두 항공기에 대한 공격개시 전에 그 항공기에 복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의무항공기가 합의에 의하여 또는 본조2항에 언급된 상황하에서 명령에 의해서건 또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건 중립국 및 충돌비당사국 영토에 착륙 또는 착수할 경우, 그 항공기가 실제로 의무항공기인지를 결정할 목적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검열은 지체없이 시작되어야 하며 신속히 행하여져야 한다. 검열국은 동 항공기를 운행하는 당사국의 부상자 및 병자의 이동이 검열에 필수적이 아닌 한 그들을 이동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 검열국은 모든 경우에 검열이나 이동에 의하여 부상자나 병자의 상태가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검열결과 동 항공기가 실제로 의무항공기임이 밝혀질 경우 전시에 적용될 국제법규칙에 따라 구금될 자 이외의 탑승원과 함께 항공기는 비행을 계속하도록 허가되어야 하며 비행의 계속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가 주어져야 한다. 검열결과 동 항공기가 의무항공기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압류되며 탑승원은 본조4항에 따라 취급된다.
4. 중립국 및 충돌비당사국 영토내의 타방당사국의 동의를 얻어서 의무항공기로부터 일시적이 아닌 착륙을 한 부상자, 병자, 난선자는 그 당사국과 분쟁당사국 사이에 달리 합의되어 있지 않는 한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상 규칙이 요구하는 경우 재차 적대행위에 참가할 수 없도록 억류된다. 의료비와 억류비용은 그 자들의 소속국이 부담한다.
5. 중립국 또는 충돌비당사국은 그들의 상공으로의 의무항공기의 통과 또는 영토내의 의무항공기의 착륙에 전한 조건 및 제한을 모든 충돌당사국에 동등하게 적용한다.

제 3 장 실종자 및 사망자

제 32 조 일반원칙

본장의 시행에 있어 계약당사국, 충돌당사국 및 제협약과 본 의정서에 언급된 국제적 인도주의 기구의 활동은 주로 친척들의 운명을 알고자하는 가족의 권리에 의하여 촉진되어야 한다.

제 33 조 실종자

1. 상황이 허락하는 즉시,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실질적 적대행위의 종결시부터 각 충돌 당사국은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실종된 것으로 보도된 자들을 수색하여야 한다. 동 적대 당사국은 그러한 수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러한 자들에 관한 모든 관련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2. 전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 충돌당사국은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하여 보다 유리한 배려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하기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 가. 적대행위 또는 점령의 결과 2주이상 구류, 구금 또는 기타 포획당한 자들 및 구류 기간중 사망한 자들에 관여하는 제4협약 제138조에 특정된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 나. 적대행위나 점령의 결과 다른 상황하에서 죽은 자들의 경우 그들의 수색 및 그들에 관한 정보의 기록을 가능한 최대한도로 촉진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1항에 따라 실종된 것으로 보고된 자에 관한 정보 및 그러한 정보에 대한 요청은 직접 또는 이익보호국이나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중앙심인기관 또는 국내적십자(적신월, 적사자태양)사를 통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정보가 국제적십자위원회 및 동 위원회의 중앙심인기관을 통하여 전달되지 아니한 경우 각 충돌당사국은 그러한 정보도 역시 중앙심인기관에 제공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충돌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조사단이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지배되는 지역에서 이들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적대당사국의 요원이 그러한 조사단을 동반하도록 하는 합의를 포함하여 조사단이 전장에서 사망자를 수색하고 식별하고 발견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사단의 요원은 이러한 임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동안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제 34 조 사망자의 유해

1. 점령에 관한 이유로 또는 점령 및 적대행위의 결과로 구류중 사망한 자의 유해 및 적대행위의 결과로서 사망한 그 국가의 국민이 아닌 자의 유해는 존중되어야 한다. 모든 그러한 자들의 묘지는 그들의 유해나 묘지가 제협약 및 본 의정서하에서보다 유리한 배려를 받지 못할 경우 제4협약 제130조에 규정된 것처럼 존중되고 유지되고 표시되어야 한다.
2. 상황 및 적대당사국간의 관계가 허용하는 대로, 그 영토내에 분묘 및 경우에 따라서는 적대행위의 결과로 점령중 또는 구류중 사망한 자들의 유해가 소재하는 계약당사국은 하기목적을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가. 사망자의 친척 및 공적분묘 등록기관의 대표에 의한 묘지에의 접근을 촉진시키고, 그러한 접근을 위한 실질적 절차를 규율함.

- 나. 그러한 묘지를 영구히 보호하고 유지함.
- 다. 모국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모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근친의 요청에 의하여 사망자의 유해 및 휴대품의 모국에의 귀환을 촉진시킴.
3. 2항 나. 호 또는 다. 호에서 규정한 협정의 부재시 또는 그러한 사망자의 모국이 자국의 비용으로 묘지의 유지를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하지 아니할 때는 그 영토내 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체약당사국은 사망자유해의 모국으로의 송환을 촉진시키도록 제한할 수 있다. 그러한 제한이 수락되지 않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제의일로부터 5년경과후 모국에의 정당한 통고에 의하여 묘지 및 분묘에 관련되는 자국의 법에 규정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4. 본조에 언급된 묘지가 자국의 영토내에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은 오직 하기조건에 따라 서만 발굴이 허용된다.
- 가. 2항 다. 호 및 3항에 따를 것, 또는
- 나. 발굴의 의료적 및 조사적인 필요의 경우를 포함하여 중요한 공공필요의 문제인 경우, 그리고 이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은 항상 유해를 존중하고 계획된 재매장 장소의 세부사항과 함께 유해를 발굴할 의도를 유해의 모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 3 편 전투방법 및 수단·전투원 및 전쟁포로의 지위

제 1 장 전투방법 및 수단

제 35 조 기본규칙

- 어떤 무력충돌에 있어서도 전투수단 및 방법을 선택할 충돌당사국의 권리는 무제한한 것이 아니다.
- 과도한 상해 및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성질의 무기, 투사물, 물자, 전투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 자연환경에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심대한 손해를 야기할 의도를 가지거나 또는 그러한 것으로 예상되는 전투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 36 조 신무기

신무기, 전투수단 또는 방법의 연구·개발·획득 및 채택에 있어서 체약당사국은 동 무기 및 전투수단의 사용이 본 의정서 및 체약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다른 규칙에 의하여 금지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

제 37 조 배신행위금지

- 적을 배신행위에 의하여 죽이거나 상해를 주거나 포획하는 것은 금지된다. 적으로 하여금 그가 무력충돌시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하의 보호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거나 의무가 있다고 믿게 할 적의 신념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그러한 신념을 배신할 목적의 행위

는 배신행위를 구성한다.

하기 행위들은 배신행위의 예이다.

가. 정전이나 항복의 기치하에서 협상할 것처럼 위장하는 것.

나. 상처나 병으로 인하여 무능력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

다. 민간인이나 비전투원의 지위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

라. 국제연합 또는 중립국, 비전쟁 당사국의 부호, 표창, 제복을 사용함으로써 피보호 자격으로 위장하는 것.

2. 전쟁의 위계는 금지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위계는 적을 오도하거나 무모하게 행동하도록 의도되었으나 전시에 적용되는 국제법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또한 법에 의한 보호와 관련하여 적의 신뢰를 유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배신행위가 아닌 행위들을 말한다. 다음은 그러한 위계의 예이다. 위장, 유인, 양동작전, 오보의 이용

제 38 조 승인된 표장

1. 적십자·적신월·적사자태양 등 식별표장,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하여 부여된 다른표장, 부호, 신호의 부당한 사용은 금지된다. 무력충돌에 있어서 정전기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승인된 보호표장, 부호 또는 신호와 문화재의 보호표장을 고의적으로 남용하는것 역시 금지된다.
2. 국제연합의 식별표장을 국제연합에 의하여 승인된 것 이외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 39 조 국적표장

1. 중립국 및 충돌비당사국의 기, 군표장, 기장, 제복을 무력충돌시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2. 공격에 참가하는 중에 또는 군사작전을 엄폐, 지원, 보호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적대당사국의 기, 군사표장, 기장, 제복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3. 본조 또는 제37조 1항 가. 호의 어느 것도 간첩행위 및 해전수행시기의 사용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존 국제법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40 조 구명

몰살명령을 내리거나 그러한 식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그러한 근거위에서 적대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 41 조 전의를 상실한 적의 보호

1. 전의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자로 되어야만 하는 자는 공격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2. 다음 경우에 처한 자는 적대행위를 하지않고 도피하려 하지 않는다면 전의 상실자이다.
 - 가. 적대당사국의 권력내에 있는 자.
 - 나. 항복할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자.
 - 다. 의식을 잃었거나 상처나 병으로 무력하게 되었거나 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자.

3. 전쟁포로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3협약 제3편 제1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 개를 할수 없도록 하는 특수한 전투상황하에 적대당사국의 권력내에 들어갔을 경우 그들은 석방되어야 하며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가 취하여 져야 한다.

제 42 조 항공기탑승자

1. 조난당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하강하는 자는 그의 하강중 공격의 목표가 되어서 는 안된다.
2. 조난당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하강하는 자는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 는 영토내의 육지에 도달하면 그가 적대행위를 취하고 있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공격의 대상이 되기에 앞서 항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공수부대는 본 조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한다.

제 2 장 전투원 및 전쟁포로의 지위

제 43 조 군대

1. 충돌당사국의 군대는 동국이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한 정부 또는 당국에 의하여 대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기 부하의 지휘에 관하여 동국에 책임을 지는 지휘 관 휘하에 있는 조직된 모든 무장병력, 집단 및 부대로 구성된다. 그러한 군대는 내부 규 율체계 특히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규칙에의 복종을 강제하는 규율체계에 복 종하여야 한다.
2. 충돌당사국의 군대구성원(제3협약 제33조에 규정된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 제외)은 전 투원이다. 즉 그들은 직접 적대행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3. 충돌당사국은 준군사적 또는 무장한 법 집행기관을 군대에 포함시킬 경우 타충돌당사 국에 그러한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 44 조 전투원 및 전쟁포로

1. 제43조에 정의된 자로서 적대당사국의 권력내에 들어간 모든 전투원은 전쟁포로가 된다.
2. 모든 전투원은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이들 규칙 의 위반으로 인하여 전투원이 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적대당사국의 권력내에 들어갈 경우에는 3항 및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쟁포로가 될 권리를 박탈당 하지 아니한다.
3. 적대행위의 영향으로부터 민간인 보호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투원은 그들이 공격이나 공격전의 예비적인 군사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그들 자신을 민간인과 구별하여야한 다. 그러나 적대행위의 성격 때문에 무장전투원이 자신을 그와 같이 구별시킬 수 없는 무 력충돌의 상황이 존재함을 감안하여 그러한 상황하에서 다음 기간중 무기를 공공연히 휴대하는 경우에는 전투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한다.

- 가. 각 교전기간중 및
- 나. 공격 개시전의 작전 전개에 가담하는 동안 적에게 노출되는 기간중 본 항의 요구에 복종하는 행위는 제37조항다. 호에서 의미하는 배신적 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3항의 2번째 문장에 제시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동안 적대당사국의 권력내에 들어간 전투원은 전쟁포로가 될 권리를 상실한다. 그러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제3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하여 전쟁포로에게 부여되는 것과 대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보호에는 자신이 범한 어떠한 범죄로 인하여 심리 및 처벌을 받는 경우에 제3협약에 의거하여 전쟁포로에 부여되는 것과 동등한 보호가 포함된다.
 5. 공격 또는 공격전의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동안 적대당사국의 권력내에 들어간 모든 전투원은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전투원 및 전쟁포로가 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6. 본 조는 제3협약 제4조에 따른 어떠한 자의 전쟁포로가 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7. 본 조는 충돌당사국의 제복을 착용한 정규군부대에 배속된 전투원의 제복 착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가의 관행을 변경시키려고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8. 제1, 2협약 제13조에 언급된 자들의 범위에 추가하여, 본 의정서 제43조에 정의된 충돌당사국 군대의 모든 구성원은 그들이 부상을 입었거나 병이 들었을 경우 또는 제2협약에서와 같이 바다 밑 다른 수역에서 조난되었을 경우에는 상기 제협약에 따른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제 45 조 적대행위에 가담한 자들의 보호

1. 적대행위에 가담하고 적대당사국이 영역내에 들어간 자는 전쟁포로로 간주되며 따라서 그가 전쟁포로의 지위를 주장하거나 그러한 지위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또는 그의 소속국이 그를 위하여 억류국 및 이익보호국에 통고함으로써 그러한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 제3협약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전쟁포로로서의 자격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도 그는 그러한 자격을 계속 보유하며 따라서 그의 자격이 권한있는 재판정에 의하여 결정될 때까지 제3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하여 계속 보호된다.
2. 적대당사국의 권력내에 들어간 자가 전쟁포로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적대행위에 연유한 범행으로 인하여 동 당사국에 의하여 심리를 받게 될 경우 그 자는 사법재판정에서 전쟁포로 자격을 주장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판결받을 권리를 가진다. 판결은 가급적 적용 가능한 절차에 의하여 범행에 대한 심리를 하기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익보호국의 대표 또는 그러한 절차가 예외적으로 국가안보이익을 위하여 비밀리에 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문제의 판결절차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 그러한 경우 억류국은 이익보호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적대행위에 참여하고 전쟁포로 지위의 자격이 없으며 제4협약에 따른 보다 유리한 대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는 항시 본 의정서 제75조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간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누구나 제4협약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령지에서 동 협약에 따른 통신의 권리를 가진다.

제 46 조 간첩

1. 제 협약 및 본 의정서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첩행위에 종사하는 동안 적대당사국의 권력내에 들어간 충돌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은 전쟁포로로서의 지위를 가질 권리가 없으며 간첩으로 취급될 수 있다.
2. 소속당사국을 위하여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지배되는 영토내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또는 수집하려고 기도하는 충돌당사국 군대의 제복을 착용하는 한 간첩행위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점령된 영토의 주민으로서 소속국을 위하여 그 영토내에서 군사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수집 또는 수집하려 하는 충돌당사국 군대의 구성원은 위장 행위 또는 고의적으로 은밀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한 간첩행위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그러한 주민은 전쟁포로로서의 지위를 잃지 아니하며 그가 간첩행위에 종사하고 있는 중에 체포되지 아니하는 한 간첩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4. 적대당사국에 의하여 점령된 영토내의 주민이 아니면서 그 영토내에서 종사하는 충돌당사국의 군대구성원은 전쟁포로로서의 권리를 잃지 아니하며 그의 소속군대로의 복귀전에 체포되지 아니하는 한 간첩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제 47 조 용병

1. 용병은 전투원 또는 전쟁포로가 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2. 용병은 다음의 모든 자를 말한다.
 - 가. 무력충돌에서 싸우기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특별히 징집된 자
 - 나. 실지로 적대행위에 직접 참가하는 자
 - 다. 근본적으로 사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적대행위에 참가한 자 및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또는 충돌당사국을 위하여 그 당사국 군대의 유사한 지위 및 기능의 전투원에게 약속되거나 지급된 것을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물질적 보상을 약속받은 자
 - 라. 충돌당사국의 국민이 아니거나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통치되는 영토의 주민이 아닌 자
 - 마. 충돌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이 아닌 자
 - 바. 충돌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의하여 동복의 군대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임무를 띠고 파견되지 아니한 자

제 4 편 민간주민

제 1 장 적대행위의 영향으로부터의 일반적 보호

제 1 절 기본규칙 및 적용분야

제 48 조 기본규칙

민간주민과 민간물자의 존중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돌당사국은 항상 민간주민과 전투원, 민간물자와 군사목표물을 구별하며 따라서 그들의 작전은 군사목표물에 대해서만 행하여지도록 한다.

제 49 조 공격의 정의 및 적용분야

1. “공격”이라함은 공세나 수세를 불문하고 적대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말한다.
2. 공격에 관한 본 의정서의 제규정은 충돌당사국에 속하나 적대국의 지배하에 있는 국가 영역을 포함하며, 그것이 행하여지는 영역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공격에 적용된다.
3. 본 장의 제규정은 지상의 민간주민, 민간개인 또는 민간물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지상, 공중 및 해상에서의 전투에 적용된다. 동 제규정은 또한 지상의 목표물에 대한 해상 및 공중으로부터의 모든 공격에도 적용되나, 해상 또는 공중에서의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제규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본 장의 제규정은 제4협약, 특히 동 제2편과 제약당사국들을 구속하는 기타 국제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인도적 보호에 관한 제규칙 및 적대행위의 영향으로부터 지상, 해상 또는 공중의 민간인 및 민간물자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의 기타 규칙들에 대한 추가규정이다.

제 2 절 민간인 및 민간주민

제 50 조 민간인 및 민간주민의 정의

1. 민간인이라 함은 제3협약 제4조 1항 (가), (나), (다), (바) 및 본 의정서 제43조에 언급된 자들의 어느 분류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민간인 인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동인은 민간인으로 간주된다.
2. 민간주민은 민간인인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3. 민간인의 정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개인들이 민간주민내에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것은 주민의 민간적 성격을 박탈하지 아니한다.

제 51 조 민간주민의 보호

1. 민간주민 및 민간개인은 군사작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으로부터 일반적 보호를 향유한다. 이러한 보호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기타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제규칙에 추가되

- 는 아래 규칙들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준수된다.
2. 민간개인은 물론 민간주민도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민간주민사이에 테러를 만연시킴을 주목적으로 하는 폭력행위 및 위협은 금지된다.
 3. 민간인들은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그러한 기간동안 본 장에 의하여 부여되는 보호를 향유한다.
 4. 무차별공격은 금지된다. 무차별공격이라 함은,
 - 가. 특정한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격
 - 나. 특정한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할 수 없는 전투의 방법 또는 수단을 사용하는 공격
 - 다. 그것의 영향이 본 의정서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제한될 수 없는 전투의 방법 또는 수단을 사용하는 공격을 말하며, 그 결과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군사목표물과 민간인 또는 민간물자를 무차별적으로 타격하는 성질을 갖는 것을 말한다.
 5. 그 중에서도 다음 유형의 공격은 무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 가. 도시, 읍, 촌락 또는 민간인이나 민간물자가 유사하게 집결되어 있는 기타 지역내에 위치한 다수의 명확하게 분리되고 구별되는 군사목표물을 단일군사목표물로 취급하는 모든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한 폭격
 - 나. 우발적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 민간인에 대한 상해, 민간물자에 대한 손상, 또는 그 복합적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공격으로서 소기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공격
 6. 보복의 수단으로서의 민간주민 또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금지된다.
 7. 민간주민이나 민간개인의 존재 또는 이동은 특정지점이나 지역을 군사작전으로부터 면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군사목표물을 공격으로부터 엄폐하거나 또는 군사작전을 엄폐, 지원 또는 방해하려는 기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충돌당사국은 군사목표물을 공격으로부터 엄폐하거나 군사작전을 엄폐하기 위하여 민간주민 또는 민간개인의 이동을 지시하여서는 안된다.
 8. 이러한 금지에 대한 어떠한 위반도 제57조에 규정된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포함하여 민간주민 및 민간인에 대한 충돌당사국의 법적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 3 절 민간물자

제 52 조 민간물자의 일반적보호

1. 민간물자는 공격 또는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민간물자라함은 제2항에 정의한 군사목표물이 아닌 모든 물건을 말한다.
2. 공격의 대상은 엄격히 군사목표물에 한정된다. 물건에 관한 군사목표물은 그 성질·위치·목적·용도상 군사적행동에 유효한 기여를 하고, 당시의 지배적 상황에 있어 그것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파괴, 포획 또는 무용화가 명백한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물건에 한정된다.
3. 예배장소, 가옥이나 기타 주거 또는 학교와 같이 통상적으로 민간목적에 전용되는 물

간이 군사행동에 유효한 기여를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 53 조 문화재 및 예배장소의 보호

무력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1954년 5월14일자 헤이그협약의 제규정 및 기타 관련 국제협약의 제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다음 사항은 금지된다.

- 가. 국민의 문화적 또는 정신적 유산을 형성하는 역사적 기념물, 예술작품 또는 예배장소를 목표로 모든 적대행위를 범하는 것.
- 나. 그러한 물건을 군사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 다. 그러한 물건을 보복의 대상으로 하는 것.

제 54 조 민간주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건의 보호

- 1. 전투방법으로서 민간인의 기아작전은 금지된다.
- 2. 민간주민 또는 적대국에 대하여 식료품·식료품생산을 위한 농경지역·농작물·가축·음료수 시설과 그 공급 및 관개시설과 같은 민간주민의 생존에 필요 불가결한 물건들의 생계적 가치를 부정하려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이들을 공격·파괴·이동 또는 무용화하는것은 그 동기의 여하를 불문하고, 즉 민간인을 굶주리게 하거나 그들을 퇴거하게 하거나 또는 기타 여하한 동기에서이든 불문하고 금지된다.
- 3. 제2항에서의 금지는 동항의 적용을 받는 물건이 적대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오직 군대구성원의 급양으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 나. 급양으로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군사행동에 대한 직접적 지원으로 사용되는 경우.다만, 여하한 경우이라도 민간주민의 기아를 야기시키거나 또는 그들의 퇴거를 강요하게 할 정도로 부족한 식량 또는 물을 남겨놓을 우려가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4. 이러한 물건은 보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 5. 침략으로부터 자국영역을 방위함에 있어서 충돌당사국의 필요불가결한 요구를 인정하여, 충돌당사국은 긴박한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국의 지배하에 있는 그러한 영역내에서 제2항에 규정된 금지사항을 파기할 수 있다.

제 55 조 자연환경의 보호

- 1.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심각한 손상으로부터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투중에 주의 조치가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호는 자연환경에 대하여 그러한 손상을 끼치고 그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생존을 침해할 의도를 갖고 있거나 또는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투방법 또는 수단 사용금지를 포함한다.
- 2. 보복의 수단으로서의 자연환경에 대한 공격은 금지된다.

141

제 56 조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의 보호

1.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 즉 댐·제방·원자력발전소는 비록 군사목표물인 경우라도 그러한 공격이 위험한 물리력을 방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민간주민에 대해 극심한 손상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시설물내에 위치하거나 또는 그에 인접하여 위치한 기타 군사목표물도 그러한 공격이 시설물로부터 위험한 물리력을 방출하고 그것으로 민간주민에 대하여 극심한 손상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공격에 대한 특별보호는 다음의 경우에 중지한다.
 - 가. 댐 또는 제방에 관하여는, 그것이 통상적인 기능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군사작전에 대한 정규적이고 중요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사용되며 또한 그러한 공격이 지원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유일의 방법일 경우
 - 나. 원자력발전소에 관하여는, 그것이 군사작전에 대한 정규적이고 중요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전력을 제공하며 그러한 공격이 지원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유일의 방법일 경우
 - 다. 이러한 시설물내에 또는 그에 인접하여 위치한 기타의 군사목표물에 관하여는, 그것들이 군사작전에 대한 정규적이고 중요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사용되며 또한 그러한 공격이 지원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유일의 방법일 경우
3. 모든 경우에 있어서 민간주민 및 민간개인은 제57조에 규정된 예방조치의 보호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의하여 그들에게 부여된 모든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보호가 중지되고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시설물 또는 군사목표물이 공격받는 경우에는, 위험한 물리력의 방출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실제적인 예방조치가 취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시설물 또는 군사목표물을 보복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금지된다.
5. 충돌당사국은 어떠한 군사목표물이라도 제1항에 언급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호대상인 시설물을 공격으로부터 방위하려는 목적만을 위하여 건설된 시설물은 허용될 수 있으며, 그것들은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단, 보호대상인 시설물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어적 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들이 적대행위에 사용되지 아닐 것 and 그것들의 무장화가 보호대상인 시설물에 대한 적대행위의 격퇴만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에 국한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6. 계약당사국 및 충돌당사국은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는 물건에 대한 추가적 보호를 규정하기 위하여 그들 상호간에 추가적 협정을 체결하도록 권고된다.
7. 본 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물건들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돌당사국은 본 의정서 제1부속서 제1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일한 축선상에 위치하는 선명한 오랜지색의 3개의 원군으로 구성되는 특별한 표지로서 그것들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한 표지의 부재는 어떠한 충돌당사국에 대하여서도 본 조에 의한 그들의 의무를 결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 4 절 예방조치

제 57 조 공격에 있어서의 예방조치

1. 군사작전 수행에 있어 민간주민, 민간인 및 민간물자가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단한 보호조치가 취하여야 한다.
2. 공격에 관하여 다음의 예방조치가 취하여야 한다.
 - 가. 공격을 계획하거나 결정하는 자들은,
 - (1) 공격의 목표가 민간인도 아니고 민간물자도 아니며,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니나 제52조 제2항의 의미에 속하는 군사목표물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공격하는 것이 본 의정서의 제규정에 의하여 금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여야 한다.
 - (2) 우발적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 민간인에 대한 상해 및 민간물자에 대한 손상을 피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공격의 수단 및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실행가능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우발적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 민간인에 대한 상해, 민간물자에 대한 손상 또는 그 복합적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소기의 군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과도한 모든 공격의 개시를 결정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 나. 목표물이 군사목표물이 아니거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이 분명한 경우 및 공격이 우발적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민간인에 대한 상해·물자에 대한 손상 또는 그것들의 결합을 야기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소기의 군사적 이익과 관련하여 과도한 것으로 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공격은 취소 또는 중지되어야 한다.
 - 다. 상황이 허용되는 한, 민간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공격에 관하여 유효한 사전경고가 주어져야 한다.
3. 유사한 군사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개의 군사목표물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선택되는 목표물은 그것에 대한 공격이 민간인 생명 및 민간물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위험만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야 한다.
4. 해상 또는 공중에서의 군사작전 수행에 있어 충돌당사국은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제규칙하에서의 자국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민간인 생명의 손실 및 민간물자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민간주민, 민간인 또는 민간물자에 대한 어떠한 공격이라도 이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 58 조 공격의 영향에 대한 예방조치

- 충돌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 가. 제4협약 제49조를 침해함이 없이 자국의 지배하에 있는 민간주민, 민간개인 및 민간물자를 군사목표물의 인근으로부터 이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나. 군사목표물을 인구가 조밀한 지역내에 또는 인근에 위치하게 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 다. 자국의 지배하에 있는 민간주민, 민간개인 및 민간물자를 군사작전으로부터 연유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기타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절 특별보호의 대상이 되는 지구 및 지대

제 59 조 무방호지구

1. 충돌당사국이 무방호지구를 공격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지 금지된다.
2. 충돌당사국의 적절한 당국은 군대가 접전하고 있는 지대에 인접하여 있거나 또는 그 안에 있는 어떠한 거주지역이라도 적대국에 의한 점령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 지역을 무방호지구로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지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가. 모든 전투원과 이동가능한 무기 및 군사장비는 철수되었을 것.
 - 나. 고정군사시설 또는 설비가 적대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 다. 당국 또는 주민에 의하여 여하한 적대행위도 행하여지지 아니할 것.
 - 라.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어떠한 활동도 행하여지지 아니할 것.
3.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되는 자 및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유일한 목적으로 보존되는 경찰력의 이 지역내의 존재는 제2항에 규정된 제 조건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4. 제2항에 따라 행하여진 선언은 적대국에 통보되어야 하며 무방호지구의 한계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의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선언을 통고 받은 충돌당사국은 그것의 접수를 확인하고 제2항에 규정된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는 한 그 지구를 무방호 지구로 취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국은 선언을 행한 당사국에게 이를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구는 본 의정서의 기타 규정 및 무력충돌시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기타 규칙들에 의하여 부여된 보호를 계속 향유한다.
5. 충돌당사국은 그 지구가 제2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라도 무방호 지구의 설정에 합의할 수 있다. 그 합의는 무방호 지구의 한계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의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6. 그러한 합의에 의하여 규제되는 지구를 통제하고 있는 당사국은, 가능한 한 타당사국과 합의된 표지로 그 지구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지는 그것이 명료하게 보이는 장소, 특히 그 지구의 주위와 경계선 및 공로상에 부착되어야 한다.
7. 어떤 지구가 제2항 또는 제5항에 언급된 합의에 규정된 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는 무방호 지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구는 본 의정서의 기타 규정 및 무력충돌시 적용되는 국제법의 기타 규칙에 의하여 부여된 보호를 계속 향유한다.

제 60 조 비무장지대

1. 충돌당사국들이 합의에 의하여 비무장지대의 지위를 부여한 지대에 그들의 군사작전을 확장하는 것은, 그러한 확장이 동합의의 조건에 반하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2. 동합의는 명시적 합의이어야 하고 구두 또는 문서로 직접 또는 이익보호국이나 공정한

인도적 기관을 통하여 체결될 수 있으며, 상호적 및 합의적 선언들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동합의는 적대행위의 발발이후에 뿐 아니라 평시에도 체결될 수 있으며, 비무장지대의 경계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의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의 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3. 그러한 합의의 대상은 통상적으로 다음의 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지대로 한다.
 - 가. 모든 전투원과 이동가능한 무기 및 군사장비는 철수되었을 것.
 - 나. 고정군사시설 또는 설비가 절대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 다. 당국 또는 주민에 의하여 여하한 적대행위도 행하여지지 아니할 것.
 - 라. 군사적 노력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중지되었을 것.
 충돌당사국은 다. 호에 규정된 조건에 대하여 부여될 해석 및 제4항에 언급된 자가 아닌 자로서 비무장지대출입이 허용되는 자들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4. 제 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되는 자 및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유일한 목적으로 보존되는 경찰력의 이 지역내의 존재는 제3항에 규정된 제 조건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5. 그러한 지대를 통제하고 있는 당사국은 가능한 한 타당사국과 합의된 표지로 그 지대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지는 그것이 명료하게 보이는 장소에, 특히 그 지대의 주위와 경계선 및 공로상에 부착되어야 한다.
6. 전투행위가 비무장지대에 접근해 오고, 또한 충돌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어느 당사국도 군사작전 수행에 관련되는 목적으로 그 지대를 사용하거나 일방적으로 그 지위를 철회할 수 없다.
7. 충돌당사국 일방이 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타방은 그 지대에 비무장지대의 지위를 부여한 합의에 의한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상실하나 본 의정서의 기타 규정 및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기타 국제법규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호를 계속 향유한다.

제 6 절 민방위

제 61 조 정의 및 범위

본 의정서의 제 목적을 위하여,

가. "민방위"라 함은 적대행위 또는 재해의 위험에 대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이 그것의 직접적 영향으로부터 복구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주민의 생존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에서 말하는 인도적 임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행을 의미한다. 이러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경 고
- (2) 대 피
- (3) 대피소의 관리
- (4) 등화관계조치의 관리

- (5) 구조
 - (6) 의료(응급조치를 포함) 및 종교활동
 - (7) 소화작업
 - (8) 위험지역의 탐사 및 표시
 - (9) 오염물 정화 및 유사한 보호조치
 - (10) 비상숙소 및 물자의 공급
 - (11) 이재지역에 있어서의 질서의 회복 및 유지를 위한 긴급지원
 - (12) 불가결한 공익시설물의 긴급보수
 - (13) 사망자의 긴급처리
 - (14) 생존에 불가결한 물건의 보전상의 지원
 - (15) 전기임무중 어느 것이라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충적인 활동(계획, 조직등 포함)
- 나. "민방위단체"라 함은 충돌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가. 호에 언급된 모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또는 허가된 그리고 그러한 임무에 배속되어 그것을 전담하는 상설 편제 및 기타 편성단위를 의미한다.
- 다. 민방위단체의 "요원"이라 함은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가. 호에 언급된 임무의 수행만을 위하여 배속된 자(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이러한 단체의 행정에만 배속된 요원을 포함)들을 의미한다.
- 라. 민방위단체의 "자재"라 함은 가. 호에 언급된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러한 단체에 의하여 사용되는 장비, 물자 및 수송기관을 의미한다.

제 62 조 일반적 보호

1. 민간민방위단체 및 그 요원은, 본 의정서의 제규정, 특히 본장의 제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보호된다. 그들은 절대적인 군사상 필요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들의 민방위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비록 민간민방위단체의 구성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권한 있는 당국의 호소에 응하여 그것의 지배하에서 민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민간인들에게도 또한 적용된다.
3. 민방위 목적에 사용되는 건물과 자재 및 민간주민에게 제공되는 대피소는 제52조의 적용을 받는다. 민방위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은 그것들이 속하는 당사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괴되거나 또는 그것들의 고유한 용도가 변경될 수 없다.

제 63 조 피점령지역에 있어서의 민방위

1. 피점령지역에 있어서, 민간민방위단체는 당국으로부터 자체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다. 여하한 상황에 있어서라도 그 요원은 이러한 임무의 고유적 수행을 방해하게 될 활동을 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점령국은 이러한 단체의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그 조직 또는 요원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단체는 점령국의 국민 또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2. 점령국은 민간민방위단체에 대하여 민간주민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강요, 강제 또는 유도하여서는 안된다.

3. 점령국은 안전상의 이유로 민방위단체의 무장을 해제할 수 있다.
4. 점령국은, 만일 그러한 적용 또는 수용이 민간주민에게 유해하게 될 경우에는 민방위 단체들에 속하거나 그것들에 의하여 사용되는 건물 또는 자재에 대하여 그것의 고유적 용도를 변경하거나 또는 그것을 수용하여서는 안된다.
5. 제4항의 일반규칙이 계속 준수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점령국은 다음의 특별한 조건에 따라 이러한 자원을 수용 또는 전용할 수 있다.
 - 가. 건물 또는 자재가 민간주민의 기타 욕구를 위하여 필요할 것, 그리고
 - 나. 수용 또는 전용이 그러한 욕구가 존재하는 기간중에 한하여 계속될 것.
6. 점령국은 민간주민의 사용에 제공되거나 또는 그러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대피소를 전용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

제 64 조 중립국 또는 기타 충돌비당사국의 민간민방위단체 및 국제조정 기구

1. 제62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는 한 충돌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그 당사국의 동의 및 그 통제하에서 제61조에 언급된 민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중립국 또는 기타 충돌비당사국의 민간민방위단체들의 요원 및 자재에도 또한 전용된다. 그러한 원조의 통고는 가능한 한 조속히 모든 관계 적대국들에게 대하여 행하여진다.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이러한 활동은 충돌에 대한 개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활동은 관계충돌당사국의 안보상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제1항에서 말하는 원조를 받는 충돌당사국 및 그것을 공여하는 체약국은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민방위 활동의 국제적 조정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 관계 국제기구들은 본질의 제규정을 받는다.
3. 피점령지역에 있어서는 점령국은 자국의 자원 또는 피점령지역의 자원으로 민방위 임무의 적절한 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립국 또는 기타 충돌비당사국의 민간민방위단체 및 국제조정기구들의 활동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65 조 보호의 정지

1. 민간민방위단체와 그 요원, 건물, 대피소 및 자재가 받을 자격이 있는 보호는 이들이 고유의 임무에서 이탈하여 적에게 유해한 행위를 범하거나 이를 범하도록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 정지되지 아니한다. 단, 보호는 하시라도 적절한 경우, 타당한 시한이 설정된 경고가 발하여진 연후에, 그리고 그러한 경고가 무시된 연후에라야만 정지될 수 있다.
2. 다음의 것은 적에게 유해한 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 가. 민방위임무가 군당국의 지시 또는 그 지배하에서 수행되는 것.
 - 나. 민간민방위요원이 민방위임무 수행에 있어서 군요원과 협동하는 것, 또는 약간의 군요원이 민간민방위단체에 부속되는 것.
 - 다. 민방위임무의 수행이 부수적으로 군인 희생자들, 특히 전투능력상실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
3. 민간민방위요원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또는 자위를 위하여 개인용 소화기를 휴대하는 것도 또한 적에게 유해한 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단, 지상전투가 진행되고 있거

나 또는 진행될 것 같이 보이는 지역에 있어서는 충돌당사국은 민방위요원과 전투원 간의 구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동화기를 피스톨 또는 연발권총과 같은 권총으로 한정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민방위요원이 그러한 지역내에서 기타 개인소화기를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그들의 민방위요원로서의 자격이 인지되는 즉시 그들은 존중되고 보호된다.

4. 민간민방위단체의 편성이 군사적 편제를 따르고 그 복무가 강제적임을 이유로 본절에 의하여 부여된 보호를 그들로부터 박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6 조 신분증명 및 식별

1. 각 충돌당사국은 자국의 민방위단체와 그 요원, 건물 및 자재가 민방위임무를 전담 수행하는 기간동안 식별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민간주민에게 제공되는 대피소도 동일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2. 각 충돌당사국은 또한 민방위의 국제적 식별표지가 부착되는 민방위요원, 건물 및 자재는 물론 민간인 대피소를 분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방법 및 절차를 채택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피점령지역 및 전투가 진행되고 있거나 또는 진행될 것 같이 보이는 지역에 있어서는 민간민방위요원은 민방위의 국제적 식별표지에 의하여 그리고 그들의 지위를 증명하는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인지될 수 있어야 한다.
4. 민방위의 국제적 식별표지는 그것이 민방위단체와 그 요원, 건물 및 자재의 보호와 민간인 대피소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오렌지색 바탕에 청색 정삼각형으로 한다.
5. 식별표지에 추가하여 충돌당사국은 민방위의 식별 목적을 위한 식별신호의 사용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은 본 의정서 제1부속서 제5장에 의하여 규정된다.
7. 평시에 있어서, 제4항에 규정된 표지는 권한있는 국내 당국의 동의를 얻어 민방위 식별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8. 체약당사국 및 충돌당사국은 민방위의 국제적 식별표지의 부착을 감독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의 모든 남용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9. 민방위의 의무 및 종교요원, 의무대 및 의무용 수송기관의 식별은 또한 제18조에 의하여 규제된다.

제 67 조 민방위단체에 배속된 군대구성원 및 군부대

1. 민방위단체에 배속된 군대구성원 및 군부대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존중되고 보호된다.
 - 가. 그러한 요원 및 그러한 부대가 제61조에 언급된 어떠한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구적으로 배속되고 전담될 것.
 - 나. 상기와 같이 배속되었을 경우, 그러한 요원은 충돌기간중에 어떠한 다른 군사적 임무도 수행하지 아니할 것.
 - 다. 그러한 요원은 적절한 대형 규격의 국제적 민방위 식별표지를 뚜렷하게 부착함으로써

- 써 여타의 군대구성원과 명백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지위를 증명하는 본 의정서 제1부속서 제5장에서 말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 받을 것.
- 라. 그러한 요원 및 그러한 부대는 질서유지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자위를 위하여 개인 용 소화기만으로 무장할 것. 제65조제3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도 또한 적용된다.
- 마. 그러한 요원은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그들의 민방위 임무를 이탈하여 적대국에게 유해한 행위를 범하거나 또는 이를 범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할 것.
- 바. 그러한 요원 및 그러한 부대는 자국의 영역내에서만 그들의 민방위임무를 수행할 것. 상기 가. 및 나. 호에 규정된 조건에 의하여 구속되는 모든 군대구성원에 의한 상기 마. 호에 기술된 조건의 위반은 금지된다.
2. 민방위단체내에서 복무하는 군요원은, 적대국의 권력내에 들어가는 경우, 포로로 된다. 피점령지역에 있어서는 그들은 필요한 경우 오직 동지역 민간주민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민방위 임무에 사용될 수 있다. 단, 만일 그러한 임무가 위험한 것일 경우에는 그들이 그러한 임무를 위하여 자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민방위단체에 배속된 군부대의 건물과 장비 및 수송기관의 주요 물품은 국제적 민방위 식별표지로 명백히 표시된다. 이 식별표지는 적절한 대형의 규격이어야 한다.
 4. 민방위단체에 영구적으로 배속되고 민방위 임무를 전담하는 군부대의 자체 및 건물은, 만일 그것들이 적대국의 수중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전쟁법의 규율을 받는다. 그것들이 민방위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민간주민의 필요 충족을 위한 사전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긴급한 군사상 필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방위 목적으로부터 전용될 수 없다.

제 2 장 민간주민을 위한 구호

제 68 조 적용범위

본장의 제규정은 본 의정서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민간주민에게 적용되며, 제4협약의 제 23조, 제55조, 제59조, 제61조, 제62조 및 기타 관계규정에 대한 보완 규정이다.

제 69 조 피점령지역에 있어서의 기본적 필요

1. 식량 및 의료품에 관한 제4협약 제55조에 규정된 의무에 추가하여, 점령국은 가능한 수단을 다하여 그리고 어떠한 불리한 차별도 없이, 피복, 침구, 대피장소, 피점령지역의 민간주민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타물품 및 종교적 예배에 필요한 물건의 공급을 또한 보장한다.
2. 피점령지역의 민간주민을 위한 구호활동은 제4협약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및 제111조 그리고 본 의정서 제71조에 의하여 규제되며 지체없이 시행된다.

제 70 조 구호활동

1. 만일 충돌당사국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로서 피점령지역이 아닌 모든 지역의 민간주민이 제69조에서 언급된 물품을 충족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인도적이고 공정한 그리고 어떠한 불리한 차별도 없이 행하여지는 구호활동은 그러한 구호활동과 관계있는 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그러한 구호의 제의는 무력 충돌에 대한 개입이나 또는 비우호적 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구호품의 분배에 있어서는 아동, 임신부 및 보모로서 제4협약 또는 본 의정서에 의하여 특전적 대우 또는 특별한 보호가 부여되는 자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2. 충돌당사국 및 각 계약당사국은 그러한 원조가 적대국의 민간주민에게 행선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본장에 의하여 제공되는 모든 구호품, 장비 및 요원의 신속하고 무해한 통과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의하여 구호품, 장비 및 요원의 통과를 허용하는 충돌당사국 및 각 계약당사국은,
 - 가. 그러한 통과가 허용되는 기술적 조치(검색을 포함)를 지시할 권리가 있다.
 - 나. 이익보호국의 현지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이러한 원조의 분배에 있어서 그러한 허용을 조건부로 할 수 있다.
 - 다. 관계 민간주민의 이익관계상 긴급한 필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구호품의 본래 의도된 용도를 전용하거나 또는 전달을 지체하여서는 안된다.
4. 충돌당사국은 구호품을 보호하고 그것들의 신속한 분배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5. 충돌당사국 및 관계 각 계약당사국은 제1항에서 말하는 구호활동의 효율적 조정을 장려하고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제 71 조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요원

1. 필요한 경우에는, 구호요원은 특히 구호품의 수송 및 분배를 위하여 모든 구호활동에 제공된 원조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한 요원의 참여는 그들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영역이 속하는 당사국의 승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그러한 요원은 존중되고 보호된다.
3. 구호품을 수령하는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 그들이 구호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1항에서 말하는 구호요원에게 조력한다. 오직 긴급한 군사상 필요의 경우에 있어서만 구호요원의 활동은 제한될 수 있거나 또는 그들의 이동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4. 어떠한 상황하에서라도 구호요원은 본 의정서에 의한 그들의 임무의 조건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그들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중인 영역이 속하는 당사국의 안보상의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모든 요원의 임무는 중지될 수 있다.

제 3 장 충돌당사국의 권력내에 있는 개인의 대우

제 1 절 적용범위 및 개인과 물건의 보호

제 72 조 적용범위

본장의 제규정은 국제적 무력충돌 기간중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에 관한 기타의 적용 가능한 국제법규에 대하여뿐 아니라, 제4협약 특히 그 제1편 및 제3편에 들어있는 자로서 충돌당사국의 권력내에 있는 민간인 및 민간물자의 인도적 보호에 관한 제규칙에 대한 보완규정이다.

제 73 조 피난민 및 무국적자

적대행위의 개시전에 관계 당사국들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국제조약에 의하거나 또는 피난국이나 거주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무국적자 또는 피난민으로서 인정된 자들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그리고 어떠한 불리한 차별도 받음이 없이 제4협약 제1편 및 제3편이 의미하는 피보호자로 된다.

제 74 조 이산가족의 재결합

제약당사국 및 충돌당사국은 무력충돌의 결과로 이산된 가족들의 재결합을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용이하게 하며, 특히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제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각기 자국의 안전보장규칙에 따라 이러한 임무에 종사하는 인도적 단체들의 사업을 장려한다.

제 75 조 기본권보장

- 충돌당사국의 권력내에 있고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에 의하여 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본 의정서의 제1조에서 말하는 사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한, 모든 상황에 있어 인도적으로 대우되며,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신앙·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여하·빈부·가문 또는 기타의 지위 및 기타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불리한 차별을 받음이 없이, 최소한 본조에 규정된 보호를 향유한다. 각 당사국은 모든 그러한 자들의 신체·명예·신념 및 종교의식을 존중한다.
- 다음의 제행위는 행위주체가 민간인이든 군사대리인이든 불문하고 또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금지된다.
 - 인간의 생명, 건강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안녕에 대한 폭력행위, 특히
 - 살인
 -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고문
 - 체형
 - 신체절단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취급, 강제매음 및 모든 형태의 저열한 폭행
 - 인질행위

- 과. 집단적 처벌
- 마. 전기의 행위중 어느 것을 행하도록 하는 위협
3. 무력충돌에 관계되는 행위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류되는 모든 자는 자기가 이해하는 언어로 이 조치가 취하여진 이유를 신속히 통지받는다. 형사범죄를 이유로 하는 체포 또는 구류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자는 가능한 최소한의 지체후 그리고 체포, 구류 또는 억류를 정당화하는 상황이 종식되는 즉시 모든 경우에 있어 석방된다.
4. 일반적으로 승인된 정식의 사법절차 원칙을 존중하는 공정하고 정식으로 구성된 법원에 의하여 언도되는 유치판결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력충돌에 관련되는 형사범죄의 유죄성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어떠한 선고도 언도될 수 없고 어떠한 형벌도 집행될 수 없으며, 전기의 원칙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동절차는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지체없이 통지받도록 규정하고 재판의 전과 그 기간중에 피고인에게 모든 필요한 항변의 권리와 수단을 제공한다.
- 나. 누구도 개인적인 형사책임에 근거한 것을 제외하고는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 다. 누구도 범행 당시에 자기가 복종하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형사범죄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범죄로 기소되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형사범죄의 행위당시에 적용되는 것보다 더 중한 형벌이 과하여져서는 안된다. 만일 범행후에, 보다 경한 형벌을 과하기 위한 규정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행자는 그것의 이익을 향수한다.
- 라. 모든 피의자는 법에 의하여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 마. 모든 피의자는 출석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바. 누구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또는 유죄를 자백하도록 강요되지 아니한다.
- 사. 모든 범행피의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심문할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입회 및 심문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 아. 누구도 자기를 무죄 또는 유죄로 하는 최종판결이 전에 언도된 바있는 범행을 이유로, 동일한 당사국에 의하여 동일한 법률 및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되거나 또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 자. 범행을 이유로 기소된 자는 누구나 공개적인 판결언도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 차.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언도 즉시 자기의 사법적 및 기타 구제책과 그것의 행사시한에 관하여 통지받는다.
5. 무력충돌에 관련된 이유로 자유가 제한된 여성은 남성숙소로부터 분리된 숙소에 수용된다. 그들은 여성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놓인다. 단, 가족들이 구류 또는 억류되는 경우에는, 그들은 가능하면 한시라도 동일한 장소에 수용되고 가족단위로 숙박한다.
6. 무력충돌에 관련된 이유로, 체포, 구류 또는 억류된 자들은 무력절차의 종식후이라도, 그들의 최종석방, 송환 또는 복귀시까지 본조에 규정된 보호를 향유한다.
7.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대한 죄로 기소된 자들의 기소 및 재판에 관한 모든 의문을 없애기 위하여 다음의 제한적이 적용된다.
- 가. 그러한 범죄로 기소된 자들은 적용가능한 국제법규에 부합하는 기소의 목적 및 재

판에 복종하여야 한다.

- 나.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에 의하여 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모든 그러한 자들은, 그들이 기소당한 범죄가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조에 의하여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8. 본조의 어느 규정도 제1항에 규정된 자들에 대하여 모든 적용 가능한 국제법규에 의하여 보다 큰 보호를 부여하는 보다 유리한 다른 모든 규정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여성 및 아동을 위한 조치

제 76 조 여성의 보호

1. 부녀자는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며 특히 건강, 강제매음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저열한 폭행으로부터 보호된다.
2. 무력충돌에 관련된 이유로 체포, 구류 또는 억류된 임부 및 영아의 모는 최우선적으로 심리된다.
3. 충돌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임부 또는 영아의 모에 대하여 무력충돌에 관련된 범행을 이유로 하는 사형인도를 피하도록 노력한다. 그러한 범행을 이유로 한 사형은 전 기한 부녀자에게 집행되어서는 안된다.

제 77 조 아동의 보호

1. 아동은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며 모든 형태의 저열한 폭행으로부터 보호된다. 충돌당사국은 그들의 연령 기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양호 및 원조를 제공한다.
2. 충돌당사국은 15세 미만의 아동이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특히 자국군대에 그들이 징모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실행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15세 이상 18세미만의 그러한 자들중에서 징모하는 경우에는, 충돌당사국은 최연장자들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만일 예외적으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5세미만의 아동들이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여 적대국의 권력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들이 포로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그들은 본조에 의하여 부여된 특별한 보호를 계속 향수한다.
4. 만일 무력충돌에 관련된 이유로 체포, 구류 및 억류된 경우에는 제75조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가족들이 가족단위로 숙박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들은 성인의 숙소와 분리된 숙소에 수용된다.
5. 무력충돌에 관련된 범행을 이유로 하는 사형은, 범행 당시에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안된다.

제 78 조 아동의 소개

1. 어떠한 충돌당사국도 자국민이 아닌 아동들의 외국으로의 소개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안된다. 단, 아동의 건강상 또는 치료상 불가피한 이유가 있거나 또는 피점령지역 내에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안보상의 이유가 있는 일시적 소개는 제외한다.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소개에 대한 그들의 서명동의를 요한다. 만일 그러한 자들이 없을 경우에는 법률 또는 관습에 의하여 아동의 양호에 1차적 책임을 지는 자들에 의한 이러한 소개에 대한 서명동의를 요한다. 모든 이러한 소개는 관계 당사국, 즉 소개조치를 취하는 당사국, 아동을 수용하는 국가 그리고 소개되는 아동이 소속하는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이익보호국에 의한 감독을 받는다. 각 경우에 있어 모든 충돌당사국은 소개를 위태롭게 함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실행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소개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하시라도, 각 아동의 교육(그의 부모가 원하는 바와 같은 그들의 종교적 및 윤리적 교육을 포함)은 그 아동이 외국에 있는 동안에도 가능한 최대한도의 지속성을 가지고 실시된다.
3. 본조에 의하여 소개된 아동들이 자기의 가족 및 소속국가에로 귀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소개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의 당국과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수용국의 당국은 각 아동을 위하여 사진이 첨부된 카드를 작성하여 그것을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중앙심판기관에 송부한다. 각 카드에는 가능하면 하시라도, 그리고 그것이 아동에게 유해한 아무런 위험도 내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상,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다.
 - 가. 아동의 성
 - 나. 아동의 이름
 - 다. 아동의 성별
 - 라. 출생지 및 생년월일 (만일 그 일자가 미상이면 추정연령)
 - 마. 부친의 성명
 - 바. 모친의 성명
 - 사. 아동의 근친자
 - 아. 아동의 국적
 - 자. 아동의 모국어 및 그가 말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언어
 - 차. 아동의 가족주소
 - 카. 아동의 모든 신분증명서 번호
 - 타. 아동의 건강상태
 - 파. 아동의 혈액형
 - 하. 모든 특징
 - 거. 아동의 발견일자 및 장소
 - 너. 아동의 소속국가를 출국한 날짜 및 장소
 - 더. 아동의 종교 (만일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한함)
 - 러. 수용국내의 아동의 현주소
 - 머. 아동의 귀환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일자, 장소 및 상황과 매장장소

제 3 절 기자

제 79 조 기자의 보호조치

1. 무력충돌지역내에서 위험한 직업적 임무에 종사하는 기자들은 제50조 제1항이 의미하는 민간인으로 간주된다.
2. 그들은 민간인으로서의 자신의 지위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하여 민간인 자격으로 보호되며, 중군 기자의 권리를 침해받음이 없이 제3협약 제4조 라. 호에 규정된 지위로서 군대에 파견한다.
3. 그들은 본 의정서 제2부속서에 첨부된 모형과 동일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할 수 있다. 이 증명서는 언론기관의 소재지국 정부에 의하여 발급되어야 하며 기자로서의 그의 지위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 5 편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시행

제 1 장 총칙

제 80 조 시행을 위한 조치

1. 계약당사국 및 충돌당사국은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한 자국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체없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당사국 및 충돌당사국은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명령과 지시를 내려야 하며 그 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 81 조 적십자 및 기타 인도적 단체의 활동

1. 충돌당사국은 충돌 희생자에 대한 보호와 원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하여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맡겨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국의 능력의 범위내에서의 모든 편의를 동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또한 관계 충돌당사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이러한 희생자들을 위한 기타 모든 인도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2. 충돌당사국은 각기 자국의 적십자(적신월, 적사자태양)단체들이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제규정과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제정된 적십자기본원칙에 따라 충돌희생자들을 위한 그들의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계약당사국 및 충돌당사국은 적십자(적신월, 적사자태양)단체 및 적십자자연맹이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제규정과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제정된 적십자기본원칙에 따라 충돌희생자들에게 제공하는 원조에 대하여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계약당사국 및 충돌당사국은 가능한 최대 한도로,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언급된 것들로서 각기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정식으로 허가되고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제규정에 따

라 자체의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는 기타 인도적 단체들에게 제공되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언급한 것과 유사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82 조 군대내의 법률고문

체약당사국은 항시 그리고 충돌당사국은 무력충돌시 필요한 경우에,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적용에 관하여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 군대에 시달되는 적절한 지시에 관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군지휘관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될 법률 고문들의 확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83 조 보급

1. 체약당사국은 무력충돌시에 있어서와 같이 평시에 있어서도, 제협약 및 본 의정서를 각기 자국내에서 가급적 광범위하게 보급하고 특히 자국의 군사교육계획속에 이에 관한 학습을 장려함으로써 동협약 및 의정서가 군대 및 민간주민에게 습득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무력충돌시에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적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군 또는 민간당국은 그것의 본문에 정통하여야 한다.

제 84 조 적용규칙

체약당사국은 가능한한 조속히 수탁국을 통하여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이익보호국을 통하여, 본의정서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채택한 법률 및 규칙은 물론 본 의정서의 공식번역문을 상호 전달하여야 한다.

제 2 장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대한 위반의 억제

제 85 조 본 의정서에 대한 위반의 억제

1. 위반 및 중대한 위반의 억제에 관한 제협약의 기존 규정들과 본장에 의하여 추가되는 규정들은 본 의정서의 위반 및 중대한 위반의 억제에도 적용된다.
2. 제협약에서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된 제행위는, 그것들이 본 의정서 제44조, 제45조 및 제73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로서 적대국의 권력내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또는 본 의정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적대국의 부상자, 병자 및 난산자에 대하여 또는 적대국의 지배하에 있고 본 의정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무 또는 종교요원, 의무부대, 의무수송기관에 대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본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이 된다.
3. 제11조에 규정된 중요한 위반외에 다음의 제행위는, 본 의정서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행하여짐으로써 사망이나 신체 또는 건강에 대한 중대한 상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본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 가. 민간주민이나 민간개인을 공격의 대상으로 하는 것.
 - 나. 그러한 공격이 제57조 제2항 가.(3)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과도한 생명의 손실, 민간에 대한 상해 또는 민간물자에 대한 손상을 야기하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민간주민 또는 민간물자에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 공격을 개시하는 것.

- 다. 그러한 공격이 제57조 제2항 가.(3)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과도한 생명의 손실, 민간인에 대한 상해 또는 민간물자에 대한 손상을 야기하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위험한 물리력을 함유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공격을 개시하는 것.
 - 라. 무방호지구 및 비무장지대를 공격의 대상으로 하는 것.
 - 마. 어떠한 사람이 전투능력 상실자임을 알면서 그 자를 공격의 대상으로 하는 것.
 - 바. 제37조에 위반하여 적십자, 적신월 또는 적사자태양의 식별표장 또는 제협약이나 본 의정서에 의하여 승인된 기타 보호표시를 배신적으로 사용하는 것.
4. 전항 및 제협약에 정의된 중대한 위반 외에 다음의 것은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본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 가. 점령국이 제4협약의 제49조에 위반하여 자국민간주민의 일부를 피점령지역으로 이송하거나 피점령지역 주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지역 내부 또는 외부로 추방 또는 이송하는 것.
 - 나. 포로 또는 민간인의 송환에 있어서의 부당한 지체
 - 다. 인종차별 정책의 관행 및 기타 인종차별정책에 기초하여 인간의 존엄에 대한 모욕을 포함하는 비인도적이고 품위를 저하시키는 관행
 - 라. 제국민의 문화적, 정신적 유산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권위있는 국제기구의 체제내에서 특별협정에 의하여 특별한 보호가 부여되고 있는 명백히 인정된 역사적 기념물, 예술작품, 또는 예배장소를 공격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적대국에 의한 제53조 나.호에 대한 위반의 증거가 없으며 그리고 그러한 역사적 기념물, 예술작품 및 예배장소가 군사목표물에 바로 인접하여 소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것들의 광범위한 파괴를 야기하는 것.
 - 마. 제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 또는 본조 제2항에 언급된 자로부터 공정한 정식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
5.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적용을 침해함이 없이 동 협약 및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은 전쟁범죄로 간주된다.

제 86 조 부작위

1. 계약당사국 및 충돌당사국은 작위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발행하는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을 억제하여 기타 모든 위반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위반이 부하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실은 경우에 따라 부하가 그러한 위반을 행하고 있는 중이거나 행하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당시의 상황에서 그렇게 결론지을 수 있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었을 경우, 그리고 권한내에서 위반을 예방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관의 형사 또는 징계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 87 조 지휘관의 의무

1. 계약당사국 및 충돌당사국은 군 지휘관들에게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구성원 및 그

- 들의 통제하에 있는 다른자들의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대한 위반을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억제하며 권한있는 당국에 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위반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 및 충돌당사국은 군지휘관들이 그들의 책임수준에 상응하게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구성원들이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거한 자신의 의무를 알고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체약당사국 및 충돌당사국은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부하 또는 다른 자들이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의 위반을 행하려 하거나 행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모든 지휘관에게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의 그러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솔선하여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 88 조 형사문제에 있어서의 상호부조

1. 체약당사국은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에 관하여 제기된 형사소추와 관련하여 최대한도의 부조를 상호 제공한다.
2. 제협약 및 본 의정서 제85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에 따라 그리고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은 범죄인 인도문제에 있어 협조하여야 한다. 그들은 혐의를 받는 범행이 발생한 영역이 속하는 국가의 요청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3. 요청을 받은 체약당사국의 법률은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단, 전항의 규정은 형사문제에 있어서의 상호부조 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게 될 쌍무적 또는 다자적 성질의 기타 모든 조약의 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89 조 협조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 체약당사국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유엔과 협조하여 그리고 유엔헌장에 좇아 행동할 것을 약정한다.

제 90 조 국제사실조사위원회

1. 가. 높은 덕망과 공인된 공정성을 갖춘 위원 15인으로 구성되는 국제사실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가 설치된다.
- 나. 20개국 이상의 체약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권능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수탁국은 그때 그리고 그후 5년의 간격을 두고 위원회 위원의 선출을 위하여 체약당사국 대표로 구성되는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서 대표들은 각 체약당사국이 1명씩 지명한 명단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 다. 위원회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봉직하며 차기회의에서 새로운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재임한다.
- 라. 선거시에 체약당사국은 위원회위원으로 선출되는 자가 필요한 자격을 개인적으로 보유할 것과 위원회 전체로서는 공평한 지역적 대표성이 안배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마. 불의의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전호들의 제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원회 자체가 그 결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 바. 수탁국은 위원회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편의를 동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가. 계약당사국은 서명·비준·가입시 또는 그 이후의 기타 모든 시기에 있어 그들과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기타 모든 계약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 본조에 의하여 허가된 바와 같이 그러한 기타 계약당사국에 의하여 주장되는 혐의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의 권능을 사실상 그리고 특별한 합의없이 인정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 나. 위에서 언급된 선언은 수탁국에 기탁되어야 하며, 수탁국은 그것의 사본을 계약당사국들에 전달하여야 한다.
- 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권한이 있다.
- (1)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정의된 바와 같은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모든 혐의 사실 또는 제협약이나 본 의정서의 기타 심각한 위반에 대한 조사,
 - (2) 위원회의 주선을 통하여 제협약 및 본 의정서를 존중하는 태도의 회복 촉진.
- 라. 기타의 상황하에서는, 위원회는 오직 기타의 관계 당사국들의 동의하에서만 충돌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행한다.
- 마. 본항의 위의 재규정에 따라 제1협약 제52조, 제2협약 제53조, 제3협약 제132조 및 제4협약 제149조의 재규정은 제협약의 모든 위반혐의에 대하여 계속 적용되며 본 의정서의 위반 혐의에도 확대 적용된다.
3. 가. 관계당사국들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조사는 다음과 같이 임명되는 위원 7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 의하여 수행된다.
- (1) 충돌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위원장이 형성한 지역적 대표성의 기초위에서 충돌당사국과의 협의후에 임명한 위원회의 위원 5인
 - (2) 어느 충돌당사국의 국민도 아닌자로서 각 측이 1인씩 지명하는 2인의 특별위원
- 나. 조사요청이 접수되는 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설치를 위하여 적절한 시한을 지정한다. 특별위원이 시한내에 지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위원을 즉시 지명한다.
4. 가. 조사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는 충돌당사국들이 그것에 대하여 조력하고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소위원회는 또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기타의 증거를 찾을 수 있으며 적절하게 사태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나. 모든 증거는 위원회를 상대로 그것에 관하여 비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당사국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어야 한다.
- 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증거에 대항할 권리가 있다.
5. 가.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건의사항을 첨부하여 사실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당사국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소위원회가 진실되고 공정한 사실판정을 위한 충분한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불가능의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다. 위원회는 모든 충돌당사국이 위원회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판정을 공표하여서는 안된다.
6.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직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직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는 자체의 규칙을 제정한다. 동 규칙들은 위원회 위원장의 직능이 항시 행사될 것과 군사임무수행

의 경우에는 충돌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 의하여 그러한 기능이 행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7. 위원회의 행정비용은 제2항에 의거한 선언을 행한 체약당사국들로부터의 기금과 자발적인 기여금에 의하여 충당된다. 조사를 요청하는 당사국은 소위원회의 경비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선납하며 제소된 상대 당사국으로부터 소위원회 소요 경비의 50%까지를 상환받는다. 반대주장이 소위원회에 제기되는 경우에는 각측은 필요한 자금의 50%씩을 선납한다.

제 91 조 책임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의 규정을 위반하는 충돌당사국은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동 당사국은 자국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들이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6 편 최종규정

제 92 조 서명

본 의정서는 최종의정서 서명 6개월후부터 제협약의 당사국들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12개월간 개방된다.

제 93 조 비준

본 의정서는 가급적 조속히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제협약의 수탁국인 스위스 연방정부에 기탁된다.

제 94 조 가입

본 의정서는 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에 서명하지 아니한 모든 당사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수탁국에 기탁된다.

제 95 조 발효

1. 본 의정서는 2개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6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의정서 발효후에 비준 또는 가입하는 제협약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에 의하여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6개월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96 조 본 의정서 발효이후의 조약관계

1. 제협약 당사국들이 동시에 본 의정서의 당사국인 경우에는, 제협약은 본 의정서에 의하여 보완되어 적용된다.
2. 충돌당사국중 일방이 본 의정서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정서 당사국들은

그들 상호관계에 있어서 본 의정서의 구속을 받는다. 더우기 그들은 본 의정서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개개의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일 후자가 본 의정서의 정규를 수락하고 이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본 의정서의 구속을 받는다.

3. 체약당사국에 대하여서 제1조 제4항에 규정된 유형의 무력충돌에 가담하는 민중을 대표하는 당국은 수탁국에 제출되는 일방적선언의 방식으로 당해 충돌에 관하여 제협약 및 본 의정서를 적용할 것을 보증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수탁국에 접수되는 즉시 당해 충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가. 제협약 및 본 의정서는 충돌당사국인 전기당국에 대하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나. 전기당국은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체약당사국들에게 부여된 것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다. 제협약 및 본 의정서는 모든 충돌당사국을 동일하게 구속한다.

제 97 조 개정

1. 모든 체약당사국은 본 의정서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모든 개정안은 수탁국에 전달되며 수탁국은 체약당사국 및 국제적십자위원회와의 협의 후,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의 소집여부를 결정한다.
2. 수탁국은 제협약의 체약당사국들과 함께 본 의정서의 모든 체약당사국들을 본 의정서의 서명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동 회의에 초청한다

제 98 조 제I부속서의 개정

1. 본 의정서의 효력발생후 4년이 경과하기전에 그리고 그 후 4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본 의정서 제I부속서에 관해 체약당사국과 협의하며, 만일 동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제I부속서를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개정안을 제안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제의할 수 있다. 체약당사국들에 대하여 그러한 회의를 위한 제의를 통지한 후, 6개월 이내에 그들중 3분의 1이상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고 적절한 국제기구의 옵서버도 초청한다. 그러한 회의는 또한 체약당사국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의하여서도 하시라도 소집된다.
2. 수탁국은 만일 전문가 회의후에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체약당사국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동 회의에서 제의된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 및 제협약 체약당사국회의를 소집한다.
3. 제I부속서에 대한 개정안은 전기회의에 출석하고 투표한 체약당사국 3분의 2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채택될 수 있다.
4. 수탁국은 전기와 같이 채택된 모든 개정내용을 체약당사국 및 제협약 체약당사국들에게 통지한다. 개정은 전기와 같이 통지된 때로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체약당사국 3분의 1이상에 의한 동 개정의 불수락선언이 수탁국에 전달되지 아니하는 한 그 기간의 말일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5. 제4항에 따라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개정은, 동항에 따라 불수락선언을 행한 국가가

아닌 여타의 모든 계약당사국들에 대하여 수락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한 선언을 행한 모든 당사국은 하더라도 그 선언을 철회할 수 있으며, 개정은 그 당사국에 대하여 그때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6. 수탁국은 계약당사국 및 제협약 계약당사국에게 개정의 효력발생, 개정으로 구속을 받는 당사국, 각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발효일자, 제4항에 따른 불수락선언 및 그러한 선언의 철회에 관하여 통고한다.

제 99 조 탈퇴

1. 한 계약당사국이 본 의정서로부터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탈퇴는 탈퇴서의 접수 1년 후라야만 효력을 발생한다. 단, 1년기간의 만료직후 탈퇴국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사태 중 하나에 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탈퇴는 무력충돌 또는 점령의 종료이전 및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제협약 또는 본의정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들의 최종석방·송환 또는 복귀와 관계되는 업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 탈퇴는 서면으로 수탁국에 통고되며, 수탁국은 이를 모든 계약당사국에 전달한다.
3. 탈퇴는 오직 탈퇴하는 당사국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4. 제1항에 의한 모든 탈퇴는, 그 탈퇴가 발효하기 전에 행하여진 모든 행위와 관련하여, 무력충돌을 이유로 본 의정서에 의하여 탈퇴당사국에게 이미 발생된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00 조 통고

수탁국은 제협약당사국 및 계약당사국들에게 본 의정서의 서명국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 가. 본 의정서에 대한 서명과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른 비준서, 가입서의 기탁
- 나. 제95조에 따른 본 의정서의 발효일자
- 다. 제84조, 제90조 및 제97조에 따라 접수된 통지 및 선언
- 라. 제96조 3항에 따라 접수된 선언 (이것은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 마. 제99조에 따른 탈퇴

제 101 조 등록

1. 본 의정서는 발효후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 및 공포를 위하여 수탁국에 의하여 국제연합사무국에 전달된다.
2. 수탁국은 또한 본 의정서에 관하여 접수된 모든 비준,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국제연합사무국에 통보한다.

제 102 조 인증등본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본이 동등히 인증된 의정서의 원본은 수탁국에 기탁되며, 수탁국은 그 인증등본을 모든 제협약당사국에게 전달한다.

제 I 부속서

식별에 관한 규정

제1조 총칙

1. 이 부속서의 식별에 관한 규정은 제네바협약 및 의정서의 관련규정을 이행하는 것이다. 즉, 이는 제네바협약 및 의정서에서 보호되는 요원, 물질, 부대, 수송기관 및 장비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규정은 자동적으로 보호권을 성립시키지 않는다. 이 권리는 협약 및 의정서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3. 제네바협약 및 의정서의 관련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권한있는 당국은 항상 식별표장 및 신호의 사용, 표시, 채색 및 탐지를 규정한다.
4. 계약당사국 및 특히 충돌당사국은 식별 가능성을 강화하고 또한 이 분야의 기술의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밖의 추가적인 신호, 수단, 체계를 설정하는데 합의하도록 항상 요청된다.

제 1 장 신분증명서

제 2 조 상임민간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용 신분증명서

1. 의정서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민간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용 신분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 가. 식별표장이 들어 있고 호주머니 속에 휴대할 수 있는 규격일 것.
 - 나. 실제로 내구성이 있을 것.
 - 다. 국어 또는 공용어로 기재될 것(추가로 기타 언어로도 기재될 수 있음)
 - 라. 소지자의 성명, 생년월일(또는 생년월일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발급 당시의 연령) 그리고 신분증번호가 있으면 이를 기입할 것.
 - 마. 소지자가 어떤 자격으로 제협약 및 의정서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기재되어 있을 것.
 - 바. 소지자의 서명이나 무지인 또는 그 양자와 함께 그의 사진이 붙어있을 것.
 - 사. 권한있는 당국의 관인 및 서명이 들어 있을 것.
 - 아. 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만료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것.
2. 신분증명서는 각 계약당사국의 전역을 통하여 통일된 것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모든 충돌당사국에 대하여 동일한 양식의 것이어야 한다. 충돌당사국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단일언어식 예형에 따를 수 있다. 만일 그러한 예형이 표1에 제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에는, 그들은 적대행위의 발발시에 그들이 사용하는 예형의 견본을 상호 전달한다. 신분증명서는, 가능한 경우에는 2통으로 작성되어 발급당국이 1통을 보관하며, 동 당국은 자신이 발행한 증명서의 통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3. 여하한 상황에 있어서도, 상임민간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은 자신의 신분증명서를 박탈당하여서는 안된다. 신분증명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그들은 부분을 발급받을 권리가 있다.

제 3 조 임시민간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용 신분증명서

1. 임시민간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용 신분증명서는 가능한한 언제나 본 규칙 제1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총돌당사국은 표1에 제시된 예형에 따를 수 있다.
2. 임시민간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에게 본 규칙 제1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신분증명서의 발급이 저해되는 형편일 경우에는 동 요원에게 권한있는 당국이 서명한 증명서가 발급되며, 그 증명서에는 피발급자가 임시요원으로서의 임무에 배속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가능하면 그러한 임무배속의 기간 및 식별표장을 착용할 수 있는 권리가 기재되어야 한다. 동 증명서에는 소지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또는 생년월일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발급당시의 연령), 또는 직무 및 신분증번호가 있으면 이를 기입하여야 한다. 동 증명서에는 소지자의 서명이나 무지인, 또는 양자가 함께 찍혀 있어야 한다.

표1 : 신분증명서의 예형 (규격 : 가로74mm×세로105mm)

표 면

	
<p>(본 증명서를 발급하는 국가 및 당국의 명을 기재하기 위한 여백)</p> <p>상임 의원 의원용 임시 민간 종교</p>	
<h2>신분증명서</h2>	
성명
생년월일(또는 연령)
신분증번호(있는 경우에 한함)
<p>본 증명서의 소지자는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과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부력충돌 회생자의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의정서)에 의하여의 자격으로 보호한다.</p>	
발급년월일 증명서 번호
	발급당사국의 서명
유효기간
유효기간	민표일자

이 면

신장	안색	두발색
<p>기타 특징 또는 참고사항:</p>		
<p>소지자의 사진</p>		
관 인	<p>소지자의 서명이나 무지인 또는 양자</p>	

제 2 장 식별표장

제 4 조 형태 및 성질

1. 식별표장(백색바탕에 적색)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형의 규격이어야 한다. 십자, 신월 또는 사자태양의 형태에 관하여서는, 체약국은 표2에 제시된 예형에 따를 수 있다.
2. 야간이나 또는 가시도가 감소된 때에는, 식별표장은 조명 또는 채색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기술적인 탐지수단에 의하여 분간될 수 있는 자재로 제작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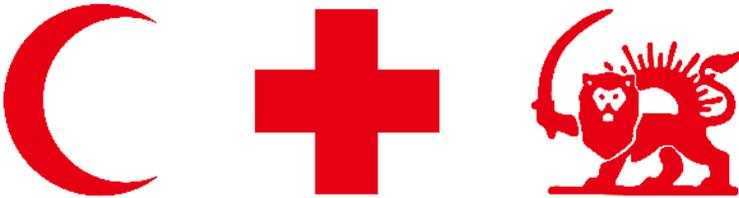


표2 : 백색바탕에 적색의 식별표장

제 5 조 사용

1. 식별표장은 언제든지 가급적 여러 방향 및 원거리에서도, 특히 공중에서, 보일 수 있도록 평면상에 또는 깃발로 표시되거나 또는 지형상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된다.
2. 야간이나 또는 가시도가 감소된 때에는 식별표장은 조명 또는 채색될 수 있다.
3. 식별표장은 기술적인 탐지수단에 의하여 분간될 수 있는 물질로 만들어질 수 있다. 적색부분은 특히 적외선 도구 등에 의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흑색 바탕위에 채색되어야 한다.
4. 전투지역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은 가능한 한 식별표장이 부착된 모자 및 피복을 착용한다.

제 3 장 식별신호

제 6 조 사용

1. 본 장에 규정된 모든 식별신호는 의무부대 및 수송기관이 사용할 수 있다.
2. 이러한 신호는 의무부대 및 수송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 될 수 없다. 그러나 광신호의 사용은 유보된다.
3. 충돌당사국간에 의무차량, 선박 및 항공기의 청색섬광의 사용을 보유하는 데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다른 차량, 선박 및 항공기의 그러한 신호의 사용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4. 시간의 부족이나 또는 그 성질 때문에 식별표장으로 표시될 수 없는 임시의무용 항공기는 이 장에서 허가된 식별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 7 조 광선신호

1. ICAO 문서 제9051호 항공기술편람에 정의된 것과 같은 청색섬광으로 형성되는 광선신호는 의무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한 신호로 사용되도록 제정된다. 다른 항공기는 이 신호를 사용할 수 없다. 청색섬광을 이용하는 의무용항공기는 이러한 광선신호가 가능한 많은 방향에서 보이도록 필요한 만큼의 광선신호를 표시한다.
2. IMO 국제신호규칙 제14장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49년 제네바협약 및 의정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박은 모든 방향에서 보이도록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청색섬광을 표시한다.
3. 의무차량은 가능한 한 멀리서 보이도록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청색섬광을 표시한다. 그 밖의 색깔의 광선을 사용하는 계약당사국 및 충돌당사국은 이를 통보해야 한다.
4. 권장되는 청색은 색채가 다음의 공식으로 정의되는 ICI 색채도식의 경계안에 있는 경우에만 획득된다.

$$\text{녹색부분 } y = 0.065 + 0.805x$$

$$\text{백색부분 } y = 0.400 - x$$

$$\text{자주색부분 } x = 0.133 + 0.600y$$

권장되는 청색광선의 섬전속도는 1분에 60회 내지 100회이다.

제 8 조 무선신호

1. 무선신호는 ITU 무선규칙에 기술된 대로 긴급신호와 식별신호로 구성된다.
2. 제1항의 규정된 긴급 또는 식별신호에 후속되는 무선통신은 무선규칙에 이 목적을 위하여 규정된 주파수로, 적절한 간격으로 영어로 전달되며 관련 의무수송기관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전달한다.
 - 가. 호출신호 또는 그 밖의 승인된 식별수단
 - 나. 위치
 - 다. 운송수단의 수 및 종류
 - 라. 예정노선
 - 마. 적합할 경우, 주행예상시간 및 출발과 도착 예상시간
 - 바. 비행고도, 인도되는 무선주파수, 사용자 및 보조탐색레이다방식 및 약호와 같은 모든 정보
3. 제1항, 제2항 및 의정서 제22조, 제23조, 제25조 내지 제31조에 언급된 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당사국, 충돌당사국 또는 충돌당사국 일방은 합의에 따라 또는 단독으로, 국제전기통신협약에 부속된 무선규칙에 따라 통신을 위하여 그들이 사용할 국내선별주파수를 지정한 주파수 배정표에 따라, 그들이 그러한 통신을 위하여 사용할 국내선별주파수를 지정·공표 할 수 있다. 이러한 주파수는 세계무선주관총회의에서 승인된 절차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통고된다.

제 9 조 전자식 식별

1. 1944년 12월 7일자 국제민간항공공에 관한 시카고협약 제10부속서에 규정된 후 수시로 수정된 바와 같은 보조탐색레이다(SSR)체제는, 의무용 항공기를 식별하고 그 항로를 추적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의무용 항공기의 독점적 사용을 위하여 유보되는 방식과 약호는 계약당사국, 충돌당사국 또는 충돌당사국 일방이 합의로 또는 단독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권장되는 절차에 따라 설정한다.
2. 보호되는 의무수송기관은 그들의 위치식별을 위하여 표준항공및항해레이다송수신기 또는 해운검색 및 구조레이다송수신기를 사용할 수 있다. 보호되는 의무수송기관은 레이다송수신기에 의해 전달되는 약호, 예를 들면 의무수송기관에 부착되는 약호3/A에 따라 보조탐색레이다 장비를 갖춘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의무수송기관의 송수신기에 의하여 전달되는 약호는 권한있는 당국이 그러한 송수신기를 위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모든 충돌당사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3. 의무수송기관은 의무수송수단에 의해 전달되는 적절한 수중음향신호에 의해 잠수함이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수중음향신호는 예를 들면 5kHz같은 적절한 음향주파수상의 모오스로 전달되는 YYY 단일 그룹에 후속되는 배의 호출신호로 구성된다. 상기 수중음향식별신호의 사용을 희망하는 충돌당사국은 관련당사국에 가능한 한 신속히 그 신호를 통지하며, 그들의 병원선의 사용을 통고할 때 사용할 주파수도 함께 통지한다.
4. 충돌당사국은 그들간의 특별한 합의에 의하여 의무용 차량 및 의무용 선박과 항공기의 식별을 위하여 그들이 사용할 유사한 전자식 체제를 설정할 수 있다.

제 4 장 통신

제 10 조 무선통신

1. 제8조에 규정된 긴급신호 및 식별신호는 의정서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 내지 제31조에 의하여 시행되는 절차의 적용에 있어 의무부대 및 수송기관에 의한 적절한 무선통신에 선행할 수 있다.
2. 국제전기통신연합 무선규칙의 제40조 및 제40호에 언급된 의무수송기관은 이동위성서비스에 대한 동 무선규칙의 제37조 및 제59호의 규정에 따라 위성시스템을 통하여 그들의 통신을 전달할 수 있다.

제 11 조 국제약호의 사용

의무부대 및 수송기관은 또한, 국제전신연합,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정부간 해사자문기구에 의하여 제정된 약호 및 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약호 및 신호는 전기 제기구에 의하여 제정된 기준, 관행 및 절차에 따라 사용된다.

제 12 조 기타 통신수단

송수신 양용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부간 해사자문기구에 의하여 채택된 국제

신호법 또는 1944년 12월 7일자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시카고협약의 해당부속서에 규정된 후 수시로 수정된 바와 같은 신호가 사용될 수 있다.

제 13 조 비행계획

의정서 제29조에 규정된 비행계획에 관한 합의 및 통고는 가능한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제정된 절차에 따라 작성된다.

제 14 조 의무용 항공기의 요격에 관한 신호 및 절차

만일 요격기가 비행중에 있는 의무용 항공기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의정서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동 항공기를 착륙하도록 요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1944년 12월 7일자로 체결된 후 수시로 수정된 시카고협약 제2부속서에 규정된 시각적 및 무선적요격표준절차가 요격기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제 5 장 민방위

제 15 조 신분증명서

1. 의정서 제66조 제3항에 규정된 민방위요원용 신분증명서는 본 규칙 제1조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규제된다
2. 민방위요원용 신분증명서는 표3에 제시된 예형에 따를 수 있다.
3. 만일 민방위요원이 개인용 소화기를 휴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의 항목이 전기 신분증명서상에 기재되어야 한다.

제 16 조 국제적 식별표장

1. 의정서 제66조 제4항에 규정된 국제적 민방위표장은 오렌지색바탕에 청색 정삼각형으로 한다. 그 예형은 표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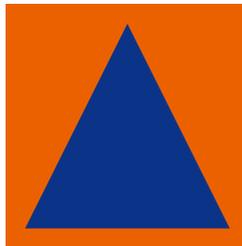


표4 : 오렌지색 바탕에 청색의 삼각형

표3 : 민방위요원용 신분증명서 예형 (규격 : 가로74mm× 세로105mm)

표 면

 <p>(본 증명서를 발급하는 국가 및 당국의 명을 기재하기 위한 여백)</p>	
<h2>민방위요원용</h2> <h3>신분 증명서</h3>	
성 명
생년월일(또는 연명)
신분증번호(있는 경우에 한함)
<p>본 증명서의 소지자는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과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 회생자의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II의정서)에 의하여 의 자격으로 보호한다.</p>	
발급년월일	증명서 번호
	발급당국의 서명
유효기간
.....

이 면

신장	안색	두발색
<p>기타 특징 또는 참고사항:</p> <p>.....</p> <p>.....</p> <p>.....</p> <p>무기</p> <p>.....</p>		
<p>소지자의 사진</p>		
관 인	<p>소지자의 서명이나 무지인 또는 양자</p>	

2. 다음의 사항이 권고된다.

가. 만일 청색삼각형이 기치, 완장 또는 근무복에 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삼각형에 대한 바탕은 오렌지색의 기치, 완장 또는 근무복으로 할 것.

나. 삼각형의 일각은 수직상향으로 할 것.

다. 삼각형의 모든 각은 오렌지색 바탕의 가장자리에 닿지 아니할 것.

3. 국제적 식별표장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형의 규격이어야 한다. 식별표장은 가능할 경우에는 하시라도 가급적 여러 방향 및 원거리에서 볼 수 있는 평면상 또는 기치상에 표시된다. 권한 있는 당국의 지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민방위요원은 가능한 한 국제적 식별표장이 부착된 모자 및 피복을 착용한다. 야간이나 또는 선명도가 감소된 때에는, 표지는 조명 또는 채색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기술적인 탐지수단에 의하여 분간될 수 있는 자재로 제작될 수 있다.

제 6 장 위험한 물리력을 함유하는 사업장 및 시설

제 17 조 국제적 특별표지

1. 의정서 제56조 제7항에 규정된 위험한 물리력을 함유하는 사업장 및 시설을 위한 국제적 특별표지는 표5의 도해에 따라, 동일한 축선상에 위치하고 각 원 사이의 간격이 그 반경의 길이와 같은 동일규격의 선명한 오렌지색 3개의 원군으로 하여야 한다.
2. 동 표지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형의 규격이어야 한다. 연장된 표면에 표시될 때에는, 그것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회수로 반복될 수 있다. 동 표지는 가능할 경우에는 하시라도 가급적 여러 방향 및 원거리에서 볼 수 있는 평면상 또는 기치상에 표시되어야 한다.
3. 기치상에서는 표지의 윤곽선과 기치의 인접변간의 간격은 그 반경의 길이와 동일하여야 한다. 기치는 직사각형이고 그 바탕은 백색이어야 한다.
4. 야간이나 또는 가시도가 감소된 때에는 표지는 조명 또는 채색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기술적 탐지수단에 의하여 분간될 수 있는 자재로 제작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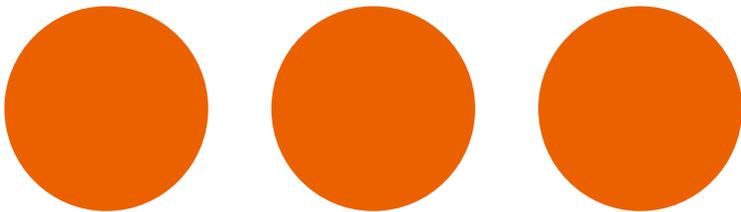


표5 : 위험한 물리력을 함유하는 사업장 및 시설을 위한 국제적 특별표지

제 II 부속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기자용 신분증명서

(표 면)

<p style="text-align: center;">알 릫</p> <p>본 증명서는 무력충돌 지역내에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기자에게 발급됨.</p> <p>소지자는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 및 그 것들에 대한 추가 제의정서에 의하여 민간인으로서 대우받을 자격이 있음. 본 증명서는 소지자에 의하여 항상 휴대되어야 함. 만일 소지자가 억류되는 경우에는 그 자는 자신의 신원판별을 돕기 위하여 억류당국에 즉시 이를 수교하여야함.</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증명서를 발급하는 국가명)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기자용</p> <p style="text-align: center;">신 분 증 명 서</p>
---	---

(이 편)

<p>권한이 있는 발급장국명</p> <p>장 소</p> <p>일 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소지자의 사 진</p> <p>(관인날인)</p> </div> <p>소지자의 서명</p> <p>성</p> <p>명</p> <p>출생지 및 생년월일</p> <p>기자의 소속기관명</p> <p>직 종</p> <p>유효기간</p>	<p>신 장</p> <p>안 색</p> <p>체 중</p> <p>두발색</p> <p>혈액형</p> <p>Rh인자</p> <p>종 교(임의적)</p> <p>지 장(임의적)</p> <p>(좌식지)</p> <p>(우식지)</p> <p>신원판별특징</p>
--	--

(주) 이상 각면의 항목은 한국어외에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본문이 함께 기재될(역자)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 II 의정서)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I), of 8 June 1977

[일반사항]

1977년 6월 8일 제네바에서 채택
1978년 12월 7일 발효

[대한민국 관련사항]

1981년 12월 14일 국회비준 동의
1982년 1월 15일 스위스연방정부에 비준서 기탁
1982년 7월 15일 발효(조약 제779호)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보호에 관한의정서 (제II의정서)

전문

체약당사국은,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의 공통규정인 제3조에 내포된 인도적 원칙들이 국제적 성격을 갖지 않는 무력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인간의 존중의 기초를 구성함을 상기하고,
나아가 인권에 관한 국제약정들이 인간에게 기본적 보호를 제공함을 상기하고,
그러한 무력충돌의 희생자에게 보다 나은 보호를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행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 경우에 인간은 인도주의 원칙 및 공공양심의 명령의 보호하에 놓임을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편 본 의정서의 범위

제 1 조 적용의 물적범위

1.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의 공통규정인 제3조를 현재의 적용조건을 변경시키지 않고 보완, 발전시킨 본 의정서는 국제적 분쟁의 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1948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의정서(제I의정서) 제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체약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동 체약당사국의 군대 및 책임 있는 지휘하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일치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본 의정서를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토의 일부분을 통제하고 있는 반란군대 또는 다른 조직된 무장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무력충돌에 적용된다.
2. 본 의정서는 무력충돌이 아닌 폭동, 고립되고 산발적인 폭력행위 및 기타 유사한 성질의 행위와 같은 내부혼란 및 긴장의 상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조 적용의 인적범위

1. 본 의정서는 제1조에 정의된 무력충돌에 의하여 영향받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가적 사회적 출신성분, 부, 출생 또는 다른 신분 또는 기타 유사한 어떠한 기준에 근거하여서도 어떠한 불리한 차별도 행함이 없이 적용된다.

2. 무력충돌의 종식시에는, 자유가 박탈되었거나 충돌과 관련하여 자유가 제한되어온 모든 자는 같은 이유로 충돌후에 자유를 박탈당하고 자유를 제한 받는 자와 마찬가지로 자유의 박탈 및 제한의 종료시까지 제5조 및 제6조의 보호를 향유한다.

제 3 조 불간섭

1. 본 의정서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합법적인 수단으로 국내의 법과 질서를 유지 또는 회복하거나 국가의 통일성 및 영토보전을 수호하는 국가의 주권 및 정부의 책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원용되어서는 안된다.
2. 본 의정서의 어떠한 규정도 충돌이 발생한 지역의 계약당사국의 무력충돌이나 내부 또는 대외문제에 어떠한 이유로든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간섭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안된다.

제 2 편 인도적 대우

제 4 조 기본적 보장

1.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거나 적대행위에 가담하기를 중지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자유가 제한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들의 신체, 명예, 신념, 종교적 관습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어떠한 불리한 차별도 없이 인도적으로 대우된다. 전멸 명령은 금지된다.
2. 전향의 일반성을 침해함이 없이 1항에 언급된 자에 대한 다음의 행위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금지되어야 한다.
 - 가. 생명, 건강, 정신적·신체적 복리에 대한 침해 특히 살인 및 고문, 신체절단 또는 모든 형태의 실제적 차별과 같은 잔인한 행위
 - 나. 집단적 처벌
 - 다. 인질행위
 - 라. 테러행위
 - 마. 개인의 존엄에 대한 침해 특히 모독적 비하행위, 강간, 강제매춘 및 모든 형태의 비열한 폭행
 - 바. 노예제도 및 모든 형태의 노예매매
 - 사. 약탈
 - 아. 전기의 행위를 행하려는 위협
3. 아동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양호 및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특히,
 - 가. 그들은 부모의 희망에 따라 또는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그들의 양육책임자의 희망에 부응하여 종교, 도덕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받는다.
 - 나. 분산된 가족의 재결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다. 15세이하의 아동은 군대에 징집되거나 적대행위에 참가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 라. 본조에 의하여 15세이하의 아동에게 부여되는 특별보호는 다.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적대행위에 참가하고 포획되었을 때에도 계속 적용된다.
- 마. 필요할 경우 그들이 부모 또는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그들의 보호에 책임이 있는 자의 동의를 얻어 아동을 적대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동국 내의 안전한 장소로 임시 이동시키고 그들의 안전 및 복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 동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 자유가 제한된 개인

1. 제4조의 규정에 추가하여 무력분쟁에 관련된 이유로 그들의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들이 억류되어 있던 구류되어 있던간에 최소한 다음 사항이 보장되어야 한다.
 - 가. 부상자 및 병자는 제7조에 따라 취급되어야 한다.
 - 나. 본항에 언급된 자는 지역 민간인과 같은 정도로 음식, 음료수가 공급되어야 하고 건강, 위생의 안전, 기후 및 무력투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부여받는다.
 - 다. 그들은 개인적, 집단적 구호를 받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 라. 그들은 그들의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허용되며, 만일 필요하고 적절할 경우에는 목사와 같은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로부터 정신적 도움을 받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 마. 그들은 노동에 종사할 경우 지방주민이 향유하는 것과 동일한 노동조건 및 보호를 향유한다.
2. 1항에 언급된 자들의 구금 및 억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능력 한도내에서 전기의 자들에 관련된 다음 규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가. 한 가족의 남녀가 같이 수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자는 남자의 숙소로부터 분리된 숙소에 수용되어야 하고 여자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두어야 한다.
 - 나. 그들은 편지 및 카드를 보내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회수는 필요하다면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 다. 구금 및 억류의 장소는 전투지대에 근접한 곳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에 언급된 자들은 그들의 소개가 충분한 안전조건하에 행해질 수 있다면 그들의 억류 또는 구류장소가 특히 무력충돌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소개되어야 한다.
 - 라. 그들은 의료검진의 혜택을 받는다.
 - 마.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보전은 부당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위협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조에 규정된 자들을 당사자의 건강상태에 의하지 아니한 또는 유사한 의료 환경하에서 자유인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의료기준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의료절차를 받게 하는 것은 금지된다.
3. 1항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무력충돌에 관련되는 이유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유를 제한받는 자들은 제4조와 본조의 1항 가, 나, 다호 및 2항 나호에 따라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한다.
4.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을 석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자들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 조 형사소추

1. 본조는 무력충돌과 관련된 형사범죄의 소추 및 처벌에 적용된다.
2. 독립성 및 공평성이라는 필수적 보장이 부여되는 법정에 의한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도 집행될 수 없다. 특히,
 - 가. 동 절차는 혐의사실의 세목을 지체없이 피고에게 알려 주도록 하고 피고에게 심리이전 및 심리중에 변호에 필요한 모든 권리 및 수단을 부여하여야 한다.
 - 나. 개인적 형사책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자도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 다. 누구도 행위시의 법률하에서 죄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범행이 행해진 당시에 적용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형벌이 과하여 저서는 안된다. 범행 후에 보다 경한 형벌을 과하는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범행자도 그 혜택을 향유하도록 한다.
 - 라. 법에 따라 유죄임이 밝혀질 때까지 범죄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된다.
 - 마. 범죄피의자는 누구나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바. 누구도 자신에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범죄를 자백하도록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선고 즉시 법적 및 기타 구제절차 및 동 절차가 행사될 수 있는 시한을 통지받아야 한다.
4. 사형은 범죄시 18세이하의 자에게는 선고될 수 없으며 임신부 또는 영아의 모에게는 집행될 수 없다.
5. 적대행위의 종료시 권한있는 당국은 무력충돌에 참가했던 자들 및 무력충돌에 관련있는 이유로 자유가 구속된 자들에게 그들이 억류되어 있던 구류되어 있던 가능한 최대의 사면을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편 부상자, 병자, 난선자

제 7 조 보호 및 가료

1. 모든 부상자, 병자, 난선자는 무력충돌에의 가담여부를 불문하고 존중되고 보호된다.
2. 모든 경우에 있어 그들은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하며, 실행가능한 최대한도까지 또한 가능한 최소한의 지체로 그들의 상태에 따른 의료적 가료 및 주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적인 것 이외의 이유에 근거하여 그들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제 8 조 수색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 특히 교전후 부상자, 병자, 난선자를 수색하여 수용하고, 그들을 약탈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가료를 보장하며, 사망자를 수색하여 그들을 약탈로부터 방지하고 품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가 취하여야 한다.

제 9 조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의 보호

1.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그들의 의무수행을 위하여 모든 가능한 협조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인도적 임무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2. 그들의 의무수행에 있어서 의무요원은 의료적 이유로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누구에게도 우선권을 주도록 요청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의료업무의 일반적 보호

1.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누구든 의료윤리와 양립되는 의료행위를 수행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 수익자가 누구이든간에 처벌되지 아니한다.
2. 의료행위에 종사하는 자는 의료윤리의 규칙 또는 부상자 및 병자의 이익을 위하여 고안된 규칙 및 본 의정서에 반하는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되지 아니하며, 이들 규칙 및 의정서에 의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못하도록 강요되지 아니한다.
3.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부상자 및 병자에 관하여 취득한 정보에 관한 의료행위 종사자의 직업상 의무는 국내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존중된다.
4. 국내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의료행위 종사자는 누구도 자신의 보호하에 있거나 있었던 부상자 및 병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 11 조 의무부대 및 수송수단의 보호

1. 의무부대 및 수송수단은 항상 존중되고 보호되며 공격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2. 의무부대 및 수송수단에 부여되는 보호는 그들이 인도적 기능을 일탈하여 적대행위를 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 중단되지 아니한다. 단, 보호는 합리적인 시한을 정한 경고를 발하고 그러한 경고가 무시된 경우에만 중단될 수 있다.

제 12 조 식별표장

권한있는 관계당국의 지도하에 흰바탕에 적십자, 적신월, 적사자 태양의 식별표장은 의무요원, 종교요원, 의료부대 및 의료수송수단에 의하여 부착되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존중되어야 하며 부당하게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4 편 민간주민

제 13 조 민간주민의 보호

1. 민간주민과 민간개개인은 군사작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에 대하여 일반적 보호를 향유한다. 이러한 보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아래의 규칙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한다.

2. 민간주민과 민간개개인은 공격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민간주민 사이에 공포를 확산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폭력행위 및 그 위협은 금지된다.
3. 민간인은 그들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그러한 기간중 본편에 규정된 보호를 향유한다.

제 14 조 민간주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대상물의 보호

전투방법으로서의 민간인의 기아작전은 금지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민간주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식량, 식량생사에 필요한 농업지대, 수확물, 가축, 음료수 시설 및 공급, 관개시설등과 같은 목표물을 공격, 파괴, 이동 또는 무용화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 15 조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는 사업장 및 시설물의 보호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장 및 시설물, 즉 댐, 수로, 원자력발전소는 등 대상들이 군사적 목표물일지라도 그러한 공격이 위험한 물리력의 방출 및 그에 따른 중대한 손실을 민간주민에게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16 조 문화재 및 예배장소의 보호

1954년 5월 14일자의 무력충돌시 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의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국민의 문화적·정신적 유산을 구성하는 역사적 기념물, 예술작품 또는 예배장소에 대한 적대행위는 금지되며, 군사적 노력지원에 이들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 17 조 민간인의 강제이동 금지

1. 관계 민간인의 안전이나 절대적인 군사적 이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충돌과 관련된 이유로 민간주민의 이동을 명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이동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민간주민이 거처, 위생, 건강, 안전 및 영양상 만족할만한 조건하에 수용되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가 취하여야 한다.
2. 민간인은 충돌과 관련되는 이유로 그들의 영토를 떠나도록 강요되지 아니한다.

제 18 조 구호단체 및 구호활동

1. 적십자(적신월, 적사자 대양)단체와 같은 계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는 구호단체는 무력충돌의 희생자와 관련된 그들의 전통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그들의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민간주민은 자발적으로 부상자, 병자 및 난선자를 수용하고 가료를 제공할 수 있다.
2. 민간주민이 식량 및 의료공급 등 생존에 필수적인 공급의 결핍으로 과도한 곤경에 처하고 있을 경우 오로지 인도적이고 공평한 성질을 띠며 불리한 차별을 행함이 없이 수행되는 민간주민을 위한 구호행위는 관련계약당사국의 동의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제 5 편 최종규정

제 19 조 보급

본 의정서는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보급되어야 한다.

제 20 조 서명

본 의정서는 최종의정서의 서명 6개월후 협약당사국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12개월동안 개방된다.

제 21 조 비준

본 의정서는 가능한 한 빨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협약 수탁국인 스위스 연방정부에 기탁 되어야 한다.

제 22 조 가입

본 의정서는 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본 의정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모든 당사국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수탁국에 기탁된다.

제 23 조 발효

1. 본 의정서는 2개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6개월후 발효된다.
2. 본 의정서 발표후 비준 또는 가입하는 제협약의 당사국에 대하여는 동 당사국에 의한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6개월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 24 조 수정

1. 모든 체약당사국은 본 의정서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안의 원본은 수탁국에 전달 되어야 하며, 수탁국은 모든 체약당사국 및 국제적십자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의 소집여부를 결정한다.
2. 수탁국은 제협약의 당사국과 함께 모든 체약당사국을 본 의정서의 서명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동 회의에 초청한다.

제 25 조 탈퇴

1. 체약당사국이 본 의정서를 탈퇴할 경우 탈퇴는 탈퇴서의 접수 6개월후에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6개월의 만료직후 탈퇴국이 제1조에 언급된 사태에 개입되는 경우에는 탈퇴는 무력충돌의 종료전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무력충돌에 관련된 이유로 자유를 박탈당하였거나 제한당한 자들은 그들의 최종 석방시까지 본 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혜택을 계속 향유한다.
2. 탈퇴는 수탁국에 서면으로 통고되어야 하며, 수탁국은 이 사실을 모든 체약당사국에 전

달한다.

제 26 조 통 고

수탁국은 제협약당사국 및 체약당사국에게 그들이 본 의정서의 서명국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 가. 본 의정서에 대한 서명과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비준서, 가입서의 기탁
- 나. 제23조에 따른 본 의정서의 발효일자
- 다. 제24조에 따라 접수된 통지 및 선언

제 27 조 등 록

1. 본 의정서는 발효후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 및 공포를 위하여 수탁국에 의하여 유엔사무국에 전달된다.
2. 수탁국은 본 의정서에 관하여 접수된 모든 비준 및 가입사실을 유엔사무국에 통보한다.

제 28 조 인증등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본이 동등히 인증된 본 의정서 원본은 수탁국에 기탁되며, 수탁국은 그 인증등본을 모든 제협약 당사국에 전달한다.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및 추가 식별표장 채택에 관한 추가의정서 (제 III 의정서)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Adoption of an Additional Distinctive Emblem (Protocol III),
of 8 December 2005

[일반사항]

2005년 12월 8일 제네바에서 채택

2007년 1월 14일 발효

[대한민국 관련사항]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2010년 4월) 가입하지 않은 상태임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및 추가 식별표장 채택에 관한 추가 의정서 (제Ⅲ 의정서)

전문

체약당사국은,

식별표장의 사용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특히 제네바 제1협약 제26조, 제38조, 제42조, 제44조)과, 적용되는 경우,

1977년 6월 8일자 추가의정서(특히 제1 추가의정서 제18조, 제38조 및 제2 추가의정서 제12조)의 규정을 재확인하고,

그 보호적 가치와 보편적 특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술한 규정을 보충하기를 희망하며,

이 의정서가 제네바협약과, 적용되는 경우, 추가의정서상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국이 사용중인 표장을 계속 사용할 체약당사국의 승인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에 유의하고,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에 의하여 보호받는 사람과 대상을 존중할 의무는, 국제법상 보호받고 있는 지위에서 파생되는 것인지 식별표장, 부호 또는 신호의 사용에 종속되지 아니함을 상기하며,

식별표장이 종교적, 민족적, 인종적, 지역적 또는 정치적 의미를 가질 의도는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제네바협약과, 적용되는 경우, 추가의정서에서 인정되는 식별표장에 관한 의무가 완전히 존중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제네바 제1협약 제44조가 식별표장의 보호적 사용과 표시적 사용을 구별함을 상기하고,

타방 국가의 영역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각국의 단체가, 당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및 통과국에서 그러한 활동의 기본 틀 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표장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을 또한 상기하며,

국가 및 각국의 단체가 기존의 식별표장을 사용하는데 있어 갖게 될 수 있는 어려움을 승인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사연맹 및 국제적십자운동이 현재의 명칭과 표장을 유지한다는 결정에 유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의정서의 존중과 적용범위

1. 체약당사국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의정서를 존중할 것과 이 의정서의 존중을 보장할 것을 약정한다.
2. 이 의정서는 식별표장, 즉 적십자, 적신월 및 적사자·태양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4개 제네바협약(“제네바협약”)과, 적용되는 경우, 1977년 6월 8일자 2개 추가의정서의 규정을 재확인하고 보충하며, 이 규정에서 규정된 바와 동일한 상황에서 적용된다.

제2조 식별표장

1. 이 의정서는 제네바협약의 식별표장에 더하면서 그 표장과 동일한 목적으로 추가 식별 표장을 승인한다. 이 식별표장은 동일한 지위를 향유한다.
2. 백색바탕에 가장자리 부분이 사각형 모양인 적색 틀로 구성된 이 추가 식별표장은 이 의정서 부속서상 예시와 일치한다. 이 식별표장은 이 의정서에서 “제3의정서 표장”이라 한다.
3. 제3의정서 표장의 사용과 존중에 대한 조건은 제네바협약과, 적용되는 경우, 1977년 추가의정서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별표장에 대한 조건과 동일하다.
4. 계약당사국 군대의 의무요원 및 종교 요원은 현재의 표장을 해하지 아니하면서 보호를 제고할 수 있는 경우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식별표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제Ⅲ의정서 표장의 표시적 사용

1. 제3의정서 표장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계약당사국의 단체는 관련 국내법에 따라 표장을 사용함에 있어 표시적 목적으로 표장 내에 다음 각 호의 표장의 합체를 선택할 수 있다.
 - 가. 제네바협약에 의하여 승인된 식별표장 또는 이 표장의 결합 또는
 - 나. 계약당사국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사용되었고 이 의정서 채택 이전에 수탁국을 통하여 타방 계약당사국 및 국제적십자위원회에 통보된 또 다른 표장.
 합체는 이 의정서 부속서상 예시와 일치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제3의정서 표장 내에 또 다른 표장의 합체를 선택하는 각국의 단체는 당해 국가의 입법에 따라 그 표장을 지정할 수 있고 영역 내에서 이를 게시할 수 있다.
3. 각국의 단체는 국내입법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그리고 해당 임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식별표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이 조는 제네바협약 및 이 의정서에서 승인된 식별표장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이 조 제1항에 따라 표시적 목적으로 합체한 어느 특정 표장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국제적십자위원회 및 국제적십자사연맹

국제적십자위원회 및 국제적십자사연맹과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요원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임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식별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국제연합 후원하의 임무

국제연합 후원 하에 있는 작전에 참가하는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은 참가국의 동의를 얻어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식별표장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남용의 예방 및 억제

1. 제네바협약과, 적용되는 경우, 1977년 추가의정서의 식별표장 남용의 예방과 억제에 관한 규정은 제3의정서 표장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특히, 계약당사국은 모든 경우에 제1

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식별표장의 남용, 그리고 그 모방에 해당하는 부호 또는 지정의 악의적 사용 및 사용을 포함한 지정물의 남용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국은 제3의정서 표장 또는 이를 모방한 기타 부호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자가 그러한 사용을 지속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사용은 무력충돌시 제네바협약과, 적용되는 경우, 1977년 추가의정서상 보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사용에 대한 권리는 이 의정서 채택 이전에 취득된 것이어야 한다.

제7조 보급

계약당사국은 이 의정서가 군대 및 민간주민에게 습득되도록 무력충돌시와 같이 평시에도 자국 내에서 이 의정서를 가급적 광범위하게 보급하고, 특히 자국의 군사교육계획 속에 이에 관한 학습을 포함시키고 민간주민에게도 그러한 학습을 장려한다.

제8조 서명

이 의정서는 제네바협약의 당사국의 서명을 위하여 채택일로부터 12개월간 개방된다.

제9조 비준

이 의정서는 가급적 조속히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제네바협약의 수탁국인 스위스 연방정부에 기탁된다.

제10조 가입

이 의정서는 제네바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에 서명하지 아니한 모든 당사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수탁국에 기탁된다.

제11조 발효

1. 이 의정서는 2개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지 6개월 후부터 발효한다.
2. 이 의정서 발효 후에 비준 또는 가입하는 제네바협약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에 의하여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지 6개월 후부터 발효한다.

제12조 이 의정서 발효이후의 조약 관계

1. 제네바협약 당사국이 동시에 이 의정서의 당사국인 경우 제네바협약은 이 의정서에 의하여 보완되어 적용된다.
2. 충돌당사국 중 일방이 이 의정서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의정서 당사국은 그들 상호관계에 있어서 이 의정서의 구속을 받는다. 더욱이 그들은 이 의정서에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개개의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일 후자가 이 의정서의 규정을 수락하고 이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의정서의 구속을 받는다.

제13조 개정

1. 모든 계약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모든 개정안은 수탁국에 전달되며 수탁국은 계약당사국, 국제적십자위원회 및 국제적십자사연맹과의 협의 후에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소집여부를 결정한다.
2. 수탁국은 제네바협약 계약당사국과 함께 이 의정서의 모든 계약당사국의 서명국 여부를 불문하고 이 회의에 초청한다.

제14조 탈퇴

1. 어떠한 계약당사국이 이 의정서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그 탈퇴는 탈퇴서의 접수로부터 1년 후리아만 발효한다. 단, 그 기간의 만료시점에 탈퇴당사국이 무력분쟁 또는 점령의 상황에 가담하고 있는 경우 그 탈퇴는 무력분쟁 또는 점령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2. 탈퇴는 서면으로 수탁국에 통보되며 수탁국은 이를 모든 계약당사국에게 전달한다.
3. 탈퇴는 오직 탈퇴당사국에 대하여만 발효한다.
4. 제1항에 의한 모든 탈퇴는 그 탈퇴가 발효하기 전에 행하여진 모든 행위와 관련하여 무력충돌 또는 점령을 이유로 이 의정서에 의하여 탈퇴당사국에게 이미 발생된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 통고

수탁국은 제네바협약 당사국 및 계약당사국에게 이 의정서의 서명국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 가. 이 의정서에 대한 서명과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비준서 및 가입서의 기탁
- 나. 제11조에 따른 이 의정서의 발효 10일 이내에 전술한 발효일자
- 다. 제13조에 따라 접수된 통지
- 라. 제14조에 따른 탈퇴

제16조 등록

1. 이 의정서는 발효 후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 및 공포를 위하여 수탁국에 의하여 국제연합사무국에 전달된다.
2. 수탁국은 또한 이 의정서에 관하여 접수된 모든 비준,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국제연합사무국에 통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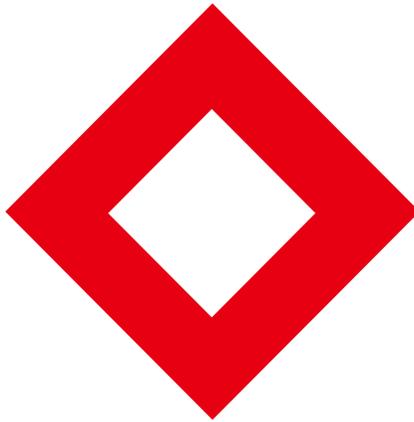
제17조 인증등본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의정서의 원본은 수탁국에 기탁되며, 수탁국은 이 인증등본을 모든 제네바협약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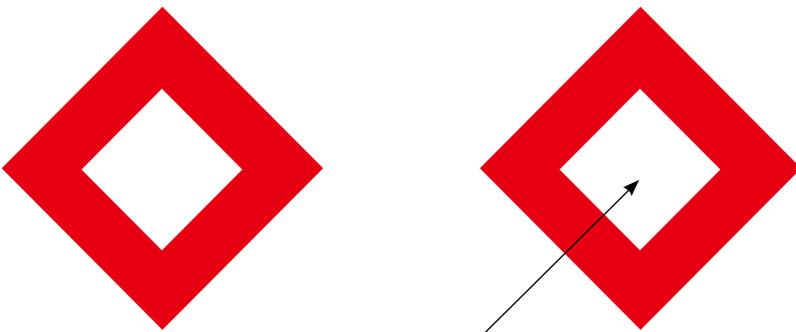
부속서

제Ⅲ의정서 표장 (의정서 제2조 2항과 제3조 1항)

제1조 - 식별표장



제2조 - 제Ⅲ의정서 표장의 표시적 사용



제3조에 따른 표장의 합체



www.redcross.or.kr

- 초판발행 1999년 10월 25일
- 재판발행 2002년 9월 1일
- 개정판발행 2010년 4월 15일
- 발행처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Tel 02.3705.3705
- 인쇄 및 디자인 디자인아이엠 www.aiem.co.kr